03031442

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Washington, D. C. 20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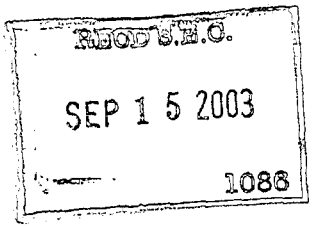

FORM SE

FORM FOR SUBMISSION OF PAPER FORMAT EXHIBITS

BY ELECTRONIC FILERS

SHINHAN FINANCIAL GROUP CO., LTD.	0001263043
Exact name of registrant as specified in charter	Registrant CIK Number
REGISTRATION STATEMENT ON FORM 20-F/12B	1-31798
Electronic report, schedule or registration statement of which the documents are a part (give period of report)	SEC file number, if avail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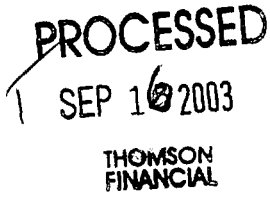

SIGNATURES

Filings Made By the Registrant:

The Registrant has duly caused this form to be signed on its behalf by the undersigned, thereunto duly authorized, in the City of New York, State of New York on September 15, 2003.

SHINHAN FINANCIAL GROUP CO., LTD.

By: B. S. Jang
(Name and Title)

Title: Chief Accounting Officer
Name: Byung Sik, Jang

Exhibits

1.1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Korean)
2.1	Form of Common Stock Certificate (in Korean)
12.2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in Korean)
12.3	Korean Bank Act (in Korean)
12.4	Korean Commercial Code (in Korean)
12.5	Korean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n Korean)
12.6	Korean Trust Business Act (in Korean)
12.7	Korean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in Korean)

Exhibit 1.1

정 관

2001 9. 1 제정 .
2002. 3.20 개정(1)
2003. 3.31 개정(2)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Shinhan Financial Group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사업의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2.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지원
3.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4.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5. 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284,453,152주에 1998년 12월 2일 주식회사 신한은행 발

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유자가 2001년 7월 15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발행, 이전될 기명식 보통주식수를 합산한 주식수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기명식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은 해당 우선주식의 최초 발행가액과 미지급 배당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03.3.31 신설)

제9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1조(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

과 동수로 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발행가액 × 상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초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 ÷ 365 × 적용이자율」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적용이자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이자율의 상하 50% 범위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

⑥ 이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11조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4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 회사 또는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02.3.20 개정)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2002.3.20 개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2.3.20 개정)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6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8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장 사 채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3.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

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3.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이익참가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사채의 이익배당참가에 관한 사항은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기준으로 하여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3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26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제24조에서 정한 소집권자로 한다.

제28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3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 이사회

제35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2003.3.31 개정)

제36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사외이사는 제46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에서 결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외부전문가임을 명시하여 선임한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이사의 임기가 그 임기 중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38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5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5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9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 및 대표이사 사장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부사장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0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 회장은 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은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사장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제41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2002.3.20 개정)

제43조(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제42조에서 정한 소집권자로 한다.

제44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운영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48조(고문 등)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상법, 증권거래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0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51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계 산

제52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제55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6조(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또는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또는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날. 이 경우 그 기간 또는 그 날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의할 것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 또는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7조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003.3.31 본조 신설)

제58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59조(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1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증권예탁원으로 한다.

제4조(설립 이후 최초의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대표이사 회장 및 대표이사 사장은 1인이 겸직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이전회사의 주식이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5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의 선임) 정관 제3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의 주식이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6조(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식이전회사의 주식이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7조(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10억원을 한도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주식이전회사)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01년 8월 10일 기명날인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20
대표이사 은행장 이 인호 (인)

신한증권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4
대표이사 사장 유 양상 (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26-3
대표이사 사장 강 신중 (인)

신한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4
대표이사 사장 백 보길 (인)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 3.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 3.31부터 시행한다.

Exhibit 2.1

4700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주권

壹株券

第 24 回

가 第000000

金五阡원整

1.會社의 商號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1.會社의 成立 年月日 西紀 2001年 9月 1日
1.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 壹拾億株
1.壹株의 金額 金五阡원整
1.株式의 種類 記名式普通株式
1.株式 發行 年月日 西紀 2001年 9月 1日

本 株券은 當會社의 定款에 依한 株式 壹株 의 株主임을 證하기 爲하여 裏面 記名者에게 交付함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라 응 찬

마698192337가

주주		귀하	교부 년월일		
등록년월일	주 주 명	등록증인	등록년월일	주 주 명	등록증인
①			⑤		
②			⑥		
③			⑦		
④			⑧		

아래 부분은 전산처리 되오니 글씨를 쓰거나 더럽히지 마십시오.

Exhibit 12.2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2002.4.27 법률 제669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4.27>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를 말한다.

3. "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를 말한다.

4. "완전지주회사" 및 "완전자회사"라 함은 각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말한다.

5. "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6. "지방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나. 가목의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

7. "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8.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당해 증권투자회사

9.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당해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②제1항제1호의 금융업의 범위,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범위 및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제3조 (인가) ①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인가의 요건)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4.27>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및 손자회사(제1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5.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및 동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제한에 관한 사항

2.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제6조 (인가 등의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

제7조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이하 이 조에서 "지배관계"라 한다)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증권투자회사가 은행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2.4.27]

제8조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①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당해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증권투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4.27]

제8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의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③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그 밖에 승인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제8조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동조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은행지주회사등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4.27]

제9조 삭제 <2002.4.27>

제10조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제8조제1항·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는 당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한도초과보유주주가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8조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제**11**조 삭제 <2002.4.27>

제**12**조 삭제 <2002.4.27>

제**13**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제**14**조 삭제 <2002.4.27>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제**15**조 (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제**16**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새로이 자회사를 편입하거나 자회사가 새로이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융지주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4.27>

1.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3.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세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종류·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이하 "신고대상회사"라 한다)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등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④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2.4.27>

⑤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4.27>

제**19**조 (손자회사)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2.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②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손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삭제 <2002.4.27>

제1절 삭제 <2002.4.27>

제20조 삭제 <2002.4.27>

제21조 삭제 <2002.4.27>

제22조 삭제 <2002.4.27>

제23조 삭제 <2002.4.27>

제24조 삭제 <2002.4.27>

제25조 삭제 <2002.4.27>

제26조 삭제 <2002.4.27>

제27조 삭제 <2002.4.27>

제28조 삭제 <2002.4.27>

제29조 삭제 <2002.4.27>

제30조 삭제 <2002.4.27>

제2절 삭제 <2002.4.27>

제31조삭제 <2002.4.27>

제32조 삭제 <2002.4.27>

제33조 삭제 <2002.4.27>

제34조 삭제 <2002.4.27>

제35조 삭제 <2002.4.27>

제36조 삭제 <2002.4.27>

제37조 삭제 <2002.4.27>

제6장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제38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당해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9조 (임원의 겸직제한 등) ①금융지주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거나 당해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②제1항 및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에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원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자회사등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2.4.27>

제40조 (사외이사의 선임) ①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같다)는 이사회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직을 상실한다.

⑤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⑥제2항 후단의 규정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 (감사위원회) ①금융지주회사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①6월이상 계속하여 금융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6월이상 계속하여 금융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2조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④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⑥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에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당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에 투자할 수 없다. 이 경우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①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식의 소유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3호 본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은행지주회사가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금융기관 및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그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45**조 (신용공여한도) ①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주를 말한다)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채권확보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지주회사등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

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③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④금융지주회사등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에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45조의2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은행지주회사등(다른 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5에서 같다)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대주주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은행지주회사등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은행지주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은행지주회사등은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은행지주회사등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은행지주회사등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제**45**조의**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은행지주회사등은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은행지주회사등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은행지주회사등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은행지주회사등은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은행지주회사등은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당해 대주주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이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주주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2.4.27]

제**45**조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4.27]

제**45**조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제**46**조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자회사등의 재무개선을 위한 증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삭제 <2002.4.27>

제**48**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등이 새로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2.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3.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②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또는 자회사등 상호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은 공동광고 및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사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62조의2제1항 또는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⑥삭제 <2002.4.27>

⑦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 (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 및 관리) ①금융지주회사등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3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총액에 관한 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총액에 관한 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금융지주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등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중에 1인 이상을 개인신용정보등을 관리할 자(이하 "신용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신용정보관리인은 개인신용정보등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등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4.27]

제48조의3 (수뢰 등의 금지 등) ①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4.27]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제49조 (감독)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과 지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금융관련법령,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명령 및 지시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50조 (경영지도기준) ①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 (검사) ①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이 선임하나 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고서에는 이 법 기타 금융관련법령,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1조의2 (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전환대상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구체적 범위·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③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4.27]

제52조 (분담금) ①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지주회사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금융지주회사는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54조 (업무보고서<개정 2002.4.27>) ①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6월간·9월간 및 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후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2.4.27>

제55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금융지주회사는 그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제55조의2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금융지주회사가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고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제56조 (경영공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57조 (행정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1.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삭제 <2002.4.27>

4.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위반행위를 한 자회사등에 대한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그 자회사등의 주식의 처분을 명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5호의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연도중에 소유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58조 (인가취소에 따른 주식처분) ①금융지주회사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3월 이내에 당해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금융지주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2.4.27>

제59조 (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60조 (합병 등의 인가) ①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산 또는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 (보고사항)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1.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2. 최대주주(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동일인을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2의2.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3. 상호를 변경한 경우

4.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처분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6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②삭제 <2002.4.27>

제62조의2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①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손자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주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의 교환대가로 배정받은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중 "6월"은 "3년"으로 본다.

1.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또는 주식이전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만료일까지 매입한 자기주식

②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354조제4항 본문,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5제2항, 제360조의9제2항, 제360조의10제4항, 제360조의17제1항 및 제363조제1항중 "2주"는 각각 "7일"로, 동법 제360조의5제1항 및 제360조의5제2항중 "20일"은 각각 "10일"로, 동법 제360조의8제1항중 "1월전에"는 "5일전에"로, 동법 제360조의10제5항중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은 "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제4항의 통지 또는 공고의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 때에는" 으로, 동법 제360조의19제1항제2호중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로, 동법 제374조의2제2항중 "2월 이내에"는 "1월 이내에"로 본다.

③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와 회사간에 주식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주식 매수가격은 상법 제360조의5 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또는 주식이전승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당해 회사가 제1호외의 회사인 경우 : 회계전문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이 경우 회계전문가의 범위와 선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회사 또는 상법 제36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식의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종료하여야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제63조 (권한의 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64조 (과징금)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이 제43조 내지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 제48조, 제58조제1항 또는 제6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1.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투자액의 100분의 10 이하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10이하

3.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

액의 100분의 10이하

4.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이하

5.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6.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10이하

7.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이하

8. 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10이하

9. 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이하

1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이하

1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10이하

12. 제4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 이하

1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14.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 이하

제**65**조 (과징금의 부과)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의견제출)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67조 (이의신청) ①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금융지주회사등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감독의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8조의3제5항·제10조제2항·제10조의2제5항 또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제65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4.27]

제10장 벌칙

제7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3.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4. 제4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4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4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외로 이용한 자

7.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신용정보등을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개인신용정보등을 영업상의 목적외로 이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3.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3.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자회사를 편입한 자

4.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한 자

5.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6.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병을 한 자

④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2.4.27]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7>

1.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0조의2제2항 또는 제4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45조의2제4항 또는 제45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지주회사등

5. 제4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45조의3제4항·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지주회사등

6. 제48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지주회사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7>

1.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3.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고한 자

4.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5. 장부·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검사를 기피 또는 방해한 자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자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274호,2000.1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②韓國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銀行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을 말한다"를 "銀行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③預金者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중 "附保金融機關"을 "附保金融機關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당해 不實憂慮金融機關"을 "당해 不實憂慮金融機關 또는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不實金融機關"을 "당해 不實金融機關 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조 (이미 설립된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다른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그 다른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기관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최종의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한 당시의 보유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제5조 (신용공여한도의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신용공여한도에 관하여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정부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①이 법 시행후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정부는 그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1년 이내에 잔여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부칙 <제6692호,2002.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내지 제37조 및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hibit 12.3

Exhibit 12.4

은행법

[일부개정 2002.4.27 법률 제6691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金融機關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資金仲介機能의 효율성을 提高하며 預金者를 보호하고 信用秩序를 유지함으로써 金融市場의 안정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1.2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5, 2002.4.27>

1. "銀行業"이라 함은 預金의 受入, 有價證券 기타 債務證書의 발행에 의하여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債務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資金을 貸出하는 것을 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金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業을 規則的·組織的으로 영위하는 韓國銀行외의 모든 法人을 말한다.

3. "商業金融業務"라 함은 대부분 要求拂預金의 受入에 의하여 조달한 資金을 1年이내의 期限으로 貸出하거나 金融監督委員會가 預金總額을 고려하여 정하는 最高貸出限度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年이상 3年이내의 期限으로 貸出하는 業務를 말한다.

4. "長期金融業務"라 함은 資本金·積立金 기타 剩餘金, 1年이상의 期限附預金 또는 社債 기타 債券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資金을 1年을 초과하는 期限으로 貸出하는 業務를 말한다.

5. "自己資本"이라 함은 國際決濟銀行의 기준에 따른 基本資本과 補完資本의 合計額을 말한다.

6. "지급보증"이라 함은 金融機關이 他人의 債務를 보증하거나 引受하는 것을 말한다.

7. "信用供與"라 함은 貸出, 지급보증 및 有價證券의 買入(資金支援的 性格의 것에 한한다) 기타 金融去來上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金融機關의 직접·간접적 去來를 말한다.

8. "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다. 證券投資會社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당해 증권투자회사

10.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이하 "지방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나.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②第1項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에 의한 自己資本 및 信用供與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다.<신설 1999.2.5>

第3條 (適用法規) ①大韓民國내에 있는 모든 金融機關은 이 法·韓國銀行法·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規程 및 命令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이 法 및 韓國銀行法은 商法 기타 法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第4條 (法人) 法人이 아니면 銀行業을 영위할 수 없다.

第5條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등에 대한 特例)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은 이를 하나의 金融機關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1.28]

第6條 (保險事業者 등) 保險事業者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信託業務만을 영위하는 會社는 이를 金融機關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第7條 (金融機關 해당여부의 決定) ①法人이 金融機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金融監督委員會가 決定한다.<改正 1998.5.25, 1999.5.24>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法人에 대하여 帳簿와 기타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1998.5.25, 1999.5.24>

第2章 銀行業의 認可 등

第8條 (銀行業의 認可) ①銀行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8.5.25, 1999.5.24>

②金融監督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事業計劃의 妥當性, 資本金 및 株主構成과 株式引受資金의 適正性, 發起人 또는 經營陣의 經營能力과 성실성 및 公益性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8.5.25, 1999.2.5, 1999.5.24>

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改正 1998.5.25, 1999.5.24>

第9條 (最低資本金) 金融機關의 資本金은 1千億원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全國을 營業區域으로 하지 아니하는 金融機關의 資本金은 250億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

第10條 (定款變更 및 資本金減少의 申告<개정 2000.1.21>) ①金融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1. 定款의 변경. 다만,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金의 減少

②金融機關이 第1項第1號의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定款의 변경을 하거나 同項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資本金의 변경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받은 내용이 關係法令에 위반되거나 金融機關利用者의 權益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金融機關에 대하여 그 是正 또는 補完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0.1.21>

第**11**條 (申請書 등의 제출) ①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申請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8.5.25, 1999.5.24, 2000.1.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書의 내용과 종류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다.<개정 1999.5.24>

第**12**條 (認可 등의 公告) 金融監督委員會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거나 第5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取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官報에 公告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1]

第**13**條 (支店의 新設·移轉등) 金融機關이 支店·代理店 기타 營業所 또는 事務所를 外國에 新設하거나 本店을 다른 特別市·廣域市·道의 地域으로 移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新設 또는 移轉計劃을 작성하여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1]

第**14**條 (類似商號 使用禁止) 韓國銀行과 金融機關이 아닌 者는 그 商號중에 銀行이라는 文字를 사용하거나 그 業務를 표시함에 있어서 銀行業 또는 銀行業務라는 文字를 사용할 수 없다.

第3章 金融機關株式의 보유한도 등<개정 2000.1.21>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당해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증권투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4.27]

第16條 (限度超過株式의 議決權 제한 등) ①同一人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金融機關의 株式을 보유하는 경우에 당해 株式의 議決權行使의 범위는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의 規定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②金融監督委員會는 同一人이 第1項의 規定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株式을 처분할 것을 命할 수 있다.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

④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후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가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는 1개에 한한다.

⑦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그 밖에 승인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제16조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동조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제48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금융기관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4.27]

제16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는 당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한도초과보유주주가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第17條 (少數株主權의 행사) ①6月이상 계속하여 金融機關의 發行株式總數의 10萬分의 5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403條(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②6月이상 계속하여 金融機關의 發行株式總數의 10萬分의 250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의 경우에는 10萬分의 125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제385조(商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539조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③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商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④6月이상 계속하여 金融機關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萬分의 50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의 경우에는 1萬分의 25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제363조의2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⑤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商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⑥6月이상 계속하여 金融機關의 發行株式總數의 1萬分의 150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의 경우에는 1萬分의 75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366條 및 第467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商法 第366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때에는 議決權있는 株式을 기준으로 한다.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가 商法 第403條(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訴訟을 제기하여 勝訴한 때에는 金融機關에 대하여 訴訟費用 기타 訴訟으로 인한 모든 費用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1]

第4章 任員 및 職員

第18條 (任員의 資格要件 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金融機關의 任員이 될 수 없으며, 任員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의 職을 상실한다.<改正 1998.5.25, 1999.2.5, 2000.1.21>

1. 削除<1998.5.25>
2.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이 法 또는 外國의 銀行法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7. 이 法·韓國銀行法·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또는 外國의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 解任되거나 懲戒免職된 者로서 解任 또는 懲戒免職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8.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로부터 適期是正措置를 받거나 同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移轉의 決定등 行政處分을 받은 金融機關(同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의 任員 또는 職員으로 在職하거나 在職하였던 者(그 適期是正措置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그 適期是正措置등을 받은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9. 이 法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認可 등이 取消된 法人 또는 會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法人 또는 會社에 대한 取消가 있은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②金融機關의 任員은 金融에 대한 經驗과 知識을 갖춘 者로서 金融機關의 公益性 및 건전경영과 信用秩序를 해할 우려가 없는 者이어야 한다.

③金融機關의 任員의 資格要件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다.<개정 1999.2.5>

第19條 삭제<1999.2.5>

제20조 (임원 등의 겸직제한) ①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은행(子銀行)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3. 당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②금융기관의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2.4.27]

第21條 (收賂 등의 금지) 金融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職務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贈與 기타 收賂의 要求, 受得 또는 이에 관한 約束을 할 수 없다.

第22條 (理事會의 구성) ①삭제<1999.2.5>

②金融機關은 理事會에 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理事(이하 "社外理事"라 한다)를 3人이상 두어야 하며, 社外理事의 數는 전체 理事數의 100分의 50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0.1.21>

③금융기관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商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④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신설 2002.4.27>

⑤제3항 후단의 규정은 새로 설립되는 금융기관이 최초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4.27>

⑥社外理事의 辭任 또는 死亡 등의 사유로 理事會의 구성이 제2항에 規定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理事會의 구성이 제2항에 規定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02.4.27>

⑦삭제 <2002.4.27>

⑧삭제 <2002.4.27>

⑨삭제<1999.2.5>

⑩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 理事會의 운영과 구성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 (理事會의 權限) ①다음 各號의 사항은 理事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0.1.21>

1. 經營目標 및 評價에 관한 사항
2.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任員 및 職員의 報酬를 포함한 豫算 및 決算에 관한 사항
4. 삭제<1999.2.5>
5. 解散·營業讓渡 및 合併 등 組織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6. 第23條의3의 規定에 의한 內部統制基準에 관한 사항

②商法 第39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會의 權限중 支配人의 選任 또는 解任과 支店의 設置·移轉 또는 廢止에 관한 權限은 金融機關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第23條의2 (監査委員會) ①金融機關은 理事會에 監査委員會(商法 第4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監査委員會는 總 委員의 3分의 2이상을 社外理事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社外理事가 아닌 監査委員會의 委員은 證券去來法 第191條의12第3項 各號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監査委員會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으로 在任중인 者는 證券去來法 第191條의12第3項第6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監査委員會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이 될 수 있다.

④監査委員會의 委員의 辭任 또는 死亡 등의 사유로 監査委員會의 구성이 第2項의 規定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定期株主總會에서 監査委員會의 구성이 第2項에 規定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商法 第415條의2第2項 但書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23條의3 (內部統制基準등) ①金融機關은 法令을 준수하고 資産運營을 건전하게 하며 預金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金融機關의 任員 및 職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

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節次와 기준(이하 "內部統制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金融機關은 內部統制基準의 준수여부를 點檢하고 內部統制基準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調査하여 監査委員會에 보고하는 者(이하 "遵法監視人"이라 한다)를 1人이상 두어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④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2.4.27>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2.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4.27>

[본조신설 2000.1.21]

第24條 (감사위원회 위원후보의 추천<개정 2002.4.27>) 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候補推薦委員會는 在籍 社外理事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개정 2000.1.21, 2002.4.27>

第25條 (利害關係者의 議決權 제한) 理事會의 議決에 있어서 당해 議案과 특별한 利害關係가 있는 理事는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제26조 (적용배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과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4.27]

第5章 銀行業務

第27條 (業務範圍) ①金融機關은 이 法 기타 關係法律의 범위안에서 銀行業에 관한 모든 業務(이하 "銀行業務"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銀行業務의 범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8.5.25, 1999.5.24>

第28條 (兼營業務의 認可) ①金融機關이 銀行業이 아닌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를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認可에 관하여는 第8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2000.1.21>

②第1項의 業務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業務를 銀行業務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 帳簿와 記錄文書를 보유하여야 한다.

第29條 (信託業務) ①信託業務를 兼營하는 金融機關은 당해 業務에 속하는 資金·有價證券 또는 所有物을 구별하여 별도의 帳簿와 記錄文書를 保有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託業務에 대하여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5>

第30條 (預金支給準備金과 金利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金融機關은 預金債務에 대한 支給準備를 위하여 韓國銀行法 第4章第2節의 規定에 의한 最低率이상의 預金支給準備金과 預金支給準備資産을 保有하여야 한다.

②金融機關은 韓國銀行法에 의한 金融通貨委員會가 행하는 다음 各號의 決定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金融機關의 각종 預金에 대한 利子 기타 支給金의 最高率의 決定

2. 金融機關의 각종 貸出 등 與信業務에 대한 利子 기타 料金의 最高率의 決定

3. 金融機關이 행하는 貸出의 最長期限 및 擔保의 종류에 대한 제한

4. 극심한 通貨膨脹期 등 國民經濟上 緊切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金融機關의 貸出과 投資의 最高限度 또는 분야별 最高限度의 제한

5. 극심한 通貨膨脹期 등 國民經濟上 緊切한 경우 金融機關의 貸出에 대한 사전 승인

第**31**條 (商業金融業務 및 長期金融業務) ①金融機關은 商業金融業務와 長期金融業務를 兼營할 수 있다.

②삭제<2000.1.21>

第**32**條 (當座預金의 취급) 當座預金은 商業金融業務를 영위하는 金融機關만이 취급할 수 있다.

第**33**條 (社債 등의 발행) 金融機關의 社債 기타 이에 준하는 債券의 발행조건·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社債 등의 발행한도는 自己資本의 5倍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第**34**條 삭제<1999.2.5>

第**35**條 (同一借主등에 대한 信用供與의 한도) ①金融機關은 동일한 개인·法人 및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信用危險을 共有하는 者(이하 "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金融機關의 自己資本의 100分의 25를 초과하는 信用供與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國民經濟를 위하여 또는 金融機關의 債權確保의 實效性 提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金融機關이 추가로 信用供與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自己資本의 변

동, 同一借主 구성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本文의 規定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金融機關이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第1項·第3項 및 第4項 本文에 規定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年이내에 第1項·第3項 및 第4項 本文에 規定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1.21>

③金融機關은 동일한 개인이나 法人 각각에 대하여 당해金融機關의 自己資本의 100分의 20을 초과하는 信用供與를 할 수 없다. 다만, 第1項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동일한 개인이나 法人 또는 同一借主 각각에 대한 金融機關의 信用供與가 당해金融機關의 自己資本의 100分의 10을 초과하는 巨額 信用供與의 總合計額은 당해金融機關의 自己資本의 5倍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第1項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2.5]

제35조의2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대주주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4.27]

제35조의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당해 대주주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당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주주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2.4.27]

제35조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당해 금융기관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금융기관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4.27]

제35조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第36條 (政府代行機關에 대한 貸出) 韓國銀行法에 의한 政府代行機關에 대한 金融機關의 貸出은 그 元利金의 償還에 관하여 政府가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第37條 (다른 會社에 대한 出資制限 등) ①金融機關은 다른 會社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出資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100分의 15를 초과하는 株式을 所有할 수 없다.<改正 1998.2.24, 2000.1.21>

②金融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業種에 속하는 會社 또는 企業構造調整 促進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議決權있는 發行株式의 100分의 15를 초과하는 株式을 所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改正 1998.2.24, 1999.2.5, 2000.1.21>

1. 金融機關이 議決權있는 發行株式의 100分의 15를 초과하는 株式을 所有하는 會社(이하 "子會社"라 한다)에 대한 出資의 總合計額이 金融機關 自己資本의 100分

의 20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金融機關은 당해 金融機關의 子會社와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1. 당해 子會社에 대한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信用供與

2. 당해 金融機關의 子會社의 株式을 擔保로 하는 信用供與와 당해 金融機關의 子會社의 株式을 買入시키기 위한 信用供與

3. 당해 金融機關의 子會社의 任員 또는 職員에 대한 貸出(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少額貸出을 제외한다)

④金融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子會社 出資를 한 때에는 7日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6항 내지 제8항에서 "母銀行" 및 "子銀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기관과 그 다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母銀行과 子銀行이 합하여 子銀行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금융기관은 당해 母銀行의 子銀行으로 본다. <신설 2002.4.27>

⑥子銀行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4.27>

1. 母銀行 및 당해 母銀行의 다른 子銀行(이하 "母銀行등"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母銀行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당해 子銀行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거나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⑦子銀行과 母銀行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子銀行과 母銀行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4.27>

⑧子銀行과 母銀行등 상호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子銀行과 母銀行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감독위

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4.27>

第38條 (禁止業務) 金融機關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業務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2000.1.21>

1. 株式 기타 償還期間 3年을 초과하는 有價證券(國債·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을 제외한다)에 대한 投資로서 自己資本의 100分의 100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投資. 이 경우 金融監督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同投資限度의 범위내에서 株式 및 有價證券인 派生商品 등에 대한 投資限度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業務用 不動産이 아닌 不動産(抵當權 등 擔保權의 實行으로 인하여 취득한 不動産을 제외한다)의 所有

3. 自己資本의 100分의 100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業務用 不動産의 所有

4. 商品 또는 有價證券에 대한 投機를 目的으로 하는 資金의 貸出

5.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金融機關의 株式을 擔保로 하는 대출 또는 다른 株式會社의 發行株式의 100分의 20을 초과하는 株式을 擔保로 하는 貸出(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事業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에 대한 貸出을 제외한다)

6.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金融機關의 株式을 買入시키기 위한 貸出

7.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政治資金의 貸出

8. 당해 金融機關의 任員 또는 職員에 대한 貸出(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少額貸出을 제외한다)

9. 삭제 <2002.4.27>

第39條(非業務用 資産 등의 처분)金融機關은 그 所有物 또는 기타 資産중 이 法에 의하여 그 취득이나 保有가 금지되거나 抵當權 등 擔保權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資産이 있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第6章 會計

第40條 (利益準備金의 積立) 金融機關은 積立金이 資本金의 總額에 달할 때까지 決

算純利益金을 配當할 때마다 그 純利益金의 100分의 10이상을 積立하여야 한다.

第41條 (財務諸表의 公告 등) ①金融機關은 그 決算日후 3月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決算日 현재의 貸借對照表, 당해 決算期의 損益計算書 및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聯結財務諸表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月이내에 公告할 수 없는 書類에 대하여는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 그 公告를 연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 및 聯結財務諸表에는 代表者 및 擔當責任者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金融機關의 決算日은 12月31日로 한다. 다만, 金融監督委員會는 決算日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金融機關은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 決算日을 변경할 수 있다.

第42條 (貸借對照表 등의 제출) ①金融機關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한 貸借對照表를 다음 달 말일까지 韓國銀行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韓國銀行에 제출하여야 하며, 韓國銀行은 이를 韓國銀行統計月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借對照表에는 擔當責任者 또는 그 代理人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金融機關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借對照表외에 韓國銀行이 정하는 業務遂行上 필요로 하는 定期的 統計資料 또는 情報를 韓國銀行에 제공하여야 한다.

第43條 (資料公開의 거부) 金融機關은 商法 第4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會計의 帳簿와 서류의 閱覽 또는 謄寫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 去來者의 權益을 심히 손상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請求를 거부할 수 있다.

第7章 監督·檢査

第44條 (金融機關의 監督)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金融監督院(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은 金融監督委員會의 規程과 指示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 기타 關係法律, 金融監督委員會의 規程·命令 및 指示에 대한 金融

機關의 준수여부를 監督하여야 한다.

第45條 (건전경영의 지도) ①金融機關은 銀行業을 영위함에 있어서 自己資本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流動性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金融機關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經營指導基準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1. 資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資産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流動性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國際決濟銀行이 권고하는 金融機關의 健全性 監督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1999.2.5>

④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機關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基準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資本金의 增額, 利益配當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第46條 (預金支給不能 등에 대한 措置) 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機關의 破産 또는 預金支給不能의 우려 등 預金者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預金受入 및 與信의 제한, 預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第47條 (業務報告書 등의 제출) ①金融機關은 매월의 業務內容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金融監督院 院長(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金融監督院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에는 代表者와 擔當責任者 또는 그 代理人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金融機關은 金融監督院長이 業務遂行을 위하여 요구하는 資料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48條 (檢査) ①金融監督院長은 金融機關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檢査한다.

②金融監督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金融機關에 대하여 業務 또는 財産에 관한 보고, 資料의 제출, 關係者의 출석 및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1>

③金融監督院長은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에 의하여 金融機關이 選任한 外部監査人에 대하여 당해 金融機關을 監査한 결과 알게 된 情報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關係者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2000.1.21>

■ 제**48**조의**2** (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전환대상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구체적 범위,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③제4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4.27]

■ 第**49**條 (分擔金) ①金融監督院의 檢査를 받는 金融機關은 檢査費用에 충당하기 위한 分擔金을 金融監督院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料率·한도 기타 分擔金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50**條 (積立金保有 및 損失處理의 요구) 金融監督院長은 金融機關의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金融機關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1. 資産의 帳簿價格의 변경
2. 불건전한 資産을 위한 積立金의 保有
3. 價値가 없다고 인정되는 資産의 損失處理

第51條 (經營公示) 金融機關은 預金者 및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示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1]

第52條 (約款의 변경 등) ①金融機關은 이 法에 의한 業務를 취급함에 있어서 金融機關 利用者의 權益을 보호하여야 하며, 金融去來와 관련된 約款을 制定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②金融監督委員會는 건전한 金融去來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金融機關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約款의 변경을 勸告할 수 있다.

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約款의 制定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金融機關은 金融去來上의 契約條件 등을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示하여야 한다.

第53條 (金融機關에 대한 制裁) ①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機關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規程·命令 또는 指示를 위반하여 金融機關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院長의 建議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하거나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당해위반행위의 중지 및 警告 등 적절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위반행위의 是正命令
2. 6月이내의 營業의 일부정지

②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金融機關에 대하여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銀行業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銀行業의 認可를 받은 경우
2. 認可內容 또는 認可條件에 위반한 경우
3. 營業의 정지기간중에 그 營業을 한 경우
4.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第1號 내지 第4號의의 경우로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預金者 또는 投資者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0.1.21]

第54條 (任·職員에 대한 制裁) ①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機關의 任員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規程·命令 또는 指示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金融機關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金融監督院長의 建議에 따라 당해 任員의 業務執行의 정지를 명하거나 株主總會에 대하여 그 任員의 解任을 勸告할 수 있으며,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警告 등 적절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②金融監督院長은 金融機關의 職員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規程·命令 또는 指示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金融機關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免職·停職·減俸·譴責 등 적절한 問責處分을 할 것을 당해 金融機關의 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

第8章 合併·廢業·解散

第55條 (合併·解散·廢業의 認可) ①金融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5.24, 2000.1.21, 2002.4.27>

1. 분할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解散 또는 銀行業의 廢止
3.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讓渡·讓受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9.5.24>

第56條 (金融機關에 대한 解散命令 등) ①삭제<1999.2.5>

②金融機關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銀行業認可가 取消된 때에는 解散한다.

③法院은 金融機關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請求에 의하거나 職權으로 淸算人을 選任하거나 解任할 수 있다.<改正 1998.5.25, 1999.2.5, 1999.5.24>

第57條 (淸算人 등의 選任) ①金融機關이 解散 또는 破産한 때에는 金融監督院長 또는 그 所屬職員 1名이 淸算人 또는 破産管財人으로 選任되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淸算人 또는 破産管財人으로 選任된 金融監督院長 또는 그 所屬職員은 그 任務에 대하여 報酬를 請求할 수 없다. 다만, 그 任務遂行上 소요된 정당한 經費는 당해 財産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第9章 外國金融機關의 國內支店

第58條 (外國金融機關의 銀行業認可 등) ①外國金融機關(外國法令에 의하여 設立되어 外國에서 銀行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大韓民國내에서 銀行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支店·代理店 또는 事務所를 新設하거나 支店 또는 代理店을 閉鎖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8.5.25, 1999.5.24, 2000.1.21>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改正 1998.5.25, 1999.5.24>

③外國金融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支店 또는 代理店을 移轉하거나 事務所를 閉鎖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신설 2000.1.21>

第59條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法適用) ①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外國金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은 이 法에 의한 金融機關으로 보며, 外國金融機關의 國內代表者는 이 法에 의한 金融機關의 任員으로 본다. 다만, 第4條·第9條 및 第15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5>

②하나의 外國金融機關이 大韓民國내에 2이상의 支店 또는 代理店을 두는 경우 당해 支店 또는 代理店 전부를 하나의 金融機關으로 본다.

第60條 (認可取消 등) ①金融監督委員會는 外國金融機關의 本店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外國金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에 관한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改正 1998.5.25, 1999.5.24>

1. 合併·營業의 讓渡로 인하여 消滅한 경우
2. 違法行爲, 불건전한 營業行爲 등의 사유로 인하여 監督機關으로부터 懲戒를 받은 경우

3. 休業하거나 營業을 중지한 경우

②外國金融機關의 支店·代理店 또는 事務所는 당해 外國金融機關의 本店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事由가 발생한 날부터 7日이내에 그 사실을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98.5.25, 1999.5.24>

③外國金融機關의 本店이 解散 또는 破産하였거나 銀行業을 廢止한 경우 또는 銀行業의 認可가 取消된 경우에는 당해 外國金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에 대한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取消된 것으로 본다.

第61條 (認可取消시의 支店閉鎖·淸算) ①外國金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이 第53條·第60條第1項 또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가 取消되거나 取消된 것으로 보게 되는 때에는 당해 支店 또는 代理店은 閉鎖되며 大韓民國내에 있는 財産의 전부에 대하여 淸算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第1項의 경우에 利害關係人 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請求에 의하거나 職權으로 淸算人을 選任하거나 解任할 수 있다.<改正 1998.5.25, 1999.5.24>

③商法 第620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淸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62條 (外國金融機關의 國內資産) ①外國金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韓民國내에 保有하여야 한다.

②外國金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이 淸算을 하거나 破産한 때에는 그 資産·資本金·積立金 기타 剩餘金은 大韓民國 國民과 大韓民國내에 住所 또는 居所가 있는 外國人에 대한 債務辨濟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第63條 (資本金에 관한 規定의 적용) 外國金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에 대하여 이 法중 金融機關의 資本金에 관한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0章 補則

第64條 (청문) 金融監督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1998.5.25, 1999.5.24>

1.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取消

2.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金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의 認可의 取消

第65條 (權限의 委託) ①삭제<1999.5.24>

②金融監督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제65조의2 (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금융기관이 제41조·제42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각각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제11장 과징금 등의 부과 및 징수 <신설 2002.4.27>

제65조의3 (과징금)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35조·제35조의2·제35조의3·제37조·제38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2.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이하

3.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4. 제3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5. 제3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당해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 이하

6. 제37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 이하

7. 제37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공여를 한 경우 : 당해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8. 제3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당해 불량자산의 장

부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9.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투자액의 100분의 10 이하

10. 제38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11.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12. 제38조제4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의 100분의 2 이하

13.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의 100분의 2 이하

14.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15.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이하

[본조신설 2002.4.27]

제65조의4 (과징금의 부과)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제65조의5 (의견제출)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제65조의6 (이의신청) ①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

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제65조의7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제65조의8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제65조의9 (이행강제금)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6조의2제5항·제16조의3제5항 또는 제1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제65조의4 내지 제65조의8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4.27]

第12章 罰則

제6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영위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4.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5. 제3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외로 이용한 자

[전문개정 2002.4.27]

제6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제37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4.27]

第68條 (罰則) ①金融機關의 任員·支配人·代理店主(代理店主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業務를 執行하는 社員·任員·支配人 기타 法人의 代表者) 또는 淸算人(이하 "金融機關의 任員등"이라 한다)이나 그 職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9.2.5, 2000.1.21, 2002.4.27>

1. 資本金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삭제 <2002.4.27>

3. 第29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때

4. 第30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5. 第32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6. 第33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債券을 발행한 때

7. 삭제<1999.2.5>

8. 삭제 <2002.4.27>

9. 삭제 <2002.4.27>

10. 第38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11. 第40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12. 삭제<2000.1.21>

13. 삭제<2000.1.21>

14.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同條同項 各號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

15. 第58條第1項(支店·代理店 또는 事務所를 新設하기 위하여 認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規定을 위반한 때

16. 第6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때

17. 삭제<2000.1.21>

②第14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4.27>

③삭제 <2002.4.27>

第**68**條의**2**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의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의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내지 제6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2.4.27>

[본조신설 2000.1.21]

第**69**條 (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7>

1.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금융기관

4.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5.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기관

②금융기관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7>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허위로 한 때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때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③삭제 <2002.4.27>

④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2.4.27>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지체 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5499호,1998.1.13>

第1條 (施行日) ①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4條 및 附則 第7條의 改正規定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15條 내지 第17條, 第22條第1項 내지 第8項 및 第10項, 第26條, 第35條第3項과 附則 第6條第3項 및 第10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의 施行과 관련한 金融監督委員會의 權限은 이 法을 公布한 날부터 1998年 3月 31日까지는 韓國銀行銀行監督院長이 行한다.

第2條 (監事의 任期에 관한 適用例) 第19條第1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監事의 任期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選任되는 監事부터 적용한다.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金融監督委員會 또는 韓國銀行銀行監督院長이 행한 認可·승인·決定·命令·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金融監督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長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金融通貨運營委員會 또는 韓國銀行銀行監督院長에 대하여 행한 申告·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하여 財政經濟

院長官·金融監督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長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第4條 (非常任理事 構成比率 조정에 따른 經過措置) 第22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理事會는 1998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에서 구성하며, 그 전까지는 1998年 1月 1日당시의 理事會를 이 法에 의한 理事會로 본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삭제 <2002.4.27>

第7條 (候補推薦委員會에 대한 特例) ①1998年 1月 1日당시 종전의 第14條의7의 規定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金融機關으로서 1998年 1月 1日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에서 銀行長 또는 監事의 任期가 만료되는 金融機關은 臨時推薦委員會를 구성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推薦委員會 委員은 第22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非常任理事候補로 구성하되, 株主總會의 選任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推薦委員會의 委員數는 理事會에서 정한다.

④臨時推薦委員會의 議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⑤臨時推薦委員會 委員은 1998年 1月 1日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에서 非常任理事候補로 추천된다.

第8條 (理事會制度의 적용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전에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轉換한 金融機關에 대하여는 第22條第3項·第5項 내지 第9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5>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第1項第3號중 "銀行法 第9條"를 "銀行法 第8條"로 한다.

②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4條第2項중 "銀行法 第3條"를 "銀行法 第2條"로, "銀行法 第3條第2項"을 "銀行法 第5條"로 한다.

③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8條중 "銀行法 第3條"를 "銀行法 第2條"로 한다.

④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중 "銀行法 第3條"를 "銀行法 第2條"로 한다.

⑤選擧管理委員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2項중 "銀行法 第3條"를 "銀行法 第2條"로 한다.

⑥郵便換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중 "銀行法 第3條"를 "銀行法 第2條"로 한다.

⑦流通團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2號중 "銀行法 第9條"를 "銀行法 第8條"로 한다.

第10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이 法 施行당시의 法令중 종전의 銀行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政府가 金融機關의 發行株式의 100分의 50이상을 所有하는 경우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金融機關은 政府投資機關으로 보지 아니한다.

附則 <제5520호,1998.2.24>

①(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金融監督委員會의 權限에 관한 經過措置) 第37條第2項의 改正規定의 施行과 관련한 金融監督委員會의 承認權限은 이 法을 公布한 날부터 1998年3月31日까지는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이 행한다.

附則 <제5540호,1998.5.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5745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5條第7項 및 第35條第1項 내지 第3項의 改正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信用供與限度에 관한 經過措置) ①附則 第1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第15條第7項 및 第35條第1項·第3項의 改正規定의 施行당시 同 改正規定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信用供與를 하고 있는 金融機關은 2002年 12月 31日까지 同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細部計劃書를 2000年 1月 31日까지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第35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信用供與를 하고 있는 金融機關은 2000年 3月 31日까지 同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細部計劃書를 1999年 4月 30日까지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3條 (任員의 資格要件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在任중인 金融機關의 任員이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18條第1項第7號 또는 第8號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間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在任중인 金融機關의 任員의 任期에 관하여는 第19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당해金融機關이 定款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乃至 <40>省略

<41>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및 第8條第2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이"를 각각 "金融監督委員會가"로 한다.

第7條第2項, 第8條第3項, 第55條第2項, 第58條第2項, 第60條第1項 本文 및 第64條 本文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8條第1項중 "金融監督委員會의 추천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를 "金融監督委員會의"로 한다.

第11條第1項중 "申請書(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書類를 포함한다)"를 "申請書"로 하고, 同條第2項중 "申請書 및 추천에 필요한 書類"를 "申請書"로 한다.

第12條중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가"를 "金融監督委員會가"로 한다.

第27條第2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이"를 "大統領令으로"한다.

第28條第1項, 第56條第3項, 第61條第2項 및 第67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53條第1項 本文중 "措置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에게 그 銀行業認可의 取消를 요청할 수 있다."를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同項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3. 銀行業認可의 取消

第55條第1項 本文중 "金融監督委員會의 의견을 첨부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를 "金融監督委員會의"로 한다.

第58條第1項 前段중 "金融監督委員會의 추천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를 "金融監督委員會의"로 한다.

第60條第2項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한다.

第65條第1項을 削除한다.

<42>乃至 <78>省略

第4條 乃至 第6條 省略

附則(농업협동조합법) <제6018호,1999.9.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乃至 第17條 省略

第1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乃至 ②省略

③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條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등에 대한 特例)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은 이를 하나의 金融機關으로 본다.

④乃至 ⑦省略

第19條 乃至 第21條 省略

附則 <제6177호,2000.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7條 및 第23條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任員의 資格要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金融機關의 任員이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18條第1項第9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同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社外理事 選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金融機關에 在任하고 있는 非常任理事는 第22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社外理事로 본다.

第4條 (監査委員會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金融機關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日까지 第23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5條 (監査委員會 設置에 따른 常勤監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金融機關의 常勤監事로 在任하고 있는 者(常勤監事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당해金融機關의 理事會에서 지명한 常勤監事를 말한다)는 附則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定期株主總會日까지 그 任期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株主總會에서 解任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任期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金融機關의 監査委員會 委員중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常勤監事는 그 任期의 종료시까지 商法 第38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主總會에서 選任된 理事로 본다.

第6條 (內部統制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金融機關은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第23條의3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內部統制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第7條 (理事會 구성에 관한 經過措置)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日까지 同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理事會를 구성하여야 한다.

第8條 (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

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중 "銀行法 第22條 내지 第26條"를 "銀行法 第22條, 第23條, 第23條의2, 第24條, 第25條 및 第26條"로 하고, "第53條第1項第3號"를 "第53條第2項 및 第3項"으로 한다.

附則(水産業協同組合法) <제6256호,2000.1.28>

第1條 (施行日) ①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②省略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法律 第6018號 農業協同組合法 附則 第18條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條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등에 대한 特例)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은 이를 하나의 金融機關으로 본다.

④생략

②내지 ④생략

第13條 및 第14條 省略

부칙(상호저축은행법) <제642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相互信用金庫業務"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6691호,2002.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기관 주식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

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은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원 등의 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 자로서 은행지주회사(당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주총회 가운데 후에 도래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주식취득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발행주식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상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06545호]

第1編 總則

第1章 通則

第1條 (商事適用法規) 商事에 關하여 本法에 規定이 없으면 商慣習法에 依하고 商慣習法이 없으면 民法의 規定에 依한다.

第2條 (公法人의 商行爲) 公法人의 商行爲에 對하여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없는 境遇에 限하여 本法을 適用한다.

第3條 (一方的商行爲) 當事者中 그 1人의 行爲가 商行爲인 때에는 全員에 對하여 本法을 適用한다.

第2章 商人

第4條 (商人-當然商人) 自己名義로 商行爲를 하는 者를 商人이라 한다.

第5條 (同前-擬制商人) ①店鋪 其他 類似한 設備에 依하여 商人的 方法으로 營業을 하는 者는 商行爲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商人으로 본다.

②會社는 商行爲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前項과 같다.

第6條 (無能力者의 營業과 登記)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가 法定代理人의 許諾을 얻어 營業을 하는 때에는 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7條 (無能力者와 無限責任社員) 未成年者 또는 限政治産者가 法定代理人의 許諾을 얻어 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이 된 때에는 그 社員資格으로 因한 行爲에는 能力者로 본다.

第8條 (法定代理人에 依한 營業의 代理) ①法定代理人이 未成年者, 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를 爲하여 營業을 하는 때에는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法定代理人의 代理權에 對한 制限은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9條 (小商人) 支配人, 商號, 商業帳簿와 商業登記에 關한 規定은 小商人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章 商業使用人

第10條 (支配人의 選任) 商人은 支配人을 選任하여 本店 또는 支店에서 營業을 하게 할 수 있다.

第11條 (支配人의 代理權) ①支配人은 營業主에 갈음하여 그 營業에 關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다.

②支配人은 支配人이 아닌 店員 其他 使用人을 選任 또는 解任할 수 있다.

③支配人의 代理權에 對한 制限은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2條 (共同支配人) ①商人은 數人의 支配人에게 共同으로 代理權을 行使하게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支配人 1人에 對한 意思表示는 營業主에 對하여 그 效力이 있다.

第13條 (支配人의 登記) 商人은 支配人의 選任과 그 代理權의 消滅에 關하여 그 支配人을 둔 本店 또는 支店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前條 第1項에 規定한 事項과 그 變更도 같다.

第14條 (表見支配人) ①本店 또는 支店의 營業主任 其他 類似한 名稱을 가진 使用人은 本店 또는 支店의 支配人과 同一한 權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裁判上의 行爲에 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前項의 規定은 相對方이 惡意인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5條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使用人) ①營業의 特定한 種類 또는 特定한 事項에 對한 委任을 받은 使用人은 이에 關한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다.

②第11條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16條 (物件販賣店鋪의 使用人) ①物件을 販賣하는 店鋪의 使用人은 그 販賣에 關한 모든 權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第14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17條 (商業使用人의 義務) ①商業使用人은 營業主의 許諾없이 自己 또는 第三者의 計算으로 營業主의 營業部類에 屬한 去來를 하거나 會社의 無限責任社員, 理事 또는 다른 商人의 使用人이 되지 못한다.

②商業使用人이 前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去來를 한 境遇에 그 去來가 自己의 計算으로 한 것인 때에는 營業主는 이를 營業主의 計算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第三者의 計算으로 한 것인 때에는 營業主는 使用人에 對하여 이로 因한 利得의 讓渡를 請求할 수 있다.

③前項의 規定은 營業主로부터 使用人에 對한 契約의 解止 또는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第2項에 規定한 權利는 營業主가 그 去來를 안날로부터 2週間을 經過하거나 그 去來가 있은 날로부터 1年을 經過하면 消滅한다.

第4章 商號

第18條 (商號選定의 自由) 商人은 그 姓名 其他의 名稱으로 商號를 定할 수 있다.

第19條 (會社의 商號) 會社의 商號에는 그 種類에 따라 合名會社, 合資會社, 株式會社 또는 有限會社의 文字를 使用하여야 한다.

第20條 (會社商號의 不當使用의 禁止) 會社가 아니면 商號에 會社임을 表示하는 文字를 使用하지 못한다. 會社의 營業을 讓受한 境遇에도 같다.

第21條 (商號의 單一性) ①同一한 營業에는 單一商號를 使用하여야 한다.

②支店의 商號에는 本店과의 從屬關係를 表示하여야 한다.

第22條 (商號登記의 效力) 他人이 登記한 商號는 동일한 特別市·廣域市·市·郡에서 同種營業의 商號로 登記하지 못한다.<改正 1984.4.10, 1994.12.22, 1995.12.29>

第22條의2 (商號의 假登記) ①株式會社 또는 有限會社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本店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登記所에 商號의 假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②會社는 商號나 目的, 또는 商號와 目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本店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登記所에 商號의 假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③會社는 本店을 移轉하고자 할 때에는 移轉할 곳을 관할하는 登記所에 商號의 假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④商號의 假登記는 第2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商號의 登記로 본다.

⑤商號의 假登記에 있어서 本登記를 할 때까지의 기간, 供託金의 供託과 그 回收, 假登記의 抹消 기타 필요한 節次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23條 (主體를 誤認시킬 商號의 使用禁止) ①누구든지 不正한 目的으로 他人의 營業으로 誤認할 수 있는 商號를 使用하지 못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商號를 使用하는 者가 있는 境遇에 이로 因하여 損害를 받을 念慮가 있는 者 또는 商號를 登記한 者는 그 廢止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84.4.10>

③第2項의 規定은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改正 1984.4.10>

④동일한 特別市·廣域市·市·郡에서 同種營業으로 他人이 登記한 商號를 使用하는 者는 不正한 目的으로 使用하는 것으로 推定한다.<改正 1984.4.10, 1994.12.22, 1995.12.29>

第24條 (名義貸與者의 責任) 他人에게 自己의 姓名 또는 商號를 使用하여 營業을 할 것을 許諾한 者는 自己를 營業主로 誤認하여 去來한 第三者에 對하여 그 他人과 連帶하여 辨濟 할 責任이 있다.

第25條 (商號의 讓渡) ①商號는 營業을 廢止하거나 營業과 함께 하는 境遇에 限하여 이를 讓渡할 수 있다.

②商號의 讓渡는 登記하지 아니하면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26條 (商號不使用의 效果) 商號를 登記한 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2年間 商號를 使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廢止한 것으로 본다.

第27條 (商號登記의 抹消請求) 商號를 變更 또는 廢止한 境遇에 2週間內에 그 商號를 登記한 者가 變更 또는 廢止의 登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利害關係人은 그 登記의 抹消를 請求할 수 있다.

第28條 (商號 不正使用에 對한 制裁) 第20條와 第23條第1項에 違反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第5章 商業帳簿

第29條 (商業帳簿의 種類·作成原則) ①商人은 營業上의 財産 및 損益의 狀況을 明白히 하기 위하여 會計帳簿 및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商業帳簿의 作成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한 會計慣行에 의한다.

[全文改正 1984.4.10]

第30條 (商業帳簿의 作成方法) ①會計帳簿에는 去來와 기타 營業上의 財産에 影響이 있는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②商人은 營業을 開始한 때와 每年 1回이상 一定時期에, 會社는 成立한 때와 每 決算期에 會計帳簿에 의하여 貸借對照表를 作成하고, 作成者가 이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全文改正 1984.4.10]

第31條 (資産評價의 原則) 會計帳簿에 記載될 資産은 다음의 方法에 의하여 評價하여야 한다.

1. 流動資産은 取得價額·製作價額 또는 時價에 의한다. 그러나, 時價가 取得價額 또는 製作價額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時價에 의한다.

2. 固定資産은 取得價額 또는 製作價額으로부터 상당한 減價額을 控除한 價額에 의하되, 豫測하지 못한 減損이 생긴 때에도 상당한 減額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84.4.10]

第32條 (商業帳簿의 提出) 法院은 申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訴訟當事者에게 商業帳簿 또는 그 一部分의 提出을 命할 수 있다.

第33條 (商業帳簿等의 保存) ①商人은 10年間 商業帳簿와 營業에 關한 重要書類를 保存하여야 한다. 다만, 傳票 또는 이와 유사한 書類는 5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前項의 期間은 商業帳簿에 있어서는 그 閉鎖한 날로부터 起算한다.

③第1項의 帳簿와 書類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帳簿와 書類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으로 정한다.<新設 1995.12.29>

第6章 商業登記

第34條 (通則) 本法에 依하여 登記한 事項은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營業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法院의 商號登記簿에 登記한다.

第34條의2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商業登記) ①商業登記事務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商業登記事務의 處理節次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35條 (支店所在地에서의 登記) 本店의 所在地에서 登記할 事項은 다른 規定이 없으면 支店의 所在地에서도 登記하여야 한다.

第36條 削除 <1995.12.29>

第37條 (登記의 효력) ①登記할 사항은 이를 登記하지 아니하면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登記한 후라도 第三者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第1項과 같다.

[全文改正 1995.12.29]

第38條 (支店所在地에서의 登記의 效力) 支店의 所在地에서 登記할 事項을 登記하지 아니한 때에는 前條의 規定은 그 支店의 去來에 限하여 適用한다.

第39條 (不實의 登記)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하여 事實과 相違한 事項을 登記한 者는 그 相違를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40條 (變更, 消滅의 登記) 登記한 事項에 變更이 있거나 그 事項이 消滅한 때에는 當事者는 遲滯없이 變更 또는 消滅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7章 營業讓渡

第41條 (營業讓渡人의 競業禁止) ①營業을 讓渡한 境遇에 다른 約定이 없으면 讓渡人은 10年間 동일한 特別市·廣域市·市·郡과 인접 特別市·廣域市·市·郡에서 同種營業을 하지 못한다.<改正 1984.4.10, 1994.12.22, 1995.12.29>

②讓渡人이 同種營業을 하지 아니할 것을 約定한 때에는 동일한 特別市·廣域市·市·郡과 인접 特別市, 市, 郡에 限하여 20年을 超過하지 아니한 範圍內에서 그 效力이 있다.<改正 1984.4.10, 1994.12.22, 1995.12.29>

第42條 (商號를 續用하는 讓受人의 責任) ①營業讓受人이 讓渡人의 商號를 繼續 使用하는 境遇에는 讓渡人의 營業으로 因한 第三者의 債權에 對하여 讓受人도 辨濟할 責任이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讓受人이 營業讓渡를 받은後 遲滯없이 讓渡人의 債務에 對한 責任이 없음을 登記한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讓渡人과 讓受人이 遲滯없이 第三者에 對하여 그 뜻을 通知한 境遇에 그 通知를 받은 第三者에 對하여도 같다.

第43條 (營業讓受人에 對한 辨濟) 前條第1項의 境遇에 讓渡人의 營業으로 因한 債權에 對하여 債務者가 善意이며 重大한 過失없이 讓受人에게 辨濟한 때에는 그 效力이 있다.

第44條 (債務引受를 廣告한 讓受人의 責任) 營業讓受人이 讓渡人의 商號를 繼續使用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讓渡人의 營業으로 因한 債務를 引受한 것을 廣告한 때에는 讓受人도 辨濟할 責任이 있다.

第45條 (營業讓渡人의 責任의 存續期間) 營業讓受人이 第42條第1項 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辨濟의 責任이 있는 境遇에는 讓渡人의 第三者에 對한 債務는 營業讓渡 또는 廣告後 2年이 經過하면 消滅한다.

第2編 商行爲

第1章 通則

第46條 (基本的 商行爲) 營業으로 하는 다음의 行爲를 商行爲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賃金을 받을 目的으로 物件을 製造하거나 勞務에 從事하는 者의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1. 動産, 不動産, 有價證券 其他의 財産의 賣買
2. 動産, 不動産, 有價證券 其他의 財産의 賃貸借
3. 製造, 加工 또는 修繕에 關한 行爲
4. 電氣, 電波, 까스 또는 물의 供給에 關한 行爲
5. 作業 또는 勞務의 都給의 引受
6. 出版, 印刷 또는 撮影에 關한 行爲
7. 廣告, 通信 또는 情報에 關한 行爲
8. 受信·與信·換 기타의 金融去來
9. 客의 集來를 爲한 施設에 依한 去來
10. 商行爲의 代理의 引受
11. 仲介에 關한 行爲
12. 委託賣買 其他의 周旋에 關한 行爲
13. 運送의 引受
14. 任置의 引受
15. 信託의 引受
16. 相互賦金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保險
18. 鑛物 또는 土石의 採取에 關한 行爲
19. 機械·施設 기타 財産의 物融에 관한 행위
20. 商號·商標등의 使用許諾에 의한 營業에 관한 행위
21. 營業상 債權의 買入·回收등에 관한 행위

第**47**條 (補助的 商行爲) ①商人이 營業을 爲하여 하는 行爲는 商行爲로 본다.
②商人의 行爲는 營業을 爲하여 하는것으로 推定한다.

第**48**條 (代理의 方式) 商行爲의 代理人이 本人을 爲한 것임을 表示하지 아니하여도 그 行爲는 本人에 對하여 效力이 있다. 그러나, 相對方이 本人을 爲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代理人에 對하여도 이 履行의 請求를 할 수 있다.

第**49**條 (委任) 商行爲의 委任을 받은 者는 委任의 本旨에 反하지 아니한 範圍內에서 委任을 받지 아니한 行爲를 할 수 있다.

第50條 (代理人의 存續) 商行爲의 委任에 依한 代理權은 本人의 死亡으로 因하여 消滅하지 아니한다.

第51條 (對話者間의 請約의 拘束力) 對話者間의 契約의 請約은 相對方이 卽時 承諾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第52條 (隔地者間의 請約의 拘束力) ①隔地者間의 契約의 請約은 承諾期間이 없으면 相對方이 相當한 期間內에 承諾의 通知를 發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②民法 第530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53條 (請約에 對한 諾否通知義務) 商人이 常時 去來關係에 있는 者로부터 그 營業部類에 屬한 契約의 請約을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諾否의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이를 懈怠한 때에는 承諾한 것으로 본다.

第54條 (商事法定利率) 商行爲로 因한 債務의 法定利率은 年6分으로 한다.<改正 1962.12.12>

第55條 (法定利子請求權) ①商人間에서 金錢의 消費貸借를 한 때에는 貸主는 法定利子를 請求할 수 있다.

②商人이 그 營業範圍內에서 他人을 爲하여 金錢을 替當한 때에는 替當한날 以後의 法定 利子를 請求할 수 있다.

第56條 (支店去來의 債務履行場所) 支店에서의 去來로 因한 債務履行의 場所가 그 行爲의 性質 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에 依하여 特定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特定物의 引渡以外의 債務의 履行은 그 支店을 履行場所로 본다.

第57條 (多數債務者間 또는 債務者와 保證人의 連帶) ①數人이 그 1人 또는 全員에게 商行爲가 되는 行爲로 因하여 債務를 負擔한 때에는 連帶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다.

②保證人이 있는 境遇에 그 保證이 商行爲이거나 主債務가 商行爲로 因한 것인 때에는 主債務者와 保證人은 連帶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다.

第58條 (商事留置權) 商人間의 商行爲로 因한 債權이 辨濟期에 있는 때에는 債權者는 辨濟를 받을 때

까지 그 債務者에 對한 商行爲로 因하여 自己가 占有하고 있는 債務者所有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留置할 수 있다. 그러나,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9條 (流質契約의 許容) 民法 第339條의 規定은 商行爲로 因하여 생긴 債權을 擔保하기 爲하여 設定한 質權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0條 (物件保管義務) 商人이 그 營業部類에 屬한 契約의 請約을 받은 境遇에 見品 其他의 物件을 받은 때에는 그 請約을 拒絶한 때에도 請約者의 費用으로 그 物件을 保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物件의 價額이 保管의 費用을 償還하기에 不足하거나 保管으로 因하여 損害를 받을 念慮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1條 (商人의 報酬請求權) 商人이 그 營業範圍內에서 他人을 爲하여 行爲를 한 때에는 이에 對하여 相當한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第62條 (任置를 받은 商人의 責任) 商人이 그 營業範圍內에서 物件의 任置를 받은 境遇에는 報酬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를 하여야 한다.

第63條 (去來時間과 履行 또는 그 請求) 法令 또는 慣習에 依하여 營業時間이 定하여져 있는 때에는 債務의 履行 또는 履行의 請求는 그 時間內에 하여야 한다.

第64條 (商事時效) 商行爲로 因한 債權은 本法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5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그러나 다른 法令에 이보다 短期의 時效의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 依한다.

第65條 (有價證券과 準用規定) 金錢, 物件 또는 有價證券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有價證券에는 民法 第508條 乃至 第525條의 規定을 適用하는 外에 어음法 第12條第1項,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62.12.12>

第66條 (準商行爲) 本章의 規定은 第5條의 規定에 依한 商人의 行爲에 準用한다.

第2章 賣買

第67條 (賣渡人의 目的物의 供託, 競賣權) ①商人間의 賣買에 있어서 買受人이 目的物의 受領을 拒否하거나 이를 受領할 수 없는 때에는 賣渡人은 그 物件을 供託하거나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催告한後 競賣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遲滯없이 買受人에 對하여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買受人에 對하여 催告를 할 수 없거나 目的物이 滅失 또는 毁損될 念慮가 있는 때에는 催告없이 競賣할 수 있다.

③前2項의 規定에 依하여 賣渡人이 그 目的物을 競賣한 때에는 그 代金에서 競賣費用을 控除한 殘額을 供託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全部나 一部를 賣買代金에 充當할 수 있다.

第68條 (確定期賣買의 解除) 商人間의 賣買에 있어서 賣買의 性質 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에 依하여 一定한 日時 또는 一定한 期間內에 履行하지 아니하면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境遇에 當事者의 一方이 履行時期를 經過한 때에는 相對方은 卽時 그 履行을 請求하지 아니하면 契約을 解除한 것으로 본다.

第69條 (買受人의 目的物의 檢査와 瑕疵通知義務) ①商人間의 賣買에 있어서 買受人이 目的物을 受領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檢査하여야 하며 瑕疵 또는 數量의 不足을 發見한 境遇에는 卽時 賣渡人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지 아니하면 이로 因한 契約解除, 代金減額 또는 損害賠償을 請求하지 못한다. 賣買의 目的物에 卽時 發見할 수 없는 瑕疵가 있는 境遇에 買受人이 6月內에 이를 發見한 때에도 같다.

②前項의 規定은 賣渡人이 惡意인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70條 (買受人의 目的物保管, 供託義務) ①第69條의 境遇에 買受人이 契約을 解除한 때에도 賣渡人의 費用으로 賣買의 目的物을 保管 또는 供託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目的物이 滅失 또는 毁損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競賣하여 그 代價를 保管 또는 供託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人이 競賣한 때에는 遲滯없이 賣渡人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目的物의 引渡場所가 賣渡人의 營業所 또는 住所와 동일한 特別市·廣域市·市·郡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1995.12.29>

第71條 (同前-數量超過等의 境遇) 前條의 規定은 賣渡人으로부터 買受人에게 引渡한 物件이 賣買의 目的物과 相違하거나 數量이 超過한 境遇에 그 相違 또는 超過한 部分에 對하여 準用한다.

第3章 相互計算

第72條 (意義) 相互計算은 商人間 또는 商人과 非商人間에 常時 去來關係가 있는 境遇에 一定한 期間의 去來로 因한 債權債務의 總額에 關하여 相計하고 그 殘額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第73條 (商業證券上의 債權債務에 關한 特則) 어음 其他의 商業證券으로 因한 債權債務를 相互計算에 計入한 境遇에 그 證券債務者가 辨濟하지 아니한 때에는 當事者는 그 債務의 項目을 相互計算에서 除去할 수 있다.

第74條 (相互計算期間) 當事者가 相計할 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은 6月로 한다.

第75條 (計算書의 承認과 異議) 當事者가 債權債務의 各項目을 記載한 計算書를 承認한 때에는 그 各項目에 對하여 異議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錯誤나 脫漏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6條 (殘額債權의 法定利子) ①相計로 因한 殘額에 對하여는 債權者는 計算閉鎖日 以後의 法定利子를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當事者는 各項目을 相互計算에 計入한 날로부터 利子를 붙일 것을 約定할 수 있다.

第77條 (解止) 各當事者는 언제든지 相互計算을 解止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卽時 計算을 閉鎖하고 殘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第4章 匿名組合

第78條 (意義) 匿名組合은 當事者의 一方이 相對方의 營業을 爲하여 出資하고 相對方은 그 營業으로 因한 利益을 分配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第79條 (匿名組合員의 出資) 匿名組合員이 出資한 金錢 其他의 財産은 營業者의 財産으로 본다.

第80條 (匿名組合員의 對外關係) 匿名組合員은 營業者의 行爲에 關하여서는 第三者에 對하여 權利나 義務가 없다.

第81條 (姓名, 商號의 使用許諾으로 因한 責任) 匿名組合員이 自己의 姓名을 營業者의 商號中에 使用하게 하거나 自己의 商號를 營業者의 商號로 使用할 것을 許諾한 때에는 그 使用以後의 債務에 對하여 營業者와 連帶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다.

第82條 (利益配當과 損失分擔) ①匿名組合員의 出資가 損失로 因하여 減少된 때에는 그 損失을 塡補한 後가 아니면 利益配當을 請求하지 못한다.

②損失이 出資額을 超過한 境遇에도 匿名組合員은 이미 받은 利益의 返還 또는 增資할 義務가 없다.

③前2項의 規定은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있으면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83條 (契約의 解止) ①組合契約으로 組合의 存續期間을 定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當事者의 終身까지 存續할 것을 約定한 때에는 各當事者는 營業年度末에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그러나 이 解止는 6月前에 相對方에게 豫告하여야 한다.

②組合의 存續期間의 約定의 有無에 不拘하고 不得已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各當事者는 언제든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第84條 (契約의 終了) 組合契約은 다음의 事由로 因하여 終了한다.

1. 營業의 廢止 또는 讓渡
2. 營業者의 死亡 또는 禁治産
3. 營業者 또는 匿名組合員의 破産

第85條 (契約終了의 效果) 組合契約이 終了한 때에는 營業者는 匿名組合員에게 그 出資의 價額을 返還하여야 한다. 그러나, 出資가 損失로 因하여 減少된 때에는 그 殘額을 返還하면 된다.

第86條 (準用規定) 第272條, 第277條와 第278條의 規定은 匿名組合員에 準用한다.

第5章 代理商

第87條 (意義) 一定한 商人을 爲하여 商業使用人이 아니면서 常時 그 營業部類에 屬하는 去來의 代理 또는 仲介를 營業으로 하는 者를 代理商이라 한다.

第88條 (通知義務) 代理商이 去來의 代理 또는 仲介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本人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第89條 (競業禁止) ①代理商은 本人의 許諾없이 自己나 第三者의 計算으로 本人의 營業部類에 屬한 去來를 하거나 同種營業을 目的으로 하는 會社의 無限責任社員 또는 理事가 되지 못한다.

②第17條第2項 乃至 第4項의 規定은 代理商이 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境遇에 準用한다.

第90條 (通知를 받을 權限) 物件의 販賣나 그 仲介의 委託을 받은 代理商은 賣買의 目的物의 瑕疵 또는 數量不足 其他 賣買의 履行에 關한 通知를 받을 權限이 있다.

第91條 (代理商의 留置權) 代理商은 去來의 代理 또는 仲介로 因한 債權이 辨濟期에 있는 때에는 그 辨濟를 받을때까지 本人을 爲하여 占有하는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留置할 수 있다. 그러나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2條 (契約의 解止) ①當事者가 契約의 存續期間을 約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各當事者는 2月前에 豫告하고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第83條第2項의 規定은 代理商에 準用한다.

第92條의2 (代理商의 補償請求權) ①代理商의 活動으로 本人이 새로운 顧客을 획득하거나 營業상의 去來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契約의 종료후에도 本人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代理商은 本人에 대하여 상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契約의 종료가 代理商의 責任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額은 契約의 종료전 5年間의 平均年報酬額을 초과할 수 없다. 契約의 存續期間이 5年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平均年報酬額을 기준으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請求權은 契約이 종료한 날부터 6月을 경과하면 消滅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92條의3 (代理商의 營業秘密遵守義務) 代理商은 契約의 종료후에도 契約과 관련하여 알게 된 本人의 營業상의 秘密을 준수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6章 仲介業

第93條 (意義) 他人間의 商行爲의 仲介를 營業으로 하는 者를 仲介人이라 한다.

第94條 (仲介人의 給與受領代理權) 仲介人은 그 仲介한 行爲에 關하여 當事者를 爲하여 支給 其他의 履行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約定이나 慣習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5條 (見品管理義務) 仲介人이 그 仲介한 行爲에 關하여 見品을 받은 때에는 그 行爲가 完了될 때까지 이를 保管하여야 한다.

第96條 (結約書交付義務) ①當事者間에 契約이 成立된 때에는 仲介人은 遲滯없이 各當事者의 姓名 또는 商號, 契約年月日과 그 要領을 記載한 書面을 作成하여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 後 各當事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當事者가 卽時 履行을 하여야 하는 境遇를 除外하고 仲介人은 各當事者로 하여금 第1項의 書面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게 한 後 그 相對方에게 交付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③第1項 및 第2項의 境遇에 當事者의 一方이 書面의 受領을 拒否하거나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介人은 遲滯없이 相對方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97條 (仲介人의 帳簿作成義務) ①仲介人은 前條에 規定한 事項을 帳簿에 記載하여야 한다.

②當事者는 언제든지 自己를 爲하여 仲介한 行爲에 關한 帳簿의 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98條 (姓名, 商號默秘의 義務) 當事者가 그 姓名 또는 商號를 相對方에게 表示하지 아니할 것을 仲介人에게 要求한 때에는 仲介人은 그 相對方에게 交付할 第96條第1項의 書面과 前條第2項의 謄本에 이를 記載하지 못한다.

第99條 (仲介人의 履行責任) 仲介人이 任意로 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當事者의 一方의 姓名 또는 商號를 相對方에게 表示하지 아니한 때에는 相對方은 仲介人에 對하여 履行을 請求할 수 있다.

第100條 (報酬請求權) ①仲介人은 第96條의 節次를 終了하지 아니하면 報酬를 請求하지 못한다.

②仲介人의 報酬는 當事者 雙方이 均分하여 負擔한다.

第7章 委託賣買業

第101條 (意義) 自己名義로써 他人의 計算으로 物件 또는 有價證券의 賣買를 營業으로 하는 者를 委託賣買人이라 한다.

第102條 (委託賣買人의 地位) 委託賣買人은 委託者를 爲한 賣買로 因하여 相對方에 對하여 直接 權利를 取得하고 義務를 負擔한다.

第103條 (委託物의 歸屬) 委託賣買人이 委託者로부터 받은 物件 또는 有價證券이나 委託賣買로 因하여 取得한 物件, 有價證券 또는 債權은 委託者와 委託賣買人 또는 委託賣買人의 債權者間의 關係에서는 이를 委託者의 所有 또는 債權으로 본다.

第104條 (通知義務, 計算書提出義務) 委託賣買人이 委託받은 賣買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委託者에 對하여 그 契約의 要領과 相對方의 住所, 姓名의 通知를 發送하여야 하며 計算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第105條 (委託賣買人의 履行擔保責任) 委託賣買人은 委託者를 爲한 賣買에 關하여 相對方이 債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委託者에 對하여 이를 履行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다른 約定이나 慣習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6條 (指定價額遵守義務) ①委託者가 指定한 價額보다 廉價로 賣渡하거나 高價로 買受한 境遇에도 委託賣買人이 그 差額을 負擔한 때에는 그 賣買는 委託者에 對하여 效力이 있다.

②委託者가 指定한 價額보다 高價로 賣渡하거나 廉價로 買受한 境遇에는 그 差額은 다른 約定이 없으면 委託者의 利益으로 한다.

第107條 (委託賣買人의 介入權) ①委託賣買人이 去來所의 時勢있는 物件의 賣買를 委託받은 때에는 直接 그 賣渡人이나 買受人이 될 수 있다. 이 境遇의 賣買代價는 委託賣買人이 賣買의 通知를 發送한 때의 去來所의 時勢에 依한다.

②前項의 境遇에도 委託賣買人은 委託者에 對하여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第108條 (委託物의 毁損, 瑕疵等의 效果) ①委託賣買人이 委託賣買의 目的物을 引渡받은 後에 그 物件의 毁損 또는 瑕疵를 發見하거나 그 物件이 腐敗할 念慮가 있는 때 또는 價格低落의 商況을 안 때에는 遲滯없이 委託者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委託者의 指示를 받을 수 없거나 그 指示가 遲延되는 때에는 委託賣買人은 委託者의 利益을 爲하여 適當한 處分을 할 수 있다.

第109條 (買受物의 供託, 競賣權) 第67條의 規定은 委託賣買人이 買受의 委託을 받은 境遇에 委託者가 買受한 物件의 受領을 拒否하거나 이를 受領할 수 없는 때에 準用한다.

第110條 (買受委託者가 商人인 境遇) 商人인 委託者가 그 營業에 關하여 物件의 買受를 委託한 境遇에는 委託者와 委託賣買人間의 關係에는 第68條 乃至 第7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11條 (準用規定) 第91條의 規定은 委託賣買人에 準用한다.

第112條 (委任에 關한 規定의 適用) 委託者와 委託賣買人間의 關係에는 本章의 規定外에 委任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第113條 (準委託賣買人) 本章의 規定은 自己名義로써 他人의 計算으로 賣買 아닌 行爲를 營業으로 하는 者에 準用한다.

第8章 運送周旋業

第114條 (意義) 自己의 名義로 物件運送의 周旋을 營業으로 하는 者를 運送周旋人이라 한다.

第115條 (損害賠償責任) 運送周旋人은 自己나 그 使用人이 運送物의 受領, 引渡, 保管, 運送人이나 다

른 運送周旋人의 選擇 其他 運送에 關하여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하지 아니하면 運送物의 滅失, 毁損 또는 延着으로 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第116條 (介入權) ①運送周旋人은 다른 約定이 없으면 直接運送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運送周旋人은 運送人과 同一한 權利義務가 있다.

②運送周旋人이 委託者의 請求에 依하여 貨物相換證을 作成한 때에는 直接運送하는 것으로 본다.

第117條 (中間運送周旋人의 代位) ①數人이 順次로 運送周旋을 하는 境遇에는 後者는 前者에 갈음하여 그 權利를 行使할 義務를 負擔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後者가 前者에게 辨濟한 때에는 前者의 權利를 取得한다.

第118條 (運送人의 權利의 取得) 前條의 境遇에 運送周旋人이 運送人에게 辨濟한 때에는 運送人의 權利를 取得한다.

第119條 (報酬請求權) ①運送周旋人은 運送物을 運送人에게 引渡한 때에는 卽時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②運送周旋契約으로 運賃의 額을 定한 境遇에는 다른 約定이 없으면 따로 報酬를 請求하지 못한다.

第120條 (留置權) 運送周旋人은 運送物에 關하여 받은 報酬, 運賃 其他 委託者를 爲한 替當金이나 先貸金에 關하여서만 그 運送物을 留置할 수 있다.

第121條 (運送周旋人의 責任의 時效) ①運送周旋人의 責任은 受荷人이 運送物을 受領한 날로부터 1年을 經過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②前項의 期間은 運送物이 全部滅失한 境遇에는 그 運送物을 引渡할 날로부터 起算한다.<改正 1962.12.12>

③前2項의 規定은 運送周旋人이나 그 使用人이 惡意인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22條 (運送周旋人의 債權의 時效) 運送周旋人의 委託者 또는 受荷人에 對한 債權은 1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第123條 (準用規定) 運送周旋人에 關하여는 本章의 規定外에 委託賣買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24條 (同前) 第136條, 第140條와 第141條의 規定은 運送周旋業에 準用한다.

第9章 運送業

第125條 (意義) 陸上 또는 湖川, 港灣에서 物件 또는 旅客의 運送을 營業으로 하는 者를 運送人이라 한다.

第1節 物件運送

第126條 (運送狀) ①送荷人은 運送人의 請求에 依하여 運送狀을 交付하여야 한다.

②運送狀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送荷人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1. 運送物의 種類, 重量 또는 容積, 包裝의 種別, 個數와 記號
2. 到着地
3. 受荷人과 運送人의 姓名 또는 商號, 營業所 또는 住所
4. 運賃과 그 先給 또는 着給의 區別
5. 運送狀의 作成地와 作成年月日

第127條 (運送狀의 虛僞記載에 對한 責任) ①送荷人의 運送狀에 虛僞 또는 不正確한 記載를 한 때에는 運送人에 對하여 이로 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運送人이 惡意인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28條 (貨物相換證의 發行) ①運送人은 送荷人의 請求에 依하여 貨物相換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②貨物相換證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運送人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1. 第126條第2項第1號 乃至 第3號의 事項
2. 送荷人의 姓名 또는 商號, 營業所 또는 住所
3. 運賃 其他 運送物에 關한 費用과 그 先給 또는 着給의 區別
4. 貨物相換證의 作成地와 作成年月日

第129條 (貨物相換證의 相換證券性) 貨物相換證을 作成한 境遇에는 이와 相換하지 아니하면 運送物의 引渡를 請求할 수 없다.

第130條 (貨物相換證의 當然한 指示證券性) 貨物相換證은 記名式인 境遇에도 背書에 依하여 讓渡할 수 있다. 그러나, 貨物相換證에 背書를 禁止하는 뜻을 記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31條 (貨物相換證의 文言證券性) 貨物相換證을 作成한 境遇에는 運送에 關한 事項은 運送人과 所持人間에 있어서는 貨物相換證에 記載된 바에 依한다.

第132條 (貨物相換證의 處分證券性) 貨物相換證을 作成한 境遇에는 運送物에 關한 處分은 貨物相換證으로써 하여야 한다.

第133條 (貨物相換證交付의 物權的效力) 貨物相換證에 依하여 運送物을 받을 수 있는 者에게 貨物相換證을 交付한 때에는 運送物위에 行使하는 權利의 取得에 關하여 運送物을 引渡한 것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第134條 (運送物滅失과 運賃) ①運送物의 全部 또는 一部가 送荷人의 責任없는 事由로 因하여 滅失한 때에는 運送人은 그 運賃을 請求하지 못한다. 運送人이 이미 그 運賃의 全部 또는 一部를 받은 때에는 이를 返還하여야 한다.

②運送物의 全部 또는 一部가 그 性質이나 瑕疵 또는 送荷人의 過失로 因하여 滅失한 때에는 運送人은 運賃의 全額을 請求할 수 있다.

第135條 (損害賠償責任) 運送人은 自己 또는 運送周旋人이나 使用人 其他 運送을 爲하여 使用한 者가 運送物의 受領, 引渡, 保管과 運送에 關하여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하지 아니하면 運送物의 滅失, 毁損 또는 延着으로 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第136條 (高價物에 對한 責任) 貨幣, 有價證券 其他의 高價物에 對하여는 送荷人이 運送을 委託할 때에 그 種類와 價額을 明示한 境遇에 限하여 運送人이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137條 (損害賠償의 額) ①運送物이 全部滅失 또는 延着된 境遇의 損害賠償額은 引渡한 날의 到着地

의 價格에 依한다.

②運送物이 一部滅失 또는 毁損된 境遇의 損害賠償額은 引渡한 날의 到着地의 價格에 依한다.

③運送物의 滅失, 毁損 또는 延着이 運送人의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 因한 때에는 運送人은 모든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④運送物의 滅失 또는 毁損으로 因하여 支給을 要하지 아니하는 運賃 其他 費用은 前3項의 賠償額에서 控除하여야 한다.

第138條 (順次運送人의 連帶責任, 求償權) ①數人이 順次로 運送할 境遇에는 各運送人은 運送物의 滅失, 毁損 또는 延着으로 因한 損害를 連帶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運送人中 1人이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損害를 賠償한 때에는 그 損害의 原因이 된 行爲를 한 運送人에 對하여 求償權이 있다.

③前項의 境遇에 그 損害의 原因이 된 行爲를 한 運送人을 알 수 없는 때에는 各運送人은 그 運賃額의 比率로 損害를 分擔한다. 그러나, 그 損害가 自己의 運送區間內에서 發生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때에는 損害分擔의 責任이 없다.

第139條 (運送物의 處分請求權) ①送荷人 또는 貨物相換證이 發行된 때에는 그 所持人이 運送人에 對하여 運送의 中止, 運送物의 返還 其他의 處分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에 運送人은 이미 運送한 比率에 따른 運賃, 替當金과 處分으로 因한 費用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削除 <1995.12.29>

第140條 (受荷人의 地位) ①運送物이 到着地에 到着한 때에는 受荷人은 送荷人과 同一한 權利를 取得한다.

②運送物이 到着地에 到着한 후 受荷人이 그 引渡를 請求한 때에는 受荷人의 權利가 送荷人의 權利에 우선한다.<新設 1995.12.29>

第141條 (受荷人의 義務) 受荷人이 運送物을 受領한 때에는 運送人에 對하여 運賃 其他 運送에 關한 費用과 替當金을 支給할 義務를 負擔한다.

第142條 (受荷人不明의 境遇의 供託, 競賣權) ①受荷人을 알 수 없는 때에는 運送人은 運送物을 供託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運送人은 送荷人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運送物의 처분에 대한 指示를

催告하여도 그 기간내에 指示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運送物을 競賣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③運送人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運送物의 供託 또는 競賣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送荷人에게 그 통지를 發送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143**條 (運送物의 受領拒否, 受領不能의 境遇) ①前條의 規定은 受荷人이 運送物의 受領을 拒否하거나 受領할 수 없는 境遇에 準用한다.

②運送人이 競賣를 함에는 送荷人에 대한 催告를 하기 전에 受荷人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運送物의 受領을 催告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144**條 (公示催告) ①送荷人, 貨物相換證所持人과 受荷人을 알 수 없는 때에는 運送人은 權利者에 對하여 6月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內에 權利를 主張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公告는 官報나 日刊新聞에 2回以上 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③運送人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公告를 하여도 그 期間內에 權利를 主張하는 者가 없는 때에는 運送物을 競賣할 수 있다.<改正 1984.4.10>

第**145**條 (準用規定) 第67條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前3條의 競賣에 準用한다.

第**146**條 (運送人의 責任消滅) ①運送人의 責任은 受荷人 또는 貨物相換證所持人이 留保없이 運送物을 受領하고 運賃 其他의 費用을 支給한 때에는 消滅한다. 그러나, 運送物에 卽時 發見할 수 없는 毁損 또는 一部滅失이 있는 境遇에 運送物을 受領한 날로부터 2週間內에 運送人에게 그 通知를 發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前項의 規定은 運送人 또는 그 使用人이 惡意인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47**條 (準用規定) 第117條, 第120條 乃至 第122條의 規定은 運送人에 準用한다.

第**2**節 旅客運送

第**148**條 (旅客이 받은 損害의 賠償責任) ①運送人은 自己 또는 使用人이 運送에 關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하지 아니하면 旅客이 運送으로 因하여 받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②損害賠償의 額을 定함에는 法院은 被害者와 그 家族의 情狀을 參酌하여야 한다.

第149條 (引渡를 받은 手荷物에 對한 責任) ①運送人은 旅客으로부터 引渡를 받은 手荷物에 關하여는 運賃을 받지 아니한 境遇에도 物件運送人과 同一한 責任이 있다.

②手荷物이 到着地에 到着한 날로부터 10日內에 旅客이 그 引渡를 請求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6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그러나, 住所 또는 居所를 알지 못하는 旅客에 對하여는 催告와 通知를 要하지 아니한다.

第150條 (引渡를 받지 아니한 手荷物에 對한 責任) 運送人은 旅客으로부터 引渡를 받지 아니한 手荷物의 滅失 또는 毁損에 對하여는 自己 또는 使用人의 過失이 없으면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없다.

第10章 公衆接客業

第151條 (意義) 劇場, 旅館, 飮食店 其他 客의 集來를 爲한 施設에 依한 去來를 營業으로 하는 者를 公衆接客業者라 한다.

第152條 (公衆接客業者의 責任) ①公衆接客業者는 客으로부터 任置를 받은 物件의 滅失 또는 毁損에 對하여 不可抗力으로 因함을 證明하지 아니하면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②公衆接客業者는 客으로부터 任置를 받지 아니한 境遇에도 그 施設內에 携帶한 物件이 自己 또는 그 使用人의 過失로 因하여 滅失 또는 毁損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③客의 携帶物에 對하여 責任이 없음을 提示한 때에도 公衆接客業者는 前2項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第153條 (高價物에 對한 責任) 貨幣, 有價證券 其他의 高價物에 對하여는 客이 그 種類와 價額을 明示하여 任置하지 아니하면 公衆接客業者는 그 物件의 滅失 또는 毁損으로 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없다.

第154條 (公衆接客業者의 責任의 時效) ①前2條의 責任은 公衆接客業者가 任置物을 返還하거나 客이 携帶物을 가져간 後6月을 經過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②前項의 期間은 物件이 全部滅失한 境遇에는 客이 그 施設을 退去한 날로부터 起算한다.

③前2項의 規定은 公衆接客業者나 그 使用人이 惡意인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1章 倉庫業

第155條 (意義) 他人을 爲하여 倉庫에 物件을 保管함을 營業으로 하는 者를 倉庫業者라 한다.

第156條 (倉庫證券의 發行) ①倉庫業者는 任置人의 請求에 依하여 倉庫證券을 交付하여야 한다.

②倉庫證券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倉庫業者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1. 任置物의 種類, 品質, 數量, 包裝의 種別, 個數와 記號
2. 任置人의 姓名 또는 商號, 營業所 또는 住所
3. 保管場所
4. 保管料
5. 保管期間을 定한 때에는 그 期間
6. 任置物을 保險에 붙인 때에는 保險金額, 保險期間과 保險者의 姓名 또는 商號, 營業所 또는 住所
7. 倉庫證券의 作成地와 作成年月日

第157條 (準用規定) 第129條 乃至 第133條의 規定은 倉庫證券에 準用한다.

第158條 (分割部分에 對한 倉庫證券의 請求) ①倉庫證券所持人은 倉庫業者에 對하여 그 證券을 返還하고 任置物을 分割하여 各部分에 對한 倉庫證券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任置物의 分割과 證券交付의 費用은 證券所持人이 負擔한다.

第159條 (倉庫證券에 依한 入質과 一部出庫) 倉庫證券으로 任置物을 入質한 境遇에도 質權者의 承諾이 있으면 任置人은 債權의 辨濟期前이라도 任置物의 一部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倉庫業者는 返還한 任置物의 種類, 品質과 數量을 倉庫證券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160條 (損害賠償責任) 倉庫業者는 自己 또는 使用人이 任置物의 保管에 關하여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하지 아니하면 任置物의 滅失 또는 毁損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第161條 (任置物의 檢査, 見品摘取, 保存處分權) 任置人 또는 倉庫證券所持人은 營業時間內에 언제든지 倉庫業者에 對하여 任置物의 檢査 또는 見品의 摘取를 要求하거나 그 保存에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第162條 (保管料請求權) ①倉庫業者는 任置物을 出庫할 때가 아니면 保管料 其他의 費用과 替當金의 支給을 請求하지 못한다. 그러나, 保管期間 經過後에는 出庫前이라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②任置物의 一部出庫의 境遇에는 倉庫業者는 그 比率에 따른 保管料 其他의 費用과 替當金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第163條 (任置期間) ①當事者가 任置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倉庫業者는 任置物을 받은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한 後에는 언제든지 이를 返還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任置物을 返還함에는 2週間前에 豫告하여야 한다.

第164條 (同前-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倉庫業者는 前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언제든지 任置物을 返還할 수 있다.

第165條 (準用規定) 第67條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任置人 또는 倉庫證券所持人이 任置物의 受領을 拒否하거나 이를 受領할 수 없는 境遇에 準用한다.

第166條 (倉庫業者의 責任의 時效) ①任置物의 滅失 또는 毁損으로 因하여 생긴 倉庫業者의 責任은 그 物件을 出庫한 날로부터 1年이 經過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②前項의 期間은 任置物이 全部滅失한 境遇에는 任置人과 알고 있는 倉庫證券所持人에게 그 滅失의 通知를 發送한 날로부터 起算한다.

③前2項의 規定은 倉庫業者 또는 그 使用人이 惡意인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67條 (倉庫業者의 債權의 時效) 倉庫業者의 任置人 또는 倉庫證券所持人에 對한 債權은 그 物件을 出庫한 날로부터 1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第168條 (準用規定) 第108條와 第146條의 規定은 倉庫業者에 準用한다.<改正 1962.12.12>

第3編 會社

第1章 通則

第169條 (意義) 本法에서 會社라 함은 商行爲 其他 營利를 目的으로 하며 設立한 社團을 이른다.

第170條 (會社의 種類) 會社는 合名會社, 合資會社, 株式會社와 有限會社의 4種으로 한다.

第171條 (會社의 法人性, 住所) ①會社는 法人으로 한다.

②會社의 住所는 本店所在地에 있는 것으로 한다.

第172條 (會社의 成立) 會社는 本店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173條 (權利能力의 制限) 會社는 다른 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이 되지 못한다.

第174條 (會社의 合併) ①會社는 合併을 할 수 있다.

②合併을 하는 會社의 一方 또는 雙方이 株式會社 또는 有限會社인 때에는 合併後 存續하는 會社 또는 合併으로 因하여 設立되는 會社는 株式會社 또는 有限會社이어야 한다.

③解散後의 會社는 存立中의 會社를 存續하는 會社로 하는 境遇에 限하여 合併을 할 수 있다.

第175條 (同前-設立委員) ①會社의 合併으로 因하여 新會社를 設立하는 境遇에는 定款의 作成 其他 設立에 關한 行爲는 各會社에서 選任한 設立委員이 共同으로 하여야 한다.

②第230條, 第434條와 第585條의 規定은 前項의 選任에 準用한다.

第176條 (會社의 解散命令) ①法院은 다음의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會社의 解散을 命할 수 있다.

1. 會社의 設立目的이 不法한 것인때

2. 會社가 正當한 事由없이 設立後 1年內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以上 營業을 休止하는 때

3. 理事 또는 會社의 業務를 執行하는 社員이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하여 會社의 存續을 許容할 수 없는 行爲를 한때

②前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解散을 命하기 前일지라도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管理人의 選任 其他 會社財産의 保全에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③利害關係人이 第1項의 請求를 한 때에는 法院은 會社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擔保를 提供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④會社가 前項의 請求를 함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가 惡意임을 疎明하여야 한다.

第177條 (登記期間의 起算點) 本編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할 事項으로서 官廳의 許可 또는 認可를 要하는 것에 關하여는 그 書類가 到達한 날로부터 登記期間을 起算한다.

第2章 合名會社

第1節 設立

第178條 (定款의 作成) 合名會社의 設立에는 2人以上의 社員이 共同으로 定款을 作成하여야 한다.

第179條 (定款의 絶對的記載事項) 定款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總社員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1. 目的
2. 商號
3. 社員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4. 社員의 出資의 目的과 價格 또는 評價의 標準
5. 本店의 所在地
6. 定款의 作成年月日

第180條 (設立의 登記) 合名會社의 設立登記에 있어서는 다음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1. 第179條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5號의 사항과 支店을 둔 때에는 그 所在地. 다만, 會社를 代表할 社員을 정한 때에는 그외의 社員의 住所를 제외한다.
2. 社員의 出資의 目的, 財産出資에는 그 價格과 履行한 部分
3. 存立期間 其他 解散事由를 定한 때에는 그 期間 또는 事由
4. 會社를 代表할 社員을 定한 때에는 그 姓名
5. 數人의 社員이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第181條 (支店設置의 登記) ①會社의 設立과 同時에 支店을 設置하는 境遇에는 設立登記를 한後 2週間內에 支店所在地에서 第180條 各號의 사항(다른 支店의 所在地를 제외한다)을 登記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會社의 成立후에 支店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내에 그 支店所在地와 設置年月日을 登記하고, 그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내에 第180條 各號의 사항(다른 支店의 所在地를 제외한다)을 登記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③削除 <1995.12.29>

第182條 (本店, 支店의 移轉登記) ①會社가 本店을 移轉하는 경우에는 2週間내에 舊所在地에서는 新所在地와 移轉年月日을, 新所在地에서는 第180條 各號의 사항을 登記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會社가 支店을 移轉하는 경우에는 2週間내에 本店과 舊支店所在地에서는 新支店所在地와 移轉年月日을 登記하고, 新支店所在地에서는 第180條 各號의 사항(다른 支店所在地를 제외한다)을 登記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③削除 <1995.12.29>

第183條 (變更登記) 第180條에 揭記한 事項에 變更이 있을 때에는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內,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183조의2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第184條 (設立無效, 取消의 訴) ①會社의 設立의 無效는 그 社員에 限하여, 設立의 取消는 그 取消權있는 者에 限하여 會社成立의 날로부터 2年內에 訴만으로 이를 主張할 수 있다.

②民法 第140條의 規定은 前項의 設立의 取消에 準用한다.

第185條 (債權者에 依한 設立取消의 訴) 社員이 그 債權者를 害할 것을 알고 會社를 設立한 때에는 債權者는 그 社員과 會社에 對한 訴로 會社의 設立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第186條 (專屬管轄) 前2條의 訴는 本店所在地의 地方法院의 管轄에 專屬한다.

第187條 (訴提起의 公告) 設立無效의 訴 또는 設立取消의 訴가 提起된 때에는 會社는 遲滯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第188條 (訴의 併合審理) 數個의 設立無效의 訴 또는 設立取消의 訴가 提起된 때에는 法院은 이를 併合審理하여야 한다.

第189條 (瑕疵의 補完等과 請求의 棄却) 設立無效의 訴 또는 設立取消의 訴가 그 審理中에 原因이 된 瑕疵가 補完되고 會社의 現況과 諸般事情을 參酌하여 設立을 無效 또는 取消하는 것이 不適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法院은 그 請求를 棄却할 수 있다.

第190條 (判決의 效力) 設立無效의 判決 또는 設立取消의 判決은 第三者에 對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그러나, 判決確定前에 생긴 會社와 社員 및 第三者間의 權利義務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191條 (敗訴原告의 責任) 設立無效의 訴 또는 設立取消의 訴를 提起한 者가 敗訴한 境遇에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는 때에는 會社에 對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192條 (設立無效, 取消의 登記) 設立無效의 判決 또는 設立取消의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本店과 支店의 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第193條 (設立無效, 取消判決의 效果) ①設立無效의 判決 또는 設立取消의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解散의 境遇에 準하여 淸算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法院은 社員 其他의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淸算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194條 (設立無效, 取消와 會社繼續) ①設立無效의 判決 또는 設立取消의 判決이 確定된 境遇에 그 無效나 取消의 原因이 特定한 社員에 限한 것인 때에는 다른 社員全員의 同意로써 會社를 繼續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그 無效 또는 取消의 原因이 있는 社員은 退社한 것으로 본다.

③第229條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前2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2節 會社의 內部關係

第195條 (準用法規) 合名會社의 內部關係에 關하여는 定款 또는 本法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組合에 關한 民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96條 (債權出資) 債權을 出資의 目的으로 한 社員은 그 債權이 辨濟期에 辨濟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債權額을 辨濟할 責任을 진다. 이 境遇에는 利子를 支給하는 外에 이로 因하여 생긴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第197條 (持分의 讓渡) 社員은 다른 社員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 他人에게 讓渡하지 못한다.

第198條 (社員의 競業의 禁止) ①社員은 다른 社員의 同意가 없으면 自己 또는 第三者의 計算으로 會社의 營業部類에 屬하는 去來를 하지 못하며 同種營業을 目的으로 하는 다른 會社의 無限責任社員 또는 理事가 되지 못한다.

②社員이 前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去來를 한 境遇에 그 去來가 自己의 計算으로 한 것인 때에는 會社는 이를 會社의 計算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第三者의 計算으로 한것인 때에는 그 社員에 對하여 會社는 이로 因한 利得의 讓渡를 請求 할 수 있다.<改正 1962.12.12>

③前項의 規定은 會社의 그 社員에 對한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第2項의 權利는 다른 社員過半數의 決議에 依하여 行使하여야 하며 다른 社員의 1人이 그 去來를 안 날로부터 2週間을 經過하거나 그 去來가 있은 날로부터 1年을 經過하면 消滅한다.

第199條 (社員의 自己去來) 社員은 다른 社員過半數의 決議가 있는 때에 限하여 自己 또는 第三者의 計算으로 會社와 去來를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民法 第124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00條 (業務執行의 權利義務) ①各社員은 定款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會社의 業務를 執行할 權利와 義務가 있다.

②各社員의 業務執行에 關한 行爲에 對하여 다른 社員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 곧 行爲를 中止하고 總社員過半數의 決議에 依하여야 한다.

제20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183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12.29]

第201條 (業務執行社員) ①定款으로 社員의 1人 또는 數人을 業務執行社員으로 定한 때에는 그 社員이 會社의 業務를 執行할 權利와 義務가 있다.

②數人의 業務執行社員이 있는 境遇에 그 各社員의 業務執行에 關한 行爲에 對하여 다른 業務執行社員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 곧 行爲를 中止하고 業務執行社員過半數의 決議에 依하여야 한다.

第202條 (共同業務執行社員) 定款으로 數人의 社員을 共同業務執行社員으로 定한때에 그 全員의 同意가 없으면 業務執行에 關한 行爲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遲滯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3條 (支配人의 選任과 解任) 支配人의 選任과 解任은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業務執行社員이 있는 境遇에는 總社員過半數의 決議에 依하여야 한다.

第204條 (定款의 變更) 定款을 變更함에는 總社員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第205條 (業務執行社員의 權限喪失宣告) ①社員이 業務를 執行함에 顯著하게 不適任하거나 重大한 義務에 違反한 行爲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社員의 請求에 依하여 業務執行權限의 喪失을 宣告할 수 있다.

②前項의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本店과 支店의 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第206條 (準用規定) 第186條의 規定은 前條의 訴에 準用한다.

第3節 會社의 外部關係

第207條 (會社代表) 定款으로 業務執行社員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各社員은 會社를 代表한다. 數人의 業務執行社員을 定한 境遇에 各業務執行社員은 會社를 代表한다. 그러나 定款 또는 總社員의 同意로 業務執行社員中 特히 會社를 代表할 者를 定할 수 있다.

第208條 (共同代表) ①會社는 定款 또는 總社員의 同意로 數人의 社員이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것을 定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도 第三者의 會社에 對한 意思表示는 共同代表의 權限이 있는 社員 1人에 對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第209條 (代表社員의 權限) ①會社를 代表하는 社員은 會社의 營業에 關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다.

②前項의 權限에 對한 制限은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210條 (損害賠償責任) 會社를 代表하는 社員이 그 業務執行으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會社는 그 社員과 連帶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211條 (會社와 社員間의 訴에 關한 代表權) 會社가 社員에 對하여 또는 社員이 會社에 對하여 訴를 提起하는 境遇에 會社를 代表할 社員이 없을 때에는 다른 社員 過半數의 決議로 選定하여야 한다.

第212條 (社員의 責任) ①會社의 財産으로 會社의 債務를 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各 社員은 連帶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다.

②會社財産에 對한 强制執行이 奏效하지 못한 때에도 前項과 같다.

③前項의 規定은 社員이 會社에 辨濟의 資力이 있으며 執行이 容易한 것을 證明한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13條 (新入社員의 責任) 會社成立後에 加入한 社員은 그 加入前에 생긴 會社債務에 對하여 다른 社員과 同一한 責任을 진다.

第214條 (社員의 抗辯) ①社員이 會社債務에 關하여 辨濟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會社가 主張할 수 있는 抗辯으로 그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②會社가 그 債權者에 對하여 相計, 取消 또는 解除할 權利가 있는 境遇에는 社員은 前項의 請求에

對하여 辨濟를 拒否할 수 있다.

第215條 (自稱社員의 責任) 社員이 아닌 者가 他人에게 自己를 社員이라고 誤認시키는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誤認으로 因하여 會社와 去來한 者에 對하여 社員과 同一한 責任을 진다.

第216條 (準用規定) 第205條와 第206條의 規定은 會社의 代表社員에 準用한다.

第4節 社員의 退社

第217條 (社員의 退社權) ①定款으로 會社의 存立期間을 定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社員의 終身까지 存續할 것을 定한 때에는 社員은 營業年度末에 限하여 退社할 수 있다. 그러나, 6月前에 이를 豫告하여야 한다.

②社員이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退社할 수 있다.

第218條 (退社原因) 社員은 前條의 境遇外에 다음의 事由로 因하여 退社한다.

1. 定款에 定한 事由의 發生
2. 總社員의 同意
3. 死亡
4. 禁治産
5. 破産
6. 除名

第219條 (社員死亡時 權利承繼의 通知) ①定款으로 社員이 死亡한 境遇에 그 相續人이 會社에 對한 被相續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하여 社員이 될 수 있음을 定한 때에는 相續人은 相續의 開始를 안 날로부터 3月內에 會社에 對하여 承繼 또는 抛棄의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相續人이 前項의 通知 없이 3月을 經過한 때에는 社員이 될 權利를 抛棄한 것으로 본다.

第220條 (除名의 宣告) ①社員에게 다음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會社는 다른 社員 過半數의 決議에 依하여 그 社員의 除名의 宣告를 法院에 請求 할 수 있다.

1. 出資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때

2. 第19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가 있는 때

3. 會社의 業務執行 또는 代表에 關하여 不正한 行爲가 있는 때, 權限없이 業務를 執行하거나 會社를 代表한 때

4. 其他 重要한 事由가 있는 때

②第205條第2項과 第206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221**條 (除名社員과 會社間의 計算) 除名된 社員과 會社와의 計算은 除名의 訴를 提起한 때의 會社財産의 狀態에 따라서 하며 그때로부터 法定利子를 붙여야 한다.

第**222**條 (持分의 還給) 退社한 社員은 勞務 또는 信用으로 出資의 目的으로 한 境遇에도 그 持分의 還給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23**條 (持分의 押留) 社員의 持分의 押留는 社員이 將來利益의 配當과 持分의 還給을 請求하는 權利에 對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第**224**條 (持分押留債權者에 依한 退社請求) ①社員의 持分을 押留한 債權者는 營業年度末에 그 社員을 退社시킬 수 있다. 그러나 會社와 그 社員에 對하여 6月前에 그 豫告를 하여야 한다.

②前項 但書의 豫告는 社員이 辨濟를 하거나 相當한 擔保를 提供한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第**225**條 (退社員의 責任) ①退社한 社員은 本店所在地에서 退社登記를 하기 前에 생긴 會社債務에 對하여는 登記後 2年內에는 다른 社員과 同一한 責任이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持分을 讓渡한 社員에 準用한다.

第**226**條 (退社員의 商號變更請求權) 退社한 社員의 姓名이 會社의 商號中에 使用된 境遇에는 그 社員은 會社에 對하여 그 使用의 廢止를 請求할 수 있다.

第**5**節 會社의 解散

第**227**條 (解散原因) 會社는 다음의 事由로 因하여 解散한다.

1. 存立期間의 滿了 其他 定款으로 定한 事由의 發生
2. 總社員의 同意
3. 社員이 1人으로된 때
4. 合併
5. 破産
6. 法院의 命令 또는 判決

第228條 (解散登記) 會社가 解散된 때에는 合併과 破産의 境遇外에는 그 解散事由가 있은 날로부터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內,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解散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229條 (會社의 繼續) ①第227條第1號와 第2號의 境遇에는 社員의 全部 또는 一部의 同意로 會社를 繼續할 수 있다. 그러나 同意를 하지 아니한 社員은 退社한 것으로 본다.

②第227條第3號의 境遇에는 새로 社員을 加入시켜서 會社를 繼續할 수 있다.

③前2項의 境遇에 이미 會社의 解散登記를 하였을 때에는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內,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會社의 繼續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第213條의 規定은 第2項의 新入社員의 責任에 準用한다.

第230條 (合併의 決議) 會社가 合併을 함에는 總社員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第231條 削除 <1984.4.10>

第232條 (債權者의 異議) ①會社는 合併의 決議가 있은 날부터 2週내에 會社債權者에 對하여 合併에 異議가 있으면 一定한 期間內에 이를 提出할 것을 公告하고 알고 있는 債權者에 對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期間은 1月以上이어야 한다.<改正 1984.4.10, 1998.12.28>

②債權者가 第1項의 期間內에 異議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合併을 承認한 것으로 본다.<改正 1984.4.10>

③異議를 提出한 債權者가 있는 때에는 會社는 그 債權者에 대하여 辨濟 또는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거나 이를 目的으로 하여 相當한 財産을 信託會社에 信託하여야 한다.

第233條 (合併의 登記) 會社가 合併을 한때에는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內,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合併後 存續하는 會社의 變更登記, 合併으로 因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解散登記, 合併으로 因하여

設立되는 會社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234條 (合併의 效力發生) 會社의 合併은 合併後 存續하는 會社 또는 合併으로 因하여 設立되는 會社가 그 本店所在地에서 前條의 登記를 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第235條 (合併의 效果) 合併後 存續한 會社 또는 合併으로 因하여 設立된 會社는 合併으로 因하여 消滅된 會社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第236條 (合併無效의 訴의 提起) ①會社의 合併의 無效는 各會社의 社員, 淸算人, 破産管財人 또는 合併을 承認하지 아니한 會社債權者에 限하여 訴만으로 이를 主張할 수 있다.

②前項의 訴는 第233條의 登記가 있은 날로부터 6月內에 提起하여야 한다.

第237條 (準用規定) 第176條第3項과 第4項의 規定은 會社債權者가 前條의 訴를 提起한 때에 準用한다.

第238條 (合併無效의 登記) 合併을 無效로한 判決이 確定된때에는 本店과 支店의 所在地에서 合併後 存續한 會社의 變更登記, 合併으로 因하여 消滅된 會社의 回復登記, 合併으로 因하여 設立된 會社의 解散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239條 (無效判決確定과 會社의 權利義務의 歸屬) ①合併을 無效로한 判決이 確定된때에는 合併을한 會社는 合併後 存續한 會社 또는 合併으로 因하여 設立된 會社의 合併後 負擔한 債務에 대하여 連帶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다.

②合併後 存續한 會社 또는 合併으로 因하여 設立한 會社의 合併後 取得한 財産은 合併을한 會社의 共有로 한다.

③前2項의 境遇에 各會社의 協議로 그 負擔部分 또는 持分을 定하지 못한 때에는 法院은 그 請求에 依하여 合併當時의 各會社의 財産狀態 其他의 事情을 參酌하여 이를 定한다.

第240條 (準用規定) 第186條 乃至 第191條의 規定은 合併無效의 訴에 準用한다.

第241條 (社員에 依한 解散請求) ①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各社員은 會社의 解散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②第186條와 第191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242條 (組織變更) ①合名會社는 總社員의 同意로 一部社員을 有限責任社員으로 하거나 有限責任社員을 새로 加入시켜서 合資會社로 變更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第22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會社를 繼續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第243條 (組織變更의 登記) 合名會社를 合資會社로 變更한 때에는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內,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合名會社에 있어서는 解散登記, 合資會社에 있어서는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244條 (組織變更에 依하여 有限責任社員이된 者의 責任) 合名會社社員으로서 第24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有限責任社員이된 者는 前條의 規定에 依한 本店登記를 하기 前에 생긴 會社債務에 對하여는 登記後 2年內에는 無限責任社員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第6節 淸算

第245條 (淸算中의 會社) 會社는 解散된 後에도 淸算의 目的範圍內에서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第246條 (數人의 持分相續人이 있는 境遇) 會社의 解散後 社員이 死亡한 境遇에 그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淸算에 關한 社員의 權利를 行使할 者 1人을 定하여야 한다. 이를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會社의 通知 또는 催告는 그中의 1人에 對하여 하면 全員에 對하여 그 效力이 있다.

第247條 (任意淸算) ①解散된 會社의 財産處分方法은 定款 또는 總社員의 同意로 이를 定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解散事由가 있는 날로부터 2週間內에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은 會社가 第227條第3號 또는 第6號의 事由로 因하여 解散한 境遇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第232條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④第1項의 境遇에 社員의 持分을 押留한 者가 있는 때에는 그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⑤第1項의 會社는 그 財産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내에,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내에 淸算終結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第248條 (任意淸算과 債權者保護) ①會社가 前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그 財産을 處分함으로써 會社債權者를 害한 때에는 會社債權者는 그 處分의 取消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②第186條와 民法第406條第1項 但書, 第2項 및 第407條의 規定은 前項의 取消의 請求에 準用한다.

第249條 (持分押留債權者의 保護) 會社가 第247條第4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그 財産을 處分한 때에는 社員의 持分을 押留한 者는 會社에 對하여 그 持分에 相當하는 金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前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50條 (法定淸算) 第24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會社財産의 處分方法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合併과 破産의 境遇를 除外하고 第251條 乃至 第265條의 規定에 따라서 淸算을 하여야 한다.

第251條 (淸算人) ①會社가 解散된 때에는 總社員過半數의 決議로 淸算人을 選任한다.

②淸算人의 選任이 없는 때에는 業務執行社員이 淸算人이 된다.

第252條 (法院選任에 依한 淸算人) 會社가 第227條第3號 또는 第6號의 事由로 因하여 解散된 때에는 法院은 社員 其他의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淸算人을 選任한다.

第253條 (淸算人의 登記) ①淸算人이 選任된 때에는 그 選任된 날로부터, 業務執行社員이 淸算人이 된 때에는 解散된 날로부터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內,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다음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1. 淸算人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다만, 會社를 代表할 淸算人을 정한 때에는 그외의 淸算人의 住所를 제외한다.

2. 會社를 代表할 淸算人을 定한 때에는 그 姓名

3. 數人의 淸算人이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②第183條의 規定은 第1項의 登記에 準用한다.<改正 1995.12.29>

第254條 (淸算人의 職務權限) ①淸算人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現存事務의 終結

2. 債權의 推尋과 債務의 辨濟

3. 財産의 換價處分

4. 殘餘財産의 分配

②淸算人이 數人인 때에는 淸算의 職務에 關한 行爲는 그 過半數의 決議로 定한다.

③會社를 代表할 淸算人은 第1項의 職務에 關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다.

④民法第93條의 規定은 合名會社에 準用한다.

第255條 (淸算人의 會社代表) ①業務執行社員이 淸算人으로된 境遇에는 從前의 定함에 따라 會社를 代表한다.

②法院이 數人의 淸算人을 選任하는 境遇에는 會社를 代表할 者를 定하거나 數人이 共同하여 會社를 代表할 것을 定할 수 있다.

第256條 (淸算人의 義務) ①淸算人은 就任한 後 遲滯없이 會社의 財産狀態를 調査하고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各社員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②淸算人은 社員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淸算의 狀況을 報告하여야 한다.

第257條 (營業의 讓渡) 淸算人이 會社의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讓渡함에는 總社員 過半數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第258條 (債務完濟不能과 出資請求) ①會社의 現存財産이 그 債務를 辨濟함에 不足한 때에는 淸算人은 辨濟期에 不拘하고 各社員에 對하여 出資를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出資額은 各社員의 出資의 比率로 이를 定한다.

第259條 (債務의 辨濟) ①淸算人은 辨濟期에 이르지 아니한 會社債務에 對하여도 이를 辨濟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利子없는 債權에 關하여는 辨濟期에 이르기까지의 法定利子를 加算하여 그 債權額에 達할 金額을 辨濟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規定은 利子있는 債權으로서 그 利率이 法定利率에 達하지 못하는 것에 이를 準用한다.

④第1項의 境遇에는 條件附債權, 存續期間이 不確定한 債權 其他 價額이 不確定한 債權에 對하여는 法院이 選任한 鑑定人의 評價에 依하여 辨濟하여야 한다.

第260條 (殘餘財産의 分配) 淸算人은 會社의 債務를 完濟한 後가 아니면 會社財産을 社員에게 分配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債務에 對하여는 그 辨濟에 必要한 財産을 保留하고 殘餘財産을 分配

할 수 있다.

第261條 (淸算人의 解任) 社員이 選任한 淸算人은 總社員過半數의 決議로 解任할 수 있다.

第262條 (同前) 淸算人이 그 職務를 執行함에 顯著하게 不適任하거나 重大한 任務에 違反한 行爲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社員 其他의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淸算人을 解任할 수 있다.

第263條 (淸算人의 任務終了) ①淸算人은 그 任務가 終了한 때에는 遲滯없이 計算書를 作成하여 各社員에게 交付하고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前項의 計算書를 받은 社員이 1月以內에 異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計算을 承認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淸算人에게 不正行爲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64條 (淸算終結의 登記) 淸算이 終結된 때에는 淸算人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總社員의 承認이 있은 날로부터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內,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淸算終結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제265조 (준용규정) 제183조의2·제199조·제200조의2·제207조·제208조·제209조제2항·제210조·제382조제2항·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1.12.29]

第266條 (帳簿, 書類의 保存) ①會社의 帳簿와 營業 및 淸算에 관한 重要書類는 本店所在地에서 淸算終結의 登記를 한 후 10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傳票 또는 이와 유사한 書類는 5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境遇에는 總社員過半數의 決議로 保存人과 保存方法을 定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267條 (社員의 責任의 消滅時期) ①第212條의 規定에 依한 社員의 責任은 本店所在地에서 解散登記를 한後 5年을 經過하면 消滅한다.

②前項의 期間經過後에도 分配하지 아니한 殘餘財産이 있는 때에는 會社債權者는 이에 對하여 辨濟를 請求할 수 있다.

第3章 合資會社

第268條 (會社의 組織) 合資會社는 無限責任社員과 有限責任社員으로 組織한다.

第269條 (準用規定) 合資會社에는 本章에 다른 規定이 없는 事項은 合名會社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70條 (定款의 絶對的 記載事項) 合資會社의 定款에는 第179條에 揭記한 事項外에 各社員의 無限責任 또는 有限責任인 것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271條 (登記事項) 合資會社의 設立登記에 있어서는 第180條 各號의 사항외에 各社員의 無限責任 또는 有限責任인 것을 登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272條 (有限責任社員의 出資) 有限責任社員은 信用 또는 勞務를 出資의 目的으로 하지 못한다.

第273條 (業務執行의 權利義務) 無限責任社員은 定款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各自가 會社의 業務를 執行할 權利와 義務가 있다.

第274條 (支配人의 選任, 解任) 支配人의 選任과 解任은 業務執行社員이 있는 境遇에도 無限責任社員 過半數의 決議에 依하여야 한다.

第275條 (有限責任社員의 競業의 自由) 有限責任社員은 다른 社員의 同意없이 自己 또는 第三者의 計算으로 會社의 營業部類에 屬하는 去來를 할 수 있고 同種營業을 目的으로 하는 다른 會社의 無限責任社員 또는 理事가 될 수 있다.

第276條 (有限責任社員의 持分讓渡) 有限責任社員은 無限責任社員全員의 同意가 있으면 그 持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 他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持分의 讓渡에 따라 定款을 變更하여야 할 境遇에도 같다.

第277條 (有限責任社員의 監視權) ①有限責任社員은 營業年度末에 있어서 營業時間內에 限하여 會社의 會計帳簿·貸借對照表 기타의 書類를 閱覽할 수 있고 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檢査할 수 있다.<改正 1984.4.10>

②重要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有限責任社員은 언제든지 法院의 許可를 얻어 第1項의 閱覽과 檢査를 할 수 있다.<改正 1984.4.10>

第278條 (有限責任社員의 業務執行, 會社代表의 禁止) 有限責任社員은 會社의 業務執行이나 代表行爲를 하지 못한다.

第279條 (有限責任社員의 責任) ①有限責任社員은 그 出資價額에서 이미 履行한 部分을 控除한 價額을 限度로 하여 會社債務를 辨濟할 責任이 있다.

②會社에 利益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配當을 받은 金額은 辨濟責任을 定함에 있어서 이를 加算한다.

第280條 (出資減少의 境遇의 責任) 有限責任社員은 그 出資를 減少한 後에도 本店所在地에서 登記를 하기 前에 생긴 會社債務에 對하여는 登記後 2年內에는 前條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第281條 (自稱無限責任社員의 責任) ①有限責任社員이 他人에게 自己를 無限責任社員이라고 誤認시키는 行爲를 한 때에는 誤認으로 因하여 會社와 去來를 한 者에 對하여 無限責任社員과 同一한 責任이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有限責任社員이 그 責任의 限度를 誤認시키는 行爲를 한 境遇에 準用한다.

第282條 (責任을 變更한 社員의 責任) 第213條의 規定은 有限責任社員이 無限責任社員으로 된 境遇에, 第225條의 規定은 無限責任社員이 有限責任社員으로 된 境遇에 準用한다.

第283條 (有限責任社員의 死亡) ①有限責任社員이 死亡한 때에는 그 相續人이 그 持分을 承繼하여 社員이 된다.

②前項의 境遇에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社員의 權利를 行使할 者 1人을 定하여야 한다. 이를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會社의 通知 또는 催告는 그中의 1人에 對하여 하면 全員에 對하여 그 效力이 있다.

第284條 (有限責任社員의 禁治産) 有限責任社員은 禁治産의 宣告를 받은 境遇에도 退社되지 아니한다.

第285條 (解散, 繼續) ①合資會社는 無限責任社員 또는 有限責任社員의 全員이 退社한 때에는 解散된다.

②前項의 境遇에 殘存한 無限責任社員 또는 有限責任社員은 全員의 同意로 새로 有限責任社員 또는 無限責任社員을 加入시켜서 會社를 繼續할 수 있다.

③第213條와 第229條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286條 (組織變更) ①合資會社는 社員全員의 同意로 그 組織을 合名會社로 變更하여 繼續할 수 있다.

②有限責任社員全員이 退社한 境遇에도 無限責任社員은 그 全員의 同意로 合名會社로 變更하여 繼續할 수 있다.

③前2項의 境遇에는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內,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合資會社에 있어서는 解散登記를, 合名會社에 있어서는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287條 (淸算人) 合資會社의 淸算人은 無限責任社員過半數의 決議로 選任한다. 이를 選任하지 아니한 때에는 業務執行社員이 淸算人이 된다.

第4章 株式會社

第1節 設立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24]

第289條 (定款의 作成, 絶對的 記載事項) ①發起人은 定款을 作成하여 이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각 발기인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2001.7.24>

1. 目的
2. 商號
3.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
4. 1株의 金額
5. 會社의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
6. 本店의 所在地
7. 會社가 公告를 하는 方法
8. 發起人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9. 削除 <1984.4.10>

②會社의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는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의 4分의 1이상이어야 한다.<

改正 1984.4.10>

③會社의 公告는 官報 또는 時事에 關한 事項을 揭載하는 日刊新聞에 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第290條 (變態設立事項) 다음의 事項은 定款에 記載함으로써 그 效力이 있다.

1. 發起人이 받을 特別利益과 이를 받을 者의 姓名
2. 現物出資를 하는 者의 姓名과 그 目的인 財産의 種類, 數量, 價格과 이에 對하여 付與할 株式의 種類와 數
3. 會社成立後에 讓受할 것을 約定한 財産의 種類, 數量, 價格과 그 讓渡人의 姓名
4. 會社가 負擔할 設立費用과 發起人이 받을 報酬額

第291條 (設立當時의 株式發行事項의 決定) 會社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에 關하여 다음의 事項은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發起人全員의 同意로 이를 定한다.

1. 株式의 種類와 數
2. 額面以上의 株式을 發行하는 때에는 그 數와 金額

第292條 (定款의 認證) 定款은 公證人의 認證을 받음으로써 效力이 생긴다.

第293條 (發起人의 株式引受) 各發起人은 書面에 依하여 株式을 引受하여야 한다.

第294條 削除 <1995.12.29>

第295條 (發起設立의 境遇의 納入과 現物出資의 履行) ①發起人이 會社의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를 引受한 때에는 遲滯없이 各株式에 對하여 그 引受價額의 全額을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發起人은 納入을 맡을 銀行 기타 金融機關과 納入場所를 지정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現物出資를 하는 發起人은 納入期日에 遲滯없이 出資의 目的인 財産을 引渡하고 登記, 登錄 其他 權利의 設定 또는 移轉을 要할 境遇에는 이에 關한 書類를 完備하여 交付하여야 한다.

第296條 (發起設立의 境遇의 任員選任) ①前條의 規定에 依한 納入과 現物出資의 履行이 完了된 때에는 發起人은 遲滯없이 議決權의 過半數로 理事와 監事를 選任하여야 한다.

②發起人의 議決權은 그 引受株式의 1株에 對하여 1個로 한다.

第297條 (發起人의 議事錄作成) 發起人은 議事錄을 作成하여 議事의 經過와 그 結果를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298條 (理事·監事의 調査·보고와 檢査人의 選任請求) ①理事와 監事는 就任후 지체없이 會社의 設立에 관한 모든 사항이 法令 또는 定款의 規定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調査하여 發起人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理事와 監事중 發起人이었던 者·現物出資者 또는 會社成立후 讓受할 財産의 契約當事者인 者는 第1項의 調査·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理事와 監事의 全員이 第2項에 해당하는 때에는 理事는 公證人으로 하여금 第1項의 調査·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定款으로 第290條 各號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理事는 이에 관한 調査를 하게 하기 위하여 檢査人의 選任을 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第299條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1995.12.29]

第299條 (檢査人의 調査, 報告) ①檢査人은 第290條 各號의 사항과 第295條의 規定에 의한 現物出資의 이행을 調査하여 法院에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檢査人은 前項의 調査報告書를 作成한 後 遲滯없이 그 謄本을 各發起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③檢査人의 調査報告書에 事實과 相違한 事項이 있는 때에는 發起人은 이에 對한 說明書를 法院에 提出할 수 있다.

第299條의2 (現物出資등의 증명) 第290條第1號 및 第4號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公證人의 調査·보고로, 第290條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사항과 第295條의 規定에 의한 現物出資의 이행에 관하여는 公認된 鑑定人의 鑑定으로 第29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人의 調査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公證人 또는 鑑定人은 調査 또는 鑑定結果를 法院에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本條新設 1995.12.29]

第300條 (法院의 變更處分) ①法院은 檢査人 또는 公證人의 調査報告書 또는 鑑定人의 鑑定結果와 發起人의 說明書를 審査하여 第290條의 規定에 依한 事項을 不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이를 變更하여 各發起人에게 通告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②第1項의 變更에 不服하는 發起人은 그 株式의 引受를 取消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定款을 變更하여 設立에 關한 節次를 續行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③法院의 通告가 있은 後 2週내에 株式의 引受를 取消한 發起人이 없는 때에는 定款은 通告에 따라서 變更된 것으로 본다.<改正 1998.12.28>

第**301**條 (募集設立의 境遇의 株式募集) 發起人이 會社의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를 引受하지 아니한 때에는 株主를 募集하여야 한다.

第**302**條 (株式引受의 請約, 株式請約書의 記載事項) ①株式引受의 請約을 하고자 하는 者는 株式請約書 2通에 引受할 株式의 種類 및 數와 住所를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株式請約書는 發起人이 이를 作成하고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1962.12.12, 1984.4.10, 1995.12.29>

1. 定款의 認證年月日과 公證人의 姓名
2. 第289條第1項과 第290條에 揭記한 事項
3. 會社의 存立期間 또는 解散事由를 定한 때에는 그 規定
4. 各發起人이 引受한 株式의 種類와 數
5. 第291條에 揭記한 事項

5의2.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理事會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規定

6. 開業前에 利子를 配當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7. 株主에게 配當할 利益으로 株式을 消却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8. 一定한 時期까지 創立總會를 終結하지 아니한 때에는 株式의 引受를 取消할 수 있다는 뜻
9. 納入을 맡을 銀行 其他 金融機關과 納入場所
10. 名義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그 姓名·住所 및 營業所

③民法 第107條第1項 但書의 規定은 株式引受의 請約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03**條 (株式引受人의 義務) 株式引受를 請約한 者는 發起人이 配定한 株式의 數에 따라서 引受價額을 納入할 義務를 負擔한다.

第**304**條 (株式引受人 等에 對한 通知, 催告) ①株式引受人 또는 株式請約人에 對한 通知나 催告는 株式引受證 또는 株式請約書에 記載한 住所 또는 그 者로부터 會社에 通知한 住所로 하면 된다.

②前項의 通知 또는 催告는 普通 그 到達할 時期에 到達한 것으로 본다.

第305條 (株式에 對한 納入) ①會社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가 引受된 때에는 發起人은 遲滯없이 株式引受人에 對하여 各株式에 對한 引受價額의 全額을 納入시켜야 한다.

②前項의 納入은 株式請約書에 記載한 納入場所에서 하여야 한다.

③第29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306條 (納入金의 保管者等의 變更) 納入金의 保管者 또는 納入場所를 變更할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307條 (株式引受人의 失權節次) ①株式引受人이 第305條의 規定에 依한 納入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發起人은 一定한 期日을 定하여 그 期日內에 納入을 하지 아니하면 그 權利를 잃는다는 뜻을 期日의 2週間前에 그 株式引受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通知를 받은 株式引受人이 그 期日內에 納入의 履行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權利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發起人은 다시 그 株式에 對한 株主를 募集할 수 있다.

③前2項의 規定은 그 株式引受人에 對한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08條 (創立總會) ①第305條의 規定에 依한 納入과 現物出資의 履行을 完了한 때에는 發起人은 遲滯없이 創立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②第363條第1項·第2項, 第364條, 第368條第3項·第4項, 第368條의2, 第369條第1項, 第371條第2項, 第372條, 第373條, 第376條 乃至 第381條와 第435條의 規定은 創立總會에 準用한다.<改正 1984.4.10>

第309條 (創立總會의 決議) 創立總會의 決議는 出席한 株式引受人의 議決權의 3分의 2以上이며 引受된 株式의 總數의 過半數에 該當하는 多數로 하여야 한다.

第310條 (變態設立의 境遇의 調査) ①定款으로 第290條에 揭記한 事項을 定한 때에는 發起人은 이에 關한 調査를 하게 하기 爲하여 檢査人의 選任을 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檢査人의 報告書는 이를 創立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第298條第4項 但書 및 第299條의2의 規定은 第1項의 調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新設 1995.12.29>

第311條 (發起人의 報告) ①發起人은 會社의 創立에 關한 事項을 書面에 依하여 創立總會에 報告하여

야 한다.

②前項의 報告書에는 다음의 事項을 明確히 記載하여야 한다.

1. 株式引受와 納入에 關한 諸般狀況

2. 第290條에 揭記한 事項에 關한 實態

第312條 (任員의 選任) 創立總會에서는 理事와 監事를 選任하여야 한다.

第313條 (理事, 監事의 調査, 報告) ①理事와 監事는 就任후 지체없이 會社의 設立에 관한 모든 사항이 法令 또는 定款의 規定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調査하여 創立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第298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調査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5.12.29>

③削除 <1995.12.29>

第314條 (變態設立事項의 變更) ①創立總會에서는 第290條에 揭記한 事項이 不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이를 變更할 수 있다.

②第300條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315條 (發起人에 對한 損害賠償請求) 前條의 規定은 發起人에 對한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16條 (定款變更, 設立廢止의 決議) ①創立總會에서는 定款의 變更 또는 設立의 廢止를 決議할 수 있다.

②前項의 決議는 召集通知書에 그 뜻의 記載가 없는 境遇에도 이를 할 수 있다.

第317條 (設立의 登記) ①株式會社의 設立登記는 發起人이 會社設立時에 發行한 株式의 總數를 引受한 境遇에는 第299條와 第300條의 規定에 依한 節次가 終了한 날로부터, 發起人이 株主를 募集한 境遇에는 創立總會가 終結한 날 또는 第314條의 規定에 依한 節次가 終了한 날로부터 2週間內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設立登記에 있어서는 다음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改正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1. 第289條第1項第1號 乃至 第4號, 第6號와 第7號에 揭記한 事項

2. 資本의 總額

3. 發行株式의 總數, 그 種類와 各種株式의 內容과 數

3의2.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理事會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規定

3의3.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規定

3의4. 支店의 所在地

4. 會社의 存立期間 또는 解散事由를 定한 때에는 그 期間 또는 事由

5. 開業前에 利子를 配當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6. 株主에게 配當할 利益으로 株式을 消却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7. 轉換株式을 發行하는 境遇에는 第347條에 揭記한 事項

8. 理事와 監事의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

9. 會社를 代表할 理事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10. 數人의 代表理事가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11. 名義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그 商號 및 本店所在地

12. 監査委員會를 設置한 때에는 監査委員會 委員의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

③株式會社의 支店設置 및 移轉시 支店所在地 또는 新支店所在地에서 하는 登記에 있어서는 第2項 第1號·第4號·第9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 登記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④第181條 乃至 第183條의 規定은 株式會社의 登記에 準用한다.

第318條 (納入金保管者의 證明과 責任) ①納入金을 保管한 銀行 其他의 金融機關은 發起人 또는 理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保管金額에 關하여 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銀行 其他의 金融機關은 證明한 保管金額에 對하여는 納入의 不實 또는 그 金額의 返還에 關한 制限이 있음을 理由로 하여 會社에 對抗하지 못한다.

第319條 (權利株의 讓渡) 株式의 引受로 因한 權利의 讓渡는 會社에 對하여 效力이 없다.

第320條 (株式引受의 無效主張, 取消의 制限) ①會社成立後에는 株式을 引受한 者는 株式請約書의 要件의 欠缺을 理由로 하여 그 引受의 無效를 主張하거나 詐欺, 强迫 또는 錯誤를 理由로 하여 그 引受를 取消하지 못한다.

②創立總會에 出席하여 그 權利를 行使한 者는 會社의 成立前에도 前項과 같다.

第321條 (發起人의 引受, 納入擔保責任) ①會社設立時에 發行한 株式으로서 會社成立後에 아직 引受되지 아니한 株式이 있거나 株式引受의 請約이 取消된 때에는 發起人이 이를 共同으로 引受한 것으로

본다.

②會社成立後 第295條第1項 또는 第30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納入을 完了하지 아니한 株式이 있는 때에는 發起人은 連帶하여 그 納入을 하여야 한다.

③第315條의 規定은 前2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322條 (發起人의 損害賠償責任) ①發起人이 會社의 設立에 關하여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發起人은 會社에 對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發起人이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發起人은 第三者에 對하여도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있다.

第323條 (發起人, 任員의 連帶責任) 理事 또는 監事가 第31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任務를 懈怠하여 會社 또는 第三者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지는 境遇에 發起人도 責任을 질때에는 그 理事, 監事와 發起人은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324條 (發起人의 責任免除, 株主의 代表訴訟) 第400條와 第403條 乃至 第406條의 規定은 發起人에 準用한다.

第325條 (檢査人의 損害賠償責任) 法院이 選任한 檢査人이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會社 또는 第三者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326條 (會社不成立의 境遇의 發起人의 責任) ①會社가 成立하지 못한 境遇에는 發起人은 그 設立에 關한 行爲에 對하여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②前項의 境遇에 會社의 設立에 關하여 支給한 費用은 發起人이 負擔한다.

第327條 (類似發起人의 責任) 株式請約書 其他 株式募集에 關한 書面에 姓名과 會社의 設立에 贊助하는 뜻을 記載할 것을 承諾한 者는 發起人과 同一한 責任이 있다.

第328條 (設立無效의 訴) ①會社設立의 無效는 株主·理事 또는 監事에 한하여 會社成立의 날로부터 2年內에 訴만으로 이를 主張할 수 있다.<改正 1984.4.10>

②第186條 乃至 第193條의 規定은 第1項의 訴에 準用한다.<改正 1984.4.10>

第2節 株式

제1관 株式과 株券<신설 2001.7.24>

第329條 (資本의 構成, 株式의 券面額) ①株式會社의 資本은 5千萬원이상이어야 한다.<新設 1984.4.10>

②株式會社의 資本은 이를 株式으로 分割하여야 한다.

③株式의 金額은 均一하여야 한다.

④1株의 金額은 100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1998.12.28>

第329條의2 (株式의 分割) ①會社는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決議로 株式을 分割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分割후의 1株의 금액은 第32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③第440條 내지 第444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分割의 경우에 이를 準用다.

[本條新設 1998.12.28]

第330條 (額面未達發行의 制限) 株式은 額面未達의 價額으로 發行하지 못한다. 그러나 第417條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31條 (株主의 責任) 株主의 責任은 그가 가진 株式의 引受價額을 限度로 한다.

第332條 (假設人, 他人의 名義에 依한 引受人의 責任) ①假設人의 名義로 株式을 引受하거나 他人의 承諾없이 그 名義로 株式을 引受한 者는 株式引受人으로서의 責任이 있다.

②他人의 承諾을 얻어 그 名義로 株式을 引受한 者는 他人과 連帶하여 納入할 責任이 있다.

第333條 (株式의 共有) ①數人이 共同으로 株式을 引受한 者는 連帶하여 納入할 責任이 있다.

②株式이 數人의 共有에 屬하는 때에는 共有者는 株主의 權利를 行使할 者 1人을 定하여야 한다.

③株主의 權利를 行使할 者가 없는 때에는 共有者에 對한 通知나 催告는 그 1人에 對하여 하면된다.

第334條 (株主의 會社에 對한 相計禁止) 株主는 納入에 關하여 相計로써 會社에 對抗하지 못한다.

第335條 (株式의 讓渡性) ①株式은 他人에게 이를 讓渡할 수 있다. 다만, 株式의 讓渡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理事會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違反하여 理事會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株式의 讓渡는 會社에 대하여 效力이 없다.<新設 1995.12.29>

③株券發行前에 한 株式의 讓渡는 會社에 對하여 效力이 없다. 그러나 會社成立후 또는 新株의 納入期日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84.4.10>

第**335**條의**2** (讓渡承認의 請求) ①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理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株式을 讓渡하고자 하는 株主는 會社에 대하여 讓渡의 相對方 및 讓渡하고자 하는 株式의 종류와 數를 기재한 書面으로 讓渡의 승인을 請求할 수 있다.

②會社는 第1項의 請求가 있는 날부터 1月이내에 株主에게 그 승인여부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會社가 第2項의 기간내에 株主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理事會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第2項의 讓渡承認拒否의 통지를 받은 株主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日내에 會社에 대하여 讓渡의 相對方의 지정 또는 그 株式의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5.12.29]

第**335**條의**3** (讓渡相對方의 指定請求) ①株主가 讓渡의 相對方을 지정하여 줄 것을 請求한 경우에는 理事會는 이를 지정하고, 그 請求가 있은 날부터 2週間내에 株主 및 지정된 相對方에게 書面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기간내에 株主에게 相對方指定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理事會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1995.12.29]

第**335**條의**4**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개정 **2001.7.24**>) ①第33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對方으로 지정된 者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指定請求를 한 株主에 대하여 書面으로 그 株式을 자기에게 賣渡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335條의3第2項의 規定은 株式의 讓渡相對方으로 지정된 者가 第1項의 기간내에 賣渡의 請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335**條의**5** (매도가액의 결정<개정 **2001.7.24**>) ①第335條의4의 경우에 그 株式의 매도가액은 株主와

매도청구인간의 協議로 이를 決定한다. <개정 2001.7.24>

②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24>

[本條新設 1995.12.29]

第**335**條의**6** (株式의 買受請求)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規定은 第335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主가 會社에 대하여 株式의 買受를 請求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7.24>

[本條新設 1995.12.29]

第**335**條의**7** (株式의 讓受人에 의한 承認請求) ①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理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株式을 취득한 者는 會社에 대하여 그 株式의 종류와 數를 기재한 書面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335條의2第2項 내지 第4項, 第335條의3 내지 第335條의6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336**條 (株式의 讓渡方法) ①株式의 讓渡에 있어서는 株券을 交付하여야 한다.

②株券의 占有者는 이를 適法한 所持人으로 推定한다.

[全文改正 1984.4.10]

第**337**條 (記名株式의 移轉의 對抗要件) ①記名株式의 移轉은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株主名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會社에 對抗하지 못한다.

②會社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名義改書代理人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名義改書代理人이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株主名簿의 複本에 記載한 때에는 第1項의 名義改書가 있는 것으로 본다.<新設 1984.4.10>

第**338**條 (記名株式의 入質) ①記名株式을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株券을 質權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②質權者는 繼續하여 株券을 占有하지 아니하면 그 質權으로써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339**條 (質權의 物上代位) 株式의 消却, 併合, 分割 또는 轉換이 있는 때에는 이로 因하여 從前의 株

主가 받을 金錢이나 株式에 對하여도 從前의 株式을 目的으로한 質權을 行使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第340條 (記名株式의 登錄質) ①記名株式을 質權의 目的으로한 境遇에 會社가 質權設定者의 請求에 依하여 그 姓名과 住所를 株主名簿에 附記하고 그 姓名을 株券에 記載한 때에는 質權者는 會社로부터 利益이나 利子의 配當, 殘餘財産의 分配 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한 金錢의 支給을 받아 다른 債權者에 優先하여 自己債權의 辨濟에 充當할 수 있다.

②民法 第353條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③第1項의 質權者는 會社에 對하여 前條의 株式에 對한 株券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340條의2 (株式買受選擇權) ①會社는 定款이 정한 바에 따라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決議로 會社의 設立·경영과 技術革新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會社의 理事·監事 또는 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價額(이하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價額"이라 한다)으로 新株를 引受하거나 자기의 株式을 買受할 수 있는 權利(이하 "株式買受選擇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價額이 株式의 實質金額보다 낮은 경우에 會社는 그 差額을 金錢으로 지급하거나 그 差額에 상당하는 자기의 株式을 讓渡할 수 있다. 이 경우 株式의은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日을 기준으로 評價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에 規定된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없다.

1. 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10이상의 株式을 가진 株主

2. 理事·監事의 選任과 解任등 會社의 主要經營事項에 대하여 사실상 影響力을 행사하는 者

3. 第1號와 第2號에 規定된 者의 配偶者와 直系尊·卑屬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할 新株 또는 讓渡할 자기의 株式은 會社의 發行株式總額의 100分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第1項에 規定한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價額은 다음 各號의 價額 이상이어야 한다.

1. 新株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株式買受選擇權의 付與日을 기준으로 한 株式의 實質價額과 株式의 券面額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株式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株式買受選擇權의 付與日을 기준으로 한 株式의 實質價額

[본조신설 1999.12.31]

第340條의3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 ①第340條의2第1項의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한 定款의 規定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讓渡할 株式의 종류와 數

3.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者의 資格要件

4.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理事會決議로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를 取消할 수 있다는 뜻

②第340條의2第1項의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한 株主總會의 決議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者의 姓名

2.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방법

3.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價額과 그 調整에 관한 사항

4.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기간

5.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者 각각에 대하여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讓渡할 株式의 종류와 數

③會社는 第2項의 株主總會 決議에 의하여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 받은 者와 契約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契約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會社는 第3項의 契約書를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本店에 비치하고 株主로 하여금 營業時間내에 이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第**340**條의**4**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①第340條의2第1項의 株式買受選擇權은 第340條의3第2項 各號의 사항을 정하는 株主總會決議日부터 2年이상 在任 또는 在職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第340條의2第1項의 株式買受選擇權은 이를 讓渡할 수 없다. 다만,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買受選擇權을 행사할 수 있는 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相續人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31]

第**340**條의**5** (準用規定) 第350條第2項, 第350條第3項 後段, 第351條, 第516條의8第1項·第3項·第4項 및 第516條의9 前段의 規定은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新株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본조신설 1999.12.31]

第**341**條 (自己株式의 取得) 會社는 다음의 境遇外에는 자기의 計算으로 자기의 株式을 取得하지 못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1. 株式을 消却하기 爲한 때

2. 會社의 合併 또는 다른 會社의 營業全部의 讓受로 因한 때

3. 會社의 權利를 實行함에 있어 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

4. 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株主가 株式買受請求權을 행사한 때

第**341**條의**2** (株式買受選擇權付與目的등의 自己株式取得) ①會社는 第34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자기의 株式을 讓渡할 目的으로 취득하거나 退職하는 理事·監事 또는 被用者의 株式을 讓受함으로써 자기의 株式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計算으로 자기의 株式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第462條第1項에 規定된 利益配當이 가능한 한도이내이어야 한다.

②會社가 第1項의 株式을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10이상의 株式을 가진 株主로부터 有償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會社는 株主總會 決議후 6月이내에 株式을 취득하여야 한다.

1. 株式을 讓渡하고자 하는 株主의 姓名

2. 취득할 株式의 종류와 數

3. 취득할 株式의 價額

③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자기의 株式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時期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第433條第2項의 規定은 第2項의 株主總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종전제341조의2는 제341조의3으로 이동<1999.12.31>]

第**341**條의**3** (自己株式의 質取) 會社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20分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株式을 質權의 目的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第341條第2號 및 第3號의 경우에는 그 限度를 초과하여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84.4.10]

[제341조의2에서 이동<1999.12.31>]

第**342**條 (自己株式의 處分) 會社는 第341條第1號의 경우에는 遲滯없이 株式失效의 節次를 밟아야 하며 同條第2號 내지 第5號와 第341條의3 但書의 경우에는 相當한 時期에 株式 또는 質權의 處分을 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1999.12.31>

第**342**條의**2** (子會社에 의한 母會社株式의 取得) ①다른 會社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株式을 가진 會社(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株式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會社(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取得할 수 없다. <개정 2001.7.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讓受로 인한 때

2. 會社의 權利를 實行함에 있어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第1項 各號의 경우 子會社는 그 株式을 取得한 날로부터 6月이내에 母會社의 株式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會社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株式을 母會社 및 子會社 또는 子會社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會社는 이 法의 適用에 있어 그 母會社의 子會社로 본다. <개정 2001.7.24>

[本條新設 1984.4.10]

第**342**條의**3** (다른 會社의 株式取得) 會社가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分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會社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343**條 (株式의 消却) ①株式은 資本減少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서만 消却할 수 있다. 그러나 定款의 定한 바에 依하여 株主에게 配當할 利益으로써 株式을 消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440條와 第441條의 規定은 株式을 消却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제**343**조의**2** (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①회사는 제3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정기총회에서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의 결의후 최초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결한 후로 정하지 못한다.

⑤회사는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462조의3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第344條 (數種의 株式) ①會社는 利益이나 利子의 配當 또는 殘餘財産의 分配에 關하여 內容이 다른 數種의 株式을 發行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는 定款으로 각종의 株式의 내용과 數를 정하여야 하며, 利益配當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株式에 대하여는 定款으로 最低配當率을 정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③會社가 數種의 株式을 發行하는 때에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는 境遇에도 株式의 種類에따라 新株의 引受, 株式을 併合·分割·消却 또는 會社의 合併·分割로 인한 株式의 配定에 關하여 特殊한 定함을 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第345條 (償還株式) ①前條의 境遇에는 利益配當에 關하여 優先的 內容이 있는 種類의 株式에 對하여 利益으로써 消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償還價額, 償還期間, 償還方法과 數를 定款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346條 (轉換株式의 發行) ①會社가 數種의 株式을 發行하는 境遇에는 定款으로 株主는 引受한 株式을 다른 種類의 株式으로 轉換을 請求할 수 있음을 定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轉換의 條件, 轉換의 請求期間과 轉換으로 因하여 發行할 株式의 數와 內容을 定하여야 한다.

②第34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數種의 株式의 數中 轉換으로 因하여 發行할 株式의 數는 前項의 期間內에는 그 發行을 保留하여야 한다.

第347條 (轉換株式發行의 節次) 第346條第1項의 경우에는 株式請約書 또는 新株引受權證書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1. 株式을 다른 種類의 株式으로 轉換할 수 있다는 뜻
2. 轉換의 條件
3. 轉換으로 因하여 發行할 株式의 內容
4. 轉換을 請求할 수 있는 期間

第348條 (轉換으로 因하여 發行하는 株式의 發行價額) 轉換으로 因하여 新株式을 發行하는 境遇에는 轉換前의 株式의 發行價額을 新株式의 發行價額으로 한다.

第349條 (轉換의 請求) ①株式의 轉換을 請求하는 者는 請求書 2通에 株券을 添附하여 會社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請求書에는 轉換하고자 하는 株式의 種類, 數와 請求年月日을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③削除 <1995.12.29>

第350條 (轉換의 효력발생) ①株式의 轉換은 그 請求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②第354條第1項의 기간중에 轉換된 株式의 株主는 그 기간중의 總會의 決議에 관하여는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轉換權을 행사한 株式의 이익이나 利子의 配當에 관하여는 그 請求를 한 때가 속하는 營業年度末에 轉換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新株에 대한 이익이나 利子의 配當에 관하여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請求를 한 때가 속하는 營業年度의 직전 營業年度末에 轉換된 것으로 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5.12.29]

第351條 (轉換의 登記) 株式의 轉換으로 인한 變更登記는 轉換을 請求한 날이 속하는 달의 末日부터 2週間내에 本店所在地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352條 (株主名簿의 記載事項) ①記名株式을 發行한 때에는 株主名簿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1. 株主의 姓名과 住所
2. 各 株主가 가진 株式의 種類와 그 數

2의2. 各 株主가 가진 株式의 株券을 발행한 때에는 그 株券의 番號

3. 各株式의 取得年月日

②無記名式의 株券을 發行한 때에는 株主名簿에 그 種類, 數, 番號와 發行年月日을 記載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境遇에 轉換株式을 發行한 때에는 第347條에 揭記한 事項도 株主名簿에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第353條 (株主名簿의 效力) ①株主 또는 質權者에 對한 會社의 通知 또는 催告는 株主名簿에 記載한 住所 또는 그 者로부터 會社에 通知한 住所로 하면 된다.

②第304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通知 또는 催告에 準用한다.

第354條 (株主名簿의 閉鎖, 基準日) ①會社는 議決權을 行使하거나 配當을 받을 者 其他 株主 또는 質權者로서 權利를 行使할 者를 定하기 爲하여 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株主名簿의 記載變更을 停止하거나 一定한 날에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 또는 質權者를 그 權利를 行使할 株主 또는 質權者로 볼 수 있다.<改正 1984.4.10>

②第1項의 期間은 3月을 超過하지 못한다.<改正 1984.4.10>

③第1項의 날은 株主 또는 質權者로서 權利를 行使할 날에 앞선 3月내의 날로 定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④會社가 第1項의 期間 또는 날을 定한 때에는 그 期間 또는 날의 2週間前에 일을 公告하여야 한다. 그러나 定款으로 그 期間 또는 날을 指定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55條 (株券發行의 時期) ①會社는 成立後 또는 新株의 納入期日後 遲滯없이 株券을 發行하여야 한다.

②株券은 會社의 成立後 또는 新株의 納入期日後가 아니면 發行하지 못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發行한 株券은 無效로 한다. 그러나 發行한 者에 對한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56條 (株券의 記載事項) 株券에는 다음의 事項과 番號를 記載하고 代表理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1. 會社의 商號
2. 會社의 成立年月日
3.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
4. 1株의 金額
5. 會社의 成立後 發行된 株式에 關하여는 그 發行年月日
6. 數種의 株式이 있는 때에는 그 株式의 種類와 內容

6의2.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理事會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規定

7. 償還株式이 있는 때에는 第345條第2項에 定한 事項
8. 轉換株式이 있는 때에는 第347條에 揭記한 事項

第357條 (無記名式의 株券의 發行) ①無記名式의 株券은 定款에 定한 境遇에 限하여 이를 發行할 수

있다.

②株主는 언제든지 無記名式의 株券을 記名式으로 할 것을 會社에 請求할 수 있다.

第358條 (無記名株主의 權利行使) 無記名式의 株券을 가진 者는 그 株券을 會社에 供託하지 아니하면 株主의 權利를 行使하지 못한다.

第358條의2 (株券의 不所持) ①株主는 定款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記名株式에 대하여 株券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會社에 申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告가 있는 때에는 會社는 지체없이 株券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株主名簿와 그 複本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株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會社는 그 株券을 발행할 수 없다.

③第1項의 경우 이미 발행된 株券이 있는 때에는 이를 會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會社는 제출된 株券을 無效로 하거나 名義改書代理人에게 任置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株主는 언제든지 會社에 대하여 株券의 발행 또는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5.12.29]

第359條 (株券의 善意取得) 手票法 第21條의 規定은 株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1984.4.10]

第360條 (株券의 除權判決, 再發行) ①株券은 公示催告의 節次에 依하여 이를 無效로 할 수 있다.

②株券을 喪失한 者는 除權判決을 얻지 아니하면 會社에 對하여 株券의 再發行을 請求하지 못하다.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신설 2001.7.24>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종류와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액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주식교환을 할 날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주식의 총수·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④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2. 제3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①이사는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360조의9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6 (신주발행에 갈음할 자기주식의 이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의 주식으로서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할 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액) 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2.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의 회계장부가액의 합계액

②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8 (주권의 실효절차) ①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뜻
2.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②제442조 및 제444조의 규정은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 ①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 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제3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로 본다.

③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는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제1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④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제360조의3제1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이 조에 의한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⑥제1항 본문의 경우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 제360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 및 동조동항제3호중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은 각각 "이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의 날"로 한다.

⑦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360조의5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1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제443조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2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①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의 날
2.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4.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3 (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 임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소) ①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는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④제187조 내지 제189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192조, 제377조 및 제4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신설 2001.7.24>

제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6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①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2.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의 액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주식이전을 할 시기
6.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7.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제360조의3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의 주주총회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7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①이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전계획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16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8 (완전모회사의 자본의 한도액)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9 (주권의 실효절차) ①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뜻
2.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②제442조 및 제444조의 규정은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20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21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제360조의20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22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소) ①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④제187조 내지 제193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第3節 會社의 機關

第1款 株主總會

第361條 (總會의 權限) 株主總會는 本法 또는 定款에 定하는 事項에 限하여 決議할 수 있다.

第362條 (召集의 決定) 總會의 召集은 本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外에는 理事會가 이를 決定한다.

第363條 (召集의 通知, 公告) ①總會를 召集함에는 會日을 定하여 2週間前에 各株主에 對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株主名簿상의 株主의 住所에 계속 3年間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會社는 당해 株主에게 總會의 召集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2001.7.24>

②前項의 通知書에는 會議의 目的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③會社가 無記名式의 株券을 發行한 境遇에는 會日의 3週間前에 總會를 召集하는 뜻과 會議의 目的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④前3項의 規定은 議決權없는 株主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63條의2 (株主提案權) ①議決權 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3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理事에 대하여 會日의 6週전에 書面으로 일정한 사항을 株主總會의 目的事項으로 할 것을 提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株主는 理事에 대하여 會日의 6週전에 書面으로 會議의 目的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株主가 제출하는 議案의 要領을 第363條에서 정하는 통지와 公告에 기재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③理事는 第1項에 의한 株主提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理事會에 報告하고, 理事會는 株主提案의 내용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株主總會의 目的事項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株主提案을 한 者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株主總會에서 당해 議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本條新設 1998.12.28]

第364條 (召集地)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 한다.

第365條 (總會의 召集) ①定期總會는 每年 1回 一定한 時期에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②年 2回以上의 決算期를 定한 會社는 每期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臨時總會는 必要있는 境遇에 隨時 이를 召集한다.

第366條 (少數株主에 依한 召集請求) ①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以上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會議의 目的事項과 召集의 理由를 記載한 書面을 理事會에 提出하여 臨時總會의 召集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②第1項의 請求가 있은 後 遲滯없이 總會召集의 節次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한 株主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總會는 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하게 하기 爲하여 檢査人을 選任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第366條의2 (總會의 秩序維持) ①總會의 議長은 定款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總會에서 選任한다.

②總會의 議長은 總會의 秩序를 유지하고 議事를 整理한다.

③總會의 議長은 故意로 議事進行을 방해하기 위한 發言·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秩序를 문란하게 하는 者에 대하여 그 發言의 정지 또는 退場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31]

第367條 (檢査人의 選任) 總會는 理事가 提出한 書類와 監事의 報告書를 調査하게 하기 爲하여 檢査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368條 (總會의 決議方法과 議決權의 행사) ①總會의 決議는 이 法 또는 定款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株主의 議決權의 過半數와 發行株式總數의 4分의 1이상의 數로써 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無記名式의 株券을 가진 者는 會日의 1週間前에 그 株券을 會社에 供託하여야 한다.

③株主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그 議決權을 行使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그 代理人은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을 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④總會의 決議에 關하여 特別한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第368條의2 (議決權의 不統一行使) ①株主가 2이상의 議決權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統一하지 아니하고 行使할 수 있다. 이 경우 會日의 3日전에 會社에 대하여 書面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株主가 株式의 信託을 引受하였거나 기타 他人을 위하여 株式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會社는 株主의 議決權의 不統一行使를 拒否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84.4.10]

第368條의3 (書面에 의한 議決權의 행사) ①株主는 定款이 정한 바에 따라 總會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書面에 의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②會社는 總會의 召集通知書에 株主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書面과 參考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第369條 (議決權) ①議決權은 1株마다 1個로 한다.

②會社가 가진 自己株式은 議決權이 없다.

③會社, 母會社 및 子會社 또는 子會社가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分의 1을 초과하는 株式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會社가 가지고 있는 會社 또는 母會社의 株式은 議決權이 없다.<新設 1984.4.10>

第370條 (議決權이 없는 株式) ①會社가 數種의 株式을 發行하는 境遇에는 定款으로 利益配當에 關한

優先的 內容이 있는 種類의 株式에 對하여 株主에게 議決權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株主는 定款에 定한 優先的配當을 받지 아니한다는 決議가 있는 總會의 다음 總會부터 그 優先的配當을 받는다는 決議가 있는 總會의 終了時까지에는 議決權이 있다.

②前項의 議決權없는 株式의 總數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4分의 1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371條 (定足數, 議決權數의 計算) ①總會의 決議에 關하여는 議決權없는 株主가 가진 株式의 數는 發行株式의 總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②總會의 決議에 關하여는 第368條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使할 수 없는 議決權의 數는 出席한 株主의 議決權의 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372條 (總會의 延期, 續行의 決議) ①總會에서는 會議의 續行 또는 延期의 決議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第363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73條 (總會의 議事錄) ①總會의 議事에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要領과 그 結果를 記載하고 議長과 出席한 理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374條 (營業讓渡, 讓受, 賃貸等) ①會社가 다음의 行爲를 함에는 第434條에 定하는 決議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1.7.24>

1. 營業의 全部 또는 重要한 一部의 讓渡

2. 營業全部의 賃貸 또는 經營委任, 他人과 營業의 損益全部를 같이하는 契約 其他 이에 準할 契約의 締結, 變更 또는 解約

3. 다른會社의 營業全部의 讓受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讓受

②第1項의 행위에 관한 株主總會의 召集의 통지 또는 公告를 하는 때에는 第374條의2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買受請求權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第374條의2 (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 ①第374條의 規定에 의한 決議事項에 반대하는 株主는 株主總會전에 會社에 대하여 書面으로 그 決議에 反對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總會의 決議日부터 20日내에 株式의 종류와 數를 기재한 書面으로 會社에 대하여 자기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의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

②會社는 第1項의 請求를 받은 날부터 2月이내에 그 株式을 買受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買受價額은 株主와 會社間의 協議에 의하여 決定한다. <개정 2001.7.24>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식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本條新設 1995.12.29]

第**375**條 (事後設立) 第374條의 規定은 會社가 그 成立後 2年內에 그 成立前부터 存在하는 財産으로서 營業을 爲하여 繼續하여 使用하여야 할 것을 資本의 100分의 5이상에 該當하는 對價로 取得하는 契約을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8.12.28>

第**376**條 (決議取消의 訴) ①總會의 召集節次 또는 決議方法이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하거나 顯著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決議의 내용이 定款에 위반한 때에는 株主·理事 또는 監事는 決議의 날로부터 2月內에 決議取消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改正 1984.4.10, 1995.12.29>

②第186條 乃至 第188條, 第190條 本文과 第191條의 規定은 第1項의 訴에 準用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第**377**條 (提訴株主의 擔保提供義務) ①株主가 決議取消의 訴를 提起한 때에는 法院은 會社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擔保를 提供할 것을 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株主가 理事 또는 監事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84.4.10>

②第176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請求에 準用한다.<改正 1984.4.10>

第**378**條 (決議取消의 登記) 決議한 事項이 登記된 境遇에 決議取消의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本店과 支店의 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第**379**條 (法院의 裁量에 依한 請求棄却) 決議取消의 訴가 提起된 境遇에 決議의 內容, 會社의 現況과 諸般事情을 參酌하여 그 取消가 不適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法院은 그 請求를 棄却할 수 있다.

第380條 (決議無效 및 不存在確認의 訴) 第186條 乃至 第188條, 第190條 本文, 第191條, 第377條와 第378條의 規定은 總會의 決議의 內容이 法令에 위반한 것을 理由로하여 決議無效의 확인을 請求하는 訴와 總會의 召集節次 또는 決議方法에 總會決議가 存在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瑕疵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決議不存在의 확인을 請求하는 訴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第381條 (不當決議의 取消, 變更의 訴) ①株主가 第368條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었던 境遇에 決議가 顯著하게 不當하고 그 株主가 議決權을 行使하였더라면 이를 沮止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株主는 그 決議의 날로부터 2月內에 決議의 取消의 訴 또는 變更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②第186條 내지 第188條, 第190條 本文, 第191條, 第377條와 第378條의 規定은 第1項의 訴에 準用한다.<改正 1998.12.28>

第2款 理事와 理事會

第382條 (選任, 會社와의 關係) ①理事는 株主總會에서 選任한다.

②會社와 理事의 關係는 委任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382條의2 (集中投票) ①2人이상의 理事의 選任을 目的으로 하는 總會의 召集이 있을 때에는 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3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定款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社에 대하여 集中投票의 방법으로 理事를 選任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請求는 會日의 7日전까지 書面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 理事의 選任決議에 관하여 각 株主는 1株마다 選任할 理事의 數와 동일한 數의 議決權을 가지며, 그 議決權은 理事 候補者 1人 또는 數人에게 集中하여 投票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의 방법으로 理事를 選任하는 경우에는 投票의 最多數를 얻은 者부터 順次的으로 理事에 選任되는 것으로 한다.

⑤第1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議長은 議決에 앞서 그러한 請求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第2項의 書面은 總會가 終結될 때까지 이를 本店에 비치하고 株主로 하여금 營業時間내에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8.12.28]

第382條의3 (理事의 忠實義務)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8.12.28]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7.24]

第383條 (員數, 任期) ①理事는 3人以上이어야 한다. 다만, 資本의 總額이 5億원미만인 會社는 1人또는 2人으로 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②理事의 任期는 3年을 超過하지 못한다.<改正 1984.4.10>

③第2項의 任期는 定款으로 그 任期中의 最終의 決算期에 關한 定期株主總會의 終結에 이르기까지 延長할 수 있다.<改正 1984.4.10>

④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가 1人이 된 경우에는 第302條第2項第5號의2, 第317條第2項第3號의2, 第335條第1項 但書·第2項, 第335條의2第1項·第3項, 第335條의3第1項·第2項, 第335條의7第1項, 第340條의3第1項第5號, 第356條第6號의2, 第397條第1項·第2項, 第398條, 第416條 本文, 第461條第1項本文·第3項, 第462條의3第1項, 第464條의2第1項, 第469條, 第513條第2項 本文 및 第516條의2第2項 本文(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중 "理事會"는 이를 각각 "株主總會"로 보며, 第522條의3第1項중 "理事會의 決議가 있는 때"는 "第3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召集通知가 있는 때"로 본다.<新設 1998.12.28, 1999.12.31>

⑤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가 1人이 된 경우에는 第390條 내지 第392條, 第393條第2項, 第399條第2項, 第526條第3項, 第527條第4項, 第527條의2, 第527條의3第1項 및 第527條의5第2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新設 1998.12.28>

⑥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가 1人이 된 경우에는 그 理事가 會社를 代表하며, 第362條, 第363條의2第3項, 第366條第1項, 第393條第1項 및 第412條의3第1項에 規定된 理事會의 機能을 담당한다.<新設 1998.12.28>

第384條 削除 <1995.12.29>

第385條 (解任) ①理事는 언제든지 第434條의 規定에 依한 株主總會의 決議로 이를 解任할 수 있다. 그러나 理事의 任期를 定한 境遇에 正當한 理由없이 그 任期滿了前에 이를 解任한 때에는 그 理事는 會社에 對하여 解任으로 因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理事가 그 職務에 關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重大한 事實이있음에도 不拘하

고 株主總會에서 그 解任을 否決한 때에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3이상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總會의 決議가 있은 날부터 1月內에 그 理事의 解任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③第186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386條 (缺員의 境遇) ①法律 또는 定款에 定한 理事의 員數를 缺한 境遇에는 任期의 滿了 또는 辭任으로 因하여 退任한 理事는 새로 選任된 理事가 就任할 때까지 理事의 權利義務가 있다.

②第1項의 境遇에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法院은 理事, 監事 其他의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一時理事의 職務를 行할 者를 選任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本店의 所在地에서 그 登記를 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387條 (資格株) 定款으로 理事가 가질 株式의 數를 定한 境遇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理事는 그 數의 株券을 監事에게 供託하여야 한다.

第388條 (理事의 報酬) 理事의 報酬는 定款에 그 額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株主總會의 決議로 이를 定한다.

第389條 (代表理事) ①會社는 理事會의 決議로 會社를 代表할 理事를 選定하여야 한다 그러나, 定款으로 株主總會에서 이를 選定할 것을 定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數人의 代表理事가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것을 定할 수 있다.

③第208條第2項, 第209條, 第210條와 第386條의 規定은 代表理事에 準用한다.<改正 1962.12.12>

第390條 (理事會의 召集) ①理事會는 各理事가 召集한다. 그러나 理事會의 決議로 召集할 理事를 定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③理事會를 召集함에는 會日을 定하고 그 1週間前에 各 理事 및 監事에 對하여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期間은 定款으로 短縮할 수 있다.<改正 1984.4.10>

④理事會는 理事 및 監事全員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節次없이 언제든지 會議할 수 있다.<改正 1984.4.10, 2001.7.24>

第391條 (理事會의 決議方法) ①理事會의 決議는 理事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理事의 過半數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定款으로 그 比率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定款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理事會는 理事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會議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理事가 動映像 및 音聲을 동시에 送·受信하는 通信手段에 의하여 決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理事는 理事會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31>

③第368條第4項 및 第371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1984.4.10]

第391條의2 (監事의 理事會出席·意見陳述權) ①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②監事는 理事가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한 行爲를 하거나 그 行爲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理事會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391條의3 (理事會의 議事錄) ①理事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議事錄에는 議事의 案件, 經過要領, 그 결과, 反對하는 者와 그 反對理由를 記載하고 출석한 理事 및 監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1999.12.31>

③株主는 營業時間내에 理事會議事錄의 閱覽 또는 騰寫를 請求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④會社는 第3項의 請求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株主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理事會議事錄을 閱覽 또는 騰寫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本條新設 1984.4.10]

第392條 (理事會의 延期·續行) 第372條의 規定은 理事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1984.4.10]

第393條 (理事會의 權限)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讓渡, 대규모 재산의 借入, 支配人의 選任 또는 解任과 支店의 設置·移轉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理事會의 決議로 한다.<개정 2001.7.24>

②理事會는 理事의 職務의 執行을 監督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1.7.24>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1.7.24>

[全文改正 1984.4.10]

第393條의2 (理事會내 委員會) ①理事會는 定款이 정한 바에 따라 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

②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權限을 委員會에 위임할 수 있다.

1. 株主總會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提案
2. 代表理事의 選任 및 解任
3. 委員會의 設置와 그 委員의 選任 및 解任
4. 定款에서 정하는 사항

③委員會는 2人이상의 理事로 구성한다.

④委員會는 決議된 사항을 각 理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理事는 理事會의 召集을 요구할 수 있으며, 理事會는 委員會가 決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決議할 수 있다.

⑤第386條第1項·第390條·第391條·第391條의3 및 第392條의 規定은 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본조신설 1999.12.31]

第394條 (理事와 會社間의 訴에 관한 代表) ①會社가 理事에 대하여 또는 理事가 會社에 대하여 訴를 提起하는 경우에 監事는 그 訴에 관하여 會社를 代表한다. 會社가 第403條第1項의 請求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다.

②第4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의 委員이 訴의 當事者인 경우에는 監査委員會 또는 理事는 法院에 會社를 代表할 者를 選任하여 줄 것을 申請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全文改正 1984.4.10]

第395條 (表見代表理事의 行爲와 會社의 責任) 社長, 副社長, 專務, 常務 其他 會社를 代表할 權限이 있는 것으로 認定될만한 名稱을 使用한 理事의 行爲에 對하여는 그 理事가 會社를 代表할 權限이 없는 境遇에도 會社는 善意의 第三者에 對하여 그 責任을 진다.

第396條 (定款等의 備置, 公示義務) ①理事는 會社의 定款, 株主總會의 議事錄을 本店과 支店에, 株主名簿, 社債原簿를 本店에 備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名義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株主名簿나 社債原簿 또는 그 複本을 名義改書代理人의 營業所에 備置할 수 있다.<改正 1984.4.10, 1999.12.31>

②株主와 會社債權者는 營業時間內에 언제든지 第1項의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84.4.10>

第397條 (競業禁止) ①理事는 理事會의 承認이 없으면 自己 또는 第三者의 計算으로 會社의 營業部類에 屬한 去來를 하거나 同種營業을 目的으로 하는 다른 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이나 理事가 되지 못한다.<改正 1995.12.29>

②理事가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去來를 한 境遇에 會社는 理事會의 決議로 그 理事의 去來가 自己의 計算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會社의 計算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第三者의 計算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理事에 對하여 이로 因한 利得의 讓渡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62.12.12, 1995.12.29>

③第2項의 權利는 去來가 있는 날로부터 1年을 經過하면 消滅한다.<改正 1995.12.29>

第398條 (理事와 會社間의 去來) 理事는 理事會의 承認이 있는 때에 限하여 自己 또는 第三者의 計算으로 會社와 去來를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民法 第124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99條 (會社에 對한 責任) ①理事가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한 行爲를 하거나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理事는 會社에 對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前項의 行爲가 理事會의 決議에 依한 것인 때에는 그 決議에 贊成한 理事도 前項의 責任이 있다.

③前項의 決議에 參加한 理事로서 異議를 한 記載가 議事錄에 없는 者는 그 決議에 贊成한 것으로 推定한다.

第400條 (會社에 對한 責任의 免除) 前條의 規定에 依한 理事의 責任은 總株主의 同意로 免除할 수 있다.

第401條 (第三者에 對한 責任) ①理事가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理事는 第三者에 對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第399條第2項, 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401條의2 (業務執行指示者 등의 責任)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지시하거나 執行한 業務에 관하여 第399條·第401條 및 第403條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理事로 본다.

1. 會社에 대한 자신의 影響力을 이용하여 理事에게 業務執行을 지시한 者
2. 理事의 이름으로 직접 業務를 執行한 者
3. 理事가 아니면서 名譽會長·會長·社長·副社長·專務·常務·理事 기타 業務를 執行할 權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會社의 業務를 執行한 者

②第1項의 경우에 會社 또는 第3者에 대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 理事는 第1項에 規定된 者

와 連帶하여 그 責任을 진다.

[本條新設 1998.12.28]

第402條 (留止請求權) 理事가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한 行爲를 하여 이로 因하여 會社에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길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監事 또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會社를 爲하여 理事에 對하여 그 行爲를 留止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84.4.10, 1998.12.28>

第403條 (株主의 代表訴訟) ①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以上에 該當하는 柱式을 가진 株主는 會社에 對하여 理事의 責任을 追窮할 訴의 提起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②第1項의 請求는 그 理由를 記載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③會社가 前項의 請求를 받은 날로부터 30日內에 訴를 提起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株主는 卽時 會社를 爲하여 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④第3項의 期間의 經過로 因하여 會社에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길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1項의 株主는 卽時 訴를 提起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⑤第3項과 第4項의 訴를 제기한 株主의 保有株式이 提訴후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保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新設 1998.12.28>

⑥第3項과 第4項의 訴를 제기한 경우 當事者는 法院의 許可를 얻지 아니하고는 訴의 취하, 請求의 포기·認諾·和解를 할 수 없다.<新設 1998.12.28>

⑦第176條第3項, 第4項과 第186條의 規定은 本條의 訴에 準用한다.

第404條 (代表訴訟과 訴訟參加, 訴訟告知) ①會社는 前條第3項과 第4項의 訴訟에 參加할 수 있다.

②前條第3項과 第4項의 訴를 提起한 株主는 訴를 提起한 後 遲滯없이 會社에 對하여 그 訴訟의 告知를 하여야 한다.

第405條 (提訴株主의 權利義務) ①第403條第3項과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訴를 提起한 株主가 勝訴한 때에는 그 株主는 會社에 對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求償權이 있다.<改正 1962.12.12, 2001.7.24>

②第403條第3項과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訴를 提起한 株主가 敗訴한 때에는 惡意인 境遇外에는 會社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없다.

第406條 (代表訴訟과 再審의 訴) ①第403條의 訴가 提起된 境遇에 原告와 被告의 共謀로 因하여 訴訟의 目的인 會社의 權利를 詐害할 目的으로써 判決을 하게한 때에는 會社 또는 株主는 確定한 終局判決에 對하여 再審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②前條의 規定은 前項의 訴에 準用한다.

第407條 (職務執行停止, 職務代行者選任) ①理事選任決議의 無效나 取消 또는 理事解任의 訴가 提起된 境遇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假處分으로써 理事의 職務執行을 停止할 수 있고 또는 職務代行者를 選任할 수 있다. 急迫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本案 訴訟의 提起前에도 그 處分을 할 수 있다.

②法院은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前項의 假處分을 變更 또는 取消할 수 있다.

③前2項의 處分이 있는 때에는 本店과 支店의 所在地에서 그 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408條 (職務代行者의 權限) ①前條의 職務代行者는 假處分命令에 다른 定함이 있는 境遇外에는 會社의 常務에 屬하지 아니한 行爲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法院의 許可를 얻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職務代行者가 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를 한 境遇에도 會社는 善意의 第三者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第3款 監事 및 監査委員會<개정 1999.12.31>

第409條 (選任) ①監事는 株主總會에서 選任한다.

②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을 초과하는 數의 株式을 가진 株主는 그 초과하는 株式에 관하여 第1項의 監事의 選任에 있어서는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改正 1984.4.10>

③會社는 定款으로 第2項의 比率보다 낮은 比率을 정할 수 있다.<新設 1984.4.10>

第409條의2 (監事의 解任에 관한 意見陳述의 權利) 監事는 株主總會에서 監事의 解任에 관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5.12.29]

第410條 (任期) 監事의 任期는 就任후 3年내의 最終의 決算期에 관한 定期總會의 終結時까지로 한다.<改正 1995.12.29>

[全文改正 1984.4.10]

第411條 (兼任禁止) 監事는 會社 및 子會社의 理事 또는 支配人 其他의 使用人의 職務를 兼하지 못한다.<改正 1995.12.29>

第412條 (職務와 報告要求·調査의 權限) ①監事는 理事의 職務의 執行을 監査한다.

②監事는 언제든지 理事에 대하여 營業에 관한 보고를 要求하거나 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84.4.10]

第412條의2 (理事의 報告義務) 理事는 會社에 현저하게 損害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監事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412條의3 (總會의 召集請求) ①監事는 會議의 目的事項과 召集의 이유를 기재한 書面을 理事會에 제출하여 臨時總會의 召集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366條第2項의 規定은 監事가 總會를 召集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412條의4 (子會社의 調査權) ①母會社의 監事는 그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子會社에 대하여 營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母會社의 監事는 第1項의 경우에 子會社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子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할 수 있다.

③子會社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하지 못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413條 (調査·보고의 義務) 監事는 理事가 株主總會에 제출할 議案 및 書類를 調査하여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事項이 있는지의 與否에 관하여 株主總會에 그 의견을 陳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84.4.10]

第413條의2 (監査錄의 作成) ①監事는 監査에 관하여 監査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監査錄에는 監査의 實施要領과 그 결과를 記載하고 監査를 實施한 監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本條新設 1984.4.10]

第414條 (監事의 責任) ①監事가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監事는 會社에 對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監事가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監事는 第三者에 對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③監事가 會社또는 第三者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 境遇에 理事도 그 責任이 있는 때에는 그 監事와 理事는 連帶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415條 (準用規定)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第386條, 第388條, 第400條, 第401條와 第403條乃至 第407條의 規定은 監事에 準用한다.<改正 1984.4.10, 2001.7.24>

第415條의2 (監査委員會) ①會社는 定款이 정한 바에 따라 監事에 갈음하여 第39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로서 監査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 監査委員會를 設置한 경우에는 監事를 둘 수 없다.

②監査委員會는 第393條의2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3人이상의 理事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가 委員의 3分의 1을 넘을 수 없다.

1. 會社의 業務를 담당하는 理事 및 被用者 또는 選任된 날부터 2年이내에 業務를 담당한 理事 및 被用者이었던 者
2. 最大株主가 自然人인 경우 本人·配偶者 및 直系尊·卑屬
3. 最大株主가 法人인 경우 그 法人의 理事·監事 및 被用者
4. 理事의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
5. 會社의 母會社 또는 子會社의 理事·監事 및 被用者
6. 會社와 去來關係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法人의 理事·監事 및 被用者
7. 會社의 理事 및 被傭者가 理事로 있는 다른 會社의 理事·監事 및 被用者

③監査委員會의 委員의 解任에 관한 理事會의 決議는 理事 總數의 3分의2이상의 決議로 하여야 한다.

④監査委員會는 그 決議로 委員會를 代表할 者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數人의 委員이 공동으로 委員會를 代表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監査委員會는 會社의 費用으로 專門家의 助力을 구할 수 있다.

⑥第296條·第312條·第367條·第387條·第391條의2第2項·第394條第1項·第400條·第402條 내지 第407條·第412條 내지 第414條·第447條의3·第447條의4·第450條·第527條의4·第530條의5第1項第9號·第530條의6第1項第10號 및 第534條의 規定은 監査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530條의5第1項第9號 및 第530條의6第1項第10號중 "監事"는 "監査委員會 委員"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12.31]

第4節 新株의 發行

第416條 (發行事項의 決定) 會社가 그 成立後에 株式을 發行하는 境遇에는 다음의 事項으로서 定款에 規定이 없는 것은 理事會가 이를 決定한다. 그러나 本法에 다른 規定이 있거나 定款으로 株主總會에서 決定하기로 定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84.4.10>

1. 新株의 種類와 數
2. 新株의 發行價額과 納入期日
3. 新株의 引受方法
4. 現物出資를 하는 者의 姓名과 그 目的인 財産의 種類, 數量, 價額과 이에 對하여 付與할 株式의 種類와 數
5. 株主가 가지는 新株引受權을 讓渡할 수 있는 것에 관한 事項
6. 株主의 請求가 있는 때에만 新株引受權證書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請求期間

第417條 (額面未達의 發行) ①會社가 成立한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한 後에 株式을 發行하는 境遇에는 會社는 第434條의 規定에 依한 株主總會의 決議와 法院의 認可를 얻어서 株式을 額面未達의 價額으로 發行할 수 있다.<改正 1962.12.12>

②前項의 株主總會의 決議에서는 株式의 最低發行價額을 定하여야 한다.

③法院은 會社의 現況과 諸般事情을 參酌하여 最低發行價額을 變更하여 認可할 수 있다. 이 境遇에 法院은 會社의 財産狀態 其他 必要한 事項을 調査하게 하기 爲하여 檢査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④第1項의 株式은 法院의 認可를 얻은 날로부터 1月內에 發行하여야 한다. 法院은 이 期間을 延長하여 認可할 수 있다.

第418條 (新株引受權의 내용 및 配定日의 指定·公告)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財務構造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③會社는 一定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가 第1項의 權利를 가진다는 뜻과 新株引受權을 讓渡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週間전에 公告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第354條第1項의 期間중인 때에는 그 期間의 初日의 2週間전에 公告하여야 한다.<新設 1984.4.10>

第**419**條 (新株引受權者에 대한 催告) ①會社는 新株의 引受權을 가진 者에 대하여 그 引受權을 가지는 株式의 種類 및 數와 一定한 期日까지 株式引受의 請約을 하지 아니하면 그 權利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416條第5號 및 第6號에 規定한 事項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會社가 無記名式의 株券을 발행한 때에는 第1項의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통지 또는 第2項의 公告는 第1項의 期日의 2週間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통지 또는 第2項의 公告에도 불구하고 그 期日까지 株式引受의 請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新株의 引受權을 가진 者는 그 權利를 잃는다.

[全文改正 1984.4.10]

第**420**條 (株式請約書) 理事는 株式請約書를 作成하여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야야 한다.<改正 1984.4.10>

1. 第289條第1項第2號 乃至 第4號에 揭記한 事項
2. 第302條第2項第7號·第9號 및 第10號에 揭記한 事項
3. 第416條第1號 내지 第4號에 揭記한 事項
4. 第417條의 規定에 依한 株式을 發行한 때에는 그 發行條件과 第455條의 規定에 依한 未償却額
5. 株主에 對한 新株引受權의 制限에 關한 事項 또는 特定한 第三者에게 이를 付與할 것을 定한 때에 그 事項
6. 株式發行의 決議年月日

第**420**條의**2** (新株引受權證書의 발행) ①第416條第5號에 規定한 事項을 정한 경우에 會社는 同條第6號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第419條第1項의 期日의 2週間전에 新株引受權證書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新株引受權證書에는 다음 事項과 番號를 記載하고 理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1. 新株引受權證書라는 뜻의 표시

2. 第420條에 規定한 事項

3. 新株引受權의 目的인 株式의 種類와 數

4. 一定期日까지 株式의 請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權利를 잃는다는 뜻

[本條新設 1984.4.10]

第**420**條의**3** (新株引受權의 讓渡) ①新株引受權의 讓渡는 新株引受權證書의 交付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第336條第2項 및 手票法 第21條의 規定은 新株引受權證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420**條의**4** (新株引受權證書에 의한 請約) ①新株引受權證書를 발행한 경우에는 新株引受權證書에 의하여 株式의 請約을 한다. 이 경우에는 第302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新株引受權證書를 喪失한 者는 株式請約書에 의하여 株式의 請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請約은 新株引受權證書에 의한 請約이 있는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本條新設 1984.4.10]

第**421**條 (株式에 對한 納入) 理事는 新株의 引受人으로 하여금 그 配定한 株數에 따라 納入期日에 그 引受한 各株에 對한 引受價額의 全額을 納入시켜야 한다.

第**422**條 (現物出資의 檢査) ①現物出資를 하는 者가 있는 境遇에는 理事는 第416條第4號의 事項을 調査하게 하기 爲하여 檢査人의 選任을 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認된 鑑定人의 鑑定으로 檢査人의 調査에 갈음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②法院은 檢査人의 調査報告書 또는 鑑定人 鑑定結果를 審査하여 第1項의 事項을 不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이를 變更하여 理事와 現物出資를 한 者에게 通告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③前項의 變更에 不服하는 現物出資를 한 者는 그 株式의 引受를 取消할 수 있다.

④法院의 通告가 있은 後 2週內에 株式의 引受를 取消한 現物出資를 한 者가 없는 때에는 第1項의 事項은 通告에 따라 變更된 것으로 본다.<改正 1998.12.28>

第**423**條 (株主가 되는 時期, 納入懈怠의 效果) ①新株의 引受人은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履行을 한 때에는 納入期日의 다음 날로부터 株主의 權利義務가 있다. 이 경우 第350條第3項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

다.<改正 1984.4.10, 1995.12.29>

②新株의 引受人이 納入期日에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履行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權利를 잃는다.

③第2項의 規定은 新株의 引受人에 對한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改正 1984.4.10>

第**424**條 (留止請求權) 會社가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하거나 顯著하게 不公正한 方法에 依하여 株式을 發行함으로써 株主가 不利益을 받을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그 株主는 會社에 對하여 그 發行을 留止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第**424**條의**2** (不公正한 價額으로 株式을 引受한 者의 責任) ①理事와 通謀하여 현저하게 不公正한 發行價額으로 株式을 引受한 者는 會社에 대하여 公正한 發行價額과의 差額에 상당한 金額을 支給할 義務가 있다.

②第403條 내지 第406條의 規定은 第1項의 支給을 請求하는 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理事의 會社 또는 株主에 대한 損害賠償의 責任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425**條 (準用規定) ①第302條第1項, 第3項, 第303條, 第305條第2項, 第3項, 第306條, 第318條와 第319條의 規定은 新株의 發行에 準用한다.

②第305條第2項의 規定은 新株引受權證書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新設 1984.4.10>

第**426**條 (未償却額의 登記) 第417條의 規定에 依한 株式을 發行한 境遇에 株式의 發行으로 因한 變更登記에는 第455條의 規定에 依한 未償却額을 登記하여야 한다.

第**427**條 (引受의 無效主張, 取消의 制限) 新株의 發行으로 因한 變更登記를 한 날로부터 1年을 經過한 後에는 新株를 引受한 者는 株式請約書 또는 新株引受權證書의 要件의 欠缺을 理由로하여 그 引受의 無效를 主張하거나 詐欺, 强迫 또는 錯誤를 理由로하여 그 引受를 取消하지 못한다. 그 株式에 對하여 株主의 權利를 行使한 때에도 같다.<改正 1962.12.12, 1984.4.10>

第**428**條 (理事의 引受擔保責任) ①新株의 發行으로 因한 變更登記가 있은 後에 아직 引受하지 아니한 株式이 있거나 株式引受의 請約이 取消된 때에는 理事가 이를 共同으로 引受한 것으로 본다.

②前項의 規定은 理事에 對한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429條 (新株發行無效의 訴) 新株發行의 無效는 株主·理事 또는 監事에 限하여 新株를 發行한 날로부터 6月內에 訴만으로 이를 主張할 수 있다.<改正 1984.4.10>

第430條 (準用規定) 第186條 내지 第189條·第190條 本文·第191條·第192條 및 第377條의 規定은 第429條의 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431條 (新株發行無效判決의 效力) ①新株發行無效의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新株는 將來에 對하여 그 效力을 잃는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會社는 遲滯없이 그 뜻과 一定한 期間內에 新株의 株券을 會社에 提出할 것을 公告하고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와 質權者에 對하여는 各別로 그 通知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期間은 3月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第432條 (無效判決과 株主에의 還給) ①新株發行無效의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會社는 新株의 株主에 對하여 그 納入한 金額을 返還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金額이 前條第1項의 判決確定時의 會社의 財産狀態에 비추어 顯著하게 不當한 때에는 法院은 會社 또는 前項의 株主의 請求에 依하여 그 金額의 增減을 命할 수 있다.

③第339條와 第340條第1項, 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5節 定款의 變更

第433條 (定款變更의 方法) ①定款의 變更은 株主總會의 決議에 依하여야 한다.

②定款의 變更에 關한 議案의 要領은 第363條의 規定에 依한 通知와 公告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434條 (定款變更의 特別決議) 第433條第1項의 決議는 출석한 株主의 議決權의 3分의 2이상의 數와 發行株式總數의 3分의 1이상의 數로써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435條 (種類株主總會) ①會社가 數種의 株式을 發行한 境遇에 定款을 變更함으로써 어느 種類의 株主에게 損害를 미치게될 때에는 株主總會의 決議外에 그 種類의 株主의 總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②第1項의 決議는 출석한 株主의 議決權의 3分의 2이상의 數와 그 종류의 發行株式總數의 3分의 1 이상의 數로써 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③株主總會에 關한 規定은 議決權없는 種類의 株式에 關한 것을 除外하고 第1項의 總會에 準用한다.

第436條 (同前) 前條의 規定은 第344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株式의 種類에 따라 特殊한 定함을 하는 境遇와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種類의 株主에게 損害를 미치게 될 境遇에 準用한다. <개정 2001.7.24>

第437條 削除 <1995.12.29>

第6節 資本의 減少

第438條 (資本減少의 決議) ①資本의 減少에는 第434條의 規定에 依한 決議가 있어야 한다.

②資本의 減少에 關한 議案의 要領은 第363條의 規定에 依한 通知와 公告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439條 (資本減少의 方法, 節次) ①資本減少의 決議에서는 그 減少의 方法을 定하여야 한다.

②第232條의 規定은 資本減少의 境遇에 準用한다.<改正 1984.4.10>

③社債權者가 異議를 함에는 社債權者 集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이 境遇에는 法院은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社債權者를 爲하여 異議의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第440條 (株式併合의 節次) 株式을 併合할 境遇에는 會社는 1月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그 뜻과 그 期間內에 株券을 會社에 提出할 것을 公告하고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와 質權者에 對하여는 各別로 그 通知를 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441條 (同前) 株式의 併合은 前條의 期間이 滿了한 때에 그 效力이 생긴다. 그러나 第232條의 規定에 依한 節次가 終了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終了한 때에 效力이 생긴다.

第442條 (新株券의 交付) ①株式을 併合하는 境遇에 舊株券을 會社에 提出할 수 없는 者가 있는 때에

는 會社는 그 者의 請求에 依하여 3月以上의 期間을 定하고 利害關係人에 對하여 그 株券에 對한 異議가 있으면 그 期間內에 提出할 뜻을 公告하고 그 期間이 經過한 後에 新株券을 請求者에게 交付할 수 있다.

②前項의 公告의 費用은 請求者의 負擔으로 한다.

第**443**條 (端株의 처리) ①併合에 適當하지 아니한 數의 株式이 있는 때에는 그 併合에 適當하지 아니한 部分에 對하여 發行한 新株를 競賣하여 各株數에 따라 그 代金을 從前의 株主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去來所의 時勢있는 株式은 去來所를 통하여 賣却하고, 去來所의 時勢없는 株式은 法院의 許可를 받아 競賣외의 方法으로 賣却할 수 있다.<改正 1984.4.10>

②第442條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改正 1984.4.10>

第**444**條 (同前) 前條의 規定은 無記名式의 株券으로서 第440條의 規定에 依한 提出이 없는 것에 準用한다.

第**445**條 (減資無效의 訴) 資本減少의 無效는 株主·理事·監事·淸算人·破産管財人 또는 資本減少를 承認하지 아니한 債權者에 限하여 資本減少로 因한 變更登記가 있는 날로부터 6月內에 訴만으로 主張할 수 있다.<改正 1984.4.10>

第**446**條 (準用規定) 第186條 내지 第189條·第190條 本文·第191條·第192條 및 第377條의 規定은 第445條의 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7節 會社의 計算

第**447**條 (財務諸表의 作成) 理事는 每決算期에 다음의 書類와 그 附屬明細書를 作成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1. 貸借對照表
2. 損益計算書
3.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

[全文改正 1984.4.10]

第447條의2 (營業報告書의 作成) ①理事는 每決算期에 營業報告書를 作成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營業報告書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에 관한 중요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447條의3 (財務諸表등의 제출) 理事는 定期總會會日의 6週間전에 第447條 및 第447條의2의 書類를 監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447條의4 (監査報告書) ①監事는 第447條의3의 書類를 받은 날로부터 4週間내에 監査報告書를 理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監査報告書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監査方法의 槪要

2. 會計帳簿에 記載할 事項의 記載가 없거나 不實記載된 경우 또는 貸借對照表나 損益計算書의 記載가 會計帳簿의 記載와 合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가 法令 및 定款에 따라 會社의 財産 및 損益狀態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貸借對照表 또는 損益計算書가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하여 會社의 財産 및 損益狀態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事由

5. 貸借對照表 또는 損益計算書의 作成에 관한 會計方針의 變更이 妥當한지의 與否와 그 이유

6. 營業報告書가 法令 및 定款에 따라 會社의 狀況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與否

7.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가 法令 및 定款에 적합한지의 與否

8.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가 會社財産의 狀態 기타의 事情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第447條의 附屬明細書에 記載할 事項의 記載가 없거나 不實記載된 경우 또는 會計帳簿·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나 營業報告書의 記載와 合致되지 아니하는 記載가 있는 경우에는 그 뜻

10. 理事의 職務遂行에 관하여 不正한 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의 規定에 違反하는 중대한 事實이 있는 경우에는 그 事實

11. 監査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本條新設 1984.4.10]

第448條 (財務諸表등의 備置·公示) ①理事는 定期總會會日의 1週間전부터 第447條 및 第447條의2의 書類와 監査報告書를 本店에 5年間, 그 謄本을 支店에 3年間 備置하여야 한다.<改正 1962.12.12, 1984.4.10>

②株主와 會社債權者는 營業時間內에 언제든지 第1項의 備置書類를 閱覽할 수 있으며 會社가 定한 費用을 支給하고 그 書類의 謄本이나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84.4.10>

第449條 (財務諸表등의 承認·公告) ①理事는 第447條 各號에 規定한 書類를 定期總會에 提出하여 그 承認을 要求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②理事는 第447條의2의 書類를 定期總會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新設 1984.4.10>

③理事는 第1項의 書類에 對한 總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遲滯없이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第450條 (理事, 監事의 責任解除) 定期總會에서 前條第1項의 承認을 한 後 2年內에 다른 決議가 없으면 會社는 理事와 監事의 責任을 解除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理事 또는 監事의 不正行爲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51條 (資本) 會社의 資本은 本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外에는 發行株式의 額面總額으로 한다.

第452條 (資産의 評價方法) 會社의 會計帳簿에 記載될 資産은 第31條第2號의 規定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의 方法에 의하여 評價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1. 流動資産은 取得價額 또는 製作價額에 依한다. 그러나 時價가 取得價額 또는 製作價額보다 顯著하게 낮은 때에는 時價에 依하여야 한다.

2. 削除 <1984.4.10>

3. 金錢債權은 債權金額에 依한다. 그러나 債權을 債權金額보다 낮은 價額으로 取得한 때 또는 이것에 準하는 境遇에는 相當한 減額을 할 수 있다. 推尋不能의 念慮가 있는 債權은 그 豫想額을 減額하여야 한다.

4. 去來所의 時勢있는 社債는 決算期前 1月의 平均價格에 依하고 그 時勢없는 社債는 取得價額에 依한다. 그러나 取得價額과 社債의 金額이 다른 때에는 相當한 增額 또는 減額을 할 수 있다. 推尋不能의 念慮가 있는 社債에는 第3號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社債에 準하는 것도 같다.

5. 去來所의 時勢있는 株式은 取得價額에 依한다. 그러나 決算期前 1月의 平均價格이 取得價額보다 낮을 때에는 그 時價에 依한다. 去來 其他의 必要上 長期間 保有할 目的으로 取得한 株式은 去來所의

時勢의 有無를 不拘하고 取得價額에 依한다. 그러나 發行會社의 財産狀態가 顯著하게 惡化된 때에는 相當한 減額을 하여야 한다. 有限會社 其他에 對한 出資의 評價에도 같다.

6. 營業權은 有償으로 承繼取得한 境遇에 限하여 取得價額을 記載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營業權을 取得한 後 5年內의 每決算期에 均等額以上을 償却하여야 한다.

第453條 (創業費의 計上) ①第290條第4號의 規定에 依한 支出額과 設立登記에 支出한 稅額은 貸借對照表資産의 部에 計上할 수 있다.

②前項의 計上金額은 會社成立後 또는 開業前에 利子를 配當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配當을 마친 後 5年內의 每決算期에 均等額以上의 償却을 하여야 한다.

第453條의2 (開業費의 計上) ①開業의 準備를 위하여 支出한 금액은 貸借對照表 資産의 部에 計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計上金額은 開業후 3年내의 每決算期에 均等額이상의 償却을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454條 (新株發行費用의 計上) ①新株를 發行한 境遇에는 그 發行에 必要한 費用의 額은 貸借對照表資産의 部에 計上할 수 있다.

②前項의 計上金額은 新株發行後 3年內의 每決算期에 均等額以上의 償却을 하여야 한다.

第455條 (額面未達金額의 計上) ①第417條의 規定에 依하여 株式을 發行한 境遇에는 額面未達金額의 總額은 貸借對照表資産의 部에 計上할 수 있다.

②前項의 計上金額은 株式發行後 3年內의 每決算期에 均等額以上의 償却을 하여야 한다.

第456條 (社債差額의 計上) ①社債를 募集한 境遇에 그 償還할 總額이 그 募集에 依한 實收額을 超過한 때의 그 差額은 貸借對照表資産의 部에 計上할 수 있다.

②前項의 計上金額은 社債償還期限內의 每決算期에 均等額以上의 償却을 하여야 한다.

③第454條의 規定은 社債發行에 必要한 費用의 額에 準用한다.

第457條 (配當建設利子의 計上) ①第463條의 規定에 依하여 配當한 金額은 貸借對照表資産의 部에 計上할 수 있다.

②前項의 計上金額은 開業後 年6分以上의 利益을 配當하는 境遇에는 그 6分을 超過한 金額과 同額

以上의 償却을 하여야 한다.

第457條의2 (硏究開發費의 計上) ①新製品 또는 新技術의 硏究 또는 開發과 관련하여 특별히 발생한 費用은 貸借對照表 資産의 部에 計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計上金額은 그 支出후 5年내의 每決算期에 均等額이상의 償却을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458條 (利益準備金) 會社는 그 資本의 2分의 1에 達할 때까지 每決算期의 金錢에 의한 利益配當額의 10分의 1이상의 金額을 利益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第459條 (資本準備金) ①會社는 다음의 金額을 資本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1998.12.28, 2001.7.24>

1. 額面以上의 株式을 發行한 때에는 그 額面을 超過한 金額

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7에 규정하는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1의3.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18에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 資本減少의 境遇에 그 減少額이 株式의 消却, 株金의 返還에 要한 金額과 缺損의 塡補에 充當한 金額을 超過한 때에는 그 超過金額

3. 會社合併의 境遇에 消滅된 會社로부터 承繼한 財産의 價額이 그 會社로부터 承繼한 債務額, 그 會社의 株主에게 支給한 金額과 合併後 存續하는 會社의 資本增價額 또는 合併으로 因하여 設立된 會社의 資本額을 超過한 때에는 그 超過金額

3의2. 第53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分割 또는 分割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된 會社 또는 存續하는 會社에 出資된 財産의 價額이 出資한 會社로부터 承繼한 債務額, 出資한 會社의 株主에게 지급한 금액과 設立된 會社의 資本額 또는 存續하는 會社의 資本增加額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4. 기타 資本去來에서 발생한 剩餘金

②第1項第3號 및 第3號의2의 초과금액중 消滅 또는 分割되는 會社의 利益準備金 기타 法定準備金은 合併후 또는 分割·分割合併후 存續 또는 設立되는 會社가 이를 承繼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第460條 (法定準備金의 使用) ①前2條의 準備金은 資本의 缺損塡補에 充當하는 境遇外에는 이를 處分하지 못한다.

②利益準備金으로 資本의 缺損의 塡補에 充當하고서도 不足한 境遇가 아니면 資本準備金으로 이에

充當하지 못한다.

第461條 (準備金의 資本轉入) ①會社는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準備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資本에 轉入할 수 있다. 그러나 定款으로 株主總會에서 決定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경우에는 株主에 대하여 그가 가진 株式의 數에 따라 株式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株에 미달하는 端數에 대하여는 第443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1項의 理事會의 決議가 있은 때에는 會社는 一定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株主名簿에 기재된 株主가 第2項의 新株의 株主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週間전에 公告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第354條第1項의 期間중인 때에는 그 期間의 初日의 2週間전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④第1項 但書의 경우에 株主는 株主總會의 決議가 있은 때로부터 第2項의 新株의 株主가 된다.

⑤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新株의 株主가 된 때에는 理事는 遲滯없이 新株를 받은 株主와 株主名簿에 記載된 質權者에 대하여 그 株主가 받은 株式의 種類와 數를 통지하고, 無記名式의 株券을 발행한 경우에는 第1項의 決議의 내용을 公告하여야 한다.

⑥第350條第3項 後段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新設 1995.12.29>

⑦第339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1984.4.10]

第462條 (利益의 配當) ①會社는 貸借對照表上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金額을 控除한 額을 限度로 하여 利益配當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1. 資本의 額
2. 그 決算期까지 積立된 資本準備金과 利益準備金의 合計額
3. 그 決算期에 積立하여야 할 利益準備金의 額

②前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利益을 配當한 때에는 會社債權者는 이를 會社에 返還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③第186條의 規定은 前項의 請求에 關한 訴에 準用한다.

第462條의2 (株式配當) ①會社는 株主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利益의 配當을 새로이 발행하는 株式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株式에 의한 配當은 利益配當總額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金額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第1項의 配當은 株式의 券面額으로 하며, 會社가 數種의 株式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株式으로 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③株式으로 配當할 이익의 금액중 株式의 券面額에 미달하는 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는 第443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95.12.29>

④株式으로 配當을 받은 株主는 第1項의 決議가 있는 株主總會가 終結한 때부터 新株의 株主가 된다. 이 경우 第350條第3項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95.12.29>

⑤理事는 第1項의 決議가 있는 때에는 遲滯없이 配當을 받을 株主와 株主名簿에 記載된 質權者에게 그 株主가 받을 株式의 種類와 數를 통지하고, 無記名式의 株券을 발행한 때에는 第1項의 決議의 내용을 公告하여야 한다.

⑥第340條第1項의 質權者의 權利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가 받을 株式에 미친다. 이 경우 第340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462**條의**3** (中間配當) ①年 1回의 決算期를 정한 會社는 營業年度중 1回에 한하여 理事會의 決議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株主에 대하여 金錢으로 利益을 配當(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定款으로 정할 수 있다.

②中間配當은 직전 決算期의 貸借對照表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各號의 금액을 공제한 額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1.직전 決算期의 資本의 額

2.직전 決算期까지 積立된 資本準備金과 利益準備金의 合計額

3.직전 決算期의 定期總會에서 이익으로 配當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中間配當에 따라 당해 決算期에 積立하여야 할 利益準備金

③會社는 당해 決算期의 貸借對照表상의 순자산액이 第462條第1項 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中間配當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24>

④당해 決算期 貸借對照表상의 순자산액이 第462條濟1項 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中間配當을 한 경우 理事는 會社에 대하여 連帶하여 그 差額(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賠償할 責任이 있다. 다만, 理事가 第3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

⑤第340條第1項, 第344條第1項, 第350條第3項(第423條第1項, 第516條第2項 및 第516條의9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第354條第1項, 第37條第1項, 第457條第2項, 第458條, 第464條 및 第625條第3號의 規定에 적용에 관하여는 中間配當을 第4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이익의 配當으로, 第350條第3項의 規定의 적용에 관하여는 第1項의 일정한 날을 營業年度末로본다.

⑥第399條第2項·第3項 및 第400條의 規定은 第4項의 理事의 責任에 관하여, 第462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中間配當을 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8.12.28]

第463條 (建設利子의 配當) ①會社는 그 目的인 事業의 性質에 依하여 會社의 成立後 2年以上 그 營業全部를 開始하기가 不能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定款으로 一定한 株式에 對하여 그 開業前 一定한 期間內에 一定한 利子를 그 株主에게 配當할 수 있음을 定할 수 있다. 그러나 그 利率은 年5分을 超過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定款의 規定 또는 그 變更은 法院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第464條 (利益等의 配當의 基準) 利益이나 利子의 配當은 各株主가 가진 株式의 數에 따라 支給한다. 그러나 第344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64條의2 (配當金支給時期) ①會社는 第464條의 規定에 의한 配當金을 第449條第1項의 승인 또는 第462條의3第1項의 決議가 있은 날부터 1月이내에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第449條第1項의 總會 또는 第462條의3第1項의 理事會에서 配當金의 支給時期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1998.12.28>

②第1項의 配當金의 支給請求權은 5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465條 削除 <1984.4.10>

第466條 (株主의 會計帳簿閱覽權) ①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以上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理由를 붙인 書面으로 會計의 帳簿와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②會社는 第1項의 株主의 請求가 不當함을 證明하지 아니하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改正 1998.12.28>

第467條 (會社의 業務, 財産狀態의 檢査) ①會社의 業務執行에 關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重大한 事實이 있음을 疑心할 事由가 있는 때에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以上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하게 하기 爲하여 法院에 檢査人의 選任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②檢査人은 그 調査의 結果를 法院에 報告하여야 한다.

③法院은 第2項의 報告에 依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代表理事에게 株主總會의 召集을 命할 수 있다. 第310條第2項의 規定은 이 境遇에 準用한다.<改正 1962.12.12, 1995.12.29>

④理事와 監事는 지체없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人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調査하여 이를 株主

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第467條의2 (利益供與의 금지) ①會社는 누구에게든지 株主의 權利行使와 관련하여 財産上의 利益을 供與할 수 없다.

②會社가 特定의 株主에 대하여 無償으로 財産上의 利益을 供與한 경우에는 株主의 權利行使와 관련하여 이를 供與한 것으로 推定한다. 會社가 特定의 株主에 대하여 有償으로 財産上의 利益을 供與한 경우에 있어서 會社가 얻은 利益이 供與한 利益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財産上의 利益을 供與한 때에는 그 利益을 供與받은 者는 이를 會社에 返還하여야 한다. 이 경우 會社에 대하여 對價를 支給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返還을 받을 수 있다.

④第403條 내지 第406條의 規定은 第3項의 利益의 返還을 請求하는 訴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468條 (使用人의 優先辨濟權) 身元保證金의 返還을 받을 債權 其他 會社와 使用人間의 雇傭關係로 因한 債權이 있는 者는 會社의 總財産에 對하여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그러나 質權이나 抵當權에 優先하지 못한다.

第8節 社債

第1款 通則

第469條 (社債의 募集) 會社는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社債를 募集할 수 있다.

第470條 (總額의 制限) ①社債의 總額은 最終의 貸借對照表에 의하여 會社에 現存하는 純資産額의 4倍를 초과하지 못한다.<改正 1995.12.29>

②削除 <1995.12.29>

③舊社債를 償還하기 爲하여 社債를 募集하는 境遇에는 舊社債의 額은 社債의 總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境遇에는 新社債의 納入期日, 數回에 分納하는 때에는 第1回의 納入期日로부터 6月內에 舊社債를 償還하여야 한다.

第471條 (社債募集의 制限) 會社는 前에 募集한 社債의 總額의 納入이 完了된 後가 아니면 다시 社債를 募集하지 못한다.

第472條 (社債의 金額) ①各社債의 金額은 1萬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②同一種類의 社債에서는 各社債의 金額은 均一하거나 最低額으로 整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第473條 (券面額 超過償還의 制限) 社債權者에게 償還할 金額이 券面額을 超過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超過額은 各社債에 對하여 同率이어야 한다.

第474條 (公募發行, 社債請約書) ①社債의 募集에 應하고자 하는 者는 社債請約書 2通에 그 引受할 社債의 數와 住所를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社債請約書는 理事가 이를 作成하고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1. 會社의 商號
2. 資本과 準備金의 總額
3. 最終의 貸借對照表에 依하여 會社에 現存하는 純財産額
4. 社債의 總額
5. 各社債의 金額
6. 社債發行의 價額 또는 最低價額
7. 社債의 利率
8. 社債의 償還과 利子支給의 方法과 期限
9. 社債를 數回에 分納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分納金額과 時期
10. 債券을 記名式 또는 無記名式에 限한 때에는 그 뜻
11. 前에 募集한 社債가 있는 때에는 그 償還하지 아니한 金額
12. 舊社債를 償還하기 爲하여 第470條第1項의 制限을 超過하여 社債를 募集하는 때에는 그 뜻
13.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가 있는 때에는 그 商號와 住所
14. 第13號의 委託을 받은 會社가 그 募集額이 總額에 達하지 못한 境遇에 그 殘額을 引受할 것을 約定한 때에는 그 뜻
15. 名義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그 姓名·住所 및 營業所

③社債發行의 最低價額을 定한 境遇에는 應募者는 社債請約書에 應募價額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475條 (總額引受의 方法) 前條의 規定은 契約에 依하여 社債의 總額을 引受하는 境遇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가 社債의 一部를 引受하는 境遇에는 그 一部에 對하여도 같다.

第476條 (納入) ①社債의 募集이 完了한 때에는 理事는 遲滯없이 引受人에 對하여 各社債의 全額 또는 第1回의 納入을 시켜야 한다.

②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는 그 名義로 委託會社를 爲하여 第474條第2項과 前項의 行爲를 할 수 있다.

第477條 削除 <1984.4.10>

第478條 (債券의 發行) ①債券은 社債全額의 納入이 完了한 後가 아니면 이를 發行하지 못한다.

②債券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代表理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62.12.12, 1995.12.29>

1. 債券의 番號
2. 第474條第2項第1號, 第4號, 第5號, 第7號, 第8號, 第10號와 第13號에 揭記한 事項

第479條 (記名社債의 移轉) ①記名社債의 移轉은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社債原簿에 記載하고 그 姓名을 債券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會社 其他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第337條第2項의 規定은 記名社債의 移轉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新設 1984.4.10>

第480條 (記名式, 無記名式間의 轉換) 社債權者는 언제든지 記名式의 債券을 無記名式으로, 無記名式의 債券을 記名式으로 할 것을 會社에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債券을 記名式 또는 無記名式에 限할 것으로 定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81條 (受託會社의 辭任)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는 社債를 發行한 會社와 社債權者集會의 同意를 얻어서 辭任할 수 있다.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 法院의 許可를 얻은 때에도 같다.

第482條 (受託會社의 解任)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가 그 事務를 處理함에 不適任하거나 其他 正當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法院은 社債를 發行하는 會社 또는 社債權者集會의 請求에 依하여 이를 解任할 수 있다.<改正 1962.12.12>

第483條 (受託會社의 事務承繼者) ①前2條의 境遇에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가 없게된 때에는 社債를 發行한 會社와 社債權者集會의 一致로써 그 事務의 承繼者를 定할 수 있다.

②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利害關係人은 事務承繼者의 選任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第484條 (受託會社의 權限) ①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는 社債權者를 爲하여 社債의 償還을 받음에 必要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다.

②前項의 會社가 社債의 償還을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그 뜻을 公告하고 알고 있는 社債權者에 對하여는 各別로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境遇에 社債權者는 債券과 相換하여 償還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第485條 (2以上의 受託會社가 있는 境遇의 權限, 義務) ①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가 2以上있을 때에는 그 權限에 屬하는 行爲는 共同으로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各會社는 社債權者에 對하여 連帶하여 償還額을 支給할 義務가 있다.

第486條 (利券欠缺의 境遇) ①利券있는 無記名式의 社債를 償還하는 境遇에 利券이 欠缺된 때에는 그 利券에 相當한 金額을 償還額으로부터 控除한다.

②前項의 利券所持人은 언제든지 그 利券과 相換하여 控除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第487條 (元利請求權의 時效) ①社債의 償還請求權은 1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②第484條第3項의 請求權도 前項과 같다.

③社債의 利子와 前條第2項의 請求權은 5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第488條 (社債原簿) 會社는 社債原簿를 作成하고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社債權者의 姓名과 住所
2. 債券의 番號
3. 第474條第2項第4號, 第5號, 第7號 乃至 第9號와 第13號에 揭記한 事項
4. 各社債의 納入金額과 納入年月日
5. 債券의 發行年月日
6. 各社債의 取得年月日
7. 無記名式의 債券을 發行한 때에는 그 種類, 數, 番號와 發行年月日

第489條 (準用規定) ①第353條의 規定은 社債應募者 또는 社債權者에 對한 通知와 催告에 準用한다.

②第333條의 規定은 社債가 數人의 共有에 屬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第2款 社債權者集會

第490條 (決議事項) 社債權者集會는 本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外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社債權者의 利害에 重大한 關係가 있는 事項에 關하여 決議를 할 수 있다.

第491條 (召集權者) ①社債權者集會는 社債를 發行한 會社 또는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가 召集한다.

②社債總額의 10分의 1以上에 該當하는 社債權者는 會議의 目的인 事項과 召集의 理由를 記載한 書面을 前項의 會社에 提出하여 社債權者集會의 召集을 請求할 수 있다.

③第366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④無記名式의 債券을 가진 者는 그 債券을 供託하지 아니하면 前2項의 權利를 行使하지 못한다.

第492條 (議決權) ①各社債權者는 社債의 最低額마다 1個의 議決權이 있다.

②無記名式의 債券을 가진 者는 會日로부터 1週間前에 債券을 供託하지 아니하면 그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第493條 (社債發行會社 또는 受託會社의 代表者의 出席) ①社債를 發行한 會社 또는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는 그 代表者를 社債權者集會에 出席하게 하거나 書面으로 意見을 提出할 수 있다.

②社債權者集會의 召集은 前項의 會社에 通知하여야 한다.

③第363條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通知에 準用한다.

第494條 (社債發行會社의 代表者의 出席請求) 社債權者集會 또는 그 召集者는 必要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社債를 發行한 會社에 對하여 그 代表者의 出席을 請求할 수 있다.

第495條 (決議의 方法) ①第434條의 規定은 社債權者集會의 決議에 準用한다.

②第481條 乃至 第483條와 前條의 同意 또는 請求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出席한 社債權者의 議決權의 過半數로 決定할 수 있다.

第496條 (決議의 認可의 請求) 社債權者集會의 召集者는 決議한 날로부터 1週間內에 決議의 認可를 法

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第497條 (決議의 不認可事由) ①法院은 다음의 境遇에는 社債權者集會의 決議를 認可하지 못한다.

1. 社債權者集會召集의 節次 또는 그 決議方法이 法令이나 社債募集의 計劃書의 記載에 違反한 때
2. 決議가 不當한 方法에 依하여 成立하게된 때
3. 決議가 顯著하게 不公正한 때
4. 決議가 社債權者의 一般의 利益에 反하는 때

②前項 第1號와 第2號의 境遇에는 法院은 決議의 內容 其他 모든 事情을 參酌하여 決議를 認可할 수 있다.

第498條 (決議의 效力) ①社債權者集會의 決議는 法院의 認可를 얻음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②社債權者集會의 決議는 總社債權者에 對하여 그 效力이 있다.

第499條 (決議의 認可, 不認可의 公告) 社債權者集會의 決議에 對하여 認可 또는 不認可의 決定이 있은 때에는 社債를 發行한 會社는 遲滯없이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500條 (社債權者集會의 代表者) ①社債權者集會는 社債總額의 500分의 1以上을 가진 社債權者中에서 1人 또는 數人의 代表者를 選任하여 그 決議할 事項의 決定을 委任할 수 있다.

②代表者가 數人인 때에는 前項의 決定은 그 過半數로 한다.

第501條 (決議의 執行) 社債權者集會의 決議는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가 없는 때에는 前條의 代表者가 執行한다. 그러나 社債權者集會의 決議로써 따로 執行者를 定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02條 (數人의 代表者, 執行者가 있는 境遇) 第485條第1項의 規定은 代表者나 執行者가 數人인 境遇에 準用한다.

第503條 (社債償還에 關한 決議의 執行) 第484條, 第485條第2項과 第487條第2項의 規定은 代表者나 執行者가 社債의 償還에 關한 決議를 執行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第504條 (代表者, 執行者의 解任等) 社債權者集會는 언제든지 代表者나 執行者를 解任하거나 委任한 事項을 變更할 수 있다.

第505條 (期限의 利益의 喪失) ①會社가 社債의 利子의 支給을 懈怠한 때 또는 定期에 社債의 一部를 償還하여야 할 境遇에 그 償還을 懈怠한 때에는 社債權者集會의 決議에 依하여 會社에 對하여 一定한 期間內에 그 辨濟를 하여야 한다는 뜻과 그 期間內에 辨濟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社債의 總額에 關하여 期限의 利益을 잃는다는 뜻을 通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期間은 2月을 내리지 못한다.

②前項의 通知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③會社가 第1項의 期間內에 辨濟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社債의 總額에 關하여 期限의 利益을 잃는다.

第506條 (期限利益喪失의 公告, 通知)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會社가 期限의 利益을 잃은 때에는 前條 第1項의 決議를 執行하는 者는 遲滯없이 그 뜻을 公告하고 알고 있는 社債權者에 對하여는 各別로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第507條 (受託會社等의 報酬, 費用) ①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 代表者 또는 執行者에 對하여 줄 報酬와 그 事務處理에 要할 費用은 社債를 執行한 會社와의 契約에 約定이 있는 境遇外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會社로 하여금 이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62.12.12>

②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 代表者 또는 執行者는 償還을 받은 金額에서 社債權者에 優先하여 前項의 報酬와 費用의 辨濟를 받을 수 있다.

第508條 (社債權者集會의 費用) ①社債權者集會에 關한 費用은 社債를 發行한 會社가 負擔한다.

②第496條의 請求에 關한 費用은 會社가 負擔한다. 그러나 法院은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全部 또는 一部에 關하여 따로 負擔者를 定할 수 있다.

第509條 (數種의 社債있는 境遇의 社債權者集會) 數種의 社債를 發行한 境遇에는 社債權者集會는 各種類의 社債에 關하여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510條 (準用規定) ①第363條, 第368條第3項, 第4項, 第369條第2項과 第371條 乃至 第373條의 規定은 社債權者集會에 準用한다.

②社債權者集會의 議事錄은 社債를 發行한 會社가 그 本店에 備置하여야 한다.

③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와 社債權者는 營業時間內에 언제든지 前項의 議事錄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第511條 (受託會社에 依한 取消의 訴) ①會社가 어느 社債權者에 對하여 한 辨濟, 和解 其他의 行爲가 顯著하게 不公正한 때에는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는 訴만으로 그 行爲의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訴는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가 取消의 原因인 事實을 안 때로부터 6月, 行爲가 있는 때로부터 1年內에 提起하여야 한다.

③第186條와 民法 第406條第1項 但書 및 第407條의 規定은 第1項의 訴에 準用한다.

第512條 (代表者等에 依한 取消의 訴) 社債權者集會의 決議가 있는 때에는 代表者 또는 執行者도 前條第1項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그러나, 行爲가 있은 때로부터 1年內에 限한다.

第3款 轉換社債

第513條 (轉換社債의 발행) ①會社는 轉換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다음의 事項으로서 定款에 規定이 없는 것은 理事會가 이를 決定한다. 그러나, 定款으로 株主總會에서 이를 決定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轉換社債의 總額
2. 轉換의 條件
3. 轉換으로 인하여 발행할 株式의 내용
4. 轉換을 請求할 수 있는 期間
5. 株主에게 轉換社債의 引受權을 준다는 뜻과 引受權의 目的인 轉換社債의 額
6. 株主외의 者에게 轉換社債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轉換社債의 額

③株主외의 者에 대하여 轉換社債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轉換社債의 額, 轉換의 條件, 轉換으로 인하여 발행할 株式의 내용과 轉換을 請求할 수 있는 期間에 관하여 定款에 規定이 없으면 第434條의 決議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

④第3項의 決議에 있어서 轉換社債의 발행에 관한 議案의 要領은 第363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와 公告에 記載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84.4.10]

第513條의2 (轉換社債의 引受權을 가진 株主의 權利) ①轉換社債의 引受權을 가진 株主는 그가 가진 株式의 數에 따라서 轉換社債의 配定을 받을 權利가 있다. 그러나 各 轉換社債의 金額중 最低額에 미달하는 端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418條第2項의 規定은 株主가 轉換社債의 引受權을 가진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513條의3 (轉換社債의 引受權을 가진 株主에 대한 催告) ①株主가 轉換社債의 引受權을 가진 경우에는 各 株主에 대하여 그 引受權을 가지는 轉換社債의 額, 發行價額, 轉換의 條件, 轉換으로 인하여 발행할 株式의 내용, 轉換을 請求할 수 있는 期間과 一定한 期日까지 轉換社債의 請約을 하지 아니하면 그 權利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419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514條 (轉換社債發行의 節次) ①轉換社債에 關하여는 社債請約書, 債券과 社債原簿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1. 社債를 株式으로 轉換할 수 있다는 뜻
2. 轉換의 條件
3. 轉換으로 因하여 發行할 株式의 內容
4. 轉換을 請求할 수 있는 期間
5.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理事會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規定

②削除 <1984.4.10>

第514條의2 (轉換社債의 登記) ①會社가 轉換社債를 발행한 때에는 第476條의 規定에 의한 納入이 完了된 날로부터 2週間내에 本店의 所在地에서 轉換社債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할 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轉換社債의 總額
2. 各 轉換社債의 金額
3. 各 轉換社債의 納入金額
4. 第514條第1號 내지 第4號에 정한 事項

③第183條의 規定은 第2項의 登記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外國에서 轉換社債를 모집한 경우에 登記할 事項이 外國에서 생긴 때에는 登記期間은 그 통지가 到達한 날로부터 起算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515條 (轉換의 請求) ①轉換을 請求하는 者는 請求書 2通에 債券을 添附하여 會社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請求書에는 轉換하고자 하는 社債와 請求의 年月日을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516條 (準用規定) ①第346條第2項, 第424條 및 第424條의2의 規定은 轉換社債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②第339條, 第348條, 第350條 및 第351條의 規定은 社債의 轉換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5.12.29>

[全文改正 1984.4.10]

第4款 新株引受權附社債

第516條의2 (新株引受權附社債의 발행) ①會社는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다음의 事項으로서 定款에 規定이 없는 것은 理事會가 이를 決定한다. 그러나 定款으로 株主總會에서 이를 決定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總額
2. 各 新株引受權附社債에 부여된 新株引受權의 내용
3. 新株引受權을 行使할 수 있는 期間
4. 新株引受權만을 讓渡할 수 있는 것에 관한 事項
5. 新株引受權을 行使하려는 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償還에 갈음하여 그 發行價額으로 第516條의8第1項의 納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6. 削除 <1995.12.29>
7. 株主에게 新株引受權附社債의 引受權을 준다는 뜻과 引受權의 目的인 新株引受權附社債의 額
8. 株主외의 者에게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新株引受權附社債의 額

③各 新株引受權附社債에 부여된 新株引受權의 行使로 인하여 발행할 株式의 發行價額의 合計額은 各 新株引受權附社債의 金額을 초과할 수 없다.

④株主외의 者에 대하여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額, 新株引受權의 내용과 新株引受權을 行使할 수 있는 期間에 관하여 定款에 規定이 없으면 第434條의 決議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

에 한한다)로서 당해 法人 또는 會社에 대한 取消가 있는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이 法 또는 外國證券法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 解任되거나 免職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全文改正 1982.3.29]

第33條의2 削除 <1987.11.28>

第34條 削除 <1987.11.28>

第35條 (認可事項) ①證券會社는 會社를 合併하거나 營業의 전부(이에 準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讓渡하거나 讓受하고자 할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第3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97.1.13, 1998.5.25, 1999.2.1, 1999.5.24>

②金融監督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認可與否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00.1.21>

第36條 (報告事項) 證券會社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1. 任員을 選任 또는 解任한 때

2. 支店 기타의 營業所를 新設한 때 또는 本店·支店 기타의 營業所의 位置를 변경하거나 그 營業을 중지·再開 또는 廢止한 때

3. 本人과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親族 기타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所有하는 株式의 數가 가장 많은 者가 변경된 때

4. 商號를 변경한 때

4의2. 會社의 解散事由가 발생한 때

5. 第1號 내지 第4號의2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第37條 (證券業廢止의 公告) 證券會社가 證券業 또는 支店 기타 營業所의 營業을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廢止 30日전에 2이상의 日刊新聞紙에 3回이상 公告

하여야 하며, 알고있는 債權者에게는 個別로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82.3.29>

第38條 削除 <1991.12.31>

第39條 削除 <1997.12.13>

第40條 삭제 <2002.1.26>

第41條 (支店 기타의 營業所에 대한 責任) 證券會社는 支店 기타의 營業所가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의 去來를 함에 있어서 他人에게 損害를 끼친 때에는 被害者에 대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第42條 (任員등의 賣買去來의 制限) 證券會社의 任員 및 職員은 給與額에 대한 一定率을 證券貯蓄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名義로 하든지 本人의 計算으로 有價證券의 賣買去來 또는 그 委託을 하지 못한다.

第43條 (去來形態의 明示) 證券會社는 顧客으로부터 有價證券의 去來에 관한 注文을 받은 때에는 事前에 그 顧客에 대하여 당해 賣買에 있어서 자기가 相對方이 되는가 仲介나 代理 또는 委託賣買의 方法에 의하는가의 區別을 明確히 하여야 한다.

第44條 (自己契約의 禁止) 證券會社는 有價證券에 관한 同一한 賣買에 있어서 그 本人이 됨과 동시에 相對方의 委託賣買人, 仲介人 또는 代理人이 되지 못한다.

第44條의2 삭제 <2001.3.28>

第44條의3 (顧客預託金의 別途預置 등) ①증권회사는 顧客預託金(顧客으로부터 有價證券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預託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자기소유의 財産과 구분하여 第145條의 規定에 의한 證券金融會社(이하 "預置機關"이라 한다)에 예치(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2.1.26>

②證券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置機關에 顧客預託金을 預置하는 경우에는 그 顧客預託金이 顧客의 財産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顧客預託金을 預置한 證券會社(이하 "預置證券會社"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외에는 預置機關에 預置한 顧客預託金을 讓渡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相計·押留(假押留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④預置證券會社는 당해證券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預置機關에 預置한 顧客預託金을 引出하여 顧客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證券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그 사실과 顧客預託金의 支給時期·場所 기타 顧客預託金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2이상의 日刊新聞에 公告하여야 한다.

1. 營業의 中止決議를 한 때
2. 營業의 停止命令을 받은 때
3. 許可의 取消를 받은 때
4. 解散의 決議를 한 때
5. 破産宣告를 받은 때
6. 기타 第1號 내지 第5號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⑤預置機關은 당해 預置機關이 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預置證券會社에 대하여 預置한 顧客預託金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預置機關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顧客預託金을 運用하여야 한다.

1. 國債·地方債의 買入
2. 政府·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이 지급을 보증한 債券의 買入
3. 기타 顧客預託金의 안전한 運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會社가 預置機關에 預置하여야 하는 顧客預託金의 범위, 預置比率, 預置된 顧客預託金의 引出에 관한 사항, 預置機關의 顧客預託金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顧客預託金의 預置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預置比率은 證券會社의 財務狀況등을 고려하여 證券會社別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1]

第44條의4 (顧客預託有價證券등의 預託) ①證券會社는 賣買去來의 受託 기타의 去

來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顧客의 有價證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券 또는 證書를 第17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證券預託院(이하 이 條에서 "證券預託院"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預託하여야 한다.

②證券會社는 보유자산을 運用함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有價證券·證券 및 證書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證券預託院에 지체없이 預託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1]

第**45**條 삭제<1999.2.1>

第**46**條 (賣買去來 등의 통지) 證券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顧客의 注文에 의한 賣買 기타 去來內容등을 당해 顧客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7.1.13]

第**46**條의**2** (自己株式의 예외취득) 證券會社는 顧客의 委託을 받은 경우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의 賣買數量單位미만의 自己株式을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自己株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7.1.13]

第**47**條 (營業報告書) ①證券會社는 매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3月間·6月間·9月間 및 12月間의 營業實績·財務狀態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營業報告書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證券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報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는 날부터 1年間 本店과 支店 기타 營業所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一般人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報告書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1]

第**48**條 (任員의 兼職) 證券會社의 常勤任員은 顧客과의 利害가 相衝되거나 당해證

券會社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인의 常務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00.1.21, 2001.3.28>
[전문개정 1999.2.1]

第49條 (信用供與) ①證券會社는 有價證券에 관련하여 顧客에게 金錢의 融資 또는 有價證券의 貸付의 方法으로 信用을 供與할 수 있다.

②第1項의 信用供與의 方法과 內容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13, 1998.5.25, 2000.1.21>

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信用供與에 대하여 그 限度와 擔保의 比率 및 徵收方法등에 관한 規程을 정하여야 한다.<改正 1982.3.29, 1998.1.8>

④證券會社는 그 引受한 有價證券을 賣却하는 경우에 引受한 날로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는 당해 有價證券에 대한 買受代金의 貸付 기타 信用供與를 하지 못한다.

第50條 (證券貯蓄業務) ①證券會社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規程에 의하여 證券貯蓄業務를 營爲할 수 있다.<改正 1982.3.29, 1998.1.8>

②第1項의 證券貯蓄業務의 方法과 內容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13, 1998.5.25, 2000.1.21>

第51條 (兼業의 제한) ①證券會社는 다음 各號의 業務외의 다른 業務를 兼營하지 못한다.

1. 金融業(이 法 또는 金融關聯法令에서 規定하고 있는 業務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서 해당法令에서 證券會社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業務

2.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業으로서 그 業務의 성격상 證券會社가 兼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金融監督委員會가 認可한 業務

3.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附隨業務

가. 證券業과 관련된 業務

나. 證券會社가 소유하고 있는 人力·資産 또는 設備 등을 활용하는 業務

다. 기타 다른 法令에 의하여 許可·認可·승인 또는 登錄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

②證券會社가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金融業으로서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 또는 認可를 받거나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을 한 業務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1.21]

第52條 (不當勸誘行爲등의 禁止) 證券會社 또는 그 任·職員은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82.3.29, 1997.1.13, 1998.5.25, 2000.1.21>

1.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있어서 顧客에 대하여 당해 去來에서 發生하는 損失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할 것을 約束하고 勸誘하는 行爲

2. 有價證券의 發行業務와 관련하여 顧客을 誘致하기 위하여 顧客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財産上의 利益을 제공하거나 자기의 去來上의 地位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顧客의 事業活動을 제한하는 行爲

3. 第1號 및 第2號의 行爲 이외에 有價證券의 발행 또는 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投資者의 보호 또는 去來의 公正을 沮害하거나 證券業의 信用을 墜落시키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行爲

第52조의2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는 증권회사의 업무방법·제한 등) ①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및 결제방법, 결제책임 등 결제에 관한 사항

4.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증권회사의 위탁증거금 등 매매거래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 발행인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거래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매매의 중개의 개폐·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매매의 중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제49조·제50조 및 제5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③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매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상장주식 또는 협회에 등록된 주식인 경우 각각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④제117조의 규정은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43조·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당해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2001.3.28]

第52條의3 (任意賣買의 금지) 證券會社 任·職員은 顧客 또는 그 代理人으로부터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관한 委託을 받지 아니하고는 顧客으로부터 預託받은 財産으로 有價證券의 賣買去來를 할 수 없다.

[本條新設 1997.1.13]

第52條의4 (證券會社 등에 대한 不當要求 금지) 누구든지 證券會社가 영위하는 業務와 관련한 手數料 지급을 대가로 부당하게 당해 證券會社 또는 그 任·職員으로부터 金錢·서비스 기타 財産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자기 또는 第3者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本條新設 1997.1.13]

第53條 (檢査) ①證券會社는 그 業務와 財産에 관하여 金融監督院 院長(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8.1.8>

②金融監督院長은 檢査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證券會社에 대하여 業務 또는 財産에 관한 보고, 資料의 제출, 證人의 출석, 證言 및 의견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改正 1998.1.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여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④金融監督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한 때에는 그 報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 法 기타 證券에 관한 法令, 이 法에 의한 處分 또는 金融監督委員會·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한 證券先物委員會(이하 "證券先物委員會"라 한다) 및 證券去來所의 規程에 違反한 事實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意見書를 添附하여야 한다.<改正 1998.1.8>

⑤金融監督委員會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書와 意見書를 審議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1994.1.5, 1997.1.13, 1998.1.8, 1998.5.25, 1999.5.24, 2000.1.21>

1. 證券會社가 第5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證券業의 許可取消
2. 第1號의 경우를 제외하고 證券會社가 그 業務執行上 違法 또는 부당한 行爲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당해 證券會社에 대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停止命令, 任員의 解任要求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

⑥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⑦金融監督委員會는 檢査의 방법·節次, 檢査結果에 대한 措置基準 기타 檢査業務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新設 1997.1.13, 1998.1.8>

第**54**條 (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權) 金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過度한 投機去來의 防止와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證券會社에 대하여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1998.1.8>

第**54**條의**2** (自己資本規制比率의 유지) ①證券會社는 第1號 및 第2號의 금액을 合計한 금액에서 第3號의 금액을 差減하여 算定한 금액을 總危險額(당해證券會社의 資産 및 負債에 내재하거나 業務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換算하여 合計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나눈 比率(이하 "自己資本規制比率"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資産總額에서 負債總額을 差減한 금액
2. 流動資産에 설정한 貸損充當金, 後順位借入金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3. 固定資産의 評價額, 先給金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②證券會社는 매 分期의 末日(이하 이 條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自己資本規制比率을 算定하여 그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준일 이후 45일이 경과한 날부터 3月間 本店과 支店 기타 營業所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一般人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自己資本規制比率을 算定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54**條의**3** (資産運用의 건전성) ①證券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1. 당해 會社의 最大株主(第54條의5第4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最大株主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또는 主要株主(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株主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발행한 有價證券을 所有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供與하는 행위

가.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다. 당해 회사의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他人을 위하여 債務의 履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증하는 행위

4. 당해 會社의 最大株主 또는 主要株主가 발행한 株式·債券 및 기업어음(企業이 資金調達을 目的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초과하여 所有하는 행위

5. 第1號 내지 第4號외에 證券會社의 건전한 資産運用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1]

第54條의4 (內部統制基準) ①證券會社는 法令을 준수하고, 資産運用을 건전하게 하며, 顧客을 보호하기 위하여 任·職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條에서 "內部統制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證券會社는 內部統制基準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內部統制基準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調査하여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에 보고하는 者(이하 "遵法監視人"이라 한다)를 1人이상 두어야 한다.

③증권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④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1.3.28>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2. 제3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본조신설 2000.1.21]

第**54**條의**5** (社外理事의 選任) ①證券會社(資産規模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券會社에 한한다)는 社外理事가 理事 總數의 2分의 1 이상이 되도록 理事會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社外理事는 3人이상이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會社는 社外理事候補를 추천하기 위하여 商法 第39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이하 이 條에서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는 社外理事가 總 委員의 2分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會社의 경우 株主總會에서 社外理事를 選任하고자 하는 때에는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의 추천을 받은 者 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증권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제191조의14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1.3.28>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會社의 社外理事가 되지 못하며 社外理事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職을 상실한다.

1. 第191條의12第3項第1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者

2. 당해會社의 株主로서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를 기준으로 本人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所有하는 柱式의 數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本人(이하 "最大株主"라 한다)

3. 最大株主의 특수관계인

4. 당해會社의 主要株主(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株主를 말한다) 및 그의 配偶者와 直系尊卑屬

5. 당해會社 또는 系列會社(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系列會社를 말한다)의 任·職員(常務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거나 최근 2年이내에 任·職員이었던 者

6. 당해會社의 任員의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

7. 당해會社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去來關係가 있거나 사업상 競爭關係 또

는 協力關係에 있는 法人의 任·職員이거나 최근 2年이내에 任·職員이었던 者

8. 당해會社의 任·職員이 非常任理事로 있는 會社의 任·職員

9. 기타 社外理事로서의 職務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會社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會社는 社外理事의 辭任·死亡 등의 사유로 인하여 社外理事의 數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會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株主總會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54**條의**6** (監査委員會) ①證券會社(資産規模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券會社에 한한다)는 商法 第4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이하 "監査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監査委員會는 總 委員의 3分의 2이상을 社外理事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③社外理事가 아닌 監査委員會의 委員은 第191條의12第3項 各號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第191條의1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常勤監事 또는 監査委員會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으로 在任중인 者는 第191條의12第3項第6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監査委員會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이 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會社는 社外理事의 辭任·死亡 등의 사유로 인하여 社外理事의 數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株主總會에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商法 第415條의2第2項 但書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商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3.28>

[본조신설 2000.1.21]

第**55**條 (許可의 取消) ①金融監督委員會는 證券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理由를 提示하고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改正 1997.1.13, 1998.5.25,

1999.2.1, 1999.5.24, 2000.1.21>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證券業의 許可를 받은 때

2. 許可內容 또는 許可條件에 위반하거나 許可를 받은 날부터 6月이내에 營業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業務에 관하여 不正한 方法으로 他人으로부터 金錢 또는 有價證券의 交付를 받거나 他人에게 交付할 金錢 또는 有價證券을 取得한 때

4.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정지의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받은 날로부터 1月(營業停止의 命令을 하면서 1月을 초과하는 補正期間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당해 條件을 補正하지 아니한 때

5. 有價證券市場 및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 기타의 去來에 관하여 契約에 違反하거나 受渡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6. 第35條第1項·第54條의2第1項·第54條의3·第54條의5·第54條의6 또는 第63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7.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8. 第1號 내지 第7號 이외에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하여 證券會社로서의 業務遂行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證券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業의 許可가 取消된 때에는 解散한다.<신설 2000.1.21>

③第32條의2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取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신설 2000.1.21>

第56條 (殘務의 終結) 證券會社가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의 取消(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관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를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스스로 營業을 廢止하는 때에는 그 證券會社가 행한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의 去來를 終結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證券會社 또는 그 承繼人은 그 賣買 기타의 去來를 終結시키는 범위안에서 證券會社로 본다.<개정 1999.2.1>

第57條 (營業의 정지등) ①金融監督委員會는 證券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改正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2002.1.26>

1. 제42조·第44條·제44조의3·제44조의4·제47조·제49조 내지 제52조·제52조의2 또는 第54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2.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第3項 또는 第53條第5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任員解任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營業의 중지 또는 解散을 決議한 경우로서 公益과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第5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정지의 경우에 準用한다.

③金融監督委員會는 證券會社가 第36條·第43條·第44條·第46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第52條의 規定에 違反한 任員에 대하여는 理由를 提示하고 그 任員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1982.3.29, 1998.1.8, 1999.2.1>

第**58**條 (任員의 責任) ①證券會社의 理事 또는 監事(監査委員會가 設置된 경우에는 監査委員會 委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故意 또는 過失로 그 任務를 懈怠하거나 會社의 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第3者에게 損害를 끼친 때에는 理事·監事 및 最大株主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第3者에게 損害를 끼친 行爲가 最大株主의 要求 또는 同意에 의한 것이 아님을 證明하는 最大株主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82.3.29, 2000.1.21>

②第1項의 規定은 당해 證券會社의 賠償責任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경우에는 商法 第399條第2項·第3項 및 第414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9**條 (情報의 제공 또는 漏泄의 禁止) ①證券會社의 任員 및 職員은 證券會社를 통하여 有價證券을 賣買하거나 賣買하고자 하는 委託者(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證券貯蓄을 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書面에 의한 要求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는 他人에게 당해 委託者의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의 去來와 그 預託한 金錢 또는 有價證券의 內容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거나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監督機關의 業務上 필요에 의하여 檢査를 받는 경우 또는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要求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監督機關의 業務上 필요에 의하여 情報를 知得한 者는 그 知得한 情報를 他人에게 제공 또는 漏泄하거나 그 目的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0**條 (情報提供要求의 禁止) ①法院의 提出命令 또는 法官이 發付한 令狀이 있는 경우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證券會社의 任員 및

職員에 대하여 第59條第1項에 規定하는 情報의 제공을 要求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情報의 제공을 要求할 수 있는 때에도 그 質問 또는 調査의 內容은 필요한 범위에 局限하여야 한다.

第61條 (不當調査의 拒否) 證券會社의 任員 또는 職員은 第60條의 規定에 違反된 要求·質問 또는 調査에 대하여는 그 理由를 들어 이를 拒否하여야 한다.

第62條 (商號) ①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호중에 증권·증권중개 또는 債券仲介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證券會社가 아닌 者는 證券業을 표시하는 文字를 그 商號에 사용하지 못한다.

第63條 (名義貸與의 禁止) 證券會社는 자기의 名義를 貸與하여 他人으로 하여금 證券業을 經營하게 하지 못한다.

第64條 (證券會社의 少數株主權 등의 행사) ①제191조의13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증권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주의 少數株主權 행사요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1조의13제1항중 "1萬分의 1이상"은 "10만분의 5 이상"으로, 동조제2항중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은 "100만분의 2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으로, 동조제3항중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은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으로, 동조제4항중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은 "10만분의 2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으로, 동조제5항중 "1千分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의 15)이상"은 "1만분의 1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01.3.28>

②第191條의14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證券會社 株主의 株主提案의 행사요건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191條의14第1項중 "1千分의 1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의 5)이상"은 "1萬分의 5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萬分의 25)이상"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21]

第65條 삭제<1999.2.1>

第66條 삭제<1999.2.1>

第67條 削除 <1982.3.29>

第68條 삭제<1999.2.1>

第69條 삭제<1999.2.1>

제3절 삭제<1999.2.1>

第69條의2 削除 <1998.1.8>

第69條의3 削除 <1998.1.8>

第69條의4 削除 <1998.1.8>

第69條의5 削除 <1998.1.8>

第69條의6 삭제<1999.2.1>

第70條 削除 <1991.12.31>

第5章의2 投資諮問業등<개정 1999.2.1>

第70條의2 (登錄등) ①投資諮問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

한 會社이어야 한다.<改正 1998.5.25, 1999.2.1>

②投資一任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한 會社이어야 한다.<개정 1999.2.1, 2000.1.21>

③삭제<1999.2.1>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과 관련하여 登錄要件, 登錄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8.1.8, 1999.2.1, 2000.1.21>

⑤이 法 기타 다른 法律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投資一任業을 영위하지 못한다.

[全文改正 1997.1.13]

第70條의3 (兼業의 제한) 投資諮問會社는 登錄한 業務외의 다른 業務를 영위하지 못한다. 다만, 그 登錄한 業務와 직접 관련된 業務로서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業務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7.1.13, 1998.5.25, 1999.2.1>

[本條新設 1987.11.28]

第70條의4 (營業保證金의 預託) ①投資諮問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機關에 營業保證金을 預託하여야 한다. 이 경우 投資諮問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營業保證金을 讓渡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改正 1997.1.13, 1998.1.8, 2000.1.21>

②投資諮問會社와 投資諮問契約(投資一任契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者는 同 契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債權에 관하여 第1項의 營業保證金에서 다른 債權者에 우선하여 辨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改正 1997.1.13>

[本條新設 1987.11.28]

第70條의5 (健全營業秩序의 유지) 投資諮問會社의 投資諮問契約, 投資一任方法, 投資結果의 顧客에 대한 통보, 手數料, 營業內容의 公示, 營業廣告 기타 健全營業秩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1997.1.13]

第70條의6 (證券去來行爲등의 금지) 投資諮問會社 또는 그 任·職員은 그 業務와 관련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7.1.13>

1. 第2條第8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

2. 顧客으로부터 金錢 또는 有價證券의 보관·預託을 받는 행위

3. 顧客에게 金錢 또는 有價證券을 貸與하거나 顧客에 대한 第3者의 金錢 또는 有價證券의 貸與를 仲介·周旋 또는 代理하는 행위

4. 有價證券에의 投資에 관하여 顧客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分割을 約束하거나 損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約束하는 행위

5. 특정 有價證券에 관하여 助言을 받는 顧客의 賣買에 의한 당해 有價證券의 價格變動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당해 顧客외의 第3者의 이익을 도모할 目的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助言을 하는 행위

6.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 기타 風說을 流布하는 행위

7. 第1號 내지 第6號외에 有價證券의 공정한 去來秩序를 해치고 投資者의 投資判斷을 誤導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本條新設 1987.11.28]

第70條의7 (任員·監督등) 第33條第2項, 第35條, 第37條, 第42條, 第47條, 第48條, 第52條第2號·第3號, 第53條, 第54條, 第56條 내지 第61條 및 第63條의 規定은 投資諮問會社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9.5.24>

[전문개정 1999.2.1]

第70條의8 (類似投資諮問業의 申告) ①第2條第10項第1號 但書에서 規定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刊行物 등에 의한 助言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營業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書式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1998.5.25, 1999.2.1, 2000.1.21>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業務를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1998.1.8, 1998.5.25, 1999.2.1>

③第70條의6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하는 者와 그 任·職員 또는 使用人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7.1.13]

第70條의9 (外國投資諮問業者의 營業) ①外國投資諮問業者(外國法令에 의하여 外國에서 投資諮問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國內에서 직접 또는 支店기타 營業所(이하 "外國投資諮問業者의 支店등"이라 한다)의 設置를 통하여 投資諮問業 또는 投資一任業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

다.<改正 1998.5.25, 1999.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投資諮問業者의 支店등은 이 法에 의한 投資諮問會社로 본다.<개정 1999.2.1>

④第28條의2第5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은 外國投資諮問業者의 支店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0.1.21>

[本條新設 1997.1.13]

第70條의10 (商號) ①投資諮問會社(投資諮問業 또는 投資一任業을 兼營하는 會社를 제외한다)는 그 商號중에 投資諮問이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投資諮問會社가 아닌 者는 그 商號중에 投資諮問 또는 投資一任이라는 文字를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9.2.1]

第70條의11 (登錄의 取消) 金融監督委員會는 投資諮問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投資諮問業 또는 投資一任業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개정 2000.1.21>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投資諮問業 또는 投資一任業의 登錄을 한 경우

1의2. 投資諮問業 또는 投資一任業의 登錄을 한 후 登錄要件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投資一任業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投資一任業을 영위한 경우

3. 業務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他人으로부터 金錢 또는 有價證券의 교부를 받거나 他人에게 교부할 金錢 또는 有價證券을 취득한 경우

4. 有價證券市場 및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 기타의 去來에 관하여 契約에 위반하거나 受渡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第70條의4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5. 第70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停止의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1月(營業停止의 命令을 하면서 1月을 초과하는 補正期間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당해 조건을 補正하지 아니한 경우

6. 第70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35條第1項 또는 第70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63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7. 第70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8. 第1號 내지 第7號외에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1999.2.1]

第6章 韓國證券去來所

第1節 設立과 組織

第71條 (設立) ①有價證券의 公正한 價格의 形成과 安定 및 그 流通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韓國證券去來所를 設立한다.

②證券去來所는 會員組織으로서의 法人으로 한다.<改正 1987.11.28>

③證券去來所는 그 主된 事務所를 서울特別市에 두고 필요한 곳에 支所를 둘 수 있다.<改正 1982.3.29>

④證券去來所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⑤第4項의 登記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1987.11.28>

1. 目 的
2. 名 稱
3. 主事務所와 支所의 所在地
4. 會員의 名稱·住所
5. 任員의 姓名·住所
6. 公告의 方法
7. 第1號 내지 第6號 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

⑥削除 <1987.11.28>

⑦第4項 및 第5項 이외에 證券去來所의 設立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87.11.28>

第72條 削除 <1987.11.28>

第73條 (業務) ①證券去來所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1987.11.28, 1995.12.29, 1997.1.13, 1998.1.8, 1999.2.1, 2001.3.28, 2002.1.26>

1. 有價證券市場의 開設業務

2.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관한 業務

3. 有價證券의 上場에 관한 業務

4. 上場法人의 公示에 관한 業務

5. 유가증권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이상매매(이하 "이상매매"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6. 有價證券의 競賣業務

7. 有價證券市場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自律調停에 관한 업무

8. 有價證券市場의 開設에 隨伴되는 附帶業務

9. 第1號 내지 第7號외에 定款에서 정하는 業務

②삭제<1999.2.1>

제73조의2 (이상매매에 대한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방법 등) ①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상매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거나 증권거래소의 매매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이상매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거나 증권거래소의 매매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당해 매매거래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③증권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이상매매 등과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

第74條 (定款의 記載事項) ①證券去來所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1987.11.28, 2001.3.28>

1. 目的

2. 名稱

3. 主事務所 및 支所의 所在地와 有價證券市場의 所在地

4. 出資에 관한 事項

4의2. 會員에 관한 사항

4의3. 會員의 身元保證金에 관한 사항

4의4. 會員의 持分의 讓渡 및 반환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事項

6. 會員總會 및 理事會에 관한 사항

7. 業務執行에 관한 事項

8. 會計 및 經費分擔에 관한 사항

9. 公告의 方法

②第1項의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87.11.28, 1997.1.13, 1998.5.25>

第**75**條 (民法의 準用) 證券去來所에 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第39條를 제외한다)을 準用한다. 이 경우에 證券去來所의 會員·會員總會와 任員은 각각 社團法人의 社員·社員總會와 理事 또는 監事로 한다.<改正 1987.11.28>

第**76**條 (類似施設開設의 금지) 證券去來所가 아닌 者는 有價證券市場 또는 이와 유사한 施設을 開設하거나, 類似施設을 이용하여 有價證券의 賣買去來를 하지 못한다. 다만, 협회중개시장 및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全文改正 1997.1.13]

第**76**條의**2** (會員의 資格) 證券去來所의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證券會社이어야 한다.

[本條新設 1987.11.28]

第**76**條의**3** (出資와 責任) ①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資를 하여야 한다.

②會員의 證券去來所에 대한 責任은 이 法과 定款이 정하는 것 외에는 그 出資額을 限度로 한다.

[本條新設 1987.11.28]

第76條의4 (會員의 脫退) ①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證券去來所의 승인을 얻어 脫退할 수 있다.

②會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脫退하여야 한다.

1. 資格喪失
2. 解 散
3. 除 名

[本條新設 1987.11.28]

第76條의5 (持分의 讓渡 및 반환) ①會員의 持分은 당해 會員이 脫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證券去來所의 승인을 얻어 이를 讓渡할 수 있다.

②證券去來所는 會員이 脫退하는 경우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持分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證券去來所는 會員의 持分比率을 調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에게 持分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87.11.28]

第77條 (會員總會) ①會員總會는 이 法 또는 定款이 정하는 事項에 한하여 議決한다.<改正 1987.11.28>

②削除 <1997.1.13>

③會員總會에서 議決한 사항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87.11.28, 1997.1.13, 1998.5.25>

第78條(任員) ①證券去來所에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개정 2001.3.28>

1. 理事長 1人
2. 부이사장 1人
3. 이사 5인 이내(비상임으로 하되, 그 중 3인 이내는 공익대표로, 2인 이내는 회원대표로 한다)
4. 監事 2人(1人은 非常任으로 한다)

②理事長은 有價證券에 관한 經驗과 學識이 풍부하고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會員總會에서 選出하되,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1997.1.13,

1998.5.25>

③부이사장은 會員總會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任命한다. <개정 2001.3.28>

④공익대표인 이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부이사장, 공익대표인 이사 및 회원대표인 이사를 위원으로 하여 공익대표인 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그 위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대표인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1.3.28>

⑤會員代表인 이사는 會員總會에서 選出한다. <개정 2001.3.28>

⑥監事는 會員總會에서 選出한다.<개정 1999.2.1>

⑦理事長·부이사장·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改正 1997.1.13, 2001.3.28>

⑧삭제<1999.2.1>

⑨削除 <1997.1.13>

[全文改正 1987.11.28]

第**79**條 (任員의 職務) ①理事長은 證券去來所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括하며, 會員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改正 1987.11.28>

②부이사장은 理事長을 補佐하고 理事長이 事故가 있는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1.3.28>

③삭제 <2001.3.28>

④監事는 證券去來所의 業務와 會計를 監査하고, 그 의견을 會員總會에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87.11.28>

第**80**條 (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任員이 되지 못하며, 任員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의 職을 喪失한다.<改正 1997.1.13, 1997.12.13>

1.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 大韓民國法人으로서 그 資本金의 半額이상이나 議決權의 過半數가 外國人이나 外國法人등에 속하는 者의 任員 또는 外國法人등의 任員

2.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거나 이 法 또는 外國證券法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 罰金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免除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의2.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이 法 또는 外國證券法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 解任되거나 免職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第81條 (任員의 解任要求등) 證券去來所의 任員이 法令, 行政官廳의 法令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金融監督委員會는 당해 任員의 職務執行을 정지시키거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1997.1.13, 1998.1.8, 1998.5.25, 1999.2.1, 1999.5.24>

[全文改正 1987.11.28]

第82條 削除 <1987.11.28>

第83條 (任員등의 責任) ①證券去來所의 任員·職員 및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에 관하여 知得한 秘密을 漏泄 또는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42條의 規定은 證券去來所의 任員 및 職員에 관하여 準用한다.

③證券去來所의 任員 및 職員은 證券關係機關과 資金의 供與, 損益의 分配 기타 營業에 관하여 특별한 利害關係를 가지지 못한다.

第83조의2 (분쟁조정기구) ①제7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증권거래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第2節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

第84條 削除 <1987.11.28>

第85條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者의 제한) ①證券去來所의 會員이 아닌 者는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를 하지 못한다. 다만, 證券去來所의 定款에서 특정한 有價證券의 賣買去來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有價證券의 賣買去來를 할 수 있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를 할 수 있게 된 者는 제73조제1항제5호, 제73조의2, 제74조제1항제4호의2·第4號의3, 第76條의3第2項, 第76條의4, 第87條, 第94條第2項第5號, 第95條 내지 第97條, 第99條, 第100條 및 제206조의3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證券去來所의 會員으로 본다. <개정 2002.1.26>

[전문개정 1999.2.1]

第86條 삭제<1999.2.1>

第87條 (去來의 終結) ①會員이 去來의 정지를 당하거나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證券去來所는 그 會員 또는 다른 會員으로 하여금 당해 有價證券市場에서 행한 賣買去來를 終結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資格을 喪失한 會員은 賣買去來를 終結시키는 범위안에서 會員의 資格을 가진 것으로 본다.<改正 1987.11.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去來所가 다른 會員으로 하여금 당해 賣買去來를 終結시키는 때에는 당해 會員과 다른 會員과의 사이에 委任契約이 成立된 것으로 본다.<改正 1987.11.28>

第88條 (上場規程) ①削除 <1997.1.13>

②證券去來所는 有價證券市場에 上場할 有價證券의 審査 및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되어 있는 有價證券(이하 "上場有價證券"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有價證券上場規程(이하 "上場規程"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③第2項의 上場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1. 有價證券의 上場基準·上場審査 및 上場廢止에 관한 事項

2.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정지와 그 解除에 관한 事項

3. 第1號 및 第2號 이외에 上場有價證券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

第89조 (공시규정) ①증권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의 기업내용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상장법인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제186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신고 또는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2. 주권상장법인이 신고 또는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의 결정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2.1.26]

第90條 削除 <1997.1.13>

第91條 削除 <1997.1.13>

第92條 削除 <1997.1.13>

第93條 削除 <1997.1.13>

第94條 (業務規程) ①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에 관련되는 사항은 證券去來所의 業務規程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業務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01.3.28, 2002.1.26>

1. 賣買去來의 종류 및 受託에 관한 사항

2. 有價證券市場의 開閉·정지 또는 休場에 관한 사항

3. 賣買去來契約의 체결 및 決濟方法

4. 證據金의 납부등 賣買去來의 規制에 관한 사항

5. 이상매매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와 그 결과에 따른 會員 및 그 任·職員의 懲戒에 관한 사항

5의2. 有價證券市場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自律調停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2.1.26>

7. 第1號 내지 제5호의2외에 賣買去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全文改正 1987.11.28]

第95條 (違約損害賠償共同基金) ①會員은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違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損害를 賠償하기 위하여 證券去來所에 違約損害賠償共同基金(이하 "賠償基金"이라 한다)을 積立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 등 증권거래소가 정관으로 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87.11.28, 2001.3.28>

②회원(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원을 제외한다)은 第1項의 賠償基金의 범위안에서 會員의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違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損害賠償에 관하여 連帶責任을 진다. <改正 1987.11.28, 2001.3.28>

③第1項의 賠償基金의 積立率·積立限度·사용·管理·還付 기타 그 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6條 (證據金과 身元保證金의 債務辨濟에의 충당) 會員이 證券去來所 또는 다른 會員에 대하여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에 관한 債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證券去來所는 당해 會員의 證據金과 身元保證金으로서 그 債務의 辨濟에 충당할 수 있다.<改正 1987.11.28>

第97條 (證券去來所의 損害賠償責任) ①證券去來所는 會員의 賣買去來의 違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損害에 관하여 賠償의 責任을 진다.<改正 1987.11.28>

②證券去來所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를 賠償하는 때에는 第95條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된 賠償基金에서 優先 충당한다.

③證券去來所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를 賠償할 때에는 違約한 會員에 대하여 그 賠償한 金額과 이에 所要된 費用에 관하여 求償權을 가진다.<改正 1987.11.28>

④證券去來所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推尋된 金額에서 證券去來所가 賠償한

金額과 이에 所要된 費用에 우선 충당하고 殘額은 賠償基金에 補塡한다.

⑤第3項의 求償權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8條 削除 <1987.11.28>

第99條 (證券去來所의 다른 債權者에 대한 優先權) ①證券去來所는 證據金·身元保證金과 受渡決濟를 위하여 納入된 代金 및 有價證券에 관하여 다른 債權者에 우선하여 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②證券去來所가 會員에게 受渡決濟完了전에 受渡證券을 引渡한 경우에 당해 會員이 그 受渡決濟를 履行하지 아니함으로써 證券去來所에 損害를 끼친 때에는 證券去來所는 그 會員의 財産에 관하여 다른 債權者에 우선하여 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다만, 당해 受渡決濟의 履行期限이 到來하기 전에 設定된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에는 優先하지 못한다.<改正 1987.11.28>

第100條 (受託者의 違約으로 인한 委託者의 優先權과 證券去來所의 委託者에 대한 優先權) ①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를 委託한 者는 그 委託을 받은 會員이 委託契約을 違反한 때에 그 違反으로 인한 債權에 관하여 그 違約한 會員의 證據金과 身元保證金에 관하여 다른 債權者에 優先하여 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改正 1987.11.28>

②第99條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에 優先하는 效力을 가진다.

第101條 (違約賣買의 禁止)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委託을 받은 證券會社는 반드시 有價證券市場을 통하여 賣買去來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第44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1987.11.28, 1991.12.31>

第102條 削除 <1997.1.13>

第103條 (時勢公表) 證券去來所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有價證券市場에서의 有價證券의 每日의 賣買去來量 및 그 成立價格과 最高·最低 및 最終價格을 표시하는 時勢를 公表하여야 한다.<改正 1982.3.29>

第104條 삭제<1999.2.1>

第105條 削除 <1997.1.13>

第106條 削除 <1997.1.13>

第107條 (一任賣買去來의 제한) ①證券會社는 顧客으로부터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관한 委託을 받은 경우 그 數量·價格 및 賣買의 時期에 한하여 그 決定을 一任받아 賣買去來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有價證券의 종류·種目 및 賣買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顧客의 決定이 있어야 한다.<改正 1991.12.31>

②證券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의 賣買去來를 하는 경우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改正 1991.12.31, 1997.1.13, 1998.5.25>

[全文改正 1987.11.28]

第108條 削除 <1997.12.13>

第3節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受託

第109條 (受託場所의 제한 등) ①삭제<1999.2.1>

②證券會社는 電子通信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으로 賣買去來를 受託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7.1.13]

第110條 삭제<1999.2.1>

第111條 삭제<1999.2.1>

第4節 會計와 監督

第112條 (報告와 檢査) ①金融監督委員會는 公益 또는 投資者의 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證券去來所에 대하여 그 業務 및 財産에 관한 報告 또는 參考가 될 資料의 제출을 命하고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그 業務·財産狀況·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7.1.13, 1998.1.8>

②第53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檢査에 관하여 準用한다.

③金融監督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한 때에는 그 結果를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97.1.13, 1998.1.8>

第113條 削除 <1987.11.28>

第114條 삭제<2000.1.21>

第115條 (規程의 承認) ①證券去來所가 有價證券市場을 管理하기 위하여 필요한 業務規程·上場規程 및 公示規程 기타 業務에 관한 規程(規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制定하고자 할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87.11.28, 1997.1.13, 1998.1.8, 1998.5.25, 1999.2.1, 1999.5.24>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新設 1998.1.8, 1998.5.25, 1999.5.24>

第116條 削除 <1997.1.13>

第117條 (緊急事態에 대한 처분<개정 1999.2.1>) ①삭제<1999.2.1>

②財政經濟部長官은 天災·地變·戰時·事變·經濟事情의 急激한 變動 기타 이에 準하는 事態의 발생으로 인하여 賣買去來가 正常的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有價證券市場의 休場을 命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1997.1.13, 1998.5.25>

제7장 삭제<1998.1.8>

제1절 삭제<1998.1.8>

第118條 削除 <1998.1.8>

第119條 削除 <1998.1.8>

第120條 削除 <1998.1.8>

第121條 削除 <1998.1.8>

第122條 削除 <1998.1.8>

第123條 削除 <1998.1.8>

第124條 削除 <1998.1.8>

第125條 削除 <1998.1.8>

第125條의2 削除 <1998.1.8>

第126條 削除 <1998.1.8>

第127條 削除 <1998.1.8>

第128條 削除 <1998.1.8>

第129條 削除 <1998.1.8>

第129條의2 削除 <1998.1.8>

제2절 삭제<1998.1.8>

第130條 削除 <1998.1.8>

第131條 削除 <1998.1.8>

第132條 削除 <1998.1.8>

第133條 削除 <1998.1.8>

第134條 削除 <1998.1.8>

第135條 削除 <1998.1.8>

第136條 削除 <1998.1.8>

第137條 削除 <1998.1.8>

第138條 削除 <1998.1.8>

第139條 削除 <1998.1.8>

第140條 削除 <1998.1.8>

第141條 削除 <1998.1.8>

第142條 削除 <1998.1.8>

第143條 削除 <1998.1.8>

第144條 削除 <1998.1.8>

第8章 證券關係團體

第1節 證券金融會社

第145條 (設立) ①第147條에 規定하는 業務를 행할 수 있는 者(이하 "證券金融會社"라 한다)는 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株式會社이어야 한다.<改正 1997.1.13, 1998.5.25>

②第1項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申請書를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7.1.13, 1998.5.25>

1. 名稱
2. 營業所의 所在地
3. 資本金과 資産에 관한 事項

③第1項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改正 1997.1.13, 1998.5.25>

1. 定款과 業務에 관한 規程
2. 發起人의 履歷書와 身元證明書
3. 設立後 2年間의 事業計劃書와 收支豫算書
4. 第1號 내지 第3號 이외에 財政經濟部長官이 정하는 書類

第146條 (資本金) 證券金融會社의 資本金은 20億원 이상이어야 한다.

第147條 (業務) ①證券金融會社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할 수 있다.<改正 1997.1.13, 1998.5.25, 2002.1.26>

1. 有價證券市場造成資金과 引受人에 대한 證券引受資金의 貸出業務
2.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결제기구를 통하여 대부하는 업무
3. 有價證券을 擔保로 하는 貸出 및 有價證券貸與業務
4. 一般投資者에 대한 請約資金을 引受人을 통하여 貸出하는 業務

5.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債券賣買業務

6. 有價證券과 관련된 保護預受業務

7.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의 신탁업무

8.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업무

9.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업무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業務 이외에 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業務

②증권금융회사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신탁업법상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보며, 신탁업법 제7조제1항·제8조의2·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24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6>

第**148**條 削除 <1997.1.13>

第**149**條 (任員의 制限) ①證券金融會社의 常務에 종사하는 任員(事實上 任員의 業務를 수행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證券會社의 任員 및 職員 이외의 者이어야 한다.<改正 1982.3.29>

②第33條第2項 및 第80條의 規定은 證券金融會社의 任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任員에 한하여는 第80條第1號에 해당하는 者도 任員으로 選任될 수 있다.<改正 1982.3.29>

第**150**條 削除 <1987.11.28>

第**151**條 (定款·規程의 보고<개정 **2000.1.21**>) ①證券金融會社는 定款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②證券金融會社는 그 業務에 관한 規程을 정하거나 變更 또는 廢止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97.1.13, 1998.1.8>

③削除 <1997.1.13>

第**152**條 削除 <1997.1.13>

第**153**條 (任員解任의 요구) 金融監督委員會는 證券金融會社의 任員이 不正한 方法

에 의하여 選任되었거나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證券金融會社의 定款에 違反한 때에는 그 任員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1998.1.8>

第**154**條 (任員등의 責任) 第58條와 第83條의 規定은 證券金融會社에 관하여 準用한다. 다만, 常勤하지 아니하는 任員에게는 第83條第3項의 規定은 準用하지 아니한다.

第**155**條 (法令違反등에 대한 처분) ①第55條(同條第1項第5號 내지 第7號를 제외한다)의 規定은 證券金融會社에 대한 證券金融業許可의 取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金融監督委員會"는 "財政經濟部長官"으로 본다.<개정 2000.1.21>

②金融監督委員會는 證券金融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개정 2002.1.26>

1. 제147조제1항제10호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業務를 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第153條의 規定에 의한 任員解任要求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第154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全文改正 1998.1.8]

第**156**條 削除 <1997.1.13>

第**157**條 (檢査) 第53條의 規定은 證券金融會社에 관하여 準用한다. 이 경우 第53條第5項第1號중 "證券業의 許可取消"는 "財政經濟部長官에 대한 許可取消의 요청"으로 본다.<개정 2000.1.21>

第**158**條 (業務의 廢止와 解散) 證券金融會社의 業務의 廢止 또는 解散의 決議는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7.1.13, 1998.5.25>

第**159**條 삭제<1999.2.1>

第**160**條 (社債의 발행) ①證券金融會社는 商法 第47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資本金과 準備金의 合計額의 20倍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改正 1998.2.24, 2000.1.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金融會社가 발행하는 社債는 第2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債券으로 본다.

③證券金融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한 社債의 償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후 1月 이내에 이미 발행한 社債를 償還하여야 한다.<신설 2000.1.2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金融會社의 社債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1997.1.13]

第161條 (證券會社資金의 預託등) ①證券金融會社는 證券去來所·證券會社 기타 證券關係機關과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者로부터 資金의 預託을 받을 수 있다.<改正 1997.1.13, 1998.5.25>

②證券金融會社는 第1項의 業務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債務證書를 발행할 수 있다.<改正 1997.1.13, 1998.5.25>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는 韓國銀行法과 銀行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節 韓國證券業協會

第1款 設立 및 監督

第162條 (設立) ①證券會社 상호간의 業務秩序를 유지하고 有價證券의 공정한 賣買去來 및 投資者保護를 위하여 韓國證券業協會를 設立한다.

②協會는 會員組織으로서의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그 주된 事務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支會를 둘 수 있다.

④協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全文改正 1997.1.13]

第162條의2 (業務)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2002.1.26>

1. 會員간의 건전한 營業秩序 유지 및 投資者保護를 위한 業務

2. 協會登錄法人의 公示, 이상매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自律調停 기타 協會仲介市場의 운영에 관한 業務

3. 第28條第2項第2號의 營業의 건전한 營業秩序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

4. 證券關聯制度의 調査·硏究

5. 證券硏修業務

6. 第1號 내지 第5號에 附隨되는 業務

7. 第1號 내지 第6號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

[本條新設 1997.1.13]

제162조의3 (이상매매에 대한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방법 등) ①협회는 협회중개시장(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상매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거나 협회의 매매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협회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이상매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거나 협회의 매매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당해 매매거래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③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이상매매 등과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

第163條 (定款의 記載事項) 協會의 定款에 記載할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4條 (規程의 申告 등<개정 2000.1.21>) ①協會가 業務에 관한 規程을 정하거나 變更 또는 廢止한 때에는 10日이내에 그 內容을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1982.3.29, 1998.1.8, 1999.2.1>

②協會는 定款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0.1.21>

第165條 (會費) 協會는 會員으로부터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費를 徵收할

수 있다.

第**166**條 削除 <1997.12.13>

第**167**條 削除 <1997.1.13>

第**168**條 (業務의 정지등의 命令) 金融監督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協會에 대하여 그 業務의 停止를 命하거나 당해 任員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1982.3.29, 1987.11.28, 1998.1.8>

1. 協會가 法令 또는 法令에 의한 行政官廳의 處分에 違反한 때
2. 協會의 任員이 協會의 定款 또는 業務에 관한 規程에 違反하거나 職權을 濫用한 때

第**169**條 (任員·監督등) 第33條·第42條·第53條 및 第117條의 規定은 協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7.1.13, 1999.2.1, 2000.1.21>

[全文改正 1982.3.29]

第**170**條 (民法의 準用) 協會에 대하여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대하여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71**條 (類似名稱 사용의 금지) 韓國證券業協會가 아닌 者는 證券業協會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改正 1997.1.13>

第**172**條 (證券硏修院) 協會는 證券業務에 종사하는 者의 資質을 向上시키고 證券에 관한 專門的인 知識을 普及하기 위하여 證券硏修院을 둘 수 있다.

第**2**款 협회중개시장의 운영 및 매매거래 <개정 **2001.3.28**>

제**172**조의**2** (협회등록 및 협회중개시장의 운영) ①협회중개시장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유가증권이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법인은 제28조제2항제3호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이하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제33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1.3.28]

第172條의3 (規程의 制定·승인) ①협회는 협회중개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1.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그 사무국의 구성·운영·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운영규정
2. 有價證券의 등록기준·등록심사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有價證券協會登錄規程
3. 매매거래 수탁·정지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업무규정
4. 협회등록법인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시규정

②協會는 第1項의 規程을 制定·變更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1998.1.8, 1998.5.25, 1999.5.24, 2001.3.28>

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1998.1.8, 1998.5.25, 1999.5.24>

[本條新設 1997.1.13]

제172조의4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그 사무국의 예산 및 인사) ①협회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예산(그 사무국의 예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협회의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회비 그 밖의 협회중개시장의 운영과 관련한 수입중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예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第3節 證券預託院

第173條 (設立) ①有價證券의 集中預託과 計座間 대체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證券預託院(이하 "預託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預託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預託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全文改正 1994.1.5]

第173條의2 (業務) ①預託院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業務를 행한다.<改正 1997.1.13, 1999.2.1>

1. 有價證券의 集中預託業務
2. 有價證券의 計座間對替業務
3. 預託院과 유사한 業務를 영위하는 外國法人(이하 "外國預託機關"이라 한다)과의 計座設定을 통한 有價證券預託 및 計座間對替業務
4. 有價證券의 名義改書代行業務(有價證券에 대한 配當, 利子 및 償還金의 支給代行業務와 有價證券의 發行代行業務를 포함한다)
5. 有價證券의 保護預受業務
6. 第1號 내지 第5號의 業務외에 이 法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부여된 業務
7. 第1號 내지 第6號의 業務에 부수되는 業務
8. 第1號 내지 第7號외에 定款에서 정하는 業務

②삭제<1999.2.1>

[本條新設 1994.1.5]

第173條의3 (預託業務營爲등의 금지) 預託院이 아닌 者는 有價證券을 預託받아 그 有價證券의 授受에 갈음하여 計座간의 대체로 決濟하는 業務를 영위할 수 없다.

[本條新設 1994.1.5]

第173條의4 (定款의 기재사항) 預託院의 定款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4. 株式 및 資本金에 관한 사항
5. 株主總會 및 理事會에 관한 사항
6. 任員에 관한 사항
7. 會計에 관한 사항
8. 公告의 방법

[本條新設 1994.1.5]

第173條의5 (商法의 準用) 預託院에 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商法중 株式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4.1.5]

第173條의6 (任員) ①預託院의 任員은 社長·專務理事·理事 및 監事로 한다.

②社長은 株主總會에서 選出하되,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1>

③常任監事는 株主總會에서 選出한다.<신설 1999.2.1>

[本條新設 1994.1.5]

第173條의7 (預託對象有價證券의 지정) ①預託院에 預託할 수 있는 有價證券(이하 "預託對象有價證券"이라 한다)은 預託院이 지정한다.

②삭제<1999.2.1>

[本條新設 1997.1.13]

第173條의8 (發行內譯 및 事故有價證券內譯 통지 등) ①預託對象有價證券의 發行人은 새로이 有價證券을 발행하는 경우 그 有價證券의 종류 기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預託院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98.5.25>

②預託對象有價證券의 발행인은 有價證券의 押留·假押留 또는 假處分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분실 또는 멸실된 有價證券에 대한 事故申告(民事訴訟法에 의한 公示催告 및 除權判決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有價證券의 종류 기

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預託院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1998.5.25, 2001.3.28>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預託院은 그 내용을 公表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7.1.13]

第**174**條 (預託院에의 預託등) ①預託院에 有價證券을 預託하고자 하는 者는 預託院에 計座를 開設하여야 한다.<改正 1994.1.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座를 開設한 者(이하 "預託者"라 한다)는 자기가 所有하고 있는 有價證券과 顧客으로부터 預託받은 有價證券을 顧客의 同意를 얻어 預託院에 預託할 수 있다.<改正 1994.1.5>

③預託院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 預託者計座簿를 작성·비치하되, 預託者의 自己所有分과 顧客預託分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1994.1.5, 1997.1.13, 1998.5.25>

1. 預託者의 名稱 및 住所
2. 預託받은 有價證券(이하 "預託有價證券"이라 한다)의 종류 및 數와 그 發行人의 명칭
3. 기타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사항

④預託院은 預託有價證券을 종류·種目別로 混合하여 보관할 수 있다.<改正 1994.1.5>

⑤預託者 또는 그 顧客이 有價證券을 引受 또는 請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새로이 有價證券의 발행을 請求하는 경우에 당해 有價證券의 발행인은 預託者 또는 그 顧客의 申請에 의하여 이들에 갈음하여 預託院을 名義人으로 하여 당해 有價證券을 발행 또는 登錄(國債法 또는 公社債登錄法에 의한 登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新設 1991.12.31, 1994.1.5, 1997.1.13>

[全文改正 1987.11.28]

第**174**條의**2**(顧客의 預託者에의 預託등) ①顧客으로부터 預託받은 有價證券을 預託院에 다시 預託하는 預託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 顧客計座簿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改正 1994.1.5, 1997.1.13, 1998.5.25>

1. 顧客의 姓名 및 住所
2. 預託有價證券의 종류 및 數와 그 發行人의 명칭

3. 기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사항

②預託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당해 有價證券이 顧客預託分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預託院에 預託하여야 한다.<改正 1994.1.5, 1997.1.13>

③預託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有價證券을 預託院에 預託하기 전까지는 이를 自己所有分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改正 1994.1.5, 1997.1.13>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顧客計座簿에 기재된 有價證券은 그 기재시에 預託院에 預託된 것으로 본다.<改正 1994.1.5>

[本條新設 1987.11.28]

第**174**條의**3** (計座簿記載의 效力) ①顧客計座簿와 預託者計座簿에 기재된 者는 각각 그 有價證券을 占有하는 것으로 본다.

②顧客計座簿와 預託者計座簿에의 對替의 기재가 有價證券의 讓渡 또는 質權設定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有價證券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效力을 가진다.

③預託有價證券의 信託은 信託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預託者計座簿 또는 顧客計座簿에 信託財産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④株券發行전에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去來를 顧客計座簿 또는 預託者計座簿상 計座間 對替의 방법으로 決濟하는 경우에는 商法 第335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發行會社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新設 1997.1.13>

[本條新設 1987.11.28]

第**174**條의**4** (權利推定등) ①預託者의 顧客과 預託者는 각각 顧客計座簿와 預託者計座簿에 기재된 有價證券의 종류·種目 및 數量에 따라 預託有價證券에 대한 共有持分을 가지는 것으로 推定한다.

②預託者의 顧客이나 그 質權者는 預託者에 대하여, 預託者는 預託院에 대하여 언제든지 共有持分에 해당하는 預託有價證券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質權의 目的으로 되어 있는 預託有價證券에 대하여는 質權者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改正 1994.1.5>

③預託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預託有價證券중 顧客預託分의 반환 또는 계좌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新

設 1997.1.13, 1997.12.13, 1998.5.25, 2001.3.28>

[本條新設 1987.11.28]

第**174**條의**5** (補塡義務) ①預託有價證券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預託院 및 第174條의2第1項에 規定된 預託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및 節次에 따라 이를 補塡하여야 한다. 이 경우 預託院 및 預託者는 그 부족에 대한 責任이 있는 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改正 1994.1.5, 1997.1.13>

②第1項의 預託者는 第1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座를 閉鎖한 때 이후에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塡責任을 부담한다. 다만, 計座를 閉鎖한 때로부터 5年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責任은 消滅한다.

[本條新設 1987.11.28]

第**174**條의**6** (預託有價證券의 權利行使) ①預託院은 預託者 또는 顧客의 申請에 의하여 預託有價證券에 관한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顧客의 申請은 預託者를 거쳐야 한다.<改正 1994.1.5>

②預託院은 預託有價證券에 대하여 自己名義로 名義改書 또는 登錄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7.1.13>

③預託院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己名義로 名義改書된 株式에 대하여는 預託者의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商法 第358條의2에 規定된 사항과 株主名簿의 기재 및 株券에 관하여 株主로서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改正 1994.1.5>

④株券의 發行會社가 株主總會 召集의 통지 또는 公告를 하는 경우에 預託院의 名義로 名義改書된 株券을 소유하고 있는 株主에 대하여는 第5項에 規定된 預託院의 議決權 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公告하여야 한다.<新設 1991.12.31, 1994.1.5, 1997.1.13>

⑤預託院의 名義로 名義改書된 株券을 소유하고 있는 株主가 株主總會 會日의 5日전까지 預託院에 그 議決權을 직접행사·代理行使 또는 不行使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預託院이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1991.12.31, 1994.1.5,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2002.1.26>

1. 당해 株券의 發行會社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預託院의 議決權行使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公告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株券의 發行會社가 預託院으로 하여금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하게 할 것

을 金融監督委員會에 요청하는 경우

3. 당해 株主總會의 會議目的 사항이 商法 제360조의3·제360조의16·제374조·第438條·第518條·第519條·第522條·第530條의3 및 第604條에 規定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당해 株主가 株主總會에서 議決權을 직접행사 또는 代理行使하는 경우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預託院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발행회사가 預託院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預託院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⑦제3항의 규정은 預託有價證券중 記名式有價證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3.28>

[本條新設 1987.11.28]

第**174**條의**7** (實質株主의 權利行使등) ①預託有價證券중 株券의 共有者(이하 "實質株主"라 한다)는 株主로서의 權利行使에 있어서는 각각 第174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有持分에 상당하는 株式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實質株主는 第174條의6第3項의 規定에 의한 權利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會社의 株主에 대한 통지 및 商法 第39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名簿의 閱覽 또는 謄寫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預託有價證券중 株券의 發行會社가 商法 第354條의 規定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때에는 預託院에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預託院은 그 期間의 初日 또는 그 날(이하 이 條에서 "株主名簿閉鎖基準日"이라 한다)의 實質株主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株券의 發行會社 또는 名義改書를 代理하는 會社에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94.1.5, 1997.1.13>

1. 姓名 및 住所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종류 및 數

④預託院은 第174條의2第1項에 規定된 預託者에게 株主名簿閉鎖基準日의 實質株主에 관하여 第3項 各號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預託者는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1994.1.5>

⑤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公開買受申告書가 제출된 株式등의 發行人이 株式의 所有狀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預託院에 實質株主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신설 1999.2.1>

[本條新設 1987.11.28]

第174條의8 (實質株主名簿의 작성등) ①第174條의7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받은 發行會社 또는 名義改書를 代理하는 會社는 통지받은 사항과 通知年月日을 기재하여 實質株主名簿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預託院에 預託된 株券의 株式에 관한 實質株主名簿에의 기재는 株主名簿에의 기재와 동일한 效力을 가진다.<改正 1994.1.5>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發行會社 또는 名義改書를 代理하는 會社는 株主名簿에 株主로 기재된 者와 實質株主名簿에 實質株主로 기재된 者가 同一人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株主로서의 權利行使에 있어서 株主名簿의 株式數와 實質株主名簿의 株式數를 合算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87.11.28]

第174條의9 (民事執行) 預託有價證券에 관한 强制執行·假押留 및 假處分의 執行 또는 競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87.11.28]

第174條의10 (實質株主證明書) ①預託院은 預託者 또는 그 顧客이 株主로서의 權利를 행사하기 위하여 有價證券의 預託을 증명하는 文書(이하 "實質株主證明書"라 한다)의 발행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顧客의 申請은 預託者를 거쳐야 한다.<改正 1998.5.25>

②預託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質株主證明書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發行會社에 대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預託者 또는 그 顧客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實質株主證明書를 發行會社에 제출한 경우에는 商法 第33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發行會社에 대하여 對抗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7.1.13]

第174條의11 (外國預託機關 및 외국법인 등의 預託 등에 관한 特例<개정 2001.3.28>) ①第174條의2, 第174條의5, 第174條의6第4項 내지 第6項, 第174條의7 및 第174條의8第3項의 規定은 外國預託機關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外國預託機關이 이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1, 2001.3.28>

②제174조제5항, 제174조의6제4항 내지 제6항, 제174조의7, 제174조의8 및 제174

조의10의 규정은 預託有價證券의 발행인이 외국법인 등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 등이 이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本條新設 1997.1.13]

第**174**條의**12** (보고 및 확인 등) 預託院은 預託者에 대하여 預託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關聯帳簿의 閱覽 또는 預託者 自體保管 有價證券의 保管狀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7.1.13]

第**175**條 (規程의 보고<개정 **2000.1.21**>) 預託院은 預託 기타 業務에 관한 規程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廢止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전문개정 1999.2.1]

第**176**條 삭제<1999.2.1>

第**176**條의**2** (有價證券의 관리) ①上場法人·協會登錄法人 및 名義改書代行會社(第180條第1項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有價證券의 用紙·발행·消却·교체발행·폐기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預託院 이 정하는 有價證券取扱規程에 따라야 한다.

②預託院은 上場法人 및 協會登錄法人이 有價證券의 발행을 위하여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有價證券用紙(이하 "豫備證券"이라 한다)를 관리할 수 있다.

③預託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上場法人·協會登錄法人 및 名義改書代行會社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의 事務取扱節次와 豫備證券의 관리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非上場法人이 발행하는 有價證券에 관하여 預託院의 有價證券取扱規程에 의한 用紙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預託院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上場法人이 非上場法人으로 된 경우로서 預託院의 有價證券取扱規程에 의한 用紙와 그 用紙에 의하여 발행한 有價證券이 전부 폐기

될 때까지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7.1.13]

第177條 削除 <1987.11.28>

第178條 (任員·監督등) 第59條 내지 第61條·第74條第2項·第80條·第81條·第83條·第117條 및 第157條의 規定은 預託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9.2.1, 2000.1.21>

[全文改正 1998.1.8]

第4節 仲介會社·名義改書代行會社등

第179條 (仲介會社) ①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仲介業務를 營爲할 수 있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株式會社이어야 한다.<改正 1997.1.13, 1998.5.25, 1999.2.1, 1999.5.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以下 "仲介會社"라 한다)는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仲介業務를 수행함에 필요한 有價證券의 賣買業務를 할 수 있다.

③仲介會社는 그 業務와 財産에 관하여 證券去來所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④第53條·第149條·第151條第1項·第153條·第154條·第155條 및 第158條의 規定은 仲介會社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8.1.8>

第180條 (名義改書代行會社) ①有價證券의 名義改書를 代行하는 業務를 營爲할 수 있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한 株式會社이어야 한다.<改正 1997.1.13, 1998.5.25, 1999.2.1, 1999.5.24>

②名義改書代行會社는 有價證券의 配當·利子 및 償還金의 支給을 代行하는 業務와 有價證券의 발행을 代行하는 業務를 營爲할 수 있다.<改正 1982.3.29, 1997.1.13>

③第53條·第70條의2第4項·第70條의11·第149條·第151條第1項·第153條·第154條·第155條第2項 및 第158條의 規定은 名義改書代行會社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9.2.1>

第181條 (기타 證券關係團體의 許可·監督) ①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와 有價證券

市場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有價證券投資者·株券上場法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構成되는 團體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82.3.29, 1997.1.13, 1998.5.25, 1999.2.1>

②第53條·第151條第1項 및 第168條의 規定은 第1項의 許可를 받아 設立한 證券關係團體에 관하여 準用한다.<改正 1997.1.13>

第9章 上場法人등의 관리

第1節 上場法人 등의 公示

第182條 削除 <1997.1.13>

第183條 削除 <1982.3.29>

第184條 削除 <1982.3.29>

第185條 削除 <1982.3.29>

第186條 (上場法人 등의 申告·公示義務등<개정 1999.2.1, 2000.1.21>) ①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事實 또는 理事會의 決議內容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82.3.29, 1987.11.28, 1994.1.5,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1. 발행한 어음 또는 手票가 不渡로 되거나 銀行과의 去來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營業活動의 一部 또는 全部가 정지된 때
3. 法律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整理節次開始의 申請이 있거나 事實上 整理를 開始한 때
4.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5. 災害로 인하여 莫大한 損害를 입은 때
6. 上場有價證券 또는 協會登錄有價證券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訴訟이 提起된 때

7. 商法 第374條·第522條·第527條의2·第527條의3 및 第530條의2에서 規定한 事實이 발생한 때

8. 法律에 의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때

9. 增資, 減資 또는 주식의 消却에 관한 理事會의 決議가 있은 때

10.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操業을 중단하거나 操業을 계속할 수 없는 때

11. 去來銀行에서 당해 法人의 管理를 開始한 때

12. 自己株式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理事會의 決議 또는 代表理事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의 결정이 있은 때

13. 第1號 내지 第12號외에 法人의 경영·財産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는 有價證券의 공정한 去來와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에 관한 風聞 및 報道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法人이 발행한 有價證券의 價格이나 去來量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第188條의2의 規定에 의한 중요한 情報의 유무에 대한 公示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法令·天災地變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公示하기가 곤란한 경우 외에는 당해法人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2000.1.21>

③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는 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 또는 公示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金融監督委員會에 통보하여 第193條에 規定하는 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新設 1987.11.28, 1991.12.31, 1998.1.8, 2000.1.21>

④第8條第2項·第14條 내지 第1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新設 1997.1.13, 1999.2.1>

⑤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는 第1項第1號·第3號·第6號·第8號 및 第11號의 사항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 또는 公示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投資者의 投資判斷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機關 기타 關係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情報의 제공 또는 交換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1999.2.1, 2000.1.21>

第186條의2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개정 1999.2.1>) ①株券上場法人, 協會登錄法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事業年度 경과 후 90日내에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8.1.8>

②第1項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會社의 目的·商號·사업내용·財務에 관한 사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98.5.25, 2000.1.21>

③法人이 최초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報告書 제출대상 法人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報告書의 제출기간중에 事業報告書 제출대상 法人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提出期限까지) 직전 事業年度의 事業報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法人이 有價證券申告書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事業年度의 事業報告書에 준하는 사항을 公示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보고서는 金融監督委員會가 業種別·事業部門別로 정하는 기재방법 및 書式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1998.5.25, 2000.1.21>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報告書를 제출하여야 하는 法人이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 第1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企業集團結合財務諸表를 작성하여야 하는 企業集團의 所屬會社인 경우에는 同法 第1條의2第3號의 規定에 의한 企業集團結合財務諸表를 事業年度 종료후 6月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9.2.1>

[本條新設 1997.1.13]

第186條의3 (半期報告書등의 제출<개정 1999.2.1>) 第18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法人은 그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6月간의 사업보고서(이하 "半期報告書"라 한다)와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3月간 및 9月간의 사업보고서(이하 "分期報告書"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日내에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8.1.8, 1999.2.1>

[本條新設 1997.1.13]

第186條의4 (外國法人등에 대한 特例) 第186條의2 및 第186條의3의 規定에 불구하고 外國法人 등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提出期限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7.1.13]

第186條의5 (準用規定) 第8條第2項, 第11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4條 내지 第16條, 第18條,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은 사업보고서, 半期報告書 및 分期報告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9.2.1, 2000.1.21>

[本條新設 1997.1.13]

第187條 削除 <1997.1.13>

第2節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등

第188條 (內部者의 短期賣買差益 반환등)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任員·職員 또는 主要株主(누구의 名義로 하든지 자기의 計算으로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10이상의 株式 또는 出資證券을 소유한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證券去來所에 上場되었거나 協會에 登錄된 당해 法人의 株券(出資證券을 포함한다)·轉換社債券·新株引受權附社債券·新株引受權을 표시하는 證書 기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이하 "株券등"이라 한다)중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면 이를 賣渡하지 못한다.<改正 1991.12.31, 1997.1.13, 1998.5.25, 1999.2.1>

②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任員·職員 또는 主要株主가 그 法人의 株券등을 買受한 후 6月이내에 賣渡하거나 그 法人의 株券등을 賣渡한 후 6月이내에 買受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法人은 그 이익을 그 法人에게 제공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算定基準·返還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5.25, 1999.2.1, 2000.1.21>

③당해 法人의 株主 또는 證券先物委員會는 그 法人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法人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月내에 그 請求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株主 또는 證券先物委員會는 당해 法人을 代位하여 그 請求를 할 수 있다.<改正 1997.1.13, 1998.1.8>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訴를 提起한 株主 또는 證券先物委員會가 勝訴한 때에는 證券先物委員會 또는 그 株主는 會社에 대하여 訴訟費用과 訴訟수행에 필요로 한 實費額을 請求할 수 있다.<新設 1982.3.29, 1997.1.13, 1998.1.8>

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權利는 利益의 取得이 있은 날로부터 2年내에 行使하지 아니한 때에는 消滅한다.

⑥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任員 또는 主要株主는 任員 또는 主要株主가 된 날부터 10日이내에 누구의 名義로 하든지 자기의 計算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法人의 株式所有狀況을, 그 所有株式數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그 내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證券先物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1997.12.13, 1998.1.8, 1998.5.25, 1999.2.1, 2000.1.21>

⑦證券先物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는 第6項의 報告書를 備置하고 一般人에게 供覽하게 하여야 한다.<新設 1982.3.29, 1991.12.31, 1998.1.8, 1999.2.1>

⑧第2項의 規定은 任員·職員 또는 主要株主로서 행한 賣渡 또는 買受의 성격 기타 사정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 및 主要株主가 賣渡·買受한 時期중 어느 한 時期에 있어서 主要株主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1991.12.31>

⑨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발행한 株式의 모집·賣出을 周旋 또는 引受한 證券會社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準用한다.<改正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9.2.1>

第188條의2 (未公開情報 이용행위의 금지)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를 포함한다)로서 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6月내에 上場 또는 協會登錄하는 法人을 포함한다)의 業務등과 관련하여 一般人에게 公開되지 아니한 중요한 情報를 職務와 관련하여 알게 된 者와 이들로부터 당해 情報를 받은 者는 당해 法人이 발행한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그 情報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改正 1997.1.13, 1998.2.24, 1999.2.1>

1. 당해 法人 및 그의 任員·職員·代理人
2. 당해 法人의 主要株主
3. 당해 法人에 대하여 法令에 의한 許可·認可·指導·監督 기타의 權限을 가지는 者
4. 당해 法人과 契約을 체결하고 있는 者
5. 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任員·職員 및 代理人)

②第1項에서 "一般人에게 公開되지 아니한 중요한 情報"라 함은 第18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情報중 投資者의 投資判斷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法人이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多數人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公開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改正 1997.1.13, 1998.5.25>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公開買受를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1項 本文중 "당해 法人"은 "公開買受對象 有價證券의 발행인"으로, "중요한 情報"는 "公開買受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情報"로 보며, 第1項 各號중 "당해 法人"은 각각 "公開買受人"으로 본다.<改正 1997.1.13>

[本條新設 1991.12.31]

第**188**條의**3** (未公開情報 이용행위의 賠償責任) ①第188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당해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 去來를 한 者가 그 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입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은 請求權者가 第188條의2의 規定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개정 1999.2.1>

[本條新設 1991.12.31]

第**188**條의**4** (時勢操縱등 不公正去來의 금지) ①누구든지 上場有價證券 또는 協會仲介市場에 登錄된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관하여 그 去來가 盛況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他人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자기가 賣渡하는 같은 時期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他人이 그 有價證券을 買受할 것을 사전에 그 者와 通情한 후 賣渡하는 행위

2. 자기가 買受하는 같은 時期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他人이 그 有價證券을 賣渡할 것을 사전에 그 者와 通情한 후 買受하는 행위

3.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있어서 그 權利의 移轉을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假裝된 賣買去來를 하는 행위

4. 第1號 내지 第3號의 행위의 委託 또는 受託을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去來를 誘引할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單獨으로 또는 他人과 共謀하여 有價證券의 賣買去來가 盛況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時勢를 변동시키는 賣買去來 또는 그 委託이나 受託을 하는 행위

2. 당해 有價證券의 時勢가 자기 또는 他人의 市場操作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

을 流布하는 행위

3. 당해 有價證券의 賣買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故意로 허위의 표시 또는 誤解를 誘發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單獨 또는 공동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有價證券의 時勢를 固定시키거나 안정시킬 目的으로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去來 또는 그 委託이나 受託을 하지 못한다.

④누구든지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부당한 利得을 얻기 위하여 故意로 허위의 時勢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風說을 流布하거나 僞計를 쓰는 행위

2.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漏落된 文書를 이용하여 他人에게 誤解를 誘發하게 함으로써 金錢 기타 財産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本條新設 1997.1.13]

第**188**條의**5** (時勢操作의 賠償責任) ①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形成된 가격에 의하여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 당해 有價證券의 賣買去來 또는 委託을 한 者가 그 賣買去來 또는 委託에 관하여 입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은 請求權者가 第188條의4의 規定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年,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개정 1999.2.1>

[本條新設 1997.1.13]

第**3**節 上場法人 등에 대한 特例등

제**189**조 (주식의 소각)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할 주식은 당해 이사회 결의후 취득한 주식

에 한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189조의2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동항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취득 가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3.28]

圓 **第189條의2 (自己株式의 취득)**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당해法人의 名義와 計算으로 자기의 株式을 취득(商法 第341條의 規定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商法 第4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利益配當을 할 수 있는 한도안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3.28>

1.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 취득하는 방법

2. 第4章의 規定에 의한 公開買受의 방법

②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錢의 信託契約등에 의하여 자기의 株式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算定한 금액을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취득금액으로 본다.<개정 2000.1.2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자기주식

을 취득(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 등의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節次등 기준에 따라 自己株式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1998.1.8, 1998.2.24, 1999.2.1, 2001.3.28>

④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利益配當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의 감소로 인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自己株式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1998.5.25, 1999.2.1, 2001.3.28>

⑤第14條第1項, 第15條, 第16條,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은 自己株式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新設 1997.1.13, 1999.2.1>

⑥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자기의 株式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商法 第341條의2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1.21>

[本條新設 1994.1.5]

第189條의3 (一般公募增資<개정 1999.2.1>)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理事會의 決議로써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般公募增資方式에 의하여 新株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公募增資方式에 의하여 新株를 발행하는 경우 그 發行價格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算定한 가격이상이어야 한다.

[本條新設 1997.1.13]

第189條의4 (株式買受選擇權<개정 2000.1.21>)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商法 第340條의2 내지 第340條의5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法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決議(이하 이 條에서 "特別決議"라 한다)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任·職員(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新株를 교부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法人의 株式을 買受할 수 있는 權利(이하 "株式買受選擇權"이라 한다)를 이 條의 規定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02.1.26>

②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하고자 하는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하 "株

式買受選擇權附與法人"이라 한다)은 定款으로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1.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교부할 株式의 종류와 總數
3.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者의 資格要件
4.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를 取消할 수 있다는 뜻

③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⑤株式買受選擇權은 他人에게 讓渡할 수 없다. 다만,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은 者가 死亡한 때에는 그 相續人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1>

⑥商法 第340條의3第3項, 第350條第2項, 第350條第3項 後段, 第351條, 第516條의8第1項·第3項·第4項 및 第516條의9 前段의 規定은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인하여 新株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0.1.21>

⑦金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株式買受選擇權附與法人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改正 1998.1.8, 2000.1.21>

⑧株式買受選擇權附與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議를 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이를 申告하여야 하며,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는 申告日부터 株式買受選擇權 存續期

限까지 이를 비치하고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1998.1.8, 2000.1.21>

⑨第1項 내지 第8項에 規定된 것 외에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1997.12.13, 2000.1.21>

[本條新設 1997.1.13]

第**190**條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의 합병**<**개정 **2001.3.28>)**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商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당해 법인이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날로부터 2月이 경과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없다. <改正 1982.3.29, 1997.1.13, 1998.2.24, 1999.2.1, 2001.3.28>

第**190**條의**2 (**合併등**<**개정 **1999.2.1>)**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다른 法人과 合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合併要件·節次등 合併基準에 따라 合併關聯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01.3.28>

②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分割 또는 分割合併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營業의 讓受 또는 讓渡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1999.2.1>

③第8條第2項, 第14條 내지 第16條,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9.2.1>

[全文改正 1997.1.13]

第**191**條 **(**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商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第522條·第527條의2 및 第530條의3(同法 第53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分割合併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規定하는 議決事項에 관하여 理事會의 決議가 있는 때에는 그 決議에 반대하는 株主(商法 第3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 없는 株主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商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法人

에 대하여 書面으로 그 決議에 反對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을 당해 法人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商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日이내에 株式의 種類와 數를 記載한 書面으로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1991.12.31, 1994.1.5, 1997.1.13, 1999.2.1, 2001.3.28, 2002.1.26>

②第1項의 請求에 대하여 당해 法人은 買受의 請求期間이 종료하는 날부터 1月이내에 당해 株式을 買受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③第2項의 買受價格은 株主와 당해 法人間의 協議에 의하여 決定한다. 다만,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買受價格은 理事會의 決議日 이전에 有價證券市場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去來된 당해 株式의 去來價格을 기준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算定된 금액으로 하며, 당해法人이나 買受를 청구한 株式數의 100分의 30이상이 그 買受價格에 反對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그 買受價格을 調整할 수 있다. 이 경우 買受價格의 調整의 申請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를 종료하여야 하는 날의 10日전까지 하여야 한다. <改正 1998.1.8, 1999.2.1, 2001.3.28>

④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을 買受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株式을 處分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消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의 규정(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및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을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날. 이 경우 그 날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改正 1997.1.13, 2001.3.28>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商法 第363條의 規定에 의하여 동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第522條 및 第530條의3(同法 第53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分割合併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規定하는 議決事項에 관한 株主總會의 召集의 통지 또는 公告를 하거나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規定에 의한 통지 또는 公告를 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買受請求權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同法 第3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 없는 株主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公告하여야 한다. <新設 1987.11.28, 1994.1.5,

1997.1.13, 1999.2.1, 2001.3.28, 2002.1.26>
[全文改正 1982.3.29]

第**191**條의**2** (議決權 없는 株式의 特例) ①商法 第37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 없는 株式數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株券上場法人(株式을 新規로 上場하기 위하여 株式을 모집 또는 賣出하는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協會登錄法人(株式을 協會仲介市場에서 新規로 去來되도록 하기 위하여 株式을 모집 또는 賣出하는 法人을 포함한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議決權 없는 株式은 그 한도의 計算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改正 1997.12.13, 1998.1.8, 1998.5.25, 1999.2.1>

1.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外國에서 株式을 발행하거나 外國에서 발행한 轉換社債·新株引受權附社債 기타 株式과 관련된 證券 또는 證書의 權利行使로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

2. 國家基幹産業등 國民經濟상 중요한 産業을 영위하는 法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法人으로서 金融監督委員會가 公益을 위하여 議決權없는 株式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法人이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

②第1項 各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議決權없는 株式과 商法 第37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없는 株式을 합한 議決權없는 株式의 總數는 發行株式總數의 2分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議決權없는 株式 總數의 發行株式總數에 대한 비율이 4分의 1을 초과하는 法人은 그 비율이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新株引受權의 행사, 準備金의 資本轉入 또는 株式配當등의 방법으로 議決權없는 株式을 발행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1998.5.25, 2000.1.21>

[本條新設 1997.1.13]

第**191**條의**3** (株式配當의 特例)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商法 第462條의2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익의 配當을 利益配當總額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株式으로써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株式의 時價가 額面額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1>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時價의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7.1.13]

第191條의4 (新種社債의 발행)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商法 第513條第1項 및 同法 第516條의2第1項에 規定된 社債와 다른 종류의 社債로서 利益配當에 참가할 수 있는 社債, 株式 기타 다른 有價證券과의 交換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가 부여된 社債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하는 社債의 내용 및 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7.1.13]

第191條의5 (社債發行의 特例)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발행하는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중 株式으로의 轉換 또는 新株引受權의 행사가 가능한 分에 해당하는 금액은 商法 第470條의 規定에 의한 社債發行限度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2.1>

[本條新設 1997.1.13]

第191條의6 (公共的 法人의 配當등의 特例) ①公共的 法人(第19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的 法人을 말한다)은 이익이나 利子를 配當함에 있어 政府에게 지급할 配當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商法 第46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法人의 株主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당해 株式을 발행한 法人의 우리社株組合에 가입한 從業員
2. 年間所得水準 및 所有財産規模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

②公共的 法人은 準備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資本에 轉入함에 있어 政府에게 발행할 株式의 전부 또는 일부를 商法 第461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共的 法人의 發行株式을 일정기간 所有하는 株主에게 발행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7.1.13]

第191條의7 (우리社株組合員에 대한 優先配定)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株式을 新規로 上場하고자 하는 法人이 株式을 모집 또는 賣出하는 경우에 당해 法人의 우리社株組合員은 모집 또는 賣出하는 株式總數의 100分의 20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株式의 配定을 받을 權利가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8.9.16>

1. 外國人投資促進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

2. 기타 우리社株組合員에 대한 優先配定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은 우리社株組合員이 所有하는 株式數가 新規로 발행되는 株式과 이미 발행된 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우리社株組合員에 대한 株式의 配定과 그 株式의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改正 1998.5.25>

[本條新設 1997.1.13]

第**191**條의**8**(保證金 등의 대신납부) ①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에 납부할 保證金 또는 供託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證金 또는 供託金은 上場有價證券(第17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協會에 登錄된 有價證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대신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②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上場有價證券에 의한 대신납부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에 대신납부할 수 있는 上場有價證券 및 당해 證券의 대신납부하는 價額의 評價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7.1.13]

第**191**條의**9** 삭제<2000.1.21>

第**191**條의**10** (株主總會의 召集公告)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株主總會를 召集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이하의 株式을 所有하는 株主에 대하여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議日을 정하여 그 2週전에 總會를 召集하는 뜻과 會議의 目的事項을 2이상의 日刊新聞에 각각 2回이상 公告함으로써 商法 第363條第1項의 召集通知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商法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그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1.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제191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사업개요·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

[本條新設 1997.1.13]

第191條의11 (監事의 選任·解任등<개정 1999.2.1>) ①最大株主와 그 특수관계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所有하는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議決權있는 株式의 合計가 당해 法人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3 (定款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株主는 그 초과하는 株式에 관하여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 委員(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에 한한다)의 選任 및 解任에 있어서는 議決權을 행사하지 못한다.<개정 1999.2.1, 2000.1.21>

②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株主總會의 目的事項으로 監事의 選任 또는 監事의 報酬決定을 위한 議案을 上程하는 경우에는 理事의 選任 또는 理事의 報酬決定을 위한 議案과는 별도로 上程하여 議決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③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는 商法 第447條의4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理事에 대하여 監査報告書를 株主總會日의 1週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2.1, 2000.1.21>

[本條新設 1997.1.13]

第191條의12 (監事의 資格등<개정 1999.2.1>)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1人이상의 常勤監事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1, 2000.1.21>

②삭제<1999.2.1>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常勤監事가 되지 못하며, 常勤監事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職을 상실한다.<개정 1999.2.1>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의하여 解任되거나 免職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당해會社의 主要株主
6. 당해 會社의 常勤任·職員 또는 최근 2年이내에 常勤任·職員이었던 者
7. 第5號 및 第6號외에 당해 會社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本條新設 1997.1.13]

第191條의13 (少數株主權의 행사<개정 1999.2.1>) ①6月전부터 계속하여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發行株式總數의 1萬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403條(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改正 1998.5.25, 1999.2.1>

②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商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③6月전부터 계속하여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發行株式總數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466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改正 1999.2.1, 2001.3.28>

④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商法 제385조(商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⑤6月전부터 계속하여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發行株式總數의 1千分

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의 15)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366條 및 第467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商法 第366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때에는 議決權있는 株式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999.2.1>

⑥第1項의 株主가 商法 第403條(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規定하는 訴訟을 제기하여 勝訴한 때에는 會社에 대하여 訴訟費用 기타 訴訟으로 인한 모든 費用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8.2.24]

第**191**條의**14** (株主提案<개정 **1999.2.1**>) ①6月전부터 계속하여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의 1千分의 1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의 5)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理事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株主總會의 目的事項으로 할 것을 提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主提案을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株主總會의 目的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그가 제출하는 議案의 要領을 商法 第363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와 公告에 기재할 것을 理事에게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0.1.21>

③理事會는 株主提案의 내용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株主總會의 目的事項으로 上程하여야 하며, 株主提案한 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株主總會에서 당해 議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本條新設 1997.1.13]

第**191**條의**15** (額面未達發行에 대한 特例)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商法 第41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商法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決議만으로 法院의 認可를 얻지 아니하고도 株式을 額面未達의 價額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法人이 商法 第45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3.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決議에서는 株式의 最低發行價額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最低發行價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算定한 價格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은 株主總會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株主總會의 決議日부터 1月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1]

第191條의16 (社外理事의 選任)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은 社外理事를 理事 總數의 4分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社外理事는 3人이상으로 하되, 理事 總數의 2分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證券投資會社法에 의한 證券投資會社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③第54條의5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社外理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하고, 第54條의5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3.28>

④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選任된 非常任理事 또는 社外理事는 이 法에 의하여 選任된 社外理事로 본다.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⑥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社外理事를 選任 또는 解任하거나 社外理事가 任期滿了외의 사유로 退任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選任·解任 또는 退任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본조신설 2000.1.21]

第191條의17 (監査委員會)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제54조의6제2항 내지 제6항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의 구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3.28>

[본조신설 2000.1.21]

제191조의18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상법 제3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자 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의 배제여부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다른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191조의19 (대형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결의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단일의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본조신설 2001.3.28]

第192條 (株券上場法人등의 財務管理基準<개정 2000.1.21>) ①金融監督委員會는 投資者를 보호하고 공정한 去來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株券上場法人 도는 協會登錄法人의 건전한 財務處理를 위한 財務管理基準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改正 1997.1.13, 1998.1.8, 2000.1.21>

1. 有償增資의 요건에 관한 사항
2. 財務構造의 개선을 위한 적립금에 관한 사항
3. 配當에 관한 사항
4. 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證券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第1號 내지 第4號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務管理基準에 따라야 한다. <改正 1997.1.13, 2001.3.28>

第192條의2 削除 <1998.12.28>

第192條의3 (配當에 대한 特例) ①年 1回의 決算期를 정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年度중 1回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株主에게 理事會決議로써 金錢으로 利益配當(이하 "中間配當"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②第1項의 理事會決議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일정한 날로부터 45日내에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間配當金은 理事會決議가 있는 날로부터 1月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定款에서 中間配當金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中間配當은 直前 決算期의 貸借對照表上의 純財産額에서 다음 各號의 金額을 공제한 額을 限度로 한다.

1. 直前 決算期의 資本의 額
2. 直前 決算期까지 積立된 資本準備金과 利益準備金의 合計額

3. 直前 決算期의 定期總會에서 利益配當하기로 정한 金額

4. 中間配當에 따라 당해 決算期에 積立하여야 할 利益準備金

⑤당해 決算期의 貸借對照表上의 純財産額이 商法 第462條第1項 各號의 金額의 合計額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中間配當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당해 決算期의 貸借對照表上의 純財産額이 商法 第462條第1項 各號의 金額의 合計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中間配當에 관하여 理事會決議에 贊成한 理事는 당해 法人에 대하여 連帶하여 그 差額(中間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작을 경우에는 中間配當額)을 賠償할 責任이 있다. 다만, 그 理事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第5項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證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商法 第340條第1項, 第344條第1項, 第350條第3項(商法 第423條第1項, 第516條第2項 및 第516條의9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第354條第1項, 第370條第1項, 第457條第2項, 第458條, 第464條 및 第625條第3號의 規定의 적용에 관하여는 中間配當을 商法 第4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利益의 配當으로, 商法 第350條第3項의 規定의 적용에 관하여는 第1項의 일정한 날을 營業年度末로, 商法 第635條第1項第22號의2의 規定의 적용에 관하여는 第3項의 기간을 商法 第464條의2第1項의 기간으로 본다.

⑧商法 第399條第3項 및 第400條의 規定은 第6項의 規定에 따라 理事가 連帶責任을 지는 경우에, 商法 第462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中間配當을 한 경우에 각각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7.12.13]

第**193**條 (上場法人등에 대한 措置) 金融監督委員會는 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規程 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法人의 株主總會에 대하여 任員의 解任을 勸告하거나 일정기간 有價證券의 발행제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1997.1.13, 1998.1.8>

[全文改正 1982.3.29]

第**10**章 補則

第**194**條 (場外去來) ①有價證券市場 및 協會仲介市場외에서의 賣買去來 및 決濟의 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13, 1997.12.13,

1998.5.25, 2000.1.21>

②削除 <1987.11.28>

第**194**條의**2** (電子文書에 의한 申告등)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證券先物委員會·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申告書·보고서 기타 書類 또는 資料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電子文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改正 1998.1.8>

[本條新設 1997.1.13]

第**194**條의**3** (監査人에 의한 監査證明) ①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財務에 관한 書類를 제출하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에 의하여 會計監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8.1.8>

②金融監督委員會는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計監査를 한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監査人(이하 "監査人"이라 한다) 또는 會計監査를 받는 法人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 및 보고의 요구와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1998.1.8>

③外國法人등이 外國證券法令에 따라 會計監査를 받은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會計監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1997.1.13]

第**195**條 削除 <1982.3.29>

第**196**條 削除 <1982.3.29>

第**197**條 (監査人의 損害賠償責任) ①善意의 投資者에 대한 監査人의 損害賠償責任은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 第17條第2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82.3.29,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額의 算定에 관하여는 第1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82.3.29>

③削除 <1997.12.13>

第198條 削除 <1982.3.29>

第199條 (議決權代理行使의 勸誘의 제한) ①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上場株式 또는 協會에 登錄된 株式의 議決權의 行使를 자기 또는 他人에게 代理하게 할 것을 勸誘하지 못한다.<개정 1999.2.1>

②國家基幹産業등 國民經濟상 중요한 産業을 영위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上場法人 또는 登錄法人(이하 "公共的 法人"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公共的 法人만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株式의 議決權의 代理行使를 勸誘할 수 있다.<新設 1987.11.28>

第200條 (公共的 法人이 발행한 株式의 所有制限등) ①누구든지 公共的 法人이 발행한 株式은 누구의 名義로 하든지 자기의 計算으로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基準을 초과하여 所有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議決權이 없는 株式은 總發行株式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특수관계인의 名義로 所有하는 때에는 자기의 計算으로 取得한 것으로 본다.<改正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4.1.5, 1997.1.13, 1998.1.8>

1. 당해 有價證券이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된 당시에 總發行株式의 100分의 10이상을 소유한 株主는 그 所有比率

2. 第1號의 規定에 의한 株主외의 者는 總發行株式의 100分의 3이내에서 定款이 정하는 비율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所有比率限度에 관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所有比率限度까지 公共的 法人이 발행한 株式을 所有할 수 있다.<改正 1994.1.5, 1998.1.8>

③第1項 및 第2項에서 規定하는 基準을 초과하여 사실상 株式을 所有하는 者는 그 超過分에 한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으며 金融監督委員會는 그 基準을 초과하여 사실상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 그 基準에 적합하도록 是正할 것을 命할 수 있다.<新設 1982.3.29, 1998.1.8>

第200條의2 (株式의 大量保有등의 보고)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株式등을 大量保有(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게 되는 株式 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 등의 總數의 100分의 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者(大統領令이 정하

는 者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日(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은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내에 그 保有狀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協會登錄法人의 경우에는 協會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保有株式比率이 당해 法人의 株式 등의 總數의 100分의 1의 비율이상 변동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日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投資者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그 보고시기 및 보고내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改正 1994.1.5, 1997.1.13, 1998.1.8, 1998.5.25, 2000.1.21>

②第21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에서 規定하는 株式 등의 數 및 株式 등의 總數의 算定方法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新設 1997.1.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 등의 大量保有狀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이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이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大量保有狀況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新設 1997.1.13>

④金融監督委員會 및 證券去來所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를 비치하고 一般人이 이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1998.1.8>

⑤金融監督委員會는 공익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者, 당해 株式등의 發行會社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명하거나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그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新設 1994.1.5, 1997.1.13, 1998.1.8>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新設 1994.1.5, 1997.1.13>

[本條新設 1991.12.31]

第200條의3 (違反株式 등의 議決權行使제한) 第200條의2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 등의 大量保有狀況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 (그 訂正報告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決議權있는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5를 초과하는 부분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으며, 金融監督委員會는 당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改正 1998.1.8>

[本條新設 1997.1.13]

第200條의4 (準用規定) 第11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20條의 規定은 大量保有狀況報告 및 大量保有狀況變動報告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7.1.13]

第201條 削除 <1982.3.29>

第202條 削除 <1998.1.8>

第202條의2 削除 <1998.1.8>

第203條 (外國人의 有價證券取得의 制限) ①外國人 또는 外國法人등에 의한 有價證券取得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制限을 할 수 있다.<改正 1987.11.28, 1997.1.13>

②外國人 또는 外國法人등에 의한 公共的 法人의 株式取得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에 추가하여 당해 公共的 法人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新設 1987.11.28, 1997.1.13>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을 취득한 者는 당해 株式에 대한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으며,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新設 1987.11.28, 1998.1.8>

④削除 <1997.1.13>

第204條 削除 <1998.1.8>

第205條 削除 <1998.1.8>

第205條의2 削除 <1998.1.8>

第206條 削除 <1998.1.8>

第206條의2 (權限의 위임) ①金融監督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

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證券先物委員會에 위임할 수 있다.

②證券先物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議決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先物委員會의 議決이 違法하거나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議決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이 法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 또는 證券先物委員會의 權限중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각각 金融監督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證券先物委員會의 委員長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⑤第4項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1998.1.8]

第206條의3 (金融監督委員會 및 證券先物委員會의 조사, 압수·수색<개정 2002.1.26>) ①金融監督委員會(第188條·第188條의2 및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證券先物委員會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金融監督委員會의 規程 또는 命令에 위반된 사항이 있거나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關係者에 대하여 參考가 될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명하거나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위하여 關係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調査事項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陳述書의 제출
2. 調査事項에 관한 證言을 위한 출석
3. 調査에 필요한 帳簿·書類 기타 物件의 제출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1.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證券關係機關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調査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결과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金融監督委員會의 規程 또는 命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是正命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를 할 수 있으며, 調査 및 措置를 함에 있어 필요한 節次·措置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는 異常賣買에 대한 會員監理 결과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金融監督委員會의 規程 또는 命令에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⑦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⑧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02.1.26>

⑨조사공무원이 제3항제2호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심문 또는 압수·수색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⑩형사소송법중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6>

⑪조사공무원이 영치·심문·압수 또는 수색을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⑫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全文改正 1998.1.8]

第206條의4 (外國證券監督機關과의 情報交換 등<개정 2000.1.21>) ①金融監督委員會는 外國의 證券監督機關과 情報交換을 할 수 있다.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交換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8.5.25>

③金融監督委員會(第188條·第188條의2 및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證券先物委員會를 말한다)는 外國證券監督機關이 目的·범위 등을 명시하여 이 法에 의한 調査 또는 檢査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1, 2002.1.26>

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2.1.26>

1.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조사 또는 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3.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本條新設 1998.1.8]

第206條의5 (證券先物委員會의 審議) 金融監督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證券先物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改正 1998.2.24, 1999.2.1, 2000.1.21, 2002.1.26>

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書類

나.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法人의 管理基準

다. 第20條(第27條의2, 第186條의5, 第189條의2第5項, 第190條의2第3項, 第20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措置節次 및 措置基準

라. 第19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및 協會登錄法人의 財務管理基準

마. 제206조의3제5항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調査 및 措置의 節次·措置基準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措置·命令 등을 하는 경우

가. 第20條(第27條의2, 第186條의5, 第189條의2第5項, 第190條의2第3項, 第20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措置

나. 第54條(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

다. 第19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買受價格의 調整

라. 第191條의2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없는 株式發行의 인정

마. 第193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

바. 第20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所有比率限度의 승인

사. 제206조의3제5항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에 따른 措置

아. 第206條의11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賦課處分

자. 第2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賦課處分

3. 기타 第1號 및 第2號외에 金融監督委員會가 證券先物委員會의 審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本條新設 1998.1.8]

第206條의6 (金融監督院長에 대한 指示·監督등) 金融監督委員會 또는 證券先物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院長에 대하여 指示·監督 및 業務執行方法의 변경 기타 監督上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8.1.8]

第206條의7 (金融監督院의 業務) 金融監督院은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 또는 證券先物委員會의 指示·監督을 받아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業務를 행한다.<개정 1999.2.1>

1. 有價證券發行人의 登錄에 관한 사항
2. 有價證券申告書에 관한 사항
3. 有價證券의 公開買受에 관한 사항
4.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院長의 檢査를 받아야 하는 機關의 檢査에 관한 사항
5. 上場法人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登錄法人과 上場法人의 企業分析 및 企業內容의 公示에 관한 사항
7. 有價證券市場 및 協會仲介市場외에서의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의 監督에 관한 사항
8. 政府로부터 委託받은 業務
9. 第1號 내지 第8號외에 이 法에 의하여 부여된 業務
10. 第1號 내지 第9號의 業務에 부수되는 業務

[本條新設 1998.1.8]

第206條의8 (分擔金)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金融監督院의 運營經費의 일부를 分擔하여야 한다.

1. 顧客으로부터 委託手數料를 받는 證券會社

2.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書를 제출하는 발행인

3.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院長의 檢査를 받는 機關

4. 登錄法人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料率·한도 기타 分擔金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8.1.8]

第**206**條의**9** (金融監督委員會·證券先物委員會 및 金融監督院의 委員·職員 등의 責任) 第83條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責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1. 金融監督委員會의 委員 및 所屬公務員

2. 證券先物委員會의 委員

3. 金融監督院의 院長·副院長·副院長補·監事 및 所屬職員

[本條新設 1998.1.8]

第**206**條의**10** (聽聞)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55條 또는 第70條의11(第18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證券會社·投資諮問會社 및 名義改書代行會社에 대한 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

2. 第155條第1項(第179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證券金融會社 및 仲介會社에 대한 許可의 取消

[전문개정 1999.2.1]

第**10**章의**2** 課徵金의 賦課 및 徵收<신설 **1999.2.1**>

第**206**條의**11** (課徵金) ①金融監督委員會는 第14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有價證券申告書상의 募集價額 또는 賣出價額의 100分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第8條·第11條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說明書 기타 提出書類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第8條·第11條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說明書 기타 提出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25條의3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公開買受申告書에 기재된 公開買受豫定總額의 100分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이 경우 公開買受豫定總額은 公開買受할 株式등의 數量을 公開買受價格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3.28>

1. 第21條의2·第22條·第23條의2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說明書 기타 提出書類 또는 公告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第21條의2·第22條·第23條의2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說明書 기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公告하여야 할 사항을 公告하지 아니한 때

③金融監督委員會는 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1.3.28>

1. 第18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公示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第18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公示의 내용을 申告 또는 公示하지 아니한 때

④金融監督委員會는 第186條의2第1項 또는 第186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事業年度중에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 형성된 당해 法人이 발행한 株式의 日日平均去來金額의 100分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法人이 발행한 株式이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 去來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第186條의2第1項 또는 第186條의3의 規定에 의한 報告書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第186條의2第1項 또는 第186條의3의 規定에 의한 報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金融監督委員會는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合併(分割合併을 포함한다) 또는 分割의 對價로 교부하는 株式의 帳簿價額(營業의 讓渡 또는 讓受의 경우에는 讓渡 또는 讓受의 對價로 취득 또는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第19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제

출된 申告書類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分의 2(新設合併의 경우에는 100分의 1로 하며, 그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第19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함에 있어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第19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54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위반금액(제5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금액, 제2호의 경우에는 금전대여 또는 신용공여액, 제4호의 경우에는 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는 課徵金賦課對象者에게 각 해당規定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9.2.1]

第206條의12 (課徵金의 賦課) ①金融監督委員會는 第206條의11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回數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206條의11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경우에는 미리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0.1.21>

③金融監督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을 위반한 法人이 合併을 하는 경우 당해法人이 행한 위반행위는 合併후 存續하거나 合併에 의하여 新設된 法人이 행한 행위로 보아 課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④課徵金의 賦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1]

第206條의13 (의견제출) ①金融監督委員會는 課徵金을 賦課하기 전에 미리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 등은 金融監督委員會의 會議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1]

第206條의14 (異議申請) ①第206條의11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賦課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金融監督委員會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하여 30日이내에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決定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日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1]

第206條의15 (課徵金納付期限의 연장 및 分割納付) ①金融監督委員會는 課徵金을 賦課받은 者(이하 "課徵金納付義務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課徵金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納付期限을 연장하거나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擔保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災害 또는 盜難등으로 財産에 현저한 損失을 입은 경우
2. 事業與件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危機에 처한 경우
3. 課徵金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第1號 내지 第3號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課徵金納付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納付期限의 연장을 받거나 分割納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納付期限의 10日전까지 金融監督委員會에 申請하여야 한다.

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期限이 연장되거나 分割納付가 허용된 課徵金納付義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의 연장 또는 分割納付決定을 取消하고 課徵金을 일시에 徵收할 수 있다.

1. 分割納付決定된 課徵金을 그 納付期限內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擔保의 변경 기타 擔保補塡에 필요한 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强制執行, 競賣의 開始, 破産宣告, 法人의 解散,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을 받는 등 課徵金의 전부 또는 殘餘分을 徵收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第1號 내지 第3號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納付期限의 연장, 分割納付 또는 擔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1]

第**206**條의**16** (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 ①金融監督委員會는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內에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納付期限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前日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

②金融監督委員會는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內에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督促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課徵金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및 加算金의 徵收 또는 滯納處分에 관한 業務를 國稅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④課徵金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1]

第**207**條 삭제<1999.2.1>

第**11**章 罰則

第**207**條의**2**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回避한 損失額의 3倍에 해당하는 금액이 2千萬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回避損失額의 3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88條의2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本條新設 1997.1.13]

제207조의3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거나 신주를 발행한 자 및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추가서류, 제11조(제186조의5 또는 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신고서,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제190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자

3. 제11조제3항 후단(제186조의5 또는 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공고,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공고 또는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공고 또는 공시를 한 자

5. 제5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1.3.28]

第20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4.1.5,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1. 第28條第1項·第28條의2第1項·第145條第1項·第17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業務를 營爲하거나 第55條 또는 第155條(第179條에서 準用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당해 業務를 營爲한 者

2. 第28條의2第3項 및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63條(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76條·第95條第1項·第107條第1項 또는 第173條의3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59條(第70條의7 또는 第1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60條第1項(第70條의7 또는 第1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61條(第70條의7 또는 第1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第206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第188條·第188條의2 및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證券先物委員會를 말한다)의 調査要求에 不應한 者

5. 第83條(第206條의9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

6. 削除 <1997.1.13>

第**20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4.1.5, 1997.1.13, 1997.12.13, 1998.1.8, 1998.2.24, 1999.2.1, 2001.3.28>

1. 삭제 <2001.3.28>

2. 第8條의 規定에 違反한 有價證券의 모집·賣出을 주선한 者

3.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21條第1項 또는 제23조(제2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第57條·第155條第2項(第179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정지를 당한 후 당해 業務를 營爲한 者

6. 第62條 또는 第70條의10의 規定에 위반한 者

7. 第54條(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168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8. 第1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證券關係團體를 設立한 者

9. 第188條第1項, 第189條의2第3項, 第190條의2第1項·第2項 또는 第199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第21條의3, 第200條第3項, 第200條의3 또는 第20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第**21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百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1.8, 1998.2.24, 1999.2.1>

1. 第20條(第27條의2·第186條의5·第189條의2第5項·第190條의2第3項 또는 第20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處分에 違反한 者

2. 第13條(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42條(第70條의7·第154條·第169條·第178條·第179條 또는 第18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지 第44條 또는 第70條의2第5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削除 <1997.1.13>

4. 삭제<1999.2.1>

4의2. 第70條의2第1項·第2項, 第70條의9第1項 또는 第18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業務를 영위하거나 第70條의11(第18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당해業務를 영위한 者

5. 第70條의6(第70條의8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101條·第188條第6項·第194條의3 또는 第200條의2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6. 삭제 <2001.3.28>

7. 第1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預託者計座簿나 第17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顧客計座簿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者

第**21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百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82.3.29, 1987.11.28, 1997.1.13, 1999.2.1>

1. 第57條(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第155條第2項(第18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營業의 정지를 당한 후 당해營業을 영위한 者

2. 第186條第1項·第2項, 第186條의2 또는 第186條의3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189條의4第8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200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212**條 (罰則) 第17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全文改正 1994.1.5]

第**213**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

한다.<改正 1997.1.13, 1998.1.8, 1998.2.24, 1999.2.1, 2000.1.21, 2002.1.26>

1. 第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2. 第18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9條第1項(第27條의2·第186條의5·第189條의2第5項 또는 第190條의2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53條第1項(第70條의7·第157條·第169條 또는 第178條 내지 第1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174條의12 또는 第200條의2第5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調査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4. 第37條(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70條의8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189條의2第4項 또는 第191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의 처분을 게을리 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1997.1.13, 1998.1.8, 1998.2.24, 1999.2.1, 2002.1.26>

1. 第17條(第27條의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36條·第46條 또는 第10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9條第1項(第27條의2·第186條의5·第189條의2第5項 또는 第190條의2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53條第2項(第70條의7·第157條·第169條 또는 第178條 내지 第1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命令에 위반한 者

3. 第47條(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제54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91조의16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54조의6제1항·제2항 또는 제191조의17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第17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第174條의7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實質株主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통지를 한 者

7. 第174條의6第4項 또는 第174條의8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8. 제191조제5항, 제191조의10제2항·제3항, 제191조의11제2항 또는 제191조의1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改正 1998.1.8>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處分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全文改正 1994.1.5]

第**214**條 (懲役과 罰金의 併科) ①第207條의2 내지 第210條에 規定하는 罪를 犯한 者에게는 懲役과 罰金을 併科할 수 있다.<改正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2.4.27>

第**215**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07條의2 내지 第21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1997.1.13>

[全文改正 1994.1.5]

附則 <제2920호,1976.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77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12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價證券申告書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財務部長官이 受理한 有價證券申告書(訂正申告書를 포함한다) 및 通知書는 委員會가 受理한 것으로 보며, 財務部長官이 有價證券申告書의 效力發生日을 指定한 것은 委員會가 指定한 것으로 본다.

②委員會는 第9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1977年 12月 31日까지는 委員會에 登錄된 法人에 대하여 有價證券申告의 效力發生日을 指定할 수 있다.

第3條 (證券會社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證券會社는 이 法에 의한 證券會社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3年내에 第2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要件을 갖추고 許可를 받지 아니하면 그 許可를 取消한다.

第4條 (會計處理에 관한 經過措置) 證券會社의 會計處理는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가 證券會社會計處理規程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財務部長官의 命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證券會社에 대한 信用供

與등에 관하여 財務部長官이 한 命令은 第49條 및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命令으로 본다.

第6條 (外務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財務部에 登錄된 外務員은 이 法에 의하여 委員會에 登錄된 것으로 본다. 다만, 委員會는 第6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資格이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審査하여 再登錄을 받아야 한다.

第7條 (韓國證券去來所의 監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韓國證券去來所의 監事는 이 法에 의한 證券去來所의 常任監事로 본다.

第8條 (去來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韓國證券去來所에 登錄된 去來員은 이 法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본다.

第9條 (上場有價證券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되어 있는 有價證券은 이 法에 의하여 上場된 有價證券으로 본다.

②第8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의 上場에 관하여는 同條同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 (半期報告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上場法人으로서 그 事業年度 開始후 6月이 경과한 法人은 第92條의 規定에 의한 半期報告書를 이 法 施行日부터 45日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1條 (證券去來所 出資證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 現在 政府 및 證券會社 이외의 者가 所有하는 證券去來所 出資證券은 이 法 施行日부터 證券去來所가 이를 買入하여 消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買入方法·時期·價格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監督院의 設立) ①財務部長官은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任命하여 設立委員會를 構成하고 監督院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게 한다.

②設立委員會는 監督院의 定款을 作成하여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후 第130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會는 第3項의 登記를 完了한 때에는 그 事務와 財産을 證券監督院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⑤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委員을 任命한 때에는 設立委員會에 第204條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을 交付할 수 있다.

第13條 (委員會의 機能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한 委員會와 監督院의 權限은 委員會가 構成되고 監督院이 設立될 때까지 財務部長官이 행한다.

第14條 (委員會의 初代委員의 任期) 委員會의 初代委員의 任期는 第12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人은 1年, 1人은 2年, 1人은 3年으로 한다.

第15條 (所有株式의 制限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上場法人에 있어서는 第200條第1項에 規定하는 上場된 당시는 이 法 施行後 最初의 株主名簿 閉鎖基準日로 본다.

第16條 (證券金融會社의 任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證券金融會社의 理事와 監事의 任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7條 (證券業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證券業協會에 대하여 財務部長官이 한 指示는 이 法에 의한 委員會의 措置로 본다.

第18條 (相互株 所有에 관한 經過措置) 上場法人이 이 法 施行당시 第18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所有하고 있는 株式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내에 讓渡하여야 한다.

第19條 (非上場法人의 合併에 관한 經過措置) 上場法人이 有價證券登錄法人과 合併하는 경우에는 1977年 12月 31日까지 第190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0條 (舊法을 引用한 法令에 관한 經過措置)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證券去來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代置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3541호,1982.3.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2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價證券申告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受理한 有價證券申告書에 대한 效力發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후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申告書 및 그 添附書類,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說明書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發行實績報告書의 書式은 이 法에 의하여 委員會가 이를 정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任員의 資格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證券會社·證券金融會社·證券業協會 및 對替決濟會社의 任員은 각각 第33條第1項 및 第2項第5號(第149條·第169條 또는 第1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불구하고 選任당시의 任期동안 在職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당시 證券會社·證券金融會社 및 對替決濟會社의 任員은 第33條의2(第150條 또는 第1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불구하고 選任당시의 任期동안 在職할 수 있다.

第4條 (證券貯蓄業務에 관한 經過措置) 證券會社의 證券貯蓄業務는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가 證券貯蓄業務規程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規程에 의한다.

第5條 (投資相談士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委員會에 登錄된 外務員은 이 法에 의하여 監督院에 登錄한 投資相談士로 본다.

②證券會社는 證券會社의 營業所내에서의 投資相談士의 業務를 이 法 施行日로부터 2

年이 경과하는 날까지 第6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任·職員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보고한 事項은 이 法에 의하여 監督院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處分은 이 法에 의한 監督院의 處分으로 본다.

第6條 (會計監査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公認會計士와 監査契約은 締結한 法人에 대한 監査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大量株式所有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株主로서 第200條第1項 後段의 規定의 適用으로 同條第1項 前段의 所有限度를 초과하게 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內容을 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하며, 그 申告된 株式에 대하여는 同條第1項의 上場당시의 株式所有比率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01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大量株式所有에 관한 申告를 한 者는 第188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主要株主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3945호,1987.11.28>

第1條 (施行日) ①이 法은 1988년 1月 1日부터 施行하되, 第74條 및 第82條의 改正規定은 政府가 所有하는 證券去來所의 出資證券의 전부를 賣却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1988年 1月 1日까지 政府가 所有하는 證券去來所의 出資證券의 전부를 賣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法 第6章에 속하는 規定의 改正規定(第89條·第92條·第105條 및 第107條의 改正規定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그 賣却日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價證券申告書에 관한 適用例) 第8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申告書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適用한다.

第3條 (投資諮問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投資諮問業을 영위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第7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財務部에 投資諮問業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4條 (證券去來所에 관한 經過措置) ①證券去來所는 이 法 施行(第6章에 속하는 規定의 改正規定의 施行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후 3月이내에 이 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去來所에 登錄된 去來員은 이 法에 의한 會員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證券去來所의 資本金은 이 法에 의한 會員의 出資金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의 證券去來所의 社長·執行幹部 및 監事는 이 法에 의한 理事長·專務理事·常任理事 및 監事가 選任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그 職務를 행한다.
⑤이 法 施行당시의 社長·執行幹部 및 監事가 이 法에 의한 理事長·專務理事·常任理事 및 監事로 각각 다시 選任되는 경우 그 任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한 期間을 通算하여 계산한다.
第5條 (監督院의 副院長補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監督院의 定款에 의한 副院長補는 이 法에 의한 副院長補로 보며, 그 任期는 監督院의 定款에 의하여 任命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附則 <제4469호,1991.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0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第187條 및 第20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 각각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證券會社의 資本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證券會社는 第28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株式의 大量所有의 제한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 法 第200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에 해당되는 者는 그 所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株式의 大量所有등의 보고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0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者는 그 所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委員會와 證券去來所에 보고하여야 한다.

附則 <제4701호,1994.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00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4月 1日부터, 第8章第3節의 改正規定(第173條·第173條의2 내지 第173條의6·第174條·第174條의2·第174條의4 내지 第174條의8·第175條·第176條 및 第178條) 및 第187條의 改正規定은 證券預託院이 성립한 날부터 施行한다.<개정 1997.1.13>
第2條 (株式買受請求權에 관한 적용례) 第19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에 최초로 株主總會召集의 통지 또는 公告가 행하여진 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3條 삭제<1995.12.29>
[개정내용(1999.2.1 제5736호 개정문)의 오류로 그 처리를 생략함.
法律 第4701號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 附則 第3條를 削除한다.]
第4條 (投資相談士의 登錄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證券監督院에 登錄된 投資相談士는 이 法에 의하여 證券業協會에 投資相談士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監督院에 보고한 사항은 이 法에 의하여 證券業協會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第5條 (對替決濟會社의 證券預託院으로의 轉換)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對替決濟會社(이하 "對替決濟會社"라 한다)가 證券預託院으로의 轉換에 관하여 株主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財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第17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證券預託院으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 對替決濟會社의 代表理事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證券預託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하며, 證券預託院의 設立登記등에 관한 事務를 처리한다.

③對替決濟會社는 證券預託院이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영위한다.

④證券預託院이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對替決濟會社의 株主는 證券預託院의 株主가 되며, 對替決濟會社의 모든 權利·義務는 證券預託院이 이를 包括承繼한다. 이 경우 對替決濟會社는 商法의 規定에 의한 解散 및 淸算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承繼日에 소멸된다.

⑤證券預託院 성립당시의 對替決濟會社의 任員은 이 法에 의한 證券預託院의 任員으로 보며, 그 任期는 對替決濟會社의 任員으로 選任된 날부터 起算한다.

第6條 (有價證券用紙의 사용승인에 관한 經過措置) 第187條의 改正規定의 施行전에 非上場法人에 대하여 證券監督院이 행한 有價證券用紙의 사용승인은 證券預託院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第7條 (株式의 大量保有등의 보고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0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者는 그 保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委員會와 證券去來所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8條 (調停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종전의 規定에 의한 爭議調停機關은 이 法에 의한 證券紛爭調停委員會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을 申請한 것은 이 法에 의하여 紛爭調停을 申請한 것으로 본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證券預託院의 성립당시 다른 法令에서 對替決濟會社를 인용한 것은 證券預託院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선물거래법) <제5041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6條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株式先物去來에 대한 적용례) 本則 第3條第1號 各目의 去來중 證券去來法 第2

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株券 및 이를 기초로 하는 指數를 대상으로 하는 去來(이하 "株式先物去來"라 한다)에 관하여는 附則 第1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날부터 이 法을 적용한다.

第3條 내지 第5條 생략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證券去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의2를 削除한다.

第73條第1項第1號중 "(先物去來市場을 포함한다)"를 削除한다.

第94條第1項 後段을 削除한다.

法律 第4701號 附則 第3條를 削除한다.

附則 <제5254호,1997.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第6號 및 第189條의4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第8章第2節의 改正規定(第167條를 제외한다)은 韓國證券業協會가 成立한 날부터 각각 施行한다.<개정 1998.1.8>

第2條 (허위기재로 인한 賠償責任에 관한 적용례) 第14條第5號 및 第15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제출하는 有價證券申告書 및 事業說明書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3條 (有價證券의 公開買受에 관한 적용례) 第4章의 改正規定(第21條 내지 第27條의2)은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買受申告書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條 (證券會社의 任員資格에 관한 적용례) 第33條第2項第3號·第5號(第70條의7, 第149條第2項, 第169條, 第178條, 第179條第4項 및 第18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80條第4號·第5號, 第121條第4號·第5號 및 第133條第8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在任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條 (證券去來所의 監事의 任期에 관한 적용례) 第78條第7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選任되는 監事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6條 (事業報告書 및 半期報告書에 관한 적용례) 第186條의2 및 第186條의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開始되는 事業年度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事業年度終了日이 12月부터 2月까지에 속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事業年度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7條 (內部者의 短期賣買差益 반환에 관한 적용례) 第18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당해 法人의 株券 등을 買受 또는 賣渡한 후 6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8條 (株主總會 召集의 통지·公告에 관한 적용례) 第191條의10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株主總會 召集의 통지 또는 公告가 행하여진 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9條 (監事의 選任·解任등에 관한 적용례) 第191條의11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株主總會부터, 同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監事가 理事에게 제출하는 監査報告書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10條 (常勤監事의 資格에 관한 적용례) 第191條의12第2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株主總會에서 選任하는 監事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11條 (우리社株組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우리社株組合은 第2條第18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우리社株組合으로 본다.

第12條 (證券業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8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종전의 第2條第8項第4號의 證券業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第2條第8項第4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證券業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13條 (保護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第69條의2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基金積立證券會社는 이 法 施行후 1月이내에 同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基本積立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第14條 (類似投資諮問業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70條의8의 改正規定에 의한 類似投資諮問業을 영위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第70條의8의 改正規定에 따른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15條 (分擔金에 관한 經過措置) 1997年 1月 1日부터 이 法 施行전까지 종전의 第14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監督院이 徵收한 手數料는 第14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分擔金으로 본다.

第16條 (韓國證券業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6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 韓國證券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는 第16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韓國證券業協會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 協會의 會長은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韓國證券業協會의 定款을 작성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하며, 韓國證券業協會의 設立登記에 관한 事務를 처리한다.

③協會는 韓國證券業協會가 成立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영위한다.

④韓國證券業協會가 成立된 때에는 成立당시의 協會의 會員은 韓國證券業協會의 會員이 되며, 協會의 모든 權利·義務는 韓國證券業協會가 이를 包括承繼한다. 이 경우 協會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 解散 및 淸算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承繼日에 消滅된다.

⑤韓國證券業協會 成立당시의 協會의 任員은 이 法에 의한 韓國證券業協會의 任員으로 보며, 그 任期는 協會의 任員으로 選任된 날부터 起算한다.

第17條 (協會登錄法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94條의 規定에 의

하여 協會에 登錄된 法人은 第172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韓國證券業協會에 登錄된 法人으로 본다.

第18條 (預託對象有價證券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證券預託院이 지정한 預託對象有價證券은 第173條의7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第19條 (韓國上場會社協議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民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 韓國上場會社協議會는 第181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20條 (議決權없는 株式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法律 第3946號)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한 議決權없는 株式數(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法律 第4679號) 施行전에 발행한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法律 第4679號) 施行후에 발행되는 議決權없는 株式數를 포함한다)가 發行株式總數의 4分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第191條의2第1項 各號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第21條 (新種社債의 발행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한 新種社債는 第191條의4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第22條 (株主總會의 召集公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株主總會의 召集公告는 第191條의10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23條 (常勤監事에 관한 經過措置) 第191條의1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常勤監事를 두어야 하는 株券上場法人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까지 이를 選任하여야 한다.

第24條 (株式의 大量保有등의 보고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0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者는 그 保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2月 이내에 委員會와 證券去來所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25條 (다른 法律의 廢止등) ①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5423호,1997.12.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9條의5 및 第192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개정 1998.1.8>

②(中間配當에 관한 적용례) 第192條의3의 改正規定은 1998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開

始하는 事業年度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제5498호,1998.1.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9條의6, 第200條의2의 改正規定중 協會登錄法人에 관한 規定과 法律 第5254號 附則 第1條의 改正規定 및 法律 第5423號 附則 第1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206條의10의 改正規定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되, 第69條의6의 改正規定은 1998年 3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2條 (證券管理委員會 및 證券監督院의 廢止에 따른 一般的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管理委員會와 證券監督院이 행한 承認·認可·命令·處分·措置·同意·建議·勸告·指導·請求·調整등 및 檢査·調査는 金融監督委員會·證券先物委員會 및 金融監督院長이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證券管理委員會와 證券監督院이 接受·受理 등을 한 申告·報告등은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證券先物委員會 및 金融監督院長이 接受·受理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證券管理委員會에 登錄된 登錄法人은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된 것으로 본다.

第3條 (外國에서의 證券業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外國에서의 證券業營爲에 관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許可를 받은 證券會社는 第28條第7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4條 (保護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第69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會社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積立證券會社가 積立한 積立金額(第69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급 등으로 保護基金의 實質殘額이 積立金額에 未達하는 경우에는 第69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한 求償權을 포함한다)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당해 基金積立證券會社에 반환하여야 한다.

第5條 (外國에서의 投資諮問業 및 投資一任業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外國에서의 投資諮問業 또는 投資一任業의 영위에 관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許可를 받은 投資諮問會社는 第70條의2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6條 (證券去來所 등의 業務認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73條第1項第8號, 第162條의2第7號 및 第173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認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業務는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業務로 본다.

第7條 (證券金融會社 등의 定款變更承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定款變更에 관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승인을 얻은 證券金融會社·韓國證券業協會·仲介會社·名義改書代行會社 및 기타 證券關聯團體는 第151條第1項(第169條·第179條·第180條 및 第1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8條 (外國證券監督機關과의 情報交換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第12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管理委員會가 外國의 證券監督機關과 한 情報交換은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한 것으로 본다.

第9條 (協會登錄法人의 株式등의 大量保有등의 報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00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報告를 하여야 할 者는 그 保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證券管理委員會와 韓國證券業協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10條 (分擔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證券監督院에 지급한 分擔金은 第206條의8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院에 납부한 分擔金으로 본다.

第11條 (證券監督院의 存續 및 財産과 權利·義務의 承繼) ①證券監督院은 이 法의 改正에 불구하고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한 金融監督院이 設立되는 날까지 存續한다.

②金融監督院이 設立되는 날에 證券監督院에 속하는 모든 權利와 義務는 金融監督院이 이를 包括承繼하며, 그 財産과 權利·義務에 관한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證券監督院의 名義는 金融監督院의 名義로 본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院이 承繼하는 財産의 價額은 承繼당시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第11條의2 (證券管理委員會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①金融監督院이 設立되는 날까지 證券監督院은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第18條·第23條·第39條·第4章 및 第5章의 規定의 적용에 있어 이를 金融監督院으로 본다.

②金融監督院이 設立되는 날까지 證券監督院 院長은 金融監督委員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되 이 法 施行전에 證券管理委員會 委員長으로 임명된 者는 證券監督院 院長으로 임명된 者로 본다.

③金融監督院이 設立되는 날까지 證券監督院의 副院長·副院長補의 任命은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第29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法律에 의하여 임명된 者는 金融監督院이 設立되는 날까지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證券管理委員會가 廢止되는 날부터 金融監督院이 設立되는 날까지 證券監督院 院長

이 사고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院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본조신설 1998.2.24]

第12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3條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過怠料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財政經濟院長官이 賦課한 過怠料는 第213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賦課한 것으로 본다.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3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金融監督院

②相續稅및贈與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3條第2項第2號중 "證券管理委員會"를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1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5521호,1998.2.24>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1條·第21條의3·第25條의2第2項·第188條의2第1項·第189條의2第1項 및 第209條第4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有價證券의 公開買受에 관한 적용례) 第21條第2項, 第21條의3, 第25條의2第2項 및 第209條第4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買受申告書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附則 <제5539호,1998.5.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1998.9.16>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내지 第7條 생략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證券去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1條의7第1項第1號중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을 "外國人投資促進法"으로

한다.

⑧내지 ⑩省略

第9條 省略

附則(상법) <제5591호,1998.1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省略

②證券去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2條의2를 削除한다.

第192條의3第1項중 "協會登錄法人은 商法 第462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를 "協會登錄法人은"으로 한다.

③내지 ⑨省略

附則 <제5736호,1999.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86條의3, 第186條의5(分期報告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第191條의12第1項·第3項(協會登錄法人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第191條의13의 改正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3條, 第23條, 第29條, 第30條, 第33條第1項, 第35條, 第45條, 第48條, 第65條 내지 第69條, 第3節(第69條의6), 第70條의2第3項·第4項, 第73條, 第78條, 第81條, 第85條, 第86條, 第94條, 第104條, 第109條 내지 第111條, 第115條, 第117條, 第159條, 第162條의2, 第164條, 第173條의2, 第173條의6, 第173條의7, 第175條, 第176條, 第178條, 第179條, 第181條, 第186條第1項, 第189條, 第190條, 第191條第1項·第5項 및 第191條의12第2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허위기재등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免除에 관한 적용례) 第1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제출하는 有價證券申告書 또는 事業說明書(豫備事業說明書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第3條 (內部者의 短期賣買差益返還등에 관한 적용례) 第188條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 施行당시 協會登錄法人의 任員·職員 또는 主要株主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買收 또는 賣渡하는 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第188條第2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6月의 기간산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買收 또는 賣渡하는 時點부터 이를 起算한다.

第4條 (協會登錄法人의 監事의 選任·解任에 관한 적용례) 第191條의11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監事의 選任·解任 또는 報酬決定을 위한 議案을

상정하는 株主總會부터, 同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監事가 理事에게 제출하는 監事報告書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5條 (課徵金의 賦課에 관한 적용례) 第206條의11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제출·申告·公告·公示 또는 보고하는 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6條 (證券會社의 任員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任중인 證券會社의 任員이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33條第2項第4號의 改正規定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同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그 任期滿了시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證券會社의 顧客預託金 보관·관리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8條第2項第2號의 營業만을 許可받아 영위하고 있는 證券會社(外國證券會社의 國內支店을 포함한다)로서 顧客預託金을 預託받거나 보관·관리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44條의2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2年間은 第44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다.

第8條 (證券會社의 商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8條第2項第2號의 營業만을 영위하고 있는 證券會社의 商號에 대하여는 第62條第1項 後段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 (投資諮問業등의 登錄 또는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投資諮問業의 登錄을 하거나 投資一任業의 許可를 받은 者 및 類似投資諮問業의 申告를 한 者는 第70條의2·第70條의8 및 第70條의9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하거나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10條 (名義改書代行會社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名義改書代行會社는 第18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登錄한 것으로 본다.

第11條 (企業集團結合財務諸表의 제출에 관한 經過措置) 第186條의2第5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年 1月 1日이후 시작되는 事業年度의 企業集團結合財務諸表는 당해事業年度 종료후 7月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2條 (株式所有狀況報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188條第6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株式所有狀況을 보고하여야 하는 協會登錄法人의 任員 또는 主要株主는 同條同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그 株式所有狀況을 證券先物委員會와 協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13條 (協會登錄法人의 自己株式取得限度 초과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189條의2第1項 後段의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自己株式을 보유하고 있는 協會登錄法人은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金錢의 信託契約등의 만료시까지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第14條 (協會登錄法人의 常勤監事 選任에 관한 經過措置) 第191條의1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常勤監事를 두어야 하는 協會登錄法人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時까지 이를 選任하여야 한다.

第15條 (常勤監事의 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任중인 常勤監事의 資格에 관하여는 第191條의12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그 任期滿了시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52>省略

<53>證券去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35條第1項 前段·第51條第1項 但書·同條第2項 및 第179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28條第5項·第31條第1項·第32條第1項 本文·第55條 本文 및 第81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28條의2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하고, 同條第5項 前段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營業許可의 取消를 요청하거나 營業停止"를 "許可取消·營業停止"로 하며, 同條第6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30條 및 第180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각각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한다.

第53條第5項第1號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 證券業의 許可取消를 요청한다."를 "證券業의 許可取消"로 하고, 同項第2號중 "措置를 한다."를 "措置"로 한다.

第70條의7 後段을 削除한다.

第115條第1項 前段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하고, 同條第2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金融監督委員會와"를 "財政經濟部長官과"로 한다.

第172條의3第2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하고, 同條第3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金融監督委員會와"를 "財政經濟部長官과"로 한다.

<54>내지 <78>省略

第4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제6176호,2000.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3條·第54條의5·第54條의6·第58條·第64條·第160條·第174條의6第5項·第189條의2·第189條의4·第191條의9·第191條의11·第191條의12·第191條의14·第191條의16 및 第191條의17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證券會社·投資諮問會社·證券金融會社·協會의 任員인 者가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33條第2項의 改正規定(第70條의7·第149條第2項 및 第169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同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自己資本規制比率에 관한 經過措置)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證券會社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까지 第54條의2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에 의하여 다른 金融機關에서 전환된 證券會社 또는 다른 金融機關과 合併한 證券會社
2.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에 의하여 適期是正措置를 받고 그 計劃을 이행하고 있는 證券會社

第4條 (證券會社의 內部統制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證券會社는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第54條의4의 改正規定에 의한 內部統制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第5條 (證券會社의 社外理事 選任에 관한 經過措置) 第54條의5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를 選任하여야 하는 證券會社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에서 同 改正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를 選任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定期株主總會에서 社外理事로 選任된 者는 第54條의5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 (證券會社의 監査委員會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第54條의6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證券會社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에서 同 改正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7條 (株式買入選擇權附與法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法人의 任·職員에게 株式買入選擇權을 부여한 法人은 第189條의4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당해法人의 任·職員에게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第8條 (株券上場法人의 社外理事 選任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191條의16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를 選任하여야 하는 株券上場法人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에서 同 改正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를 選任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定期株主總會에서 社外理事로 選任된 者는 第191條의16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準用

되는 第54條의5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第191條의16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株券上場法人은 同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0事業年度 종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전까지는 社外理事의 數를 3人이상으로 하되, 理事會 總員의 2分의 1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이 法 施行당시 株券上場法人에 재임하고 있는 社外理事는 그 任期의 종료시까지 이 法에 의하여 選任된 社外理事로 본다.

第9條 (株券上場法人의 監査委員會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第191條의17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株券上場法人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에서 同 改正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10條 (株券上場法人의 監査委員會 設置에 따른 常勤監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191條의17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株券上場法人에 재임하고 있는 常勤監事(常勤監事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당해會社의 理事會가 지명한 常勤監事를 말한다)가 附則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定期株主總會日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株主總會에서 解任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法人의 監査委員會 委員중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常勤監事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商法 第38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主總會에서 選任된 理事로 본다.

附 부칙 <제6423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항, 제54조의5제3항, 제54조의6제2항·제6항, 제64조, 제172조의4, 제186조제1항, 제189조의4, 제191조의13, 제191조의17제2항, 제191조의18 및 제1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증권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대형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선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54조의6제2항(제191조의17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의 공익대표인 이사의 후보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대표인 이사를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협회등록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사회결의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8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신고·공고·공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8항제3호의 증권업을 허가받은 자는 제2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3·제22조·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제출받은 신고서 등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아닌 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증권회사의 상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호를 사용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증권거래소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전무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부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상임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7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집행간부로 본다.

제14조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에 의하여 구성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는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보는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5조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협회중개

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제정된 규정(規程)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는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189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한다.

1. 제18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할 것. 이 경우 동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소각하고자 하는 날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것
3.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은 제189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일 것
4. 소각하고자 하는 주식은 취득후 6월이 경과할 것

제17조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91조의16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동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4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에 재임하는 상근감사(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가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

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2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623호,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주총회소집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하거나 상법 제360조의9제2항 또는 동법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회사가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고 있는 증권거래준비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안분처리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695호,2002.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hibit 12.6

신탁업법

[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80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信託會社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受益者를 보호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1.21]

第1條의2 (定義) 이 法에서 "信託業"이라 함은 信託法 第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信託을 業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2條 (信託會社의 運營) 大韓民國內에서 信託을 業으로 하는 會社(以下 信託會社라 한다)는 이 法과 이 法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에 依하여 運營되어야 한다.<改正 1998·1·13>

第3條 (營業의 認可) ①信託業은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營爲할 수 없다.<改正 1998·1·13, 1999.1.29, 1999.5.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資本金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1999.1.29>

1. 金錢信託의 引受業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250億원이상
2. 金錢을 제외한 財産의 信託의 引受業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100億원이상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請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④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00.1.21>

第3條의2 (認可 등의 公告) 金融監督委員會는 第3條第1項 또는 第29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거나 第29條의2 또는 第29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取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官報에 公告하고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3條의3 (認可의 요건) ①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受益者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信託業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人力과 電算設備 등 物的施設을 갖추고 있을 것

2. 事業計劃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信託部門과 固有部門間의 구분관리 및 信託商品間의 구분관리 計劃이 적정할 것

4.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出資者가 충분한 出資能力, 건전한 財務狀態 및 社會的 信用을 갖추고 있을 것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4條삭제<1999.1.29>

第5條 削除<1968·12·31>

第6條 (認可의 失效) ①信託會社가 第3條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6月以內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한 때에는 認可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②金融監督委員會는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申請에 依하여 第1項의 期間을 延長 할 수 있다.<改正 1998·1·13, 1999.1.29, 1999.5.24>

第7條 (商號) ①信託會社는 그 商號中에 信託이라는 文字를 使用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②信託會社가 아닌 者는 그 名稱中에 信託業者임을 表示하는 文字를 使用할 수 없다. 다만, 擔保附社債에 關한 信託業을 營爲하는 者는 例外로 한다.

第8條 (認可事項) ①信託會社가 合併 또는 解散하거나 信託業을 廢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9, 1999.5.24, 2000.1.21>

②信託會社가 定款이나 業務의 種類 또는 方法을 변경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金融監督委員會는 그 보고받은 내용이 信託에 관한 法令이나 건전한 信託去來秩序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信託會社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1.29, 2000.1.21>

③金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信託會社의 支店·代理店 기타 營業所 또는 事業所의 新設·閉鎖 및 本店·支店·代理店 기타 營業所 또는 事務所의 移轉에 관한 기준과 節次를 정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8·1·13]

第**8**條의**2** (任員의 資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信託會社의 任員이 될 수 없으며, 任員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職을 상실한다.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을 위반하여 罰金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6. 이 法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 解任되거나 懲戒免職된 者로서 解任 또는 懲戒免職된 후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7. 이 法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認可등이 取消된 法人 또는 會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法人 또는 會社에 대한 取消가 있은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본조신설 2000.1.21]

第**2**章 業務

第**9**條 (業務의 範圍) ①信託會社는 이 法과 其他 關係法律의 範圍內에서 信託의 引受 및 信託財産의 관리·運用·처분에 관한 業務를 營爲할 수 있다.<改正 1998·1·13>

②削除<1998·1·13>

第**10**條 (受託財産의 제한등) ①信託會社는 다음에 揭記한 以外의 財産의 信託의 引受를 할 수 없다.

1. 金錢
2. 有價證券
3. 金錢債權
4. 動産
5. 土地와 그 定着物
6. 地上權, 傳貰權 및 土地의 賃借權

②金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 各號 財産의 信託의 引受와 관련한 信託의 종류, 元本 또는 利益의 補塡 기타 信託去來條件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新設 1998·1·13>

第11條 削除<1998·1·13>

第12條 (信託財産과 固有財産의 區分) ①信託法 第31條第1項 但書의 規定은 信託會社에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信託會社는 金錢信託에 關하여 그 運用에 依하여 取得한 財産이 證券去來法에 의한 有價證券市長·協會仲介市長 또는 이와 유사한 市長으로서 外國에 있는 市長에서 時勢가 있는 것일 때에는 信託行爲에 依하여 受益者에 對하여 負擔하는 債務를 履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하여 信託行爲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固有財産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0.1.21>

第12條의2 (信託財産의 會計監査) ①信託會社는 각 信託財産에 대하여 株式會社의 外部監事에 關한 法律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人(이하 "監査人"이라 한다)의 會計監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金融監督委員會는 公益 또는 投資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監査人에 대하여 信託財産의 會計監査와 관련한 資料의 제출, 보고의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關한法律 第9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託財産의 會計監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監査人의 選任, 監査基準, 監査人의 權限, 會計處理基準, 監査報告書의 제출 및 公示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12條의3 (監査人의 損害賠償責任) ①監査人은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會計監査의 결과 중요한 사항을 監査報告書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受益者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受益者에 대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이 경우 監査班이 監査人인 경우에는 당해信託財産에 대한 監査에 참여한 者가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②監査人이 信託財産의 受益者에 대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信託會社의 理事 또는 監査(監査委員會가 設置된 경우에는 監査委員會 委員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도 그 責任이 있는 때에는 그 監査人과 理事 또는 監査는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③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 第17條第5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13條 (附隨業務) ①信託會社는 信託業에 附隨하는 다음 各號의 業務에 限하여 이를 營爲할 수 있다.<改正 1968·12·31>

1. 保護預受
2. 債務의 保證
3. 不動産賣買의 仲介
4. 金錢 또는 不動産貸借의 仲介
5. 公債, 社債 또는 株式의 募集, 그 拂入金의 受入 또는 그 元利金, 配當金 支給의 取扱
6. 財産에 關한 遺言의 執行
7. 會計의 檢査
8. 다음 事項에 關한 代理事務
   가. 財産의 取得, 管理, 處分 또는 貸借
   나. 財産의 整理 또는 清算
   다. 債權의 推尋
   라. 債務의 履行
   마. 保險

②金融監督委員會는 債務의 保證에 關하여 必要한 制限을 둘 수 있다.<改正 1998·1·13>

第14條 削除<1968·12·31>

第15條 (固有資金運用의 制限) ①信託會社는 다음의 方法에 依하는 外에는 그 固有資金을

運用할 수 없다.<改正 1968·12·31, 1998·1·13, 2000.1.21>

1. 公債, 社債 및 株式의 應募, 引受 또는 買入
2. 第1號에 揭記한 有價證券을 擔保로 하는 貸出
3. 動産을 擔保로 하는 貸付
4. 不動産의 買入
5. 不動産 또는 法令에 依하여 設定한 財團을 抵當으로 하는 貸付
6. 公共團體에 對한 貸付
7.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에의 預置 또는 우체국 預金
8. 銀行 또는 信託會社가 引受한 어음의 買入

②金融監督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社債·株式 및 動産의 種類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③第1項第4號의 規定에 依한 不動産의 買入價格의 總額은 納入資本金 및 積立金의 合計額을 超過할 수 없다.<改正 1968·12·31>

第**15**條의**2**(信託資金運用의 제한) ①信託會社는 信託財産에 속하는 金錢을 다음 各號의 방법에 한하여 運用할 수 있다.

1. 國債·公債·社債·柱式 기타 有價證券을 應募·引受·買入
2. 貸出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운용방법의 구체적인 범위는 大統領令이 정한다.

③金融監督委員會는 委託者의 보호 및 건전한 信託去來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託資金運用의 대상·조건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8·1·13]

第**15**條의**3** (餘裕資金의 運用) 信託會社는 不動産信託事業중 발생한 餘裕資金을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運用하여야 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에의 預置
2. 國·公債의 引受 또는 買入
3. 政府 또는 金融機關이 지급을 보증한 有價證券의 引受 또는 買入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00.1.21]

第16條 (供託義務) ①信託會社는 信託義務의 違反으로 因하여 受益者에게 생기게 될 損害의 擔保로서 金融監督委員會가 定하는 바에 依하여 資本金의 10分의 1以上의 金額에 相當하는 現金또는 國債를 供託하여야 한다.<改正 1998·1·13>

②第1項의 供託金額中 그 5分의 3을 超過하는 額에 對하여는 第1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으로써 國債에 갈음할 수 있다.<改正 1998·1·13>

第17條 (受益者의 優先權) 受益者는 信託會社가 第16條의 規定에 依하여 供託한 現金, 國債 및 有價證券에 關하여 다른 債權者에 優先하여 辨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改正 1998·1·13>

第17條의2 (受益證券의 발행) ①信託會社는 金錢信託契約에 의한 受益權을 표시하는 受益證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受益證券의 발행에 있어서는 미리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8·1·13>

③受益證券은 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受益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記名式 受益證券은 受益者의 請求에 의하여 無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8·12·31]

第17條의3 (受益證券記載事項) 受益證券에는 記號·番號 및 信託約款과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고 信託會社의 代表者가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改正 1998·1·13>

1. 受託者의 商號
2. 記名式의 경우에는 受益者의 姓名 또는 名稱
3. 額面額
4. 運用方法을 정한 때에는 그 內容
5.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元本 또는 利益의 補塡에 관한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信託契約期間
7. 信託의 元金의 償還과 收益分配의 期間 및 場所
8. 信託報酬의 計算方法
9.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項

[本條新設 1968·12·31]

第17條의4 (受益權의 讓渡 및 行使) 受益證券이 발행된 경우에는 당해 信託契約에 의한 受益權의 讓渡 및 行使는 그 受益證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記名式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1968·12·31]

第17條의5 (委託者의 權利義務의 承繼) 受益證券을 取得하는 者는 당해 受益證券에 관한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本條新設 1968·12·31]

第17條의6 (受益證券의 買受) 信託會社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受益證券을 그 固有財産으로 買受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信託法 第29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1998·1·13>

[本條新設 1968·12·31]

第17條의7 (信託財産으로 취득한 株式에 대한 權利行使) ①信託財産으로 취득한 株式에 대한 權利는 信託會社가 이를 행사한다.

②信託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에 대한 權利를 행사하는 경우 受益者를 위하여 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17條의8 (信託財産에 관한 議決權行使의 제한) ①信託會社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7條의7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信託財産인 株式을 발행한 法人의 株主總會의 參席株式數에서 信託財産인 株式數를 差減한 株式數의 議決內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議決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信託財産인 株式을 발행한 法人의 合併, 營業의 讓渡·讓受, 任員의 選任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信託財産에 損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豫想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가 당해信託財産인 株式을 발행한 法人을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系列會社(이하 "系列會社"라 한다)로 編入하기 위한 경우

가. 信託會社 또는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者

나. 信託會社에 대하여 사실상의 支配力을 행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2. 信託財産인 株式을 발행한 法人이 당해信託會社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가. 系列會社의 관계에 있는 경우

나. 信託會社에 대하여 사실상의 支配力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3.기타 受益者의 보호 또는 信託財産의 적정한 運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信託會社는 信託財産인 株式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株式에 관한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1. 동일株式會社가 발행한 株式總數의 100分의 15를 초과하여 株式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株式

2. 信託財産인 株式을 발행한 法人이 自己株式을 확보하기 위하여 信託契約에 따라 信託會社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당해法人의 株式

③信託會社는 第3者와의 契約등에 의하여 議決權을 交叉하여 행사하는 등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의 적용을 免脫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金融監督委員會는 信託會社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信託財産인 株式에 관한 議決權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株式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⑤第1項 但書의 規定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第9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信託會社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17條의9 (議決權行使에 관한 公示) 信託會社는 合併, 營業의 讓渡·讓受, 任員의 選任 등 經營權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第17條의7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決權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17條의10 (信託財産등에 관한 帳簿·書類) ①受益者는 信託會社에 대하여 營業時間내에 당해受益者에 관련된 信託財産에 관한 帳簿·書類의 閱覽이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으며, 信託會社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이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帳簿·書類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3章 會計

第18條 (營業年度) 信託會社의 營業年度는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19條 (報告書提出의 義務) 信託會社는 每月의 營業報告書 및 每營業年度의 業務報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8·1·13>

第20條 (貸借對照表의 公告 및 會計處理 등) ①삭제<2000.1.21>

②金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信託會社의 信託業務에 대한 會計處理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新設 1998·1·13>

第21條 (準備金積立責任의 加重) 信託會社는 資本의 總額에 達할 때까지 利益을 配當할 때마다 準備金으로서 그 利益의 10分의 1以上을 積立하여야 한다.<改正 1998·1·13, 2000.1.21>

第4章 禁止事項

第22條 (任員등의 兼任制限) 信託會社의 常任任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會社 기타 營利法人의 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0.1.21]

第23條 삭제<1999.1.29>

第24條 削除<1968·12·31>

第5章 監督

第24條의2 (信託會社의 監督) 金融監督委員會는 受益者를 보호하고 건전한 信託去來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信託會社의 業務를 監督하고 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1]

第24條의3 (健全經營의 指導) ①信託會社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經營指導基準을 준수하여야 한다.

1. 資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資産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流動性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金融監督委員會는 信託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基準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信託會社에 대하여 資本金의 增額, 利益配當의 제한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1]

第25條 (報告, 書類提出等) 金融監督委員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信託會社로 하여금 業務 및 財産의 狀況을 報告시키거나 書類帳簿를 提出시킬 수 있다.<改正 1998·1·13, 2000.1.21>

第25條의2(約款등의 변경 등) ①信託會社는 信託去來와 관련된 約款 또는 標準契約書(이하 "約款등"이라 한다)를 制定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金融監督委員會는 건전한 信託去來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信託會社에 대하여 約款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金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約款등의 制定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信託會社는 信託去來上의 契約條件 등을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示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8·1·13]

第25條의3 (經營狀況의 公示) 信託會社는 受益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示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26條 (檢査등) ①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金融監督院의 院長(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信託會社의 業務와 財産에 관하여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②金融監督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信託會社에 대하여 業務 또는 財産에 관한 보고, 資料의 제출, 關係者의 출석 및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1]

第26條의2(任·職員에 대한 制裁 등) ①金融監督委員會는 信託會社의 任員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規程·命令 또는 指示를 위반하거나 信託會社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金融監督院長의 建議에 따라 당해 任員의 業務執行의 정지를 명하거나 임면권자에게 解任을 권고할 수 있으며,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警告 등 적절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21>

②金融監督院長은 信託會社의 職員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規程·命令 또는 指示를 위반하거나 信託會社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免職·停職·減俸·譴責등 적절한 問責處分을 할 것을 당해信託會社의 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1>

③金融監督院長은 信託會社가 이 法등을 계속 위반하여 불건전한 방법으로 營業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信託會社의 業務의 종류 또는 방법의 변경이나 業務의 정지를 명할 것을 金融監督委員會에 建議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8·1·13]

第27條 삭제<2000.1.21>

第28條 (業務의 停止) 金融監督委員會는 信託會社가 法令·定款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나 金融監督院長의 命令·指示등에 위반하거나 公益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6月의 범위내에서 그 業務의 停止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5.24]

第29條 삭제<1999.5.24>

第29條의2 (認可의 取消) 金融監督委員會는 信託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營業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개정 2000.1.21>

1. 중대한 違法 또는 불건전한 營業으로 信託去來秩序를 문란하게 한 때

1의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信託業의 認可를 받은 때

1의3. 許可內容 또는 許可條件에 위반한 때

2.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사유에 해당할 때

2의2. 營業의 정지기간 중에 그 營業을 한 때

3. 第27條 또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停止命令을 받은 信託會社에 대하여 그 정리의 狀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1999.5.24]

第29條의3 (適用排除) 第7條第1項, 第8條의2, 第15條 및 第21條의 規定은 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으로서 信託業을 兼營하는 金融機關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6章 外國金融機關의 國內支店<신설 2000.1.21>

第29條의4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認可) ①外國金融機關(外國法令에 의하여 設立되어 外國에서 信託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大韓民國내에서 信託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支店 기타 營業所(이하 "支店등"이라 한다)를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程에 의한 認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1]

第29條의5(外國金融機關에 대한 法適用) ①第29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外國金融機關의 支店등은 이 法에 의한 信託會社로 본다. 다만, 第3條第2項의 規程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外國金融機關의 支店등의 營業基金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29條의6 (認可取消등) ①金融監督委員會는 外國金融機關의 本店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外國金融機關의 支店등에 대한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合併·營業의 讓渡로 인하여 消滅한 경우

2. 違法行爲, 불건전한 營業行爲등의 사유로 인하여 監督機關으로부터 第29條의2의 規程에 의한 行政處分에 상응하는 懲戒를 받은 경우

3. 休業하거나 營業을 중지한 경우

②外國金融機關의 支店등은 당해外國金融機關의 本店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日이내에 그 사실을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外國金融機關의 本店이 解散 또는 破産하였거나 信託業을 廢止한 경우 또는 信託業의 認可가 取消된 경우에는 당해外國金融機關의 支店등에 대한 第29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에 取消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21]

第7章 補則<개정 2000.1.21>

第30條 (合併의 效力) ①信託會社가 合併하는 境遇에 있어서 合併後 存續하는 信託會社 또는 合併으로 因하여 設立된 信託會社는 合併으로 因하여 消滅된 信託會社의 信託에 關한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②信託會社의 合併에 關하여 異議를 한 受益者가 있을 때에는 그 信託에 對하여는 信託法 第11條와 第17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1條 (目的의 變更) ①信託會社가 그 目的을 變更하여 다른 業務를 行하는 會社로서 存續하는 境遇에 있어서는 金融監督委員會는 그 會社가 信託에 關한 債務를 完濟하기에 이르기까지 財産의 供託을 命하거나 其他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合併으로 因하여 信託會社가 아닌 會社가 信託會社의 任務終了를 爲하여 必要한 事務를 處理하는 동안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8·1·13>

②第25條 및 第26條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8·1·13>

第32條 (營業認可取消의 效力) 信託會社가 營業의 認可를 取消當한 때에는 이로 因하여 解散한다.

第33條 (淸算監督) ①信託會社의 淸算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이를 監督한다.<改正 1998·1·13>

②金融監督委員會는 淸算事務 및 財産의 狀況을 檢査하거나 財産의 供託을 命하거나 其他 淸算의 監督에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1998·1·13>

第34條 (淸算人選任) 信託會社가 營業認可의 取消로 因하여 解散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淸算人을 選任한다.<改正 1998·1·13>

第35條 (淸算人의 選任의 特例) 商法에 依하여 法院이 檢事나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淸算人을 選任할 때와 淸算人이 없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써 이를 選任한다.<改正 1998·1·13>

第36條 (淸算人의 報酬) 金融監督委員會가 淸算人을 選任한 때에는 信託會社로 하여금 報酬를 주게 할 수 있다. 그 額은 金融監督委員會가 定한다.<改正 1998·1·13>

第37條 (淸算人의 解任) 金融監督委員會는 重要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써 淸算人을 解任할 수 있다.<改正 1998·1·13>

第37條의2 (權限의 委託) 金融監督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8·1·13]

第37條의3 (聽聞)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信託會社의 營業의 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999.5.24>

[本條新設 1998·1·13]

第38條 (和議, 破産, 强制和議의 境遇) ①信託會社의 和議, 破産, 强制和議의 境遇에 있어서 法院은 信託會社의 檢査, 監督에 從事하는 者에 對하여 意見의 陳述을 要求하거나 檢査나 調査를 委囑할 수 있다.<改正 1998·1·13>

②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 法院의 要求 또는 委囑을 받은 者는 法院에 對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改正 1998·1·13>

第38條의2(分擔金) ①金融監督院의 檢査를 받는 信託會社는 檢査費用에 충당하기 위한 分擔金을 金融監督院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料率·한도 기타 分擔金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8·1·13]

第8章 罰則<개정 2000.1.21>

第3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信託業을 영위한 者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者
3. 第17條의8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議決權을 행사한 者

[전문개정 2000.1.21]

第4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정당한 이유없이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會計監査를 받지 아니한 者
3. 第12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信託財産의 會計監査에 관한 秘密을 누설한 者
4.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供託을 하지 아니한 者
5.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準備金을 積立하지 아니한 者

[전문개정 2000.1.21]

第4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2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資料提出 및 보고의 요구 등의 命令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4.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第15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

7. 第17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受益證券을 발행한 者

8. 第17條의9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示를 하지 아니한 者

9. 第24條의2, 第31條第1項,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전문개정 2000.1.21]

第**4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9條 내지 第4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43**條 (過怠料<개정 **2000.1.21**>)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2000.1.21>

1. 第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7條의10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9條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 또는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者

4.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會計處理를 한 者

5. 第25條의2第4項 또는 第25條의3의 規定에 의한 公示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者

6. 第26條第1項(第3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新設 1998·1·13, 1999.1.29, 1999.5.2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新設 1998·1·13, 1999.5.24>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新設 1998·1·13, 1999.5.24>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徵收한다.<新設 1998·1·13>

第44條 削除<1998·1·13>

附則 <제945호,1961.12.31>

①(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廢止法令) 檀紀4264年 6月 9日 制令 第8號 朝鮮信託業令은 이를 廢止한다.

③(經過措置) 朝鮮信託業令에 依하여 信託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本法에 依하여 信託業의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同前) 本法 施行前의 朝鮮信託業令에 依한 財務部長官의 處分은 本法中 이에 相當하는 規定이 있는 것에 對하여는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2064호,1968.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5502호,1998.1.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7條의3의 改正規定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一般的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이 행한 認可·승인·決定·命令·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金融監督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長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에 대하여 행한 申請·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金融監督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長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第3條(任·職員의 制裁에 관한 適用例) 第26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에 최초로 任·職員이 행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第4條(資本金 기준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信託業의 認可를 받은 者는 그 資本金을 이 法 施行日부터 3年이내에 第4條의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附則 <제5700호,1999.1.29>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46>省略

<47>信託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8條第1項 및 第39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3條第3項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한다.

第6條第2項 및 第37條의3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2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8條 (業務의 停止) 金融監督委員會는 信託會社가 法令·定款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나 金融監督院長의 命令·指示등에 위반하거나 公益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6月의 범위내에서 그 業務의 停止를 명할 수 있다.

第29條를 削除한다.

第29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9條의2 (認可의 取消) 金融監督委員會는 信託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營業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중대한 違法 또는 불건전한 營業으로 信託去來秩序를 문란하게 한 때
2.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사유에 해당할 때
3. 第27條 또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停止命令을 받은 信託會社에 대하여 그 정리의 狀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第43條第2項 但書를 削除하고, 同條第3項중 "過怠料의 賦課權者에게"를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하며, 同條第4項중 "過怠料의 賦課權者"를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48>내지 <78>省略

第4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제6180호,2000.1.2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任員의 資格要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信託會社의 任員이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8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同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信託財産의 會計監査에 관한 적용례)第12條의2 및 第12條의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후에 최초로 制定 또는 변경된 約款등에 따라 設定되는 信託(이 法 施行日전에 制定 또는 변경된 約款등에 따라 設定된 信託으로서 이 法 施行日이후에 추가로 信託을 하는 信託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Exhibit 1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05호]

第1章 總則

제1조 (目的) 이 法은 信用카드業·施設貸與業·割賦金融業 및 新技術事業金融業을 영위하는 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國民의 金融便宜를 도모하고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1, 1999.5.24, 2001.3.28, 2002.3.30>

1. "與信專門金融業"이라 함은 信用카드業·施設貸與業·割賦金融業 또는 新技術事業金融業을 말한다.

2. "信用카드業"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業務중 나目의 業務를 포함한 2이상의 業務를 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信用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信用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代金의 決濟

다. 信用카드加盟店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信用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信用카드加盟店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4. "信用카드會員"이라 함은 信用카드業者와의 契約에 따라 그로부터 信用카드를 발급받은 者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6. "直拂카드"라 함은 直拂카드會員과 信用카드加盟店간에 電子 또는 磁氣的 방법에 의하여 金融去來計座에 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代價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信用카드業者가 발행한 證票를 말한다.

7. "直拂카드會員"이라 함은 信用카드業者와의 契約에 따라 그로부터 直拂카드를 발급받은 者를 말한다.

8. "先拂카드"라 함은 信用카드業者가 代金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記錄(電子 또는 磁氣的 방법에 의한 記錄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證票로서 先拂카드所持者의 제시에 따라 信用카드加盟店이 그 記錄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證票를 말한다.

9. "施設貸與業"이라 함은 施設貸與를 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施設貸與"라 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貸與받아 거래상대방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當事者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金融을 말한다.

11. "延拂販賣"라 함은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고, 그 물건의 대금·이자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물건이 所有權 이전시기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當事者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金融을 말한다.

12. "割賦金融業"이라 함은 割賦金融을 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割賦金融"이라 함은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賣渡人(企業에 한하되, 住宅賣買에 있어서는 개인을 포함한다) 및 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買受人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賣渡人에게 지급하고 買受人으로부터 그 元利金을 분할하여 償還받는 방식의 金融을 말한다.

14. "新技術事業金融業"이라 함은 第41條第1項 各號에 規定한 業務를 종합적으로

業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與信專門金融會社"라 함은 與信專門金融業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거나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을 한 者로서 第46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業務를 專業으로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16. "兼營與信業者"라 함은 與信專門金融業에 대하여 제3조제3항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거나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을 한 者로서 與信專門金融會社가 아닌 者를 말한다.

第2章 許可 또는 登錄

第3條 (營業의 許可·登錄)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②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할 수 있는 者는 與信專門金融會社이거나 與信專門金融會社가 되고자 하는 者에 한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13, 1999.2.1, 1999.5.24, 2002.3.30>

1.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거나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 또는 許可를 받은 金融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信用카드業을 兼營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1.3.28>

第4條 (許可·登錄의 申請)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許可 또는 登錄申請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1999.5.24, 2001.3.28, 2002.3.30>

1. 商號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資本金 및 出資者(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少額出資者를 제외한다)의 姓名 또는 名稱과 그 持分率

3. 任員의 姓名

4. 영위하고자 하는 與信專門金融業

5. 與信專門金融會社가 되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

6. 兼營與信業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영위하고 있는 事業의 내용

第5條 (資本金) ①與信專門金融業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하여 與信專門金融會社가 될 수 있는 者는 株式會社로서 資本金이 다음 各號의 1에 規定한 금액 이상인 者에 한한다.

1. 2 이하의 與信專門金融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200億원

2. 3 이상의 與信專門金融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400億원

②제3조제3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兼營與信業者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株式會社로서 資本金과 自己資本(資本金과 積立金 및 기타 剩餘金의 合計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0億원 이상인 者에 한한다.<개정 1999.2.1, 2002.3.30>

第6條 (許可·登錄의 요건)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할 수 없다. <개정 1999.2.1, 2001.3.28>

1. 第10條 또는 第57條第2項·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許可의 抹消 또는 取消가 있은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法人 및 그 抹消 또는 取消당시 당해法人의 大株主(大統領令이 정하는 出資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者로서 그 抹消 또는 取消가 있은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2. 會社整理法에 의한 整理節次중에 있는 會社 및 그 會社의 大株主

3.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信用不良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4. 許可 및 登錄申請日을 기준으로 최근 3年간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係法令 등을 위반하여 罰金刑이상의 處罰을 받은 사실이 있는 者

5. 대통령령이 정하는 財務健全性基準에 미달하는 者(許可의 경우에 한한다)

6. 第1號 내지 第5號의1에 해당하는 者가 大株主인 法人

②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거래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③삭제 <2002.3.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第7條 (許可·登錄의 실시) ①金融監督委員會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申請書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 許可여부를 결정하여 申請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1999.5.24>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申請書를 제출한 者가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登錄을 하고 그 사실을 申請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1999.5.24>

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1, 1999.5.24>

第8條 삭제<1999.2.1>

第9條 삭제<1999.2.1>

第10條 (申請에 의한 登錄의 抹消) ①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登錄의 抹消를 申請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1.3.28, 2002.3.30>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1.3.28>

제11조 (허가 등의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2.3.30>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때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때
3.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

[본조신설 2001.3.28]

第3章 與信專門金融業
第1節 信用카드業

第12條 (適用範圍) 이 節은 信用카드業者가 영위하는 信用카드業과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그 附帶業務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13條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개정 2001.3.28>) ①信用카드業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附帶業務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1.3.28>

1. 信用카드會員에 대한 資金의 融通
2. 直拂카드의 발행 및 代金의 決濟
3. 先拂카드의 발행 ·販賣 및 代金의 決濟

②信用카드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三者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1.3.28>

③삭제<1999.2.1>

第14條 (信用카드·直拂카드의 발급) ①信用카드業者는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신청이 본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2.3.30>

③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30>

第15條 (信用카드의 讓渡등의 금지) 信用카드는 이를 讓渡·讓受하거나 質權設定을 할 수 없다.

第16條 (信用카드會員등에 대한 책임) ①信用카드業者는 信用카드會員 또는 直拂카드會員으로부터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의 분실·도난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당해 信用카드會員 또는 直拂카드會員에 대하여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②信用카드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접수번호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당해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2.3.30>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3.30>

⑤제4항의 規定에 의한 契約은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契約書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개정 2002.3.30>

⑥信用카드業者는 第1項 또는 第3項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保險 또는 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30>

⑧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설 2002.3.30>

제16조의2 (가맹점의 모집)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第17條 (加盟店에 대한 책임) ①信用카드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信用카드加盟店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信用카드業者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信用카드加盟店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信用카드加盟店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契約을 信用카드加盟店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실 또는 도난된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에 의한 거래
2. 僞造·變造된 信用카드등에 의한 거래

②제16조제5항의 規定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契約 또는 信用카드加盟店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3.30>

第18條 (거래조건의 周知義務) 信用카드業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信用카드會員등과 信用카드加盟店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9.2.1>

1. 信用카드業者가 정하는 利子率·割引率·延滯料率등 각종 料率
2. 信用카드·直拂카드 이용금액의 決濟方法
3.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會員등에 대한 책임
4. 第17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加盟店에 대한 책임과 信用카드加盟店의 준수사항
5. 기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사항

第19條 (加盟店의 준수사항) ①信用카드加盟店은 信用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信用카드會員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②信用카드加盟店은 信用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③信用카드加盟店은 加盟店手數料를 信用카드會員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信用카드加盟店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3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信用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信用카드加盟店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信用카드加盟店의 명의를 타인에게 貸與하는 행위

5.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⑤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 카드거래의 대행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第**20**條 (매출채권의 讓渡금지등<개정 **2002.3.30**>) ①信用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 讓渡하여서는 아니되며, 信用카드業者외의 者는 이를 讓受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3.30>

②信用카드加盟店이 아닌 者는 信用카드加盟店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3.30>

제**21**조 (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전문개정 2001.3.28]

第**22**條 (先拂카드의 償還義務) 先拂카드를 발행한 信用카드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先拂카드所持者가 先拂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현금으로 청구하는 때에는 즉시 당해 先拂카드를 회수하고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天災地變등의 사유로 信用카드加盟店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先拂카드所持者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先拂카드의 결함으로 인하여 信用카드加盟店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先拂카드에 기록된 잔액이 券面金額의 100分의 10미만인 경우

第**23**條 (加盟店 모집·이용방식의 제한) ①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

드업의 등록을 한 兼營與信業者가 모집할 수 있는 信用카드加盟店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3.30>

②金融監督委員會는 信用카드이용의 편의와 信用카드業者의 業務효율화를 위하여 信用카드業者(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兼營與信業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른 信用카드業者의 매출전표를 상호 매입하거나 접수 및 대금지급을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信用카드加盟店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카드加盟店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加盟店手數料率이 각 信用카드業者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信用카드業者간에 지급되는 代價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信用카드業者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第**24**條 (信用카드등의 이용한도제한) 金融監督委員會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信用카드業者에게 다음 各號에 規定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1999.2.1, 2001.3.28>

1. 信用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 直拂카드의 1回 또는 1日 이용한도
3. 先拂카드의 총발행한도와 發行券面金額의 최고한도

第**25**條 (供託) ①金融監督委員會는 先拂카드를 발행한 信用카드業者에게 先拂카드發行總額의 100分의 1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供託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1998.1.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供託은 先拂카드를 발행한 信用카드業者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供託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託을 한 信用카드業者는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 供託物을 반환받을 수 있다.<개정 1998.1.13>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供託物의 종류, 供託의 시기 기타 供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1>

第26條 (供託物의 배당등) ①金融監督委員會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供託을 한 信用카드業者가 先拂카드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信用카드加盟店에게 지급하여야 할 先拂카드代金 및 未償還先拂카드의 잔액을 償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信用카드業者가 供託한 供託物을 出給하여 당해 信用카드加盟店 및 未償還先拂카드의 소지자(이하 "未償還債權者"라 한다)에게 배당을 실행할 者(이하 "權利實行者"라 한다)를 지정하고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1999.2.1>

②第1項의 權利實行者가 될 수 있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未償還債權者는 權利實行者에게 償還받지 못한 금액을 申告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④權利實行者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기간·방법 및 장소를 公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⑤權利實行者는 다른 債權에 우선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금액의 합계액과 소요비용을 합산한 총액의 범위내에서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 供託物을 出給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⑥權利實行者는 出給한 供託物을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未償還債權者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⑦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供託을 한 信用카드業者는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배당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당해 供託物을 반환받을 수 없다.

第27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信用카드業者가 아닌 者는 그 商號중 信用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2節 施設貸與業

第28條 (適用範圍) 이 節은 제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貸與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施設貸與業者"라 한다)가 영위하는 施設貸與業과 延拂販賣業務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3.30>

第29條 (각종 자금의 이용) 施設貸與業者와 施設貸與 또는 延拂販賣 契約을 체결한 者(이하 "貸與施設利用者"라 한다)가 企業에 대한 설비투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인 경우에는 施設貸與業者가 그 貸與施設利用者를 위하

여 당해 자금을 융자받아 특정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施設貸與 또는 延拂販賣(이하 "施設貸與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第30條 (對外貿易法상의 特例) ①삭제<2000.12.29>

②施設貸與業者가 施設貸與등을 한 특정물건이 外貨獲得用 시설기재인 경우에는 對外貿易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그 輸入에 대응하는 外貨獲得"은 貸與施設利用者가 이를 하여야 한다.

第31條 (藥事法상의 特例) ①施設貸與業者는 施設貸與등의 목적으로 輸入하는 특정물건인 醫療用具를 保健福祉部長官이 지정하는 者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藥事法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輸入할 수 있다.

②施設貸與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한 특정물건인 醫療用具를 藥事法 第4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讓渡할 수 있다.

第32條 (행정처분상의 特例) 施設貸與業者가 施設貸與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取得·輸入하거나 貸與받고자 하는 경우에 第30條 및 第31條에 規定된 사항외에 法令에 의하여 받아야 할 허가·승인·추천 기타 행정상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貸與施設利用者가 갖춘 때에는 施設貸與業者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第33條 (登記·登錄상의 特例) ①施設貸與業者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施設貸與등을 하는 경우에는 建設機械管理法 또는 自動車管理法에 불구하고 貸與施設利用者(延拂販賣의 경우 특정물건의 所有權을 취득한 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登錄할 수 있다.

②施設貸與業者가 施設貸與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船舶 또는 航空機를 登記·登錄하고자 하는 경우 貸與施設利用者가 船舶法 第2條 또는 航空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登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그 이용기간동안 施設貸與業者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第34條 (義務履行상의 特例) ①貸與施設利用者가 특정물건의 施設貸與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른 法令에 의하여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檢査등 그 물건

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貸與施設利用者가 그 當事者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의무가 施設貸與業者에게 부과된 때에는 施設貸與業者는 지체없이 이를 貸與施設利用者에게 알려야 한다.

第35條 (自動車등의 손해배상책임) 貸與施設利用者가 이 法에 의하여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施設貸與등을 받아 운행을 함에 있어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施設貸與業者는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第3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者로 보지 아니한다.

第36條 (施設貸與등의 표시) ①施設貸與業者는 施設貸與등(延拂販賣에 있어서 특정물건의 所有權을 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표시하는 標識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②당해 특정물건의 施設貸與등을 한 施設貸與業者외의 者는 第1項의 標識를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7條 (中小企業에 대한 지원) ①金融監督委員會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貸與業者에게 施設貸與등의 연간 실행액중 일정비율 이상을 中小企業(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을 말한다)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1999.2.1, 2001.3.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일정비율은 100分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第3節 割賦金融業

第38條 (適用範圍) 이 節은 제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割賦金融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割賦金融業者"라 한다)가 영위하는 割賦金融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3.30>

第39條 (去來條件의 周知義務) 割賦金融業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割賦金融業者와 割賦金融契約을 체결한 재화 및 용역의 買受人(이하 "割賦金融利用者"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9.2.1>

1. 割賦金融業者가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2. 割賦金融에 의한 貸出額(이하 "割賦金融資金"이라 한다)의 辨濟方法
3. 기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사항

第40條 (割賦金融業者의 준수사항) ①割賦金融業者는 割賦金融利用者에게 割賦金融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을 초과하여 割賦金融資金을 貸出할 수 없다.<개정 1999.2.1>

②割賦金融業者는 割賦金融資金을 割賦金融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賣渡人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第4節 新技術事業金融業

第41條 (適用範圍) ①이 節은 제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新技術事業金融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가 영위하는 다음 各號의 業務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3.30>

1. 新技術事業者에 대한 투자
2. 新技術事業者에 대한 융자
3. 新技術事業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의 설립
5. 新技術事業投資組合 資金의 관리·운용

②第1項에서 "新技術事業者"라 함은 技術信用保證基金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新技術事業者를 말한다. <개정 2002.8.26>

③第1項第4號에서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라 함은 新技術事業者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組合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規定한 組合을 말한다.

1. 新技術事業金融業者가 新技術事業金融業者외의 者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組合
2. 新技術事業金融業者가 組合資金을 관리·운용하는 組合

第42條 (資金의 借入) 新技術事業金融業者는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府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으로부터 新技術事業者에 대한 투·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借入할 수 있다.

第43條 (稅制상의 지원) 政府는 新技術事業金融業의 발전을 위하여 新技術事業金融業者, 新技術事業金融業者에 투자한 者, 新技術事業投資組合 및 그 組合員에 대하여 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第44條 (新技術事業投資組合) ①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하 이 條에서 "組合"이라 한다)의 規約에는 다음 各號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新技術事業金融業者가 그 組合의 資金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新技術事業金融業者는 組合과의 契約에 의하여 組合資金의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新技術事業金融業者외의 者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組合의 資金은 新技術事業者에 대하여 투자한다는 내용

②組合은 그 資金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수익의 100分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規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의 業務를 집행하는 新技術事業金融業者에 그 業務執行에 대한 代價로서 이를 배분할 수 있다.

③組合은 그 資金을 관리 ·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規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新技術事業金融業者외의 者에게 손실의 분배비율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第45條 (新技術事業金融業者의 준수사항) 新技術事業金融業者는 第41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業務를 함에 있어서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융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9.2.1]

第4章 與信專門金融會社

第46條 (業務) ①與信專門金融會社가 행할 수 있는 業務는 다음 各號의 業務에 한한다. <개정 2001.3.28>

1.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與信專門金融業

2.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業의 附帶業務(信用카드業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延拂販賣業務(施設貸與業의 登錄을 한 경우에 한한다)

4. 信用貸出 또는 擔保貸出 業務

5. 어음할인業務

6. 企業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賣出債權의 讓受·관리·회수 업무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②삭제<1999.2.1>

第**47**條 (資金調達方法) ①與信專門金融會社의 資金調達 方法은 다음 各號에 規定한 것에 한한다.<개정 1998.1.13, 1999.2.1, 1999.5.24>

1.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거나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 또는 許可를 받은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

2. 社債 또는 어음의 발행

3. 보유하고 있는 有價證券의 매출

4. 보유하고 있는 貸出債權의 讓渡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방법

②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社債 또는 어음의 발행 및 同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의 매출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방법 또는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第**48**條 (社債發行의 特例) ①與信專門金融會社는 商法 第47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自己資本의 10倍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②與信專門金融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한 社債의 償還을 위하여 일시 그 한도를 초과하여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발행후 1月이내에 이미 발행한 社債를 償還하여야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與信專門金融會社가 발행하는 社債에 대하여 證券去來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同法 第2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社債로 본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한 것 외에 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9**條 (不動産의 취득제한) ①與信專門金融會社가 취득할 수 있는 業務用不動産은 다음 各號의 1에 規定한 것에 한한다.<개정 1999.2.1>

1. 本店·支店 기타 事務所

2. 任·職員用 사택, 합숙소 및 職員硏修院

3. 기타 業務에 직접 필요한 不動産으로서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것

②金融監督委員會는 與信專門金融會社의 과다한 不動産 보유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與信專門金融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業務用不動産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分의 100 이상 일정비율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用不動産의 총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④與信專門金融會社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業務用不動産외의 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다.

1. 당해 不動産이 施設貸與 또는 延拂販賣의 목적물인 경우

2. 擔保權의 실행으로 인하여 不動産을 취득하는 경우

⑤삭제<1999.2.1>

第50條 (자기계열사에 대한 與信限度) ①與信專門金融會社가 당해 會社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與信額(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방법으로 算出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分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의 범위는 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1>

제50조의2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3.30>

1.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여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결권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여신을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또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취득하는 행위

3. 기타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여신이

나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여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여신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처분 또는 여신액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제50조의3 (임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1.3.28]

제50조의4 (사외이사의 선임) ①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영위업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사회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⑤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2항 후단의 규정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50조의5 (감사위원회) ①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영위업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동법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50조의6 (내부통제기준)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

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2. 제50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50조의7 (소수주주권의 행사) ①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영위업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하는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第51條 (類似商號의 사용금지) 與信專門金融會社가 아닌 者는 그 商號를 表記함에 있어서 與信·信用카드·施設貸與·리스·割賦金融 또는 新技術金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9.2.1]

第52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與信專門金融會社 및 제3조제3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兼營與信業者에 대하여는 韓國銀行法 및 銀行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13, 2002.3.30>

②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은 與信專門金融會社에 대하여는 동법 제3조 내지 제9조·제24조·제26조 및 제27조제4호의 規定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2.3.30>

第5章 監督

第53條 (監督) ①金融監督委員會는 與信專門金融會社 및 兼營與信業者(이하 "與信專門金融會社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監督한다.<개정 1998.1.13>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與信專門金融會社등에 대하여 그 業務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1.3.28>

③삭제 <2001.3.28>

④金融監督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결과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은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1.3.28>

제53조의2 (검사) ①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 그 밖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선임한 외부 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된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제53조의3 (건전경영의 지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자체 경영정상화가 지체되어 거래자 보호 및 금융 질서의 안정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계약이전 등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第**54**條 (業務報告書등의 제출) 與信專門金融會社등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業務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與信專門金融業協會가 設立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1999.2.1>

第**54**條의**2** (경영의 公示) ①金融監督委員會는 與信專門金融會社에 대하여 經營狀況에 관한 主要情報 및 資料를 公示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의 종류·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9.2.1]

第**55**條 (會計處理) 與信專門金融會社등은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與信專門金融業을 業種別로 다른 業務와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第**56**條 (監査人의 지정) 金融監督委員會는 與信專門金融會社가 이 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證券先物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당해與信專門金融會社의 監査人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1]

第57條 (許可·登錄의 取消등) ①金融監督委員會는 信用카드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信用카드業務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附帶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1.3.28>

1.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同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附帶業務를 영위한 때

2. 第14條·第16條第1項 내지 第4項·第17條·第18條·第21條·第22條·第23條第1項 또는 第25條第4項의 規定을 위반한 때

3. 第23條第2項·第24條·第25條第1項·제53조제4항·제53조의3제2항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때

②金融監督委員會는 信用카드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1999.2.1, 1999.5.24, 2002.3.30>

1. 詐僞 기타 不正한 방법으로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2. 第6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에 規定한 者에 해당된 때(與信專門金融會社인 경우에 한한다)

3. 第23條第2項·第24條·第25條第1項·제53조제4항·제53조의3제2항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1年이상 계속하여 營業을 하지 아니한 때

5. 法人의 合併·破産·營業의 廢止등으로 사실상 營業을 종료한 때

③金融監督委員會는 施設貸與業者, 割賦金融業者 또는 新技術事業金融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1999.2.1, 1999.5.24, 2001.3.28, 2002.3.30>

1. 詐僞 기타 不正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2. 第6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에 規定한 者에 해당된 때(與信專門金融會社인 경우에 한한다)

3. 第5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명령을 위반한 때

3의2.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명령을 받은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1年이상 계속하여 營業을 하지 아니한 때

5. 法人의 合併·破産·營業의 廢止등으로 사실상 營業을 종료한 때

④삭제<1999.5.24>

第58條 (課徵金處分) ①金融監督委員會는 與信專門金融會社가 第46條, 第47條, 第48條, 第49條第1項·第4項 또는 第50條의 規定을 위반하거나 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1億원 이하의 課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8.1.13, 1999.2.1>

②金融監督委員會는 信用카드業者가 第57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業務停止處分에 갈음하여 1億원 이하의 課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③金融監督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5千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8.1.13>

1. 施設貸與業者가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명령을 위반한 때
2. 割賦金融業者가 第39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3. 新技術事業金融業者가 第45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8.1.13>

⑥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第59條 삭제 <2001.3.28>

第60條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개정 2002.3.30>) 信用카드業者는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取消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信用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決濟를 위한 業務를 계속 행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第61條 (聽聞) 金融監督委員會는 第57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1999.5.24>

第6章 與信專門金融業協會

第62條 (設立) ①與信專門金融會社등은 與信專門金融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與信專門金融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與信專門金融會社등이 協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創立總會에서 定款을 작성한 후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2.1, 1999.5.24>

④協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長·理事·監事 기타 任員을 둔다.

⑤삭제<1999.2.1>

⑥協會에 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준용한다.

第63條 (가입) 協會는 與信專門金融會社등이 協會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4條 (業務)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이 法 기타 法令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會員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會員에 대한 이용자보호를 위한 業務方式의 개선권고
3.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 제출의 대행과 會員의 財務狀態에 대한 분석
4.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5. 會員 상호간의 信用情報의 교환
6. 信用카드加盟店에 대한 情報 관리
7. 與信專門金融業 및 與信專門金融會社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8. 삭제<1999.2.1>
9. 기타 協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業務

第65條 (定款) 協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명칭 및 事務所의 소재지
2. 會員의 資格
3. 任員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범위
5. 會費의 분담과 豫算 및 會計에 관한 사항

6. 會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協會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第66條 삭제<1999.2.1>

第67條 삭제<1999.2.1>

第68條 삭제<1999.2.1>

第7章 補則

第69條 (분담금<개정 2001.3.28>) ①삭제 <2001.3.28>

②金融監督院의 檢査를 받는 與信專門金融會社등은 檢査費用에 충당하기 위한 分擔金을 金融監督院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料率·한도 기타 分擔金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13]

第69조의2 (권한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第8章 罰則

第70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3.30>

1. 信用카드등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

2. 僞造 또는 變造된 信用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者

3. 분실 또는 도난된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者

4. 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자

8. 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3.30>

1. 삭제 <2002.3.30>

2. 詐僞 기타 不正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資金을 융통하여 준 者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者

4.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5.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2.1, 2001.3.28, 2002.3.30>

1.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信用카드를 讓渡·讓受하거나 質權設定을 한 者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3.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加盟店手數料를 信用카드會員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者

4. 第19條第4項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信用카드加盟店의 명의를 타인에게 貸與한 者

5. 삭제 <2002.3.30>

6. 삭제 <2002.3.30>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1조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④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⑤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⑥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신설 2002.3.30>

⑦第1項 내지 第3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第**7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0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72**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9.2.1, 2002.3.30>

1. 제50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한 자

2. 削除<1999.2.1>

3. 第54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者

4.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公示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公示한 者

5. 第55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개정 1998.1.13, 1999.2.1>

1. 삭제<1999.2.1>

2. 삭제<1999.2.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8.1.13, 1999.2.1>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1998.1.13, 1999.2.1>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5374호,1997.8.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信用카드業法 및 施設貸與業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적용례) 第68條의 規定은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協會가 設立된 날부터 적용한다.

第4條 (信用카드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信用카드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카드業을 認可받고 同法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項第1號 내지 第5號의 業務를 모두 許可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與信專門金融會社로서 信用카드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信用카드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카드業을 認可받고 同法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同項第1號 내지 第5號의 業務중 第1號의 業務만을 許可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兼營與信業者로서 信用카드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信用카드業法 第1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割賦金融業을 認可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與信專門金融會社로서 割賦金融業을 登錄한 者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施設貸與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貸與業을 認可받은 施設貸與會社는 이 法에 의하여 與信專門金融會社로서 施設貸與業을 登錄한 者로 본다.

⑤이 法 施行당시 施設貸與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貸與業을 認可받은 者로서 施設貸與會社가 아닌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兼營與信業者로서 施設貸與業을 登錄한 者로 본다.

⑥이 法 施行당시 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新技術事業金融業을 認可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與信專門金融會社로서 新技術事業金融業 및 施設貸與業을 登錄한 者로 본다.<개정 1999.2.8>

⑦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與信專門金融業을 許可받거나 登錄한 者로 보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第4條의 規定에 의한 서류를 財政經濟院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5條 삭제<1999.2.1>

第6條 (罰則 및 過怠料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信用카드業法 및 施設貸與業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이 法은 新技術事業金融會社를 건전하게 육성·지원하는 한편"을 "이 法은"으로 한다.

第2條第3號 및 第4號를 각각 削除하고, 同條第6號중 "新技術事業金融會社"를 "與信專門金融業法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新技術事業金融業을 登錄한 與信專門金融會社"로 하며, 同條第10號를 削除한다.

第2章(第4條 내지 第11條)·第46條第1項 및 第50條第1項 내지 第3項을 각각 削除한다.

②關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의 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4條의3 (施設貸與業者에 대한 關稅減免適用등) ①與信專門金融業法의 規定에 의한 施設貸與業者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가 減免되는 物品을 輸入하는 때에는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貸與施設利用者를 納稅義務者로 하여 輸入申告할 수 있으며 이 경우 貸與施設利用者가 納稅義務者로 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減免을 받은 物品에 대하여 關稅를 徵收하는 경우에 納稅義務者인 貸與施設利用者로부터 徵收할 수 없을 때에는 施設貸與業者로부터 이를 徵收한다.

③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項·第22條第2項 및 第36條第2項중 "信用카드業法 第2條第1號"를 각각 "與信專門金融業法 第2條第3號"로 한다.

④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의2第2項 本文중 "信用카드業法"을 "與信專門金融業法"으로 한다.

⑤附加價値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의2第1項 本文중 "信用카드業法"을 與信專門金融業法"으로 한다.

⑥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2項 本文중 "信用카드業法"을 "與信專門金融業法"으로 한다.

⑦印紙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18號중 "施設貸與業法"을 "與信專門金融業法"으로 한다.

⑧割賦去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各號외의 부분 但書 및 第4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중 "信用카드業法"을 각각 "與信專門金融業法"으로 한다.

⑨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第1號중 "施設貸與業法"을 "與信專門金融業法"으로 한다.

⑩이 法 施行당시의 法令중 종전의 信用카드業法·施設貸與業法·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信用카드業法·施設貸與業法·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 또는 그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처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등이 행한 認可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등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등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省略

附則 <제5741호,1999.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韓國綜合技術金融株式會社法廢止法律) <제5819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생략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法律 第5374號 與信專門金融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 第4條第6項 但書를 削除한다.

第10條 (與信專門金融業法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과 동시에 會社는 與信專門金融業法상의 與信專門金融會社로서 施設貸與業 및 新技術事業金融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11條 및 第12條 생략

附則(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50>생략

<51>與信專門金融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5號 및 第16號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財政經濟部"를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3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財政經濟部"를 "金融監督委員會"로 하고, 同條第2項第1號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4條 本文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한다.

第7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61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10條第2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47條第1項第1號 및 第62條第3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57條第2項 本文 및 第3項 本文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하고, 同條第4項을 削除한다.

第59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52>내지 <78>생략

第4條 내지 第6條 생략

■ 부칙(대외무역법) <제631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

⑥ 및 ⑦생략

■ 부칙 <제6430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6조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부칙 <제6681호,2002.3.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동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6705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⑤생략

⑥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을 "技術信用保證基金法"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것

②第2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店 기타 營業所의 設置許可를 받고자 하는 外國證券業者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第28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2. 財産狀況·財務健全性 및 營業健全性이 國內에서 證券業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國際的 信認度가 높을 것

3.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요건을 갖출 것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1]

第**32**條의**2** (許可의 公告)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8條第1項 및 第2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官報에 公告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2**節 健全營業秩序의 유지

第**33**條 (任員의 資格) ①삭제<1999.2.1>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證券會社의 任員이 되지 못하며, 任員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職을 喪失한다.<改正 1997.1.13, 1997.12.13, 1999.2.1, 2000.1.21>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거나 이 法 또는 이에 상당하는 外國의 法令(이하 "外國證券法令"이라 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法令에 의하여 罰金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免除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3의2.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4. 이 法 또는 外國證券法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認可등이 取消된 法人 또는 會社의 任·職員이었던 者(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⑧外國證券業者의 證券業의 營爲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82.3.29]

第29條 (證券業을 兼營하는 者 등에 대한 適用規定<개정 1999.2.1>) ①삭제 <1999.2.1>

②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業許可를 받아 證券業을 兼營하는 者에게는 그 許可받은 營業의 범위안에서 이 章의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第28條第3項, 第33條, 第47條 및 第62條의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1987.11.28, 1997.1.13, 1999.2.1>

第30條 (許可申請) ①第28條第1項 및 第2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請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申請書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申請書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申請書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1.21]

第31條 (許可節次) ①金融監督委員會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書를 受理한 때에는 30日내에 그 許可與否를 決定하고 이를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文書로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97.1.13, 1998.5.25, 1999.5.24>

②削除 <1987.11.28>

第32條 (許可의 요건) ①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第2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2. 投資者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證券業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人力과 電算設備 기타 物的 施設을 갖추고 있을 것
3. 事業計劃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出資者(出資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당해法人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出資能力, 건전한 財務狀態 및 社會的 信用을 갖추고 있을

3. 第2條第8項第5號 내지 第7號의 營業

4. 제2조제8항제8호의 영업

③證券會社의 資本金은 10億원이상으로서 營業의 범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0.1.21>

④削除 <1997.1.13>

⑤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1999.2.1, 1999.5.24>

⑥削除 <1997.1.13>

⑦삭제<1999.2.1>

第**28**條의**2** (外國證券業者의 營業) ①外國證券業者(外國法令에 의하여 外國에서 證券業을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國內에서 證券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支店 기타 營業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28條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種類別로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7.1.13, 1998.5.25, 1999.5.24, 2000.1.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店 기타 營業所의 營業基金은 10億원이상으로서 營業의 범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00.1.2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店등의 設置許可를 받지 아니한 外國證券業者는 國內居住者를 상대로 하여 證券業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1997.1.13>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支店 기타 營業所는 第28條第3項의 規定을 제외하고는 이 法에 의한 證券會社로 본다.<改正 1997.1.13>

⑤外國證券業者의 國內支店 기타 營業所가 淸算 또는 破産하는 때에는 그 國內保有資産은 證券去來行爲의 상대방으로서 그 去來 당시 國內에 住所 또는 居所가 있는 者에 대한 債權 辨濟에 우선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國內保有資産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1991.12.31, 1997.1.13>

⑥金融監督委員會는 外國證券業者의 國內支店 기타 營業所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外國法令에 위반하여 證券業務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許可取消·營業停止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外國證券業者가 外國法令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당해 外國證券業者의 國內支店 기타 營業所의 證券業務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1.12.31, 1997.1.13, 1998.1.8, 1998.5.25, 1999.5.24>

⑦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1999.2.1, 1999.5.24>

買受說明書와 관련하여 應募株主에게 끼친 損害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9.2.1>

1. 公開買受申告書 및 그 訂正申告書상의 申告者(申告者의 特別關係者를 포함하며, 申告者가 法人인 경우 그 理事를 포함한다)와 그 代理人

2. 公開買受說明書의 作成者와 그 代理人

②第1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賠償責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7.1.13]

第**26**條 (申告書등의 公示) 金融監督委員會·證券去來所 및 協會는 제출받은 公開買受申告書,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訂正申告書, 第2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撤回申告書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文書를 그 接受日부터 3년간 비치하고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1998.1.8, 2001.3.28>

[全文改正 1997.1.13]

第**27**條 (申告人에 대한 資料要求) 金融監督委員會는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公開買受者 및 그 關係者와 당해 有價證券의 發行人에 대하여 參考가 될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改正 1998.1.8>

第**27**條의**2** (準用規定) 第17條·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은 公開買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17條중 "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로 본다.<개정 1999.2.1>

[本條新設 1997.1.13]

第**5**章 證券業

第**1**節 許可

第**28**條 (許可) ①證券業을 營爲할 수 있는 者는 營業의 種類別로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株式會社이어야 한다. <改正 1997.1.13, 1998.5.25, 1999.5.24>

②第1項의 營業의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개정 2001.3.28>

1. 第2條第8項第1號의 營業

2. 第2條第8項第2號 내지 第4號의 營業

第24條 (公開買受說明書의 作成과 사용) ①公開買受者는 公開買受를 하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公開買受에 관한 說明書(이하 "公開買受說明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場所에 비치하고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1997.1.13, 1998.5.25>

②第13條의 規定은 公開買受說明書의 사용에 관하여 準用한다.

第24條의2 (公開買受의 撤回등) ①公開買受者는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買受를 할 수 있게 된 날 이후에는 公開買受를 撤回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公開買受期間의 末日까지 撤回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買受를 撤回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撤回申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1998.1.8, 1998.5.25, 2000.1.21>

③公開買受對象 株式등의 買受의 請約에 대한 승낙 또는 賣渡의 請約(이하 "應募"라 한다)을 한 者(이하 "應募株主"라 한다)는 公開買受期間중에는 언제든지 應募를 取消할 수 있다. 이 경우 公開買受者는 應募株主에 대하여 당해 應募의 取消에 따른 損害賠償 또는 違約金의 지급을 請求할 수 없다.

[本條新設 1997.1.13]

第25條 (公開買受에 관한 意見表示) 公開買受申告書가 제출된 株式등의 發行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公開買受에 관한 의견을 表明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內容을 記載한 文書를 지체없이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7.1.13, 1998.1.8>

第25條의2 (公開買受의 조건과 방법) ①公開買受者는 公開買受申告書에 기재한 買受條件 및 방법에 따라 應募한 당해 株式등의 전부를 公開買受期間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이후 지체없이 買受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公開買受價格은 均一하여야 한다.<改正 1998.2.24>

[本條新設 1997.1.13]

第25條의3 (公開買受者의 賠償責任) ①第14條第1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者가 公開買受申告書 및 그 公告,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訂正申告書 및 그 公告와 公開

체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 등의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고,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3.28]

第23條 (公開買受者의 買受의 제한등) ①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에서 같다)는 공개매수공고일(제2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말한다)부터 3일(기간산정에 있어서 공휴일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개매수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②公開買受者(그 特別關係者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買受를 할 수 있는 날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당해 株式등을 公開買受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買受등을 하지 못한다.

③공개매수공고일부터 과거 6월간 公開買受를 통하여 당해 株式등을 買受한 사실이 있는 者(그 特別關係者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公開買受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④公開買受對象 株式등의 發行人은 第2項의 기간동안 議決權있는 株式數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全文改正 1997.1.13]

第23條의2 (정정신고·공고 등<개정 2001.3.28>) ①公開買受者는 買受條件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公開買受期間이 종료하는 날까지 訂正申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買受價格의 引下, 買受豫定株式등의 數의 감소, 買受代金 지급기간의 연장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買受條件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改正 1997.12.13, 1998.5.25, 2000.1.21>

②공개매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변경한 내용(공개매수공고에 포함된 사항에 한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은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1.3.28>

③第11條第1項·第2項·第5項, 第22條 및 第23條第1項의 規定은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정정신고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3.28>

[本條新設 1997.1.13]

1.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매수자금의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당해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
7. 매수자금의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은 공개매수신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1.3.28]

第21條의3 (議決權 제한 등)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등의 買受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株式(당해 株式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株式을 포함한다)에 대한 議決權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행사할 수 없으며, 金融監督委員會는 당해 株式등(당해 株式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株式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改正 1998.1.8, 1998.2.24, 2001.3.28.>

[本條新設 1997.1.13]

제22조 (신고서사본의 송부 등)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

來에 관하여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4. 第18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때

第4章 有價證券의 公開買受

第21條 (公開買受의 적용대상) ①議決權있는 株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有價證券市場 및 協會仲介市場밖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이상의 者로부터 買受·交換·入札 기타 有償讓受(이하 이 章에서 "買受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買受등을 한 후에 本人과 그 特別關係者(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所有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 및 第200條의2에서 같다)하게 되는 株式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등의 總數의 100分의 5이상이 되는 경우(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는 株式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등의 總數의 100分의 5이상인 者가 당해 株式등의 買受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公開買受하여야 한다. 다만, 그 類型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買受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削除 <1998.2.24>

③이 章에서 "公開買受"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株式등의 買受(다른 有價證券과의 交換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請約을 하거나 賣渡(다른 有價證券과의 交換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請約을 勸誘하고 有價證券市場 및 協會仲介市場밖에서 당해 株式등을 買受하는 것을 말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등의 數와 株式등의 總數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算定한 數로 한다.<改正 1998.2.24, 1998.5.25>

⑤"공개매수사무취급자"라 함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 등을 할 주식 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有價證券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증권회사에 한한다. <신설 2001.3.28>

[全文改正 1997.1.13]

제21조의2 (공개매수의 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第18條 (申告書와 報告書의 公示) 有價證券申告書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報告書(이하 "有價證券發行實績報告書"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備置하고 公衆의 閱覽에 供與하여야 한다. 다만, 企業經營등 秘密維持와 投資者保護와의 衡平등을 고려하여 一般人의 閱覽에 제공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7.1.13, 1998.1.8>

第18條의2 (申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賣出)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有價證券을 모집 또는 賣出하는 發行人은 投資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發行人의 財務狀態에 관한 사항의 公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19條 (보고와 調査) ①金融監督委員會는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有價證券申告의 申告人, 有價證券의 發行人·引受人 기타 關係人에 대하여 參考가 될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命하거나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金融監督院(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 院長으로 하여금 그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7.1.13, 1998.1.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여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改正 1997.1.13>

第20條 (委員會의 處分權) 金融監督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有價證券의 發行人에 대하여 理由를 提示한 후 그 事實을 公告하고 訂正을 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그 有價證券의 발행·모집·賣出 기타 去來를 정지 또는 금지시키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金融監督委員會는 有價證券의 發行人에 대한 措置를 함에 있어 필요한 節次·措置基準을 정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1998.1.8, 2000.1.21, 2001.3.28>

1. 有價證券申告書 또는 有價證券發行實績報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는 때
2. 事業說明書에 관하여 第12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3. 豫備事業說明書 또는 簡易事業說明書에 의한 有價證券의 모집·賣出 기타의 去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기재 또는 표시가 豫測情報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豫測 또는 展望과 관련된 假定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3. 당해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假定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당해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豫測値와 실제 結果値가 다를 수 있다는 注意文句가 명시되어 있을 것

③第2項의 規定은 株券上場法人 및 協會登錄法人외의 法人이 최초로 有價證券을 모집 또는 賣出하기 위하여 有價證券申告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9.2.1]

第15條 (損害賠償額) ①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賠償할 金額은 請求權者가 당해 有價證券을 取得함에 있어서 실지로 支給한 額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額을 控除한 金額으로 한다.

1. 당해 有價證券에 관하여 訴訟提起되어 있는 때에는 辯論終結時에 있어서의 市場價格(市場價格이 없는 경우에는 推定處分價格)

2. 第1號의 辯論終結전에 당해 有價證券을 處分한 때에는 그 處分價格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賠償責任을 질 者가 請求權者가 입은 損害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기재·표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立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賠償責任을 지지 아니한다.<新設 1997.1.13>

第16條 (賠償請求權의 消滅)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賠償의 責任은 그 請求權者가 당해 事實을 안 날로부터 1年내 또는 당해 有價證券에 관하여 有價證券申告書의 效力이 발생한 날로부터 3年내에 請求權을 行使하지 아니한 때에는 消滅한다.

第17條 (有價證券發行實績報告書) 有價證券申告書의 效力이 발생한 有價證券의 發行人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發行實績에 관한 報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82.3.29, 1997.12.13, 1998.1.8, 1998.5.25, 2000.1.21>

出 기타의 去來를 위하여 請約의 勸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申告의 효력이 발생한 후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說明書를 사용하는 방법

2. 發行人이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申告書가 受理된 후 申告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豫備事業說明書(申告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附記한 事業說明書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방법

3. 發行人이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申告書가 受理된 후 新聞·放送·雜誌등을 이용한 廣告, 안내문·홍보전단 또는 電子傳達媒體를 통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簡易事業說明書(事業說明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文書, 電子文書 기타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0.1.21]

第**14**條 (허위기재등으로 인한 賠償責任) ①有價證券申告書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說明書(豫備事業說明書 및 簡易事業說明書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有價證券의 取得者가 損害를 입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者는 그 損害에 관하여 賠償의 責任을 진다. 다만, 賠償의 責任을 질 者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有價證券의 取得者가 취득의 請約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1>

1. 당해有價證券申告書상의 申告者와 申告당시의 당해法人의 理事(法人의 設立전에 申告된 때에는 그 發起人)

2. 당해有價證券申告書의 기재사항 또는 그 添附書類가 眞實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公認會計士·鑑定人 또는 信用評價를 전문으로 하는 者

3. 당해發行人과 당해有價證券의 引受契約을 체결한 者

4. 당해事業說明書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者

5. 賣出의 방법에 의한 경우 賣出申告당시의 당해 賣出되는 有價證券의 所有者

②豫測情報가 다음 各號의 방법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 各號의 者는 그 損害에 관하여 賠償의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有價證券의 取得者가 취득의 請約시에 豫測情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第1項 各號의 者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우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變更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訂正申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87.11.28, 1991.12.31, 1997.12.13, 1998.5.25>

④第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一括申告書를 제출한 者는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발행예정기간 종료전에 訂正申告書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예정금액 및 발행예정기간은 이를 訂正할 수 없다.<新設 1991.12.31>

⑤第1項·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訂正申告書가 제출된 때에는 그 訂正申告書가 受理된 날에 당해 有價證券申告書가 受理된 것으로 본다.<改正 1991.12.31>

第**12**條 (事業說明書의 作成·供覽) ①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을 모집 또는 賣出하는 때에는 그 發行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說明書를 作成하여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場所에 備置하고 一般人에게 供覽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5.25, 2000.1.21>

②第1項의 事業說明書에는 有價證券申告書(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一括申告追加書類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에 記載된 內容과 相違한 內容을 표시하거나 그 記載事項을 漏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企業經營등 秘密維持와 投資者保護와의 衡平등을 고려하여 一般人의 閱覽에 제공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31, 1997.1.13>

第**13**條 (정당한 事業說明書의 사용) ①누구든지 有價證券申告의 효력이 발생한 有價證券에 관하여 그 有價證券을 취득하고자 하는 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第12條의 規定에 적합한 事業說明書를 교부한 후가 아니면 그 有價證券을 취득하게 하거나 賣渡하지 못한다. 이 경우 事業說明書가 第194條의2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의 방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電子文書에 의하여 事業說明書를 受信하거나 전달받는 것에 대하여 電子文書를 受信하거나 전달받을 者(이하 "電子文書受信者"라 한다)의 同意가 있을 것
2. 電子文書受信者가 電子文書를 受信하거나 전달받을 電子傳達媒體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電子文書受信者가 당해電子文書를 受信하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電子文書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事業說明書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누구든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대상이 되는 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

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書面으로 갈음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1998.5.25, 2000.1.21>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의 기재사항과 그 添附書類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1997.12.13, 1998.5.25, 1999.2.1, 2000.1.21>

第9條 (申告의 效力發生時期등) ①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이하 "有價證券申告"라 한다)는 그 申告書(이하 "有價證券申告書"라 한다)를 金融監督委員會가 受理한 날로부터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期間이 경과한 날에 그 效力이 발생한다.<改正 1997.1.13, 1998.1.8, 1998.5.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效力의 발생은 그 申告書의 記載事項이 眞實 또는 正確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政府에서 그 有價證券의 價値를 保證 또는 承認하는 效力을 가지지 아니한다.<改正 1998.1.8>

③有價證券의 발행인이 有價證券申告書를 撤回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申告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撤回申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新設 1991.12.31, 1997.12.13, 1998.1.8, 1998.5.25, 2000.1.21>

[全文改正 1982.3.29]

第10條 (去來의 制限) ①第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 有價證券의 取得 또는 買收의 請約이 있는 경우에 당해 有價證券의 發行人·賣渡人과 그 代理人은 그 請約의 承諾을 하지 못한다.<改正 1982.3.29>

②第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一括申告書를 제출한 발행인은 당해 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出시마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括申告追加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해 有價證券에 관한 취득 또는 買受의 請約에 대한 승낙을 하지 못한다.<新設 1991.12.31, 1997.12.13, 1998.5.25, 2000.1.21>

第11條 (訂正申告書) ①金融監督委員會는 有價證券申告書에 形式上의 不備가 있거나 그 申告書에 記載할 중요한 事項의 記載가 不充分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理由를 제시하고 訂正申告書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改正 1998.1.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 있는 때에는 당해 有價證券申告書는 그 命令을 한 날로부터 受理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有價證券申告書를 제출한 者는 당해 申告에 의한 請約日 開始전에 당해 有價證券申告書의 기재사항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訂正申告書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

[全文改正 1982.3.29]

第3章 有價證券申告書

第7條 (適用範圍) 이 章의 規定은 第2條第1項第1號 내지 제3호(다른 법령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債券으로 보는 債券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債券을 제외한다)·第5號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에 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1.12.31, 2001.3.28>

第8條 (모집 또는 賣出의 申告) ①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有價證券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 그 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出은 발행인이 당해 有價證券에 관하여 申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 受理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이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모집 또는 賣出할 예정인 有價證券에 관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一括하여 申告書(이하 "一括申告書"라 한다)를 제출하여 受理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모집 또는 賣出하는 당해 有價證券에 관한 申告書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1991.12.31, 1997.1.13, 1998.1.8, 1998.5.25, 2001.3.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에는 發行人의 미래의 財務狀態나 營業實績등에 대한 豫測 또는 展望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各號의 사항(이하 "豫測情報"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豫測情報의 기재 또는 표시는 第14條第2項第1號·第2號 및 第4號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신설 1999.2.1>

1. 賣出規模·이익규모 등 發行人의 營業實績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豫測 또는 展望에 관한 사항

2. 資本金規模·資金흐름등 發行人의 財務狀態에 대한 豫測 또는 展望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計劃의 수립으로 인한 發行人의 경영성과 또는 財務狀態의 변동 및 一定時點에서의 目標水準에 관한 사항

4. 기타 發行人의 미래에 대한 豫測 또는 展望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書를 제출하는 경우 申告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添附書類에 이미 제출된 것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

2001.3.28>

第2條의2 削除 <1995.12.29>

第2章 有價證券發行人의 登錄

第3條 (有價證券發行人의 登錄) 有價證券 발행의 公正과 企業의 公示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발행인은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第2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第4號(大統領令이 정하는 社債券에 한한다) 및 第5號의 有價證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發行人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2002.1.26>

1. 삭제 <2002.1.26>
2.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 有價證券을 모집 또는 賣出하고자 하는 法人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4. 삭제 <2002.1.26>
5. 有價證券을 모집하고자 하는 設立중인 法人
6.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

第4條 (登錄書類)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는 발행인은 會社의 概況, 財産狀況등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書類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書類중 重要한 內容이 變更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1.12.31, 1998.1.8>

第5條 (登錄書類의 公示) 金融監督委員會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書類를 公衆의 閱覽에 供與할 수 있다.<改正 1998.1.8>

第6條 (登錄法人의 管理) 金融監督委員會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法人(이하 "登錄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 資金調達·財務構造의 改善등 건전한 經營管理를 위한 登錄法人의 管理基準을 정하고 필요한 勸告를 할 수 있다.<改正 1998.1.8>

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投資一任業 : 顧客으로부터 有價證券의 價値등의 分析에 기초한 投資判斷의 전부 또는 일부를 一任받아 그 者를 위하여 投資를 행하는 營業

⑪이 法에서 "投資諮問會社"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投資諮問業 또는 投資一任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改正 1987.11.28, 1999.2.1>

⑫이 法에서 "有價證券市場"이라 함은 有價證券의 賣買去來를 위하여 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證券去來所(이하 "證券去來所"라 한다)가 開設하는 市場을 말한다.

⑬이 法에서 "上場法人"·"非上場法人"·"株券上場法人" 및 "株券非上場法人"이라 함은 각각 다음 各號의 者를 말한다.<개정 1999.2.1>

1. 上場法人 :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된 有價證券의 發行人
2. 非上場法人 :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되지 아니한 有價證券의 發行人
3. 株券上場法人 :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된 株券을 발행한 法人
4. 株券非上場法人 :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되지 아니한 株券을 발행한 法人

⑭이 法에서 "協會仲介市場"이라 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의 仲介를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市場을 말한다. <新設 1997.1.13, 2001.3.28>

⑮이 法에서 "協會登錄法人"이라 함은 第17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協會에 登錄한 法人을 말한다.<新設 1997.1.13>

<16> 이 法에서 "外國法人등"이라 함은 外國政府, 外國地方自治團體, 外國公共機關, 外國法令에 의하여 設立된 外國企業 및 條約에 의하여 設立된 國際金融機構 기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新設 1997.1.13, 1997.12.13, 1998.5.25>

<17>이 法에서 "證券關係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개정 1999.2.1>

1.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거나 營業 또는 業務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
2. 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委託會社 및 受託會社
3. 證券投資會社法에 의한 資産運用會社 및 資産保管會社

<18>이 法에서 "우리社株組合"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法人의 株式을 취득·관리함으로써 從業員의 福祉增進과 經濟的地位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組織한 團體를 말한다. <新設 1997.1.13, 2000.1.21, 2001.3.28>

<19>이 법에서 "사외이사"라 함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54조의5 또는 제191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또는 證書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改正 1997.1.13>

⑥이 法에서 "引受"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말한다.

1. 有價證券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賣出할 目的으로 그 有價證券의 發行人으로부터 그 全部 또는 一部를 取得하는 것

2. 有價證券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取得하는 者가 없는 때에 그 殘餘分을 取得하는 契約을 하는 것

3. 手數料를 받고 發行人을 위하여 당해 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出을 周旋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間接으로 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出을 分擔하는 것

⑦이 法에서 "引受人"이라 함은 第6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는 者를 말한다.<改正 1997.12.13>

⑧이 法에서 "證券業"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는 營業을 말한다. <改正 1997.1.13, 2001.3.28>

1. 有價證券의 賣買

2. 有價證券의 委託賣買

3. 有價證券賣買의 중개 또는 대리(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有價證券市場·協會仲介市場 또는 이와 유사한 市場으로서 外國에 있는 市場에서의 賣買去來에 관한 委託의 仲介·周旋 또는 代理

5. 有價證券의 引受

6. 有價證券의 賣出

7. 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出의 周旋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상장주식 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된 주식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有價證券賣買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有價證券의 매매

가. 有價證券市場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격

나. 단일의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

⑨이 法에서 "證券會社"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證券業을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⑩이 法에서 "投資諮問業" 및 "投資一任業"이라 함은 각각 다음 各號의 營業을 말한다.<개정 2000.1.21>

1. 投資諮問業 : 有價證券의 價値 또는 有價證券에 대한 投資判斷(投資對象이 되는 有價證券의 종류·種目·數量 및 價格과 賣買의 구분·방법 및 時期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口述·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助言을 하는 營業. 다만, 不特定多數人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刊行物등에 의한 助言으로서 大統領令

증권거래법

[일부개정 2002.4.27 법률 제6695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有價證券의 발행과 賣買 기타의 去來를 公正하게 하여 有價證券의 流通을 원활히 하고 投資者를 保護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有價證券"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改正 1991.12.31, 1997.1.13>

1. 國債證券
2. 地方債證券
3. 特別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발행한 債券
4. 社債券
5. 特別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발행한 出資證券
6. 株券 또는 新株引受權을 표시하는 證書
7. 外國法人등이 발행한 證券 또는 證書로서 第1號 내지 第6號의 證券이나 證書의 性質을 구비한 것
8. 外國法人등이 발행한 證券 또는 證書를 기초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발행한 有價證券預託證書
9. 第1號 내지 第8號의 證券 또는 證書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②第1項 各號의 有價證券에 표시되어야 할 權利는 그 有價證券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有價證券으로 본다.

③이 法에서 "有價證券의 모집"이라 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新規로 발행되는 有價證券의 取得의 請約을 勸誘함을 말한다.<改正 1991.12.31, 1997.1.13>

④이 法에서 "有價證券의 賣出"이라 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有價證券의 賣渡의 請約을 하거나 買受의 請約을 勸誘함을 말한다.<改正 1991.12.31, 1997.1.13>

⑤이 法에서 "發行人"이라 함은 有價證券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第1項第8號의 有價證券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證券

Exhibit 12.5

第2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치 아니한다.

第3條 (分割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의 施行전에 체결된 分割契約에 의한 分割에 관하여는 이 法 施行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非訟事件節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2條第1項중 "第310條第1項, 第417條"를 "第310條第1項, 第391條의3第4項, 第417條"로 하고, 同條에 第6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⑥商法 第394條第2項에 관한 事件은 商法 第403條의 規定에 의한 事件의 管轄法院의 관할로 한다.

第84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84條의2 (訴訟上 代表者選任의 裁判) ①商法 第39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上 代表者의 選任에 관한 裁判을 하는 경우에는 法院은 理事 또는 監査委員會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②第81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03條第5號중 "監事 또는 檢査人"을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 및 檢査人"으로 하고, 同條第9號중 "監事의"를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 委員"으로 한다.

第204條第1項 및 第2項중 "또는 監事"를 각각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 委員"으로 한다.

附 부칙 <제6488호,2001.7.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소한 제소주주의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附 부칙 <제6545호,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林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2條의4 但書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商法 第385條第2項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이상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와 同條 第402條 및 第403條第1項의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1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이를 각각 "組合員 10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은 組合員"으로 한다.

⑦畜産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1項 但書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商法 第385條第2項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이상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와 同條 第402條 및 第403條第1項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이를 각각 "組合員 10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은 組合員"으로 한다.

⑧벤처企業육성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를 削除한다.

⑨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商法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 <제5809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4號 및 第41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公布후 1年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생략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생략

⑦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48條第2號중 "海難救助"를 "海洋事故 救助"로 하고, 同條第4號중 "海難을"을 "海洋事故를"로 한다.

第752條의2의 題目 및 同條第1項중 "海難救助者"를 각각 "海洋事故救助者"로 한다.

第774條第1項 本文중 "海難救助料"를 "海洋事故 救助料"로 한다.

第794條第2項·第797條 및 第800條第1項중 "海難救助"를 각각 "海洋事故 救助"로 한다.

第7章의 題目 "海難救助"를 "海洋事故 救助"로 한다.

第849條의 題目중 "海難救助"를 "海洋事故 救助"로 한다.

第851條중 "海難當時"를 "海洋事故당시"로 한다.

第857條第2號중 "海難을"을 "海洋事故를"로 한다.

第862條第3號중 "海難救助"를 "海洋事故 救助"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附則 <제6086호,1999.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非訟事件節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5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商法 第422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人이 한 調査報告書와 그 附屬書類는 鑑定人의 鑑定書와 그 附屬書類

第215條第2號중 "株主總會나"를 "株主總會 또는 理事會의 議事錄이나"로 하고, 同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5號중 "商法 第526條第3項"을 "商法 第526條第3項 또는 同法 第527條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6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第193條第3號의 書面 및 商法 第527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 및 催告를 한 사실과 異議를 陳述한 債權者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辨濟 또는 擔保를 제공하거나 信託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書面

6. 商法 第527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書面

第216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16條의2 (分割 또는 分割合併에 의한 登記) ①分割 또는 分割合併에 의한 變更登記·解散登記 또는 設立登記의 申請書에는 分割計劃書 또는 分割合併契約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第215條 및 第216條의 規定은 分割 또는 分割合併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②證券去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2條의2를 削除한다.

第192條의3第1項중 "協會登錄法人은 商法 第462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를 "協會登錄法人은"으로 한다.

③保險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를 削除한다.

第65條第2項중 "商法 第403條第3項 내지 第5項"을 "商法 第403條第3項·第4項 및 第7項"으로 한다.

第77條第1項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商法 第528條第1項의 "第317條"는 이를 "保險業法 第47條"로 한다.

④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7條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商法 第385條第2項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와 同法 第402條 및 第403條第1項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이를 각각 "組合員 10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은 組合員"으로 한다.

⑤水産業協同條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3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商法 第385條第2項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이상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와 同法 第402條 및 第403條第1項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이를 각각 "組合員 5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은 組合員"으로 한다.

第22條 및 第23條第4項중 "同一한 서울特別市·直轄市·市·邑·面"을 각각 "동일한 特別市·直轄市·市·郡"으로 한다.

第41條第1項중 "同一한 서울特別市·直轄市·市·邑·面과 隣接 서울特別市·直轄市·市·邑·面"을 "동일한 特別市·直轄市·市·郡과 인접 特別市·直轄市·市·郡"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同一한 서울特別市"를 "동일한 特別市"로, "隣接 서울特別市"를 "인접 特別市"로 한다.

第70條第3項중 "서울特別市·直轄市·市·邑·面"을 "特別市·直轄市·市·郡"으로 한다.

⑨ 내지 <25> 省略

第4條 省略

附則 <제5053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의 原則) 이 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商業帳簿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商人인 者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到達하는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一定時期(會社에 있어서는 決算期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와 그 전에 작성하여야 할 商業帳簿 및 그 附屬明細書와 그 一定時期와 그 전에 하는 計算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株式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株式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監事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任중인 株式會社의 監事의 任期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商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5591호,1998.1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82條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의 原則) 이 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前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合併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의 施行前에 체결된 合併契約에 의한 合併에 관하여는 이 法 施行後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第232條 및 第527條의5의 規定에 의한 債權者의 異議提出期間은 이 法 施行後 최초로 公告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第4條(罰則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한 행위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종전의 規定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이 法 施行後에 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第1項의 경우에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登記의 囑託書 또는 申請書에는 計劃認可의 決定書의 謄本 또는 抄本외에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請約 및 引受를 證明하는 書面 및 各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에 대하여 納入이 있은 것을 證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258條第3項중 "商法 第529條의"를 "商法 第522條의2 및 第529條의"로 하고, 同條第4項중 "第231條,"를 削除한다.

第259條第3項 및 第260條第6項중 "第256條第3項 乃至 第5項"을 각각 "第256條第3項"으로 한다.

第259條第4項중 "그 選任이나 選定에 關한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를 "그 選任이나 選定에 관한 書類와 名義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이를 證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중 "商法 第470條·第471條 및 第477條의"를 "商法 第470條 및 第471條의"로 한다.

⑦公證人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2條중 "商法 第167條"를 "商法 第292條"로 한다.

⑧이 法 施行당시 第1項 내지 第7項의 法律외의 法律에서 종전의 商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4372호,1991.5.31>

이 法은 공포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4470호,1991.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 第4編의 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成立한 保險契約에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法 第5編의 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事故로 인하여 생긴 損害에 관한 債權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3條 (責任制限톤數의 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第751條의 適用에 관하여 國際航海에 종사하는 船舶으로서 船舶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으로부터 國際톤數證書 또는 國際톤數確認書를 아직 교부받지 못한 船舶에 대하여는 國際總톤數 대신에 總톤數를 適用한다.

第4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商法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⑦省略

⑧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0條第2項중 "株主總會의"를 "株主總會 또는 理事會의"로 한다.

第252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株式의 請約을 證明하는 書面

第252條의2 및 第253條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52條의2 (新株引受權附社債에 부여된 新株의 引受權의 行使로 인한 變更登記申請) 新株引受權附社債에 부여된 新株의 引受權의 行使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商法 第516條의8第1項의 請求書

2. 第252條第8號에 게기한 書面 또는 商法 第516條의2第2項第5號의 請求를 證明하는 書面

第253條의2 (名義改書代理人의 設置로 인한 變更登記申請) 名義改書代理人의 設置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名義改書代理人과의 契約을 證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254條의 題目 "(社債의 登記申請) "을 "(轉換社債등의 登記申請) "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社債의 登記는"을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登記는"으로 하며, 同條第2項第6號를 削除한다.

第25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55條의2 (職權에 의한 解散登記) ①商法 第52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의 登記는 登記所가 職權으로 하여야 한다.

②登記所는 第1項의 登記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뜻을 支店의 所在地의 登記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통지를 받은 支店所在地의 登記所는 遲滯없이 解散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商法 第520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淸算이 終結된 것으로 보는 會社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62條중 "第308條第2項,"을 "第308條第2項, 第380條,"로 한다.

②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의3, 第11條의6, 第11條의7 및 第11條의8을 각각 削除한다.

③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중 "計算書類를"을 "財務諸表등을"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商法 第449條第2項"을 "商法 第449條第3項"으로 한다.

④資産再評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중 "商法 第31條第2項과"를 "商法 第31條와"로 한다.

⑤會社整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2條중 "商法 第31條第2項과 第452條第2號"를 "商法 第31條第2號"로 한다.

第255條第2項중 "商法 第422條, 第424條"를 "商法 第422條, 第424條, 第424條의2"로 하고, 同條第3項중 "商法 第425條"를 "商法 第425條第1項"으로 한다.

第256條第4項 및 第5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257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15條 (監事의 職務와 權限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株式會社의 監事로서 이 法 施行후 最初로 到達하는 決算期에 관한 定期總會의 終結전에 在任하는 監事의 職務와 權限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6條 (會社와 理事間의 訴에 관한 會社代表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株式會社가 理事(淸算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理事가 그 會社에 대하여 提起한 訴에 있어서 會社를 代表할 者에 관하여는 이 法 施行후 最初로 到達하는 決算期에 관한 定期總會의 終結전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7條 (新株의 配定日에 관한 經過措置) 第418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新株의 發行決議가 있은 때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8條 (新株의 效力發生時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新株의 發行決議가 있은 때에 株主가 되는 時期에 관하여는 第423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9條 (資本의 減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資本의 減少의 決議가 있은 때에 端株의 처리에 관하여는 第44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20條 (配當金支給時期에 관한 經過措置) 第464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第449條第1項의 承認決議에 의하여 配當하기로 된 利益配當金에 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1條 (轉換社債發行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轉換社債의 發行決議가 있은 때에는 그 轉換社債의 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22條 (利益供與의 금지에 관한 經過措置) 第467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한 行爲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3條 (合併貸借對照表 公示에 관한 經過措置) 第522條의2의 改正規定(第60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同條第1項의 株主總會會日이 이 法 施行후 2週間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4條 (有限會社 資本總額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의 有限會社로서 이 法 施行당시 그 資本總額과 出資 1座의 金額이 第546條의 改正規定에 정한 金額에 미달한 會社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년이내에 資本總額을 1千萬원이상으로, 出資 1座의 金額을 5千원이상으로 增額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期間내에 資本總額을 增額하지 아니한 會社는 解散된 것으로 본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된 것으로 보는 會社중 淸算이 終結되지 아니한 會社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585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決議로 第1項의 節次를 밟아 會社를 계속할 수 있다.<신설 1991.5.31>

第25條 (관계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非訟事件節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6條중 "同法 第425條"를 "同法 第425條第1項 및 第516條의8第4項"으로 한다.

第147條중 "同法 第530條"를 "同法 第461條第2項 및 第530條第3項"으로 한다.

第249條에 第9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9의2. 名義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名義改書代理人과의 契約을 證明하는 書面

1991.5.31>

第5條 (株式의 金額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成立한 株式會社가 발행하는 株式의 金額에 관하여는 第329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로부터 3年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成立한 株式會社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年이내에 額面 5千원미만의 株式을 額面 5千원이상의 株式으로 하기 위하여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決議에 의하여 株式을 併合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440條 내지 第44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6條 (株券發行전의 株式讓渡에 관한 經過措置) 第335條第2項 但書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株券의 발행없이 이루어진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第7條 (株券交付에 의한 株式讓渡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의 株式의 移轉 또는 株券의 取得에 관하여는 이 法 施行후에도 종전의 第336條 및 第359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法 施行후의 株券의 占有에 관하여는 第336條第2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발행된 株券을 이 法 施行후에 取得한 者가 背書의 連續 또는 讓渡證書의 適否에 관한 調査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第359條의 改正規定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調査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惡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第8條 (名義改書代理人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 第11條의6의 規定에 의하여 둔 名義改書代理人은 이 法 第337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둔 것으로 본다.

②이 法에 의한 名義改書代理人의 資格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 (子會社에 의한 母會社株式의 取得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第342條의2의 規定에 의한 子會社가 同規定에 의한 母會社의 株式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子會社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年이내에 그 株式을 處分하여야 한다.

②第625條의2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株式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0條 (株券의 不所持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 第11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株券의 不發行에 관한 措置를 한 것은 이 法 第358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第11條 (株主名簿 閉鎖期間과 基準日에 관한 經過措置) 株主名簿의 閉鎖期間과 基準日에 관하여 이 法 施行日로부터 2週間내의 날을 그 期間 또는 날로 하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 (議決權의 不統一行使에 관한 經過措置) 第368條의2의 改正規定(第308條第2項, 第527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2週間내의 날을 會日로 하는 株主總會 또는 創立總會에 있어서의 議決權의 行使에 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3條 (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에 관한 經過措置) 第380條의 改正規定(第308條第2項, 第5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法 施行당시 法院에 係屬된 事件에 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이 法 施行전의 訴訟行爲의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14條 (理事와 監事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任중에 있는 株式會社의 理事와 監事의 任期에 관하여는 第383條第2項 및 第410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主로 한다.

第5條 삭제<1984.4.10>

第6條 (社債募集의 受託者等의 資格) 銀行·信託會社 또는 證券會社가 아니면 社債의 募集의 委任을 받거나 第483條의 事務承繼者가 되지 못한다.<개정 1984.4.10>

第7條 (無記名式債券所持人의 供託의 方法) 第491條第4項, 第492條第2項 또는 그 準用規定에 依하여야 할 供託은 供託公務員에게 이를 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大法院長이 定하는 銀行 또는 信託會社에 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第8條 (社債權者集會에 關한 公告의 方法) 社債權者集會의 召集, 償還額의 支給 또는 償還에 關한 社債權者集會의 決議를 執行함에 있어야할 公告는 社債를 發行한 會社의 定款에 定하는 公告方法에 따라야 한다.

第9條 (委任規定) 第742條의 屬具目錄의 書式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10條 (同前) 第839條第2項 但書의 沿岸航行의 範圍는 閣令으로 定한다.

第11條 (同前) 本法施行에 關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第12條 (施行期日과 舊法의 效力) ①本法은 1963年 1月 1日로부터 施行한다.

②朝鮮民事令 第1條에 依하여 依用된 商法, 有限會社法, 商法施行法과 商法中改正法律施行法은 本法施行時까지 그 效力이있다.

附則 <제1212호,1962.12.12>

本法은 196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3724호,1984.4.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의 原則) 이 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전에 생긴 事項에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商業帳簿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商人인 者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到達하는 第30條第2項의 改正規定의 一定時期(會社에 있어서는 決算期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이전에 作成하여야 할 商業帳簿 및 그 附屬明細書와 그 一定時期 이전에 하는 計算 및 그 一定時期에 관한 計算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株式會社의 最低資本額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成立한 株式會社로서 이 法 施行당시 資本金額이 5千萬원미만인 會社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年이내에 5千萬원이상으로 資本을 增加하거나 有限會社로 組織을 變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期間내에 同項의 節次를 밟지 아니한 會社는 解散된 것으로 본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된 것으로 보는 會社중 淸算이 終結되지 아니한 會社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決議로 第1項의 節次를 밟아 會社를 계속할 수 있다.<신설

第868條 (同一順位의 優先特權이 競合한 境遇) 第865條 내지 第867條의 規定에 依한 同一順位의 優先特權이 競合하는 때에는 各債權額의 比率에 따라 辨濟한다.<改正 1991.12.31>

第869條 (優先特權의 追及權) 船舶債權者의 優先特權은 그 船舶所有權의 移轉으로 因하여 影響을 받지 아니한다.

第870條 (優先特權의 消滅) ①船舶債權者의 優先特權은 그 債權이 생긴 날로부터 1年내에 實行하지 아니하면 消滅한다.<改正 1991.12.31>

②削除 <1991.12.31>

第871條 (船舶抵當權) ①登記한 船舶은 抵當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②船舶의 抵當權은 그 屬具에 미친다.

③船舶의 抵當權에는 民法의 抵當權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872條 (船舶抵當權等과 優先特權의 競合) 船舶債權者의 優先特權은 質權과 抵當權에 優先한다.

第873條 (登記船舶의 入質不許) 登記한 船舶은 質權의 目的으로 하지 못한다.

第874條 (建造中의 船舶에의 準用) 이 章의 規定은 建造中의 船舶에 準用한다.<改正 1991.12.31>

附則 <제1000호,1962.1.20>

第1條 (委任規定) 小商人의 範圍는 閣令으로 定한다.

第2條 (同前) 第125條의 湖川, 港灣의 範圍는 閣令으로 定한다.

第3條 (商業登記公告의 猶豫) ①第36條의 公告에 關한 規定은 相當한 期間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 期間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그 期間中에는 登記한 때에 公告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大韓民國國民만으로 組織할 會社의 無記名式株券發行의 禁止)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大韓民國國民만으로 組織할 株式會社와 大韓民國國民만으로 組織할 것을 條件으로하여 特別한 權利를 가진 株式會社는 無記名式의 株券을 發行하지 못한다. 이에 違反한 境遇에는 그 株券은 無效로 하고 最後의 記名株主를 株

員이나 旅客의 生命, 身體에 대한 損害의 賠償債權

5. 削除 <1991.12.31>

6. 削除 <1991.12.31>

②第1項의 優先特權을 가진 船舶債權者는 이 法 其他의 法律의 規定에 따라 前項의 財産에 對하여 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이 境遇에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限 民法의 抵當權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91.12.31>

第**862**條 (船舶, 運賃에 附隨한 債權) 第861條의 規定에 依한 船舶과 運賃에 附隨한 債權은 다음과 같다.<改正 1991.12.31>

1. 船舶 또는 運賃의 損失로 因하여 船舶所有者에게 支給할 損害賠償
2. 共同海損으로 因한 船舶 또는 運賃의 損失에 對하여 船舶所有者에게 支給할 償金
3. 海洋事故 救助로 因하여 船舶所有者에게 支給할 報酬

第**863**條 (運賃에 對한 優先特權) 運賃에 對한 優先特權은 支給을 받지 아니한 運賃, 支給을 받은 運賃으로 船舶所有者나 그 代理人이 所持한 金額에 限하여 이를 行使할 수 있다.

第**864**條 (保險金等의 除外) 保險契約에 依하여 船舶所有者에게 支給할 保險金과 其他의 奬勵金이나 補助金에 對하여는 第862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865**條 (船舶使用人의 雇傭契約으로 因한 債權) 第861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한 債權은 雇傭契約存續中의 모든 航海로 因한 運賃의 全部에 對하여 優先特權이 있다.

第**866**條 (優先特權의 順位) ①同一航海로 因한 債權의 優先特權이 競合하는 때에는 그 優先의 順位는 第861條第1項各號의 順序에 依한다.

②第861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債權의 優先特權이 競合하는 때에는 後에 생긴 債權이 前에 생긴 債權에 優先한다 同一한 事故로 因한 債權은 同時에 생긴 것으로 본다.<改正 1991.12.31>

第**867**條 (同前) ①數回의 航海에 關한 債權의 優先特權이 競合하는 때에는 後의 航海에 關한 債權이 前의 航海에 關한 債權에 優先한다.

②第865條의 規定에 依한 優先特權은 그 最後의 航海에 關한 다른 債權과 同一한 順位로 한다.

第857條 (救助料請求權없는 者) 다음의 者는 救助의 報酬를 請求하지 못한다.<개정 1999.2.5>

1. 救助받은 船舶에 從事하는 者
2.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하여 海洋事故를 惹起한 者
3. 正當한 拒否에 不拘하고 救助를 强行하는 者
4. 救助된 物件을 隱匿하거나 正當한 理由없이 處分한 者

第858條 (救助者의 優先特權) ①救助에 從事한 者의 報酬債權은 救助된 積荷에 對하여 優先特權이 있다. 그러나, 債務者가 그 積荷를 第三取得者에게 引渡한 後에는 그 積荷에 對하여 이 權利를 行使하지 못한다.

②第1項의 優先特權에는 船舶債權者의 優先特權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91.12.31>

第859條 (救助料支給에 關한 船長의 權限) ①船長은 報酬를 支給할 債務者에 갈음하여 그 支給에 關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다.

②船長은 그 報酬에 關한 訴訟의 當事者가 될 수 있고 그 確定判決은 救助의 報酬額의 債務者에 對하여도 效力이 있다.<改正 1962.12.12>

第860條 (救助料請求權의 消滅) 救助에 대한 報酬의 請求權은 救助가 완료한 날부터 2年내에 裁判上 請求가 없으면 消滅한다. 그러나, 第811條 但書의 規定은 이 경우에 準用한다.

[全文改正 1991.12.31]

第8章 船舶債權

第861條 (船舶優先特權있는 債權) ①다음의 債權을 가진 者는 船舶, 그 屬具, 그 債權이 생긴 航海의 運賃, 그 船舶과 運賃에 附隨한 債權에 對하여 優先特權이 있다.<改正 1991.12.31>

1. 債權者의 共同利益을 爲한 訴訟費用, 船舶과 屬具의 競賣에 關한 費用, 航海에 關하여 船舶에 課한 諸稅金, 導船料, 曳船料, 最後入港後의 船舶과 그 屬具의 保存費와 檢査費
2. 船員 其他의 船舶使用人의 雇傭契約으로 因한 債權
3. 船舶의 救助에 對한 報酬와 共同海損의 分擔에 對한 債權
4. 船舶의 충돌로 인한 損害 기타의 航海事故로 인한 航海施設, 港灣施設 및 航路에 대한 損害와 船

航海船과 內水抗行船間의 救助도 같다.

第850條 (救助料의 決定) 救助의 報酬에 關한 約定이 없는 境遇에 그 額에 對하여 當事者間에 合意가 成立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危難의 程度, 救助의 勞力, 費用과 救助의 效果, 環境損害防止를 위한 노력 其他의 諸般事情을 參酌하여 그 額을 定한다.<改正 1991.12.31>

第851條 (約定救助料의 變更請求) 海洋事故당시에 救助의 報酬額에 關한 約定을 한 境遇에도 그 額이 顯著하게 不當한 때에는 法院은 第850條의 事情을 參酌하여 그 額을 增減할 수 있다.<改正 1991.12.31, 1999.2.5>

第852條 (救助料의 限度) ①救助의 報酬額은 다른 約定이 없으면 救助된 目的物의 價額을 超過하지 못한다.

②先順位의 優先特權이 있을 때에는 救助의 報酬額은 그 優先特權者의 債權額을 控除한 殘額을 超過하지 못한다.<改正 1962.12.12>

第853條 (共同救助者間의 救助料分配) ①數人이 共同으로 救助에 從事한 境遇에 그 報酬額分配의 比率에 關하여는 第85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人命의 救助에 從事한 者도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救助의 報酬額의 分配를 받을 수 있다.<改正 1991.12.31>

第854條 (1船舶內部의 救助料分配) ①船舶이 救助에 從事하여 그 報酬를 받은 境遇에는 먼저 船舶의 損害額과 救助에 要한 費用을 船舶所有者에게 支給하고 殘額을 折半하여 船長과 海員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海員에게 支給할 報酬額의 分配는 船長이 各海員의 勞力, 그 效果와 事情을 參酌하여 그 航海의 終了前에 分配案을 作成하여 海員에게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第855條 (曳船의 救助의 境遇) 曳船의 本船 또는 그 積荷에 對한 救助에 關하여는 曳船契約의 履行으로 볼 수 없는 特殊한 勞力을 提供한 境遇가 아니면 救助의 報酬를 請求하지 못한다.

第856條 (同一所有者에 屬한 船舶間의 報酬) 同一所有者에 屬한 船舶相互間에 있어서도 救助에 從事한 者는 相當한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第6章 船舶衝突

第843條 (船舶衝突에의 適用法規) 航海船相互間 또는 航海船과 內水抗行船間의 衝突이 있은 境遇에 船舶 또는 船舶內에 있는 物件이나 사람에 關하여 생긴 損害의 賠償에 對하여는 어떠한 水面에서 衝突한 때라도 이 章의 規定을 適用한다.<改正 1991.12.31>

第844條 (不可抗力으로 因한 衝突) 船舶의 衝突이 不可抗力으로 因하여 發生하거나 衝突의 原因이 明白하지 아니한 때에는 被害者는 衝突로 因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지 못한다.

第845條 (一方의 過失로 因한 衝突) 船舶의 衝突이 一方의 船員의 過失로 因하여 發生한 때에는 그 一方의 船舶所有者는 被害者에 對하여 衝突로 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846條 (雙方의 過失로 因한 衝突) ①船舶의 衝突이 雙方의 船員의 過失로 因하여 發生한 때에는 雙方의 過失의 輕重에 따라 各船舶所有者가 損害賠償의 責任을 分擔한다. 그 過失의 輕重을 判定할 수 없는 때에는 損害賠償의 責任을 均分하여 負擔한다.

②第1項의 境遇에 第三者의 死傷에 對한 損害賠償은 雙方의 船舶所有者가 連帶하여 그 責任을 진다.<改正 1991.12.31>

第847條 (導船士의 過失로 因한 衝突) 船舶의 衝突이 導船士의 過失로 因하여 發生한 境遇에도 船舶所有者는 第845條와 第846條의 規定에 依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改正 1991.12.31>

第848條 (船舶衝突債權의 消滅) 船舶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年내에 裁判上 請求가 없으면 消滅한다. 그러나, 第811條 但書의 規定은 이 경우에 準用한다.

[全文改正 1991.12.31]

第7章 海洋事故 救助<개정 1999.2.5>

第849條 (海洋事故 救助의 要件<개정 1999.2.5>) 航海船 또는 그 積荷 其他의 物件이 어떠한 水面에서 危難에 遭遇한 境遇에도 義務없이 이를 救助한 者는 結果에 對하여 相當한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第837條 (責任있는 者에 對한 求償權) 船舶과 積荷의 共同危險이 船舶 또는 積荷의 瑕疵나 其他 過失있는 行爲로 因하여 생긴 境遇에는 共同海損의 分擔者는 그 責任이 있는 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第838條 (共同海損分擔除外) 船舶에 備置한 武器, 船員의 給料, 船員과 旅客의 糧食과 衣類는 保存된 境遇에도 그 價額을 共同海損의 分擔에 算入하지 아니하고 損失된 境遇에는 그 價額을 共同海損의 額에 算入한다.

第839條 (共同海損分擔請求에서의 除外) ①屬具目錄에 記載하지 아니한 屬具, 船荷證券 其他 積荷의 價格을 定할 수 있는 書類없이 船積한 荷物 또는 種類와 價額을 明示하지 아니한 貨幣나 有價證券 其他의 高價物은 保存된 境遇에는 그 價額을 共同海損의 分擔에 算入하고 損失된 境遇에는 그 價額을 共同海損의 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②甲板에 積載한 荷物에 對하여도 第1項과 같다. 그러나 沿岸航行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31>

第840條 (積荷價格의 不實記載와 共同海損) ①船荷證券 其他 積荷의 價格을 定할 수 있는 書類에 積荷의 實價보다 高額을 記載한 境遇에 그 荷物이 保存된 때에는 그 記載額에 依하여 共同海損의 分擔額을 定하고 積荷의 實價보다 低額을 記載한 境遇에 그 荷物이 損失된 때에는 그 記載額을 共同海損의 額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積荷의 價格에 影響을 미칠 事項에 關하여 虛僞의 記載를 한 境遇에 準用한다.<改正 1991.12.31>

第841條 (共同海損인 損害의 回復) 船舶所有者, 傭船者, 送荷人 其他의 利害關係人이 共同海損의 額을 分擔한 後 船舶, 屬具 또는 積荷의 全部나 一部가 所有者에게 復歸된 때에는 그 所有者는 共同海損의 償金으로 받은 金額에서 救助料와 一部損失로 因한 損害額을 控除하고 그 殘額을 返還하여야 한다.

第842條 (共同海損債權의 消滅) 共同海損으로 인하여 생긴 債權 및 第837條에 의한 求償債權은 그 計算이 종료한 날부터 1年내에 裁判上 請求가 없으면 消滅한다. 그러나, 第811條 但書의 規定은 이 경우에 準用한다.

[全文改正 1991.12.31]

第830條 (準用規定) ①第148條, 第787條, 第790條第1項과 第806條의 規定은 海上旅客運送에 準用한다.

②第134條, 第136條, 第149條第2項, 第787條 내지 第791條의2, 第800條, 第800條의2, 第806條, 第808條와 第811條의 規定은 運送人이 委託을 받은 旅客의 手荷物의 運送에 準用한다.

③第150條, 第789條의2第1項과 第4項, 第789條의3, 第790條第1項, 第806條와 第811條의 規定은 運送人이 委託을 받지 아니한 旅客의 手荷物에 準用한다.

[全文改正 1991.12.31]

第831條 (同前) 旅客運送을 하기 위하여 傭船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運送人과 傭船者의 관계에는 第781條, 第782條第1項, 第783條, 第784條, 第786條, 第787條, 第790條第1項, 第791條, 第792條 내지 第797條, 第802條, 第807條, 第808條와 第81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1991.12.31]

第5章 共同海損

第832條 (共同海損의 要件) 船舶과 積荷의 共同危險을 免하기 爲한 船長의 船舶 또는 積荷에 對한 處分으로 因하여 생긴 損害 또는 費用은 共同海損으로 한다.

第833條 (共同海損의 分擔) 共同海損은 그 危險을 免한 船舶 또는 積荷의 價額과 運賃의 半額과 共同海損의 額과의 比率에 따라 各 利害關係人이 이를 分擔한다.

第834條 (共同海損分擔額의 算定) 共同海損의 分擔額을 定함에 있어서는 船舶의 價額은 到達의 때와 곳의 價額으로 하고 積荷의 價額은 揚陸의 때와 곳의 價額으로 한다. 그러나, 積荷에 關하여는 그 價額中에서 滅失로 因하여 支給을 免하게 된 運賃 其他의 費用을 控除하여야 한다.

第835條 (共同海損分擔者의 有限責任) 第833條와 第834條의 規定에 依하여 共同海損의 分擔責任이 있는 者는 船舶이 到達하거나 積荷를 引渡한 때에 現存하는 價額의 限度에서 責任을 진다.<改正 1991.12.31>

第836條 (共同海損의 損害額算定) 共同海損의 額을 定함에 있어서는 船舶의 價額은 到達의 때와 곳의 價額으로 하고 積荷의 價額은 揚陸의 때와 곳의 價額으로 한다. 그러나 積荷에 關하여는 그 損失로 因하여 支給을 免하게 된 모든 費用을 控除하여야 한다.

第822條 (食事提供義務) 旅客의 航海中의 食事는 다른 約定이 없으면 運送人의 負擔으로 한다.<改正 1991.12.31>

第823條 (船舶修繕中의 居處, 食事提供義務) ①航海의 中途에서 船舶을 修繕하는 境遇에는 運送人은 그 修繕中 旅客에게 相當한 居處와 食事를 提供하여야 한다. 그러나 旅客의 權利를 害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上陸港까지의 運送의 便宜를 提供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31>

②第1項의 境遇에 旅客은 航海의 比率에 따른 運賃을 支給하고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改正 1991.12.31>

第824條 (手荷物無賃運送義務) 旅客이 契約에 依하여 船內에서 携帶할 수 있는 手貨物에 對하여는 運送人은 다른 約定이 없으면 따로 運賃을 請求하지 못한다.<改正 1991.12.31>

第825條 (乘船遲滯와 船長의 發航權) ①旅客이 乘船時期까지 乘船하지 아니한 때에는 船長은 卽時發航할 수 있다. 航海中途의 碇泊港에서도 이와 같다.<改正 1991.12.31>

②第1項의 境遇에는 旅客은 運賃의 全額을 支給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第826條 (旅客의 契約解除의 運賃) 旅客이 發航前에 契約을 解除하는 境遇에는 運賃의 半額을 支給하고 發航後에 契約을 解除하는 境遇에는 運賃의 全額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827條 (法定事由에 依한 解除) 旅客이 發航前에 死亡, 疾病 其他의 不可抗力으로 因하여 航海할 수 없게 된 때에는 運送人은 運賃의 10分의 3을 請求할 수 있고 發航後에 그 事由가 생긴 때에는 運送人의 選擇으로 運賃의 10分의 3 또는 運送의 比率에 따른 運賃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1.12.31>

第828條 (死亡한 旅客의 手荷物處分義務) 旅客이 死亡한 때에는 船長은 그 相續人에게 가장 利益이 되는 方法으로 死亡者가 携帶한 手荷物을 處分하여야 한다.

第829條 (法定終了事由) 運送契約은 第807條第1項第1號 乃至 第3號의 事由로 因하여 終了한다. 그 事由가 航海의 中途에서 생긴 때에는 旅客은 運送의 比率에 따른 運賃을 支給하여야 한다.

을 善意로 取得한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本條新設 1991.12.31]

第815條 (謄本의 交付) 船荷證券의 交付를 받은 傭船者 또는 送荷人은 發行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船荷證券의 謄本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 交付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第816條 (數通의 船荷證券과 揚陸港에 있어서의 運送物의 引渡) ①揚陸港에서 數通의 船荷證券中 1通을 所持한 者가 運送物의 引渡를 請求하는 境遇에도 船長은 그 引渡를 拒否하지 못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數通의 船荷證券中 1通의 所持人이 運送物의 引渡를 받은 때에는 다른 船荷證券은 그 效力을 잃는다.<改正 1991.12.31>

第817條 (數通의 船荷證券과 揚陸港外에서의 運送物의 引渡) 揚陸港外에서는 船長은 船荷證券의 各通의 返還을 받지 아니하면 運送物을 引渡하지 못한다.

第818條 (2人以上 所持人에 依한 運送物引渡請求와 供託) ①2人以上의 船荷證券所持人이 運送物의 引渡를 請求한 때에는 船長은 遲滯없이 運送物을 供託하고 各請求者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船長이 第81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運送物의 一部를 引渡한 後 다른 所持人이 運送物의 引渡를 請求한 境遇에도 그 引渡하지 아니한 運送物에 對하여는 第1項과 같다.<改正 1991.12.31>

第819條 (數人의 船荷證券所持人의 順位) ①第818條의 規定에 依하여 供託한 運送物에 對하여는 數人의 船荷證券所持人에게 共通되는 前者로부터 먼저 交付를 받은 證券所持人의 權利가 다른 所持人의 權利에 優先한다.<改正 1991.12.31>

②隔地者에 對하여 發送한 船荷證券은 그 發送한 때를 交付 받은 때로 본다.

第820條 (準用規定) 第129條, 第130條, 第132條와 第133條의 規定은 船荷證券에 準用한다.<改正 1991.12.31>

第2節 旅客運送

第821條 (記名式의 船票) 記名式의 船票는 이를 他人에게 讓渡하지 못한다.

第2款 船荷證券

第813條 (船荷證券의 發行) ①運送人은 運送物을 受領한 後 傭船者 또는 送荷人의 請求에 依하여 1通 또는 數通의 船荷證券을 交付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②運送人은 運送物을 船積한 後 傭船者 또는 送荷人의 請求에 依하여 1通 또는 數通의 "船積" 船荷證券을 交付하거나 第1項의 船荷證券에 船積의 뜻을 表示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③運送人은 船長 또는 其他의 代理人에게 船荷證券의 交付 또는 第2項의 表示를 委任할 수 있다.<改正 1991.12.31>

第814條 (船荷證券의 기재사항) ①船荷證券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運送人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1. 船舶의 名稱, 國籍과 톤數
2. 送荷人이 書面으로 통지한 運送物의 종류, 重量 또는 容積, 包裝의 種別, 個數와 記號
3. 運送物의 外觀狀態
4. 傭船者 또는 送荷人의 姓名 또는 商號
5. 受荷人 또는 通知受領人의 姓名 또는 商號
6. 船積港
7. 揚陸港
8. 運賃
9. 發行地와 그 發行年月日
10. 數通의 船荷證券을 발행한 때에는 그 數

②第1項第2號의 기재사항중 運送物의 重量, 容積, 個數 또는 記號가 運送人이 실제로 受領한 運送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送荷人은 第1項第2號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運送人에게 擔保한 것으로 본다.

④運送人이 船荷證券에 기재된 通知受領人에게 運送物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傭船者 또는 送荷人 및 船荷證券所持人 기타 受荷人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1991.12.31]

第814條의2 (船荷證券 기재의 效力) 第814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서 船荷證券이 발행된 경우에는 運送人이 그 證券에 기재된 대로 運送物을 受領 또는 船積한 것으로 推定한다. 그러나 運送人은 船荷證券

第812條의3 (定期傭船者의 船長指揮權) ①定期傭船者는 약정한 범위안의 船舶의 사용을 위하여 船長을 指揮할 權利가 있다.

②船長, 海員 기타의 船舶使用人이 定期傭船者의 정당한 指示에 위반하여 定期傭船者에게 損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船舶所有者가 이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本條新設 1991.12.31]

第812條의4 (船舶所有者의 運送物留置權 및 競賣權) ①第800條第2項과 第804條의 規定은 定期傭船者가 船舶所有者에게 傭船料, 替當金 기타 이와 유사한 定期傭船契約에 의한 債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準用한다. 그러나, 船舶所有者는 定期傭船者가 발행한 船荷證券을 善意로 取得한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所有者의 運送物에 대한 權利는 定期傭船者가 運送物에 관하여 약정한 傭船料 또는 運賃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本條新設 1991.12.31]

第812條의5 (傭船料의 延滯와 契約解止등) ①定期傭船者가 傭船料를 約定期日에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船舶所有者는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다.

②定期傭船者가 第三者와 運送契約을 체결하여 運送物을 船積한 후 船舶의 航海중에 船舶所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한 때에는 船舶所有者는 積荷利害關係人에 대하여 定期傭船者와 동일한 運送義務가 있다.

③船舶所有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의 解除 또는 解止 및 運送繼續의 뜻을 積荷利害關係人에게 書面에 의한 통지를 한 때에는 船舶所有者의 定期傭船者에 대한 傭船料, 替當金 기타 이와 유사한 定期傭船契約上의 債權을 擔保하기 위하여 定期傭船者가 積荷利害關係人에 대하여 가지는 傭船料 또는 運賃의 債權을 目的으로 質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船舶所有者 또는 積荷利害關係人의 定期傭船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1991.12.31]

第812條의6 (定期傭船契約上의 債權의 消滅) 定期傭船契約에 관하여 발생한 當事者間의 債權은 船舶이 船舶所有者에게 返還된 날부터 1年내에 裁判上 請求가 없으면 消滅한다. 그러나, 第811條 但書의 規定은 이 경우에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1.12.31]

第808條 (法定事由로 因한 解除) ①航海 또는 運送이 法令에 違反하게 되거나 其他 不可抗力으로 因하여 契約의 目的을 達할 수 없게 된 때에는 各當事者는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事由가 航海途中에 생긴 境遇에 契約을 解止한 때에는 傭船者 또는 送荷人은 運送의 比率에 따라 運賃을 支給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第809條 (運送物의 一部에 關한 不可抗力) ①第807條第1項第4號와 第808條第1項의 事由가 運送物의 一部에 對하여 생긴 때에는 傭船者 또는 送荷人은 運送人의 責任이 加重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다른 運送物을 船積을 할 수 있다.<改正 1991.12.31>

②傭船者 또는 送荷人이 第1項의 權利를 行使하고자 하는 때에는 遲滯없이 運送物의 揚陸 또는 船積을 하여야 한다. 그 揚陸 또는 船積을 懈怠한 때에는 運賃의 全額을 支給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第810條 (船長의 積荷處分과 運賃) 運送人은 다음의 境遇에는 運賃의 全額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1.12.31>

1. 船長이 第77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積荷를 處分하였을 때
2. 船長이 第832條의 規定에 依하여 積荷를 處分하였을 때

第811條 (運送人의 債權·債務의 消滅) 運送人의 傭船者, 送荷人 또는 受荷人에 대한 債權 및 債務는 그 請求原因의 如何에 불구하고 運送人이 受荷人에게 運送物을 引渡한 날 또는 引渡할 날부터 1年내에 裁判上 請求가 없으면 消滅한다. 그러나, 이 期間은 當事者의 合意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1.12.31]

第812條 (準用規定) 第134條, 第136條 乃至 第140條의 規定은 運送人에 準用한다.<改正 1962.12.12, 1991.12.31>

第812條의2 (定期傭船契約의 意義) 定期傭船契約은 船舶所有者 또는 賃借人이 傭船者에게 船員이 乘務하고 航海裝備를 갖춘 船舶을 일정한 期間동안 航海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傭船者가 이에 대하여 期間으로 정한 傭船料를 支給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本條新設 1991.12.31]

第803條 (運送物의 供託등) ①受荷人이 運送物의 受領을 懈怠한 때에는 船長은 이를 供託하거나 稅關 기타 法令이 정한 官廳의 許可를 받은 곳에 引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受荷人에게 그 통지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受荷人을 確知할 수 없거나 受荷人이 運送物의 受領을 거부한 때에는 船長은 이를 供託하거나 稅關 기타 官廳의 許可를 받은 곳에 引渡하고 지체없이 傭船者 또는 送荷人 및 알고 있는 受荷人에게 그 통지를 發送하여야 한다.

③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運送物을 供託하거나 稅關 기타 官廳의 許可를 받은 곳에 引渡한 때에는 船荷證券所持人 기타 受荷人에게 運送物을 引渡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1991.12.31]

第804條 (船舶所有者의 運送物競賣權) ①運送人은 第80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金額의 支給을 받기 爲하여 法院의 許可를 얻어 運送物을 競賣하여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改正 1991.12.31>

②船長이 受荷人에게 運送物을 引渡한 後에도 運送人은 그 運送物에 對하여 第1項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그러나, 引渡한 날로부터 30日을 經過하거나 第三者가 그 運送物에 占有를 取得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31>

第805條 削除 <1991.12.31>

第806條 (再運送契約과 船舶所有者의 責任) 傭船者가 자기의 名義로 第3者와 運送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契約의 履行이 船長의 職務에 속한 범위안에서 船舶所有者도 그 第三者에 대하여 第787條와 第788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을 진다.

[全文改正 1991.12.31]

第807條 (運送契約의 終了事由) ①運送契約은 다음의 事由로 因하여 終了한다.

1. 船舶이 沈沒 또는 滅失한 때
2. 船舶이 修繕할 수 없게 된 때
3. 船舶이 捕獲된 때
4. 運送物이 不可抗力으로 因하여 滅失된 때

②第1項第1號 乃至 第3號의 事由가 航海途中에 생긴 때에는 傭船者 또는 送荷人은 運送의 比率에 따라 現存하는 運送物의 價額의 限度에서 運賃을 支給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第799條 (個品運送과 運送物의 受領) 個個의 물건의 運送을 契約의 目的으로 한 경우에 運送物의 到着通知를 받은 受荷人은 當事者間의 合意 또는 揚陸港의 慣習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없이 運送物을 受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1.12.31]

第800條 (受荷人의 義務, 船長의 留置權) ①受荷人이 運送物을 受領하는 때에는 運送契約 또는 船荷證券의 趣旨에 따라 運賃, 附隨費用, 替當金, 碇泊料, 運送物의 價額에 따른 共同海損 또는 海洋事故 救助로 因한 負擔額을 支給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船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金額의 支給과 相換하지 아니하면 運送物을 引渡할 義務가 없다.<改正 1991.12.31>

第800條의2 (運送物의 일부 滅失, 훼손에 관한 통지) ①受荷人이 運送物의 일부 滅失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受領후 지체없이 그 概要에 관하여 運送人에게 書面에 의한 통지를 發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滅失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受領한 날부터 3日내에 그 통지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運送物이 滅失 또는 훼손없이 受荷人에게 引渡된 것으로 推定한다.

③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運送人 또는 그 使用人이 惡意인 경우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運送物에 滅失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疑心이 있는 경우에는 運送人과 受荷人은 서로 運送物의 檢査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반하여 受荷人에게 不利한 當事者間의 特約은 效力이 없다.

[本條新設 1991.12.31]

第801條 (運賃) 運送物의 重量 또는 容積으로 運賃을 定한 때에는 運送物을 引渡하는 때의 重量 또는 容積에 依하여 그額을 定한다.

第802條 (同前) ①期間으로 運賃을 定한 때에는 運送物의 船積을 開始한 날로부터 그 揚陸을 終了한 날까지의 期間에 依하여 그 額을 定한다.

②第1項의 期間에는 不可抗力으로 因하여 船舶이 船積港이나 航海途中에서 碇泊한 期間 또는 航海途中에서 船舶을 修繕한 期間을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782條第2項 또는 第798條第2項의 境遇에 船積期間 또는 揚陸期間이 經過한 後 運送物을 船積 또는 揚陸한 日數도 이와 같다.<改正 1991.12.31>

解止하는 때에도 第2項과 같다.<改正 1991.12.31>

第793條 (一部傭船과 發航前의 契約解除等) ①一部傭船者나 送荷人은 다른 傭船者와 送荷人 全員과 共同으로 하는 境遇에 限하여 第792條의 解除 또는 解止를 할 수 있다.<改正 1991.12.31>

②第1項의 境遇外에는 一部傭船者나 送荷人이 發港前에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한 때에도 運賃의 全額을 支給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③發港前이라도 一部傭船者나 送荷人이 運送物의 全部 또는 一部를 船積한 境遇에는 다른 傭船者와 送荷人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하지 못한다.

第794條 (附隨費用, 替當金等의 支給義務) ①傭船者나 送荷人이 第792條와 第793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를 한 때에도 附隨費用과 替當金을 支給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改正 1991.12.31>

②第792條第2項과 第3項의 境遇에는 傭船者나 送荷人은 第1項에 게기한 것 외에도 運送物의 價額에 따라 共同海損 또는 海洋事故 救助로 因하여 負擔할 金額을 支給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1999.2.5>

第795條 (船積, 揚陸費用의 負擔) 第793條와 第794條의 境遇에 運送物의 全部 또는 一部를 船積한 때에는 그 船積과 揚陸의 費用은 傭船者 또는 送荷人이 負擔한다.<改正 1991.12.31>

第796條 (船積期間內의 不船積의 效果) 傭船者가 船積期間內에 運送物의 船積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한 것으로 본다.<改正 1991.12.31>

第797條 (發航後의 契約解止) 發航後에는 傭船者나 送荷人은 運賃의 全額, 替當金, 碇泊料와 共同海損 또는 海洋事故 救助의 負擔額을 支給하고 그 揚陸하기 爲하여 생긴 損害를 賠償하거나 이에 對한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지 아니하면 契約을 解止하지 못한다.<개정 1999.2.5>

第798條 (傭船의 境遇와 運送物의 揚陸) ①傭船契約을 締結한 境遇에 運送物을 揚陸함에 必要한 準備가 完了된 때에는 船長은 遲滯없이 受荷人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第782條第2項의 規定은 運送物의 揚陸期間의 計算에 準用한다.<改正 1991.12.31>

③第2項의 期間을 經過한 後 運送物을 揚陸한 때에는 運送人은 相當한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1.12.31>

[本條新設 1991.12.31]

第790條 (運送人의 責任輕減禁止) ①第787條 내지 第789條의3의 規定에 반하여 運送人의 義務 또는 責任을 輕減 또는 免除하는 當事者間의 特約은 效力이 없다. 運送物에 관한 保險의 이익을 運送人에게 讓渡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은 산動物의 運送 및 船荷證券 기타 運送契約을 증명하는 文書의 表面에 甲板積으로 運送할 취지를 기재하여 甲板積으로 행하는 運送에 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規定은 第787條의 規定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傭船契約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傭船契約에 따라 船荷證券이 발행된 경우에 傭船者 이외의 船荷證券所持人에 대한 運送人의 義務 또는 責任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1991.12.31]

第791條 (違法船積物의 處分) ①法令 또는 契約에 違反하여 船積한 運送物은 船長은 언제든지 이를 揚陸할 수 있고 그 運送物이 船舶 또는 다른 運送物에 危害를 미칠 念慮가 있는 때에는 이를 抛棄할 수 있다.

②船長이 第1項의 物件을 運送하는 때에는 船積한 때와 곳에서의 同種運送物의 最高運賃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1.12.31>

③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運送人 其他의 利害關係人의 損害賠償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改正 1991.12.31>

第791條의2 (危險物의 處分) ①引火性, 爆發性, 기타의 危險性이 있는 運送物은 運送人이 그 性質을 알고 船積한 경우에도 그 運送物이 船舶이나 다른 運送物에 危害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船長은 언제든지 이를 揚陸, 破壞 또는 無害措置할 수 있다.

②運送人은 第1項의 處分에 의하여 그 運送物에 발생한 損害에 대하여는 共同海損分擔責任을 제외하고 그 賠償責任을 免한다.

[本條新設 1991.12.31]

第792條 (全部傭船의 發航前의 契約解除等) ①發航前에는 全部傭船者는 運賃의 半額을 支給하고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②往復航海의 傭船契約인 境遇에 全部傭船者가 그 回航前에 契約을 解止하는 때에는 運賃의 3分의 2를 支給하여야 한다.

③船舶이 他港에서 船積港에 航行하여야 할 境遇에 全部傭船者가 船積港에서 發港하기 前에 契約을

11. 船舶의 숨은 瑕疵

第789條의2 (責任의 限度) ①第787條 내지 第789條의 規定에 의한 運送人의 損害賠償의 責任은 당해 運送物의 每包裝當 또는 船積單位當 500計算單位의 金額을 限度로 이를 制限할 수 있다. 그러나, 運送物에 관한 損害가 運送人 자신의 故意 또는 그 損害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認識하면서 無謀하게 한 作爲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適用에 있어서 運送物의 包裝 또는 船積單位의 數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運送容器가 運送物을 統合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運送容器에 內藏된 運送物의 包裝 또는 船積單位의 數를 船荷證券 기타 運送契約을 증명하는 文書에 기재한 때에는 그 各 包裝 또는 船積單位를 하나의 包裝 또는 船積單位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運送容器내의 運送物 전부를 하나의 包裝 또는 船積單位로 본다.

2. 運送人이 아닌 者가 供給한 運送容器 自體가 滅失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容器를 別個의 包裝 또는 船積單位로 본다.

③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送荷人이 運送人에게 運送物을 引渡할 때에 그 종류와 價額을 告知하고 船荷證券 기타 運送契約을 증명하는 文書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送荷人이 運送物의 종류 또는 價額을 故意로 현저하게 不實의 告知를 한 때에는 運送人은 자기 또는 그 使用人이 惡意인 경우를 제외하고 運送物의 損害에 대하여 責任을 免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第746條 내지 第752條의 規定의 適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第1項의 計算單位는 第747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計算單位를 이른다.

[本條新設 1991.12.31]

第789條의3 (非契約的 請求에 대한 適用) ①이 章의 運送人의 責任에 관한 規定은 運送人의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에도 이를 適用한다.

②運送物에 관한 損害賠償請求가 運送人의 使用人 또는 代理人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損害가 그 使用人 또는 代理人의 職務執行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使用人 또는 代理人은 運送人이 主張할 수 있는 抗辯과 責任制限을 援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損害가 그 使用人 또는 代理人의 故意 또는 運送物의 滅失, 훼손 또는 延着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認識하면서 無謀하게 한 作爲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2項 本文의 경우에 運送人과 그 使用人 또는 代理人의 運送物에 대한 責任制限金額의 總額은 第789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限度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運送物에 관한 損害賠償請求가 運送人 이외의 實際運送人 또는 그 使用人이나 代理人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이를 適用한다.

第787條 (堪航能力注意義務) 運送人은 自己 또는 船員 其他의 船舶使用人이 發航當時 다음의 事項에 關하여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 하였음을 證明하지 아니하면 運送物의 滅失, 毁損 또는 延着으로 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改正 1991.12.31>

1. 船舶이 安全하게 航海를 할 수 있게 할 것
2. 必要한 船員의 乘船, 船舶艤裝과 必要品의 補給
3. 船艙, 冷藏室 其他 運送物을 積載할 船舶의 部分을 運送物의 受領, 運送과 保存을 爲하여 適合한 狀態에 둘 것

第788條 (運送物에 관한 注意義務) ①運送人은 자기 또는 船員 기타의 船舶使用人이 運送物의 受領, 船積, 積付, 運送, 保管, 揚陸과 引渡에 관하여 주의를 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運送物의 滅失, 훼손 또는 延着으로 인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運送人은 船長, 海員, 導船士 기타의 船舶使用人의 航海 또는 船舶의 管理에 관한 행위 또는 火災로 인하여 생긴 運送物에 관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免한다. 그러나 運送人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한 火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1991.12.31]

第789條 (同前-免責事由) ①削除<1991.12.31>

②運送人은 다음 各號의 事實이 있었다는 것과 運送物에 關한 損害가 그 事實로 因하여 普通생길 수 있는 것임을 證明한 때에는 이를 賠償할 責任을 免한다. 그러나 第787條와 第78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注意를 다하였더라면 그 損害를 避할 수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그 注意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31>

1. 海上 其他 航行할 수 있는 水面에서의 危險 또는 事故
2. 不可抗力
3. 戰爭, 暴動 또는 內亂
4. 海賊行爲 其他 이에 準한 行爲
5. 裁判上의 押留, 檢疫上의 制限 其他 公權에 依한 制限
6. 送荷人 또는 運送物의 所有者나 그 使用人의 行爲
7. 同盟罷業 其他의 爭議行爲 또는 船舶閉鎖
8. 海上에서의 人命이나 財産의 救助行爲 또는 이로 因한 離路 其他 正當한 理由로 因한 離路
9. 運送物의 包裝의 不充分 또는 記號의 表示의 不完全
10. 運送物의 特殊한 性質 또는 숨은 瑕疵

第782條 (傭船契約과 船積準備完了의 通知, 船積期間) ①傭船契約을 締結한 境遇에는 運送人은 運送物을 船積함에 必要한 準備가 完了된 때에는 遲滯없이 傭船者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②運送物을 船積할 期間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期間은 第1項의 통지가 午前에 있은 때에는 그 날의 午後 1時부터 起算하고 午後에 있은 때에는 다음날 午前 6時부터 起算한다. 이 期間에는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船積할 수 없는 날과 그 港의 慣習上 船積作業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算入하지 아니한다.<改正 1991.12.31>

③第2項의 期間을 經過한 後 運送物을 船積한 때에는 運送人은 相當한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1.12.31>

第783條 (第三者가 船積人인 境遇의 通知, 船積) 傭船者以外의 第三者가 運送物을 船積할 境遇에 船長이 그 第三者를 確知할 수 없거나 그 第三者가 運送物을 船積하지 아니한 때에는 船長은 遲滯없이 傭船者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는 船積期間內에 限하여 傭船者가 運送物을 船積할 수 있다.

第784條 (傭船者의 發航請求權, 船長의 發航權) ①傭船者는 運送物의 全部를 船積하지 아니한 境遇에도 船長에게 發航을 請求할 수 있다.

②船積期間의 經過後에는 傭船者가 運送物의 全部를 船積하지 아니한 境遇에도 船長은 卽時 發航할 수 있다.

③第1項과 第2項의 境遇에는 傭船者는 運賃의 全額과 運送物의 全部를 船積하지 아니함으로 因하여 생긴 費用을 支給하고 또 運送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第785條 (個品運送과 運送物의 제공) ①個個의 물건을 運送契約의 目的으로 한 경우에는 送荷人은 當事者間의 合意 또는 船積港의 慣習에 의한 때와 곳에서 運送人에게 運送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때와 곳에서 送荷人이 運送物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契約을 解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船長은 즉시 發航할 수 있고, 送荷人은 運賃의 全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1.12.31]

第786條 (運送에 必要한 書類의 交付) 傭船者 또는 送荷人은 船積期間內에 運送에 必要한 書類를 船長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여 그 責任을 진다. 그러나, 그 利害關係人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31>

第777條 (船舶競賣權) 船籍港外에서 船舶이 修繕하기 不能하게 된때에는 船長은 海務官廳의 認可를 얻어 이를 競賣할 수 있다.<改正 1962.12.12>

第778條 (船舶의 修繕不能) ①다음의 境遇에는 船舶은 修繕하기 不能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船舶이 그 現在地에서 修繕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그 修繕을 할 수 있는 곳에 到達하기 不能한 때
2. 修繕費가 船舶의 價額의 4分의 3을 超過할 때

②第1項第2號의 價額은 船舶이 航海中 毀損된 境遇에는 그 發港한 때의 價額으로 하고 其他의 境遇에는 그 毀損前의 價額으로 한다.<改正 1991.12.31>

第779條 (報告, 計算의 義務) ①船長은 航海에 關한 重要한 事項을 遲滯없이 船舶所有者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船長은 每航海를 終了한 때에는 그 航海에 關한 計算書를 遲滯없이 船舶所有者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船長은 航海所有者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航海에 關한 事項과 計算의 報告를 하여야 한다.

第4章 運送

第1節 物件運送

第1款 通則

第780條 (運送契約의 種類) 物件의 運送契約은 다음의 2種으로 한다.

1. 船舶의 全部 또는 一部를 物件의 運送에 提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傭船契約
2. 個個의 物件의 運送을 目的으로 하는 契約

第781條 (傭船契約과 運送契約書) 傭船契約의 當事者는 相對方의 請求에 依하여 運送契約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第769條 (船長의 繼續職務執行의 責任) 船長이 航海中에 解任 또는 任期가 滿了된 境遇에는 다른 船長이 그 業務를 處理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船舶이 船籍港에 到着할 때까지 그 職務를 執行할 責任이 있다.

第770條 削除 <1991.12.31>

第771條 削除 <1991.12.31>

第772條 (代船長의 選任의 責任) 船長이 不可抗力으로 因하여 그 職務를 執行하기가 不能한 때에 法令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自己의 責任으로 他人을 選定하여 船長의 職務를 執行하게 할 수 있다.

第773條 (代理權의 範圍) ①船籍港外에서는 船長은 航海에 必要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다.

②船籍港에서는 船長은 特히 委任을 받은 境遇外에는 海員의 雇傭과 解雇를 할 權限만을 가진다.

第774條 (特殊한 行爲에 對한 權限) ①船長은 船舶修繕料, 海洋事故 救助料 其他 航海의 繼續에 必要한 費用을 支給하여야 할 境遇外에는 다음의 行爲를 하지 못한다.<개정 1999.2.5>

1. 船舶 또는 屬具를 擔保에 提供하는 일
2. 借財하는 일
3. 積荷의 全部나 一部를 處分하는 일

②積荷를 處分할 境遇의 損害賠償額은 그 積荷가 到達할 時期의 揚陸港의 價格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그러나, 그 價格中에서 支給을 要하지 아니하는 費用을 控除하여야 한다.

第775條 (代理權에 對한 制限) 船長의 代理權에 對한 制限은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776條 (利害關係人을 爲한 積荷의 處分) ①船長이 航海中에 積荷를 處分하는 境遇에는 利害關係人의 利益을 爲하여 가장 適當한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境遇에 利害關係人은 船長의 處分으로 因하여 생긴 債權者에게 積荷의 價額을 限度로 하

2. 新航海를 開始하는 일
3. 船舶을 保險에 붙이는 일
4. 船舶을 大修繕하는 일
5. 借財하는 일

第763條 (帳簿의 記載, 備置) 船舶管理人은 特히 業務執行에 關한 帳簿를 備置하고 그 船舶의 利用에 關한 모든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764條 (船舶管理人의 報告, 承認) 船舶管理人은 每航海의 終了後에 遲滯없이 그 航海의 經過狀況과 計算에 關한 書面을 作成하여 船舶共有者에게 報告하고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765條 (船舶賃借人의 登記請求權, 登記의 效力) ①船舶賃借人은 船舶所有者에 對하여 賃貸借登記에 協力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船舶賃貸借를 登記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第三者에 對하여 效力이 생긴다.

第766條 (船舶賃借와 第三者에 對한 法律關係) ①船舶賃借人이 商行爲 其他 營利를 目的으로 船舶을 航海에 使用하는 境遇에는 그 利用에 關한 事項에는 第三者에 對하여 船舶所有者와 同一한 權利義務가 있다.

②第1項의 境遇에 船舶의 利用에 關하여 생긴 優先特權은 船舶所有者에 對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그러나 優先特權者가 그 利用의 契約에 反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31>

第3章 船長

第767條 (船長의 選任, 解任) 船長은 船舶所有者가 選任 또는 解任한다.

第768條 (船長의 不當한 解任에 對한 損害賠償請求權) ①船舶所有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船長을 解任한 때에는 船長은 이로 因하여 생긴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船長이 船舶共有者인 境遇에 그 意思에 反하여 解任된 때에는 다른 共有者에 對하여 相當한 價額으로 그 持分을 買受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③船長이 第2項의 請求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遲滯없이 다른 共有者 또는 船舶管理人에 對하여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그 持分을 他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그러나 船舶管理人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57條 (共有船舶의 國籍喪失과 持分의 買受 또는 競賣請求) ①船舶共有者의 持分의 移轉 또는 國籍喪失로 因하여 船舶이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失할 때에는 다른 共有者는 相當한 代價로 그 持分을 買受하거나 그 競賣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②社員의 持分의 移轉으로 會社의 所有에 屬하는 船舶이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失할 때에는 合名會社에 있어서는 다른 社員, 合資會社에 있어서는 다른 無限責任社員이 相當한 代價로 그 持分을 買受할 수 있다.

第758條 (決議反對者의 持分買受請求權) ①船舶共有者가 新航海를 開始하거나 船舶을 大修繕할 것을 決議한 때에는 그 決議에 異議가 있는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에 對하여 相當한 價格으로 自己의 持分을 買受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請求를 하고자 하는 者는 그 決議가 있은 날로부터, 決議에 參加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決議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日內에 다른 共有者 또는 船舶管理人에 對하여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第759條 (航海中船舶等의 讓渡) 航海中에 있는 船舶이나 그 持分을 讓渡한 境遇에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으면 讓受人이 그 航海로부터 생긴 利益을 얻고 損失을 負擔한다.

第760條 (船舶管理人의 選任, 登記) ①船舶共有者는 船舶管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船舶共有者가 아닌 者를 船舶管理人으로 選任함에는 共有者全員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改正 1991.12.31>

②船舶管理人의 選任과 그 代理權의 消滅은 이를 登記하여야 한다.

第761條(船舶管理人의 權限) ①船舶管理人은 船舶의 利用에 關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다.

②船舶管理人의 代理權에 對한 制限은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762條 (船舶管理人의 權限의 制限) 船舶管理人은 船舶의 共有者의 書面에 依한 委任이 없으면 다음의 行爲를 하지 못한다.

1. 船舶을 讓渡, 賃貸 또는 擔保에 提供하는 일

第751條 (責任制限을 위한 船舶톤數) 第747條第1項에서 規定하는 船舶의 톤數는 國際航海에 종사하는 船舶의 경우에는 船舶法에서 規定하는 國際總톤數로 하고 그밖의 船舶의 경우에는 同法에서 規定하는 總톤數로 한다.

[全文改正 1991.12.31]

第752條 (責任制限의 節次) ①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을 제한하고자 하는 者는 債權者로부터 責任限度額을 초과하는 請求金額을 명시한 書面에 의한 請求를 받은 날부터 1年내에 法院에 責任制限節次開始의 申請을 하여야 한다.

②責任制限節次開始의 申請, 責任制限의 基金의 形成, 公告, 참가, 配當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752條의2 (海洋事故救助者의 有限責任<개정 1999.2.5>) ①第746條 내지 第752條의 規定은 海洋事故救助者의 救助活動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債權에 대한 責任의 제한에 準用한다.<개정 1999.2.5>

②救助活動을 船舶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救助者 또는 救助를 받는 船舶에서만 행한 救助者는 第747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의 限度額에 관하여 1千5百톤의 船舶에 의한 救助者로 본다.

③救助者의 責任의 限度額은 救助船마다 또는 第2項의 경우에는 救助者마다 동일한 事故로 인하여 생긴 모든 債權에 미친다.

[本條新設 1991.12.31]

第753條 (船舶共有者의 業務決定) ①共有船舶의 利用에 關한 事項은 共有者의 持分의 價格에 따라 그 過半數로 決定한다.

②船舶共有에 關한 契約을 變更하는 事項은 共有者의 全員一致로 決定하여야 한다.

第754條 (船舶共有와 費用의 負擔) 船舶共有者는 그 持分의 價格에 따라 船舶의 利用에 關한 費用과 利用에 關하여 생긴 債務를 負擔한다.

第755條 (損益分配) 損益의 分配는 每航海의 終了後에 있어서 船舶共有者의 持分의 價格에 따라서 한다.

第756條 (持分의 讓渡) 船舶共有者間에 組合關係가 있는 境遇에도 各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承諾없이

[全文改正 1991.12.31]

第748條 (有限責任의 排除) 船舶所有者는 다음 各號의 債權에 대하여는 그 責任을 制限하지 못한다.<개정 1999.2.5>

1. 船長, 海員 기타의 使用人으로서 그 職務가 船舶의 業務에 관련된 者 또는 그 相續人, 被扶養者 기타의 利害關係人의 船舶所有者에 대한 債權

2. 海洋事故 救助 또는 共同海損分擔에 관한 債權

3. 1969年 11月 29日 成立한 油類汚染損害에 대한 民事責任에 관한 國際條約 또는 그 條約의 改正條項이 適用되는 油類汚染損害에 관한 債權

4. 沈沒, 難破, 坐礁, 遺棄 기타의 海洋事故를 당한 船舶 및 그 船舶안에 있거나 있었던 積荷 기타의 물건의 引揚, 제거, 破壞 또는 無害措置에 관한 債權

5. 原子力損害에 관한 債權

[全文改正 1991.12.31]

第749條 (동일한 事故로 인한 反對債權額의 控除) 船舶所有者가 責任의 제한을 받는 債權者에 대하여 동일한 事故로 인하여 생긴 損害에 관한 債權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債權額을 控除한 殘額에 한하여 責任의 제한을 받는 債權으로 한다.

[全文改正 1991.12.31]

第750條 (責任制限을 할 수 있는 者의 범위) ①다음 各號에 게기한 者는 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所有者의 경우와 동일하게 責任을 제한할 수 있다.

1. 傭船者, 船舶管理人 및 船舶運航者

2. 法人인 船舶所有者 및 第1號에 게기한 者의 無限責任社員

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船舶所有者 또는 第1號의 게기한 者에 대하여 第746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債權이 成立하게 한 船長, 海員, 導船士 기타 船舶所有者 또는 第1號에 게기한 者의 使用人 또는 代理人

②동일한 事故에서 발생한 모든 債權에 대한 船舶所有者 및 第1項에 게기한 者에 의한 責任制限의 總額은 船舶마다 第747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限度額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船舶所有者 또는 第1項 各號에 게기한 者의 1人이 責任制限節次開始의 決定을 받은 때에는 責任制限을 할 수 있는 다른 者도 이를 援用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1.12.31]

4. 第1號 내지 第3號의 債權의 원인이 된 損害를 방지 또는 輕減하기 위한 措置에 관한 債權 또는 그 措置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損害에 관한 債權

[全文改正 1991.12.31]

第**747**條 (責任의 限度額) ①船舶所有者가 제한할 수 있는 責任의 限度額은 다음 各號의 금액으로 한다.

1. 旅客의 死亡 또는 身體의 傷害로 인한 損害에 관한 債權에 대한 責任의 限度額은 그 船舶의 船舶檢査證書에 기재된 旅客의 定員에 4萬6千6百6拾6 計算單位를 곱하여 얻은 금액과 2千5百萬 計算單位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旅客 이외의 사람의 死亡 또는 身體의 傷害로 인한 損害에 관한 債權에 대한 責任의 限度額은 그 船舶의 톤數에 따라서 다음 各目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3百톤미만의 船舶의 경우에는 1拾6萬7千 計算單位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百톤이하의 船舶의 경우에는 3拾3萬3千 計算單位에 상당하는 금액

나. 5百톤을 초과하는 船舶의 경우에는 가目의 금액에 5百톤을 초과하여 3千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每톤當 5百 計算單位, 3千톤을 초과하여 3萬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每톤當 3百3拾3 計算單位, 3萬톤을 초과하여 7萬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每톤當 2百5拾 計算單位 및 7萬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每톤當 1百6拾7 計算單位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順次로 加算한 금액

3. 第1號 및 第2號 이외의 債權에 대한 責任의 限度額은 그 船舶의 톤數에 따라서 다음 各目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3百톤미만의 船舶의 경우에는 8萬3千 計算單位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百톤이하의 船舶의 경우에는 1拾6萬7千 計算單位에 상당하는 금액

나. 5百톤을 초과하는 船舶의 경우에는 가目의 금액에 5百톤을 초과하여 3萬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每톤當 1百6拾7 計算單位, 3萬톤을 초과하여 7萬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每톤當 1百2拾5 計算單位 및 7萬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每톤當 8拾3 計算單位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順次로 加算한 금액

②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각 責任限度額은 船舶마다 동일한 事故에서 생긴 各 責任限度額에 대응하는 船舶所有者에 대한 모든 債權에 미친다.

③第746條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이 제한되는 債權은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各 責任限度額에 대하여 各 債權額의 比率로 競合한다.

④第1項第2號에 의한 責任限度額이 同號의 債權의 辨濟에 부족한 때에는 第3號에 의한 責任限度額을 그 殘額債權의 辨濟에 충당한다. 이 경우에 동일한 事故에서 第3號의 債權도 발생한 때에는 이 債權과 第2號의 殘額債權은 第3號에 의한 責任限度額에 대하여 各 債權額의 比率로 競合한다.

⑤第1項에서 "計算單位"라 함은 國際通貨基金의 1特別引出權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른다.

第740條 (船舶의 意義) 이 法에서 船舶이라 함은 商行爲 其他 營利를 目的으로 航海에 使用하는 船舶을 이른다.<改正 1991.12.31>

第741條 (短艇 또는 櫓櫂船) 이 編의 規定은 短艇 또는 主로 櫓櫂로 運轉하는 船舶에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1991.12.31>

第742條 (船舶의 從物) 船舶의 屬具目錄에 記載한 物件은 船舶의 從物로 推定한다.

第743條 (船舶에 關한 權利의 移轉) 船舶에 關한 權利의 移轉은 當事者間의 合意만으로써 效力이 생긴다. 그러나, 이를 登記하고 船舶國籍證書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744條 (船舶의 押留, 假押留) 航海의 準備를 完了한 船舶과 그 屬具는 押留 또는 假押留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航海를 準備하기 爲하여 생긴 債務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45條 (小型船舶) 第743條와 第744條의 規定은 總톤數20톤未滿의 船舶에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1991.12.31>

第2章 船舶所有者

第746條 (船舶所有者의 有限責任) 船舶所有者는 請求原因의 如何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債權에 대하여 第747條의 規定에 의한 금액의 限度로 그 責任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債權이 船舶所有者 자신의 故意 또는 損害發生의 염려가 있음을 認識하면서 無謀하게 한 作爲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생긴 損害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船舶에서 또는 船舶의 運航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死亡, 身體의 傷害 또는 그 船舶 이외의 물건의 滅失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損害에 관한 債權
2. 運送物, 旅客 또는 手荷物의 運送의 遲延으로 인하여 생긴 損害에 관한 債權
3. 第1號 및 第2號 이외에 船舶의 運航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契約上의 權利 이외의 他人의 權利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損害에 관한 債權

第735條의2 (年金保險) 生命保險契約의 保險者는 被保險者의 生命에 관한 保險事故가 생긴 때에 약정에 따라 保險金額을 年金으로 分割하여 支給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1.12.31]

第735條의3 (團體保險) ①團體가 規約에 따라 構成員의 전부 또는 일부를 被保險者로 하는 生命保險契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第731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保險契約이 체결된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契約者에 대하여서만 保險證券을 교부한다.

[本條新設 1991.12.31]

第736條 (保險積立金返還義務等) ①第649條, 第650條, 第651條 및 第652條 乃至 第655條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契約이 解止된 때, 第659條와 第660條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金額의 支給責任이 免除된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受益者를 爲하여 積立한 金額을 保險契約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約定이 없으면 第659條第1項의 保險事故가 保險契約者에 依하여 생긴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31>

②削除 <1991.12.31>

第3節 傷害保險

第737條 (傷害保險者의 責任) 傷害保險契約의 保險者는 身體의 傷害에 關한 保險事故가 생길 境遇에 保險金額 其他의 給與를 할 責任이 있다.

第738條 (傷害保險證券) 傷害保險의 境遇에 被保險者와 保險契約者가 同一人이 아닐 때에는 그 保險證券記載事項中 第728條第2號에 揭記한 事項에 갈음하여 被保險者의 職務 또는 職位만을 記載할 수 있다.

第739條 (準用規定) 傷害保險에 關하여는 第732條를 除外하고 生命保險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編 海商

第1章 船舶

第731條 (他人의 生命의 保險) ①他人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하는 保險契約에는 保險契約 締結時에 그 他人의 書面에 의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改正 1991.12.31>

②保險契約으로 因하여 생긴 權利를 被保險者가 아닌 者에게 讓渡하는 境遇에도 第1項과 같다.<改正 1991.12.31>

第732條 (15歲未滿者等에 對한 契約의 禁止) 15歲未滿者, 心神喪失者 또는 心神薄弱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改正 1991.12.31>

第732條의2 (重過失로 인한 保險事故)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에는 事故가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의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本條新設 1991.12.31]

第733條 (保險受益者의 指定 또는 變更의 權利) ①保險契約者는 保險受益者를 指定 또는 變更할 權利가 있다.

②保險契約者가 第1項의 指定權을 行使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때에는 被保險者를 保險受益者로 하고 保險契約者가 第1項의 變更權을 行使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때에는 保險受益者의 權利가 確定된다. 그러나, 保險契約者가 死亡한 境遇에는 그 承繼人이 第1項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는 約定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31>

③保險受益者가 保險存續中에 死亡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다시 保險受益者를 指定할 수 있다. 이 境遇에 保險契約者가 指定權을 行使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때에는 保險受益者의 相續人을 保險受益者로 한다.

④保險契約者가 第2項과 第3項의 指定權을 행사하기 전에 保險事故가 생긴 경우에는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의 相續人을 保險受益者로 한다.<新設 1991.12.31>

第734條 (保險受益者指定權等의 通知) ①保險契約者가 契約締結後에 保險受益者를 指定 또는 變更할 때에는 保險者에 對하여 그 通知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保險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第731條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指定 또는 變更에 準用한다.<改正 1962.12.12, 1991.12.31>

第735條 (養老保險) 被保險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에는 事故의 發生없이 保險期間이 終了한 때에도 保險金額을 支給할 것을 約定할 수 있다.

第726條의4 (自動車의 讓渡) ①被保險者가 保險期間중에 自動車를 讓渡한 때에는 讓受人은 保險者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保險契約으로 인하여 생긴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다.

②保險者가 讓受人으로부터 讓受事實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諾否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받은 날부터 10日내에 諾否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1991.12.31]

第3章 人保險

第1節 通則

第727條 (人保險者의 責任) 人保險契約의 保險者는 生命 또는 身體에 關하여 保險事故가 생길 境遇에 保險契約의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險金額 其他의 給與를 할 責任이 있다.

第728條 (人保險證券) 人保險證券에는 第666條에 揭記한 事項外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1. 保險契約의 種類
2. 被保險者의 住所·姓名 및 生年月日
3. 保險受益者를 定한 때에는 그 住所·姓名 및 生年月日

第729條 (第三者에 對한 保險代位의 禁止) 保險者는 保險事故로 因하여 생긴 保險契約者 또는 保險受益者의 第三者에 對한 權利를 代位하여 行使하지 못한다. 그러나 傷害保險契約의 경우에 當事者間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保險者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權利를 代位하여 행사할 수 있다.<改正 1991.12.31>

第2節 生命保險

第730條 (生命保險者의 責任) 生命保險契約의 保險者는 被保險者의 生命에 關한 保險事故가 생길 境遇에 約定한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 있다.

직접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그 事故에 관하여 가지는 抗辯으로써 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改正 1991.12.31>

③保險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保險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新設 1991.12.31>

④第2項의 경우에 被保險者는 保險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書類·증거의 提出, 證言 또는 證人의 출석에 協助하여야 한다.<新設 1991.12.31>

第**725**條 (保管者의 責任保險) 賃借人 其他 他人의 物件을 保管하는 者가 그 支給할 損害賠償을 爲하여 그 物件을 保險에 붙인 境遇에는 그 物件의 所有者는 保險者에 對하여 直接 그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725**條의**2** (數個의 責任保險) 被保險者가 동일한 事故로 第三者에게 賠償責任을 짐으로써 입은 損害를 補償하는 數個의 責任保險契約이 동시 또는 順次로 체결된 경우에 그 保險金額의 總額이 被保險者의 第三者에 대한 損害賠償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第672條와 第67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1.12.31]

第**726**條 (再保險에의 適用) 이 節의 規定은 再保險契約에 準用한다.<改正 1991.12.31>

第**6**節 自動車保險

第**726**條의**2** (自動車保險者의 責任) 自動車保險契約의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自動車를 所有, 사용 또는 管理하는 동안에 발생한 事故로 인하여 생긴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本條新設 1991.12.31]

第**726**條의**3** (自動車 保險證券) 自動車 保險證券에는 第666條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自動車所有者와 그밖의 保有者의 姓名과 生年月日 또는 商號
2. 被保險自動車의 登錄番號, 車臺番號, 車型年式과 機械裝置
3. 車輛價額을 정한 때에는 그 價額

[本條新設 1991.12.31]

第5節 責任保險

第719條 (責任保險者의 責任) 責任保險契約의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保險期間中의 事故로 因하여 第三者에게 賠償할 責任을 진 境遇에 이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第720條 (被保險者가 支出한 防禦費用의 負擔) ①被保險者가 第三者의 請求를 防禦하기 爲하여 支出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必要費用은 保險의 目的에 包含된 것으로 한다. 被保險者는 保險者에 對하여 그 費用의 先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②被保險者가 擔保의 提供 또는 供託으로써 裁判의 執行을 免할 수 있는 境遇에는 保險者에 對하여 保險金額의 限度內에서 그 擔保의 提供 또는 供託을 請求할 수 있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行爲가 保險者의 指示에 依한 것인 境遇에는 그 金額에 損害額을 加算한 金額이 保險金額을 超過하는 때에도 保險者가 이를 負擔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第721條 (營業責任保險의 目的) 被保險者가 經營하는 事業에 關한 責任을 保險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被保險者의 代理人 또는 그 事業監督者의 第三者에 對한 責任도 保險의 目的에 包含된 것으로 한다.

第722條 (被保險者의 事故通知義務) 被保險者가 第三者로부터 賠償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保險者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第723條 (被保險者의 辨濟等의 通知와 保險金額의 支給) ①被保險者가 第三者에 對하여 辨濟, 承認, 和解 또는 裁判으로 因하여 債務가 確定된 때에는 遲滯없이 保險者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保險者는 特別한 期間의 約定이 없으면 前項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10日內에 保險金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③被保險者가 保險者의 同意없이 第三者에 對하여 辨濟, 承認 또는 和解를 한 境遇에는 保險者가 그 責任을 免하게 되는 合意가 있는 때에도 그 行爲가 顯著하게 不當한 것이 아니면 保險者는 補償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第724條 (保險者와 第三者와의 關係) ①保險者는 被保險者가 責任을 질 事故로 因하여 생긴 損害에 對하여 第三者가 그 賠償을 받기 前에는 保險金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被保險者에게 支給하지 못한다.

②第三者는 被保險者가 責任을 질 事故로 입은 損害에 대하여 保險金額의 限度내에서 保險者에게

第711條 (船舶의 行方不明) ①船舶의 存否가 2月間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船舶의 行方이 不明한 것으로 한다.<改正 1991.12.31>

②第1項의 경우에는 全損으로 推定한다.<改正 1991.12.31>

第712條 (代船에 依한 運送의 繼續과 委付權의 消滅) 第710條第2號의 境遇에 船長이 遲滯없이 다른 船舶으로 積荷의 運送을 繼續한 때에는 被保險者는 그 積荷를 委付할 수 없다.<改正 1991.12.31>

第713條 (委付의 通知) ①被保險者가 委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期間내에 保險者에 대하여 그 통지를 發送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②削除 <1991.12.31>

第714條 (委付權行使의 要件) ①委付는 無條件이어야 한다.

②委付는 保險의 目的의 全部에 對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委付의 原因이 그 一部에 對하여 생긴 때에는 그 部分에 對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③保險價額의 一部를 保險에 붙인 境遇에는 委付는 保險金額의 保險價額에 對한 比率에 따라서만 이를 할 수 있다.

第715條 (다른 保險契約等에 關한 通知) ①被保險者가 委付를 함에 있어서는 保險者에 對하여 保險의 目的에 關한 다른 保險契約과 그 負擔에 屬한 債務의 有無와 그 種類 및 內容을 通知하여야 한다.

②保險者는 第1項의 通知를 받을 때까지 保險金額의 支給을 拒否할 수 있다.<改正 1991.12.31>

③保險金額의 支給에 關한 期間의 約定이 있는 때에는 그 期間은 第1項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起算한다.

第716條 (委付의 承認) 保險者가 委付를 承認한 後에는 그 委付에 對하여 異議를 하지 못한다.

第717條 (委付의 不承認) 保險者가 委付를 承認하지 아니한 때에는 被保險者는 委付의 原因을 證明하지 아니하면 保險金額의 支給을 請求하지 못한다.

第718條 (委付의 效果) ①保險者는 委付로 因하여 그 保險의 目的에 關한 被保險者의 모든 權利를 取得한다.

②被保險者가 委付를 한 때에는 保險의 目的에 關한 모든 書類를 保險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第707條의2 (船舶의 一部損害의 補償) ①船舶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修繕한 경우에는 保險者는 修繕에 따른 費用을 1回의 事故에 대하여 保險金額을 限度로 補償할 責任이 있다.

②船舶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修繕한 경우에는 保險者는 修繕에 따른 費用과 修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減價額을 補償할 責任이 있다.

③船舶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修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保險者는 그로 인한 減價額을 補償할 責任이 있다.

[本條新設 1991.12.31]

第708條 (積荷의 一部損害의 補償) 保險의 目的인 積荷가 毁損되어 揚陸港에 到着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毁損된 狀態의 價額과 毁損되지 아니한 狀態의 價額과의 比率에 따라 保險價額의 一部에 對한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第709條 (積荷賣却으로 因한 損害의 補償) ①航海途中에 不可抗力으로 保險의 目的인 積荷를 賣却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代金에서 運賃 其他 必要한 費用을 控除한 金額과 保險價額과의 差額을 補償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境遇에 買受人이 代金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金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保險者가 그 金額을 支給한 때에는 被保險者의 買受人에 對한 權利를 取得한다.<改正 1991.12.31>

第710條 (保險委付의 原因) 다음의 境遇에는 被保險者는 保險의 目的을 保險者에게 委付하고 保險金額의 全部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1.12.31>

1. 被保險者가 保險事故로 인하여 자기의 船舶 또는 積荷의 占有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可能性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費用이 회복하였을 때의 價額을 초과하리라고 豫想될 경우
2. 船舶이 保險事故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修繕하기 위한 費用이 修繕하였을 때의 價額을 초과하리라고 豫想될 경우
3. 積荷가 保險事故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修繕하기 위한 費用과 그 積荷를 目的地까지 運送하기 위한 費用과의 合計額이 到着하는 때의 積荷의 價額을 초과하리라고 豫想될 경우
4. 船舶 또는 積荷가 捕獲된 때
5. 船舶 또는 積荷가 官公署에 押收되어 6月以上 還付되지 아니한 때

[全文改正 1991.12.31]

第703條 (船舶變更의 效果) 積荷를 保險에 붙인 경우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因하여 船舶을 變更한 때에는 그 變更後의 事故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改正 1991.12.31>

第703條의2 (船舶의 讓渡등의 效果) 船舶을 保險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保險契約은 종료한다. 그러나 保險者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船舶을 讓渡할 때
2. 船舶의 船級을 變更한 때
3. 船舶을 새로운 管理로 옮긴 때

[本條新設 1991.12.31]

第704條 (船舶未確定의 積荷豫定保險) ①保險契約의 締結當時에 荷物을 積載할 船舶을 指定하지 아니한 境遇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그 荷物이 船積되었음을 안 때에는 遲滯없이 保險者에 對하여 그 船舶의 名稱, 國籍과 荷物의 종류, 數量과 價額의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②第1項의 통지를 懈怠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月내에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改正 1991.12.31>

第705條 削除 <1991.12.31>

第706條 (海上保險者의 免責事由) 保險者는 다음의 損害와 費用을 補償할 責任이 없다.<改正 1991.12.31>

1. 船舶 또는 運賃을 保險에 붙인 境遇에는 發航當時 安全하게 航海를 하기에 必要한 準備를 하지 아니하거나 必要한 書類를 備置하지 아니함으로 因하여 생긴 損害
2. 積荷를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傭船者, 送荷人 또는 受荷人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생긴 損害
3. 導船料, 入港料, 燈臺料, 檢疫料 其他 船舶 또는 積荷에 關한 航海中의 通常費用

第707條 削除 <1991.12.31>

第698條 (希望利益保險의 保險價額) 積荷의 到着으로 因하여 얻을 利益 또는 報酬의 保險에 있어서는 契約으로 保險價額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金額을 保險價額으로 한 것으로 推定한다.

第699條 (海上保險의 保險期間의 開始) ①航海單位로 船舶을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保險期間은 荷物 또는 底荷의 船積에 着手한 때에 開始한다.

②積荷를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保險期間은 荷物의 船積에 着手한 때에 開始한다. 그러나 出荷地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運送에 着手한 때에 開始한다.

③荷物 또는 底荷의 船積에 着手한 후에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契約이 체결된 경우에는 保險期間은 契約이 成立한 때에 開始한다.

[全文改正 1991.12.31]

第700條 (海上保險의 保險期間의 終了) 保險期間은 第699條第1項의 境遇에는 到着港에서 荷物 또는 底荷를 揚陸한 때에, 同條第2項의 경우에는 揚陸港 또는 到着地에서 荷物을 引渡한 때에 終了한다. 그러나 不可抗力으로 因하지 아니하고 揚陸이 遲延된 때에는 그 揚陸이 普通終了될 때에 終了된 것으로 한다.<改正 1991.12.31>

第701條 (航海變更의 效果) ①船舶이 保險契約에서 정하여진 發航港이 아닌 다른 港에서 出港한 때에는 保險者는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②船舶이 保險契約에서 정하여진 到着港이 아닌 다른 港을 向하여 出港한 때에도 第1項의 경우와 같다.

③保險者의 責任이 開始된 후에 保險契約에서 정하여진 到着港이 變更된 경우에는 保險者는 그 航海의 變更이 決定된 때부터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1991.12.31]

第701條의2 (離路) 船舶이 정당한 사유없이 保險契約에서 정하여진 船路를 離脫한 경우에는 保險者는 그때부터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船舶이 損害發生전에 原航路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

[本條新設 1991.12.31]

第702條 (發航 또는 航海의 遲延의 效果) 被保險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發航 또는 航海를 遲延한 때에는 保險者는 發航 또는 航海를 지체한 이후의 事故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693條 (海上保險者의 責任) 海上保險契約의 保險者는 海上事業에 關한 事故로 因하여 생길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改正 1991.12.31>

第694條 (共同海損分擔額의 補償)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支給할 共同海損의 分擔額을 補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保險의 目的의 共同海損分擔價額이 保險價額을 초과할 때에는 그 超過額에 대한 分擔額은 補償하지 아니한다.<改正 1991.12.31>

第694條의2 (救助料의 補償)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保險事故로 인하여 발생하는 損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支給할 救助料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保險의 目的物의 救助料分擔價額이 保險價額을 초과할 때에는 그 超過額에 대한 分擔額은 補償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1991.12.31]

第694條의3 (特別費用의 補償) 保險者는 保險의 目的의 安全이나 보존을 위하여 支給할 特別費用을 保險金額의 限度內에서 補償할 責任이 있다.

[本條新設 1991.12.31]

第695條 (海上保險證券) 海上保險證券에는 第666條에 揭記한 事項外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1. 船舶을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그 船舶의 名稱, 國籍과 종류 및 航海의 범위
2. 積荷를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船舶의 名稱, 國籍과 종류, 船積港, 揚陸港 및 出荷地와 到着地를 정한 때에는 그 地名
3. 保險價額을 定한 때에는 그 價額

第696條 (船舶保險의 保險價額과 保險目的) ①船舶의 保險에 있어서는 保險者의 責任이 開始될 때의 船舶價額을 保險價額으로 한다.

②第1項의 境遇에는 船舶의 屬具, 燃料, 糧食 其他 航海에 必要한 모든 物件은 保險의 目的에 包含된 것으로 한다.<改正 1991.12.31>

第697條 (積荷保險의 保險價額) 積荷의 保險에 있어서는 船積한 때와 곳의 積荷의 價額과 船積 및 保險에 關한 費用을 保險價額으로 한다.<改正 1962.12.12>

第687條 (同前) 集合된 物件을 一括하여 保險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目的에 屬한 物件이 保險期間中에 隨時로 交替된 境遇에도 保險事故의 發生時에 現存한 物件은 保險의 目的에 包含된 것으로 본다.

第3節 運送保險

第688條 (運送保險者의 責任) 運送保險契約의 保險者는 다른 約定이 없으면 運送人이 運送物을 受領한 때로부터 受荷人에게 引渡할 때까지 생길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第689條 (運送保險의 保險價額) ①運送物의 保險에 있어서는 發送한 때와 곳의 價額과 到着地까지의 運賃 其他의 費用을 保險價額으로 한다.

②運送物의 到着으로 因하여 얻을 利益은 約定이 있는 때에 限하여 保險價額中에 算入한다.

第690條 (運送保險證券) 運送保險證券에는 第666條에 揭記한 事項外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運送의 路順과 方法
2. 運送人의 住所와 姓名 또는 商號
3. 運送物의 受領과 引渡의 場所
4. 運送期間을 定한 때에는 그 期間
5. 保險價額을 定한 때에는 그 價額

第691條 (運送의 中止나 變更과 契約效力) 保險契約은 다른 約定이 없으면 運送의 必要에 依하여 一時運送을 中止하거나 運送의 路順 또는 方法을 變更한 境遇에도 그 效力을 잃지 아니한다.

第692條 (運送補助者의 故意, 重過失과 保險者의 免責) 保險事故가 送荷人 또는 受荷人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發生한 때에는 保險者는 이로 因하여 생긴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없다.

第4節 海上保險

그러나 이를 爲하여 必要 또는 有益하였던 費用과 補償額이 保險金額을 超過한 境遇라도 保險者가 이를 負擔한다.<改正 1991.12.31>

②削除 <1991.12.31>

第681條 (保險目的에 關한 保險代位) 保險의 目的의 全部가 滅失한 境遇에 保險金額의 全部를 支給한 保險者는 그 目的에 對한 被保險者의 權利를 取得한다. 그러나, 保險價額의 一部를 保險에 붙인 境遇에는 保險者가 取得할 權利는 保險金額의 保險價額에 對한 比率에 따라 이를 定한다.

第682條 (第三者에 對한 保險代位) 損害가 第三者의 行爲로 因하여 생긴 境遇에 保險金額을 支給한 保險者는 그 支給한 金額의 限度에서 그 第三者에 對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取得한다. 그러나, 保險者가 補償할 保險金額의 一部를 支給한 때에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害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第2節 火災保險

第683條 (火災保險者의 責任) 火災保險契約의 保險者는 火災로 因하여 생긴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第684條 (消防等의 措置로 因한 損害의 補償) 保險者는 火災의 消防 또는 損害의 減少에 必要한 措置로 因하여 생긴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第685條 (火災保險證券) 火災保險證券에는 第666條에 揭記한 事項外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建物을 保險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所在地, 構造와 用途
2. 動産을 保險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存置한 場所의 狀態와 用途
3. 保險價額을 定한 때에는 그 價額

第686條 (集合保險의 目的) 集合된 物件을 一括하여 保險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被保險者의 家族과 使用人의 物件도 保險의 目的에 包含된 것으로 한다. 이 境遇에는 그 保險은 그 家族 또는 使用人을 爲하여서도 締結한 것으로 본다.

第673條 (重複保險과 保險者 1人에 對한 權利抛棄) 第672條의 規定에 依한 數個의 保險契約을 締結한 境遇에 保險者 1人에 對한 權利의 抛棄는 다른 保險者의 權利義務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改正 1991.12.31>

第674條 (一部保險) 保險價額의 一部를 保險에 붙인 境遇에는 保險者는 保險金額의 保險價額에 對한 比率에 따라 補償할 責任을 진다. 그러나, 當事者間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金額의 限度내에서 그 損害를 補償할 責任을 진다.<改正 1991.12.31>

第675條 (事故發生 後의 目的滅失과 補償責任) 保險의 目的에 關하여 保險者가 負擔할 損害가 생긴 境遇에는 그 後 그 目的이 保險者가 負擔하지 아니하는 保險事故의 發生으로 因하여 滅失된 때에도 保險者는 이미 생긴 損害를 補償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改正 1962.12.12>

第676條 (損害額의 算定基準) ①保險者가 補償할 損害額은 그 損害가 發生한 때와 곳의 價額에 依하여 算定한다. 그러나, 當事者間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新品價額에 의하여 損害額을 算定할 수 있다.<改正 1991.12.31>

②第1項의 損害額의 算定에 關한 費用은 保險者의 負擔으로 한다.<改正 1991.12.31>

第677條 (保險料滯納과 補償額의 控除) 保險者가 損害를 補償할 境遇에 保險料의 支給을 받지 아니한 殘額이 있으면 그 支給期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때라도 補償할 金額에서 이를 控除할 수 있다.

第678條 (保險者의 免責事由) 保險의 目的의 性質, 瑕疵 또는 自然消耗로 因한 損害는 保險者가 이를 補償할 責任이 없다.

第679條 (保險目的의 讓渡) ①被保險者가 保險의 目的을 讓渡한 때에는 讓受人은 保險契約上의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 것으로 推定한다.<改正 1991.12.31>

②第1項의 경우에 保險의 目的의 讓渡人 또는 讓受人은 保險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新設 1991.12.31>

第680條 (損害防止義務) ①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는 損害의 방지와 輕減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 保險契約의 年月日

9. 保險證券의 作成地와 그 作成年月日

第667條 (喪失利益等의 不算入) 保險事故로 因하여 喪失된 被保險者가 얻을 利益이나 報酬는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으면 保險者가 補償할 損害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668條 (保險契約의 目的) 保險契約은 金錢으로 算定할 수 있는 利益에 限하여 保險契約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第669條 (超過保險) ①保險金額이 保險契約의 目的의 價額을 顯著하게 超過한 때에는 保險者 또는 保險契約者는 保險料와 保險金額의 減額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料의 減額은 將來에 對하여서만 그 效力이 있다.

②第1項의 價額은 契約當時의 價額에 依하여 定한다.<改正 1991.12.31>

③保險價額이 保險期間中에 顯著하게 減少된 때에도 第1項과 같다.

④第1項의 境遇에 契約이 保險契約者의 詐欺로 因하여 締結된 때에는 그 契約은 無效로 한다. 그러나 保險者는 그 事實을 안 때까지의 保險料를 請求할 수 있다.

第670條 (旣評價保險) 當事者間에 保險價額을 定한 때에는 그 價額은 事故發生時의 價額으로 定한 것으로 推定한다. 그러나, 그 價額이 事故發生時의 價額을 顯著하게 超過할 때에는 事故發生時의 價額을 保險價額으로 한다.

第671條 (未評價保險) 當事者間에 保險價額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故發生時의 價額을 保險價額으로 한다.

第672條 (重複保險) ①동일한 保險契約의 目的과 동일한 事故에 관하여 數個의 保險契約이 동시에 또는 順次로 체결된 경우에 그 保險金額의 總額이 保險價額을 초과한 때에는 保險者는 各自의 保險金額의 限度에서 連帶責任을 진다. 이 경우에는 各 保險者의 補償責任은 各自의 保險金額의 比率에 따른다.<改正 1991.12.31>

②동일한 保險契約의 目的과 동일한 事故에 관하여 數個의 保險契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保險契約者는 各 保險者에 대하여 各 保險契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③第669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保險契約에 準用한다.

에 다른 約定이 없으면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 없다.

第661條 (再保險) 保險者는 保險事故로 因하여 負擔할 責任에 對하여 다른 保險者와 再保險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再保險契約은 原保險契約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662條 (消滅時效) 保險金額의 請求權과 保險料 또는 積立金의 返還請求權은 2年間, 保險料의 請求權은 1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第663條 (保險契約者等의 不利益變更禁止) 이 編의 規定은 當事者間의 特約으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의 不利益으로 變更하지 못한다. 그러나 再保險 및 海上保險 기타 이와 유사한 保險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31>

第664條 (相互保險에의 準用) 이 編의 規定은 그 性質이 相反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相互保險에 準用한다.<改正 1991.12.31>

第2章 損害保險

第1節 通則

第665條 (損害保險者의 責任) 損害保險契約의 保險者는 保險事故로 因하여 생길 被保險者의 財産上의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第666條 (損害保險證券) 損害保險證券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保險者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1. 保險目的
2. 保險事故의 性質
3. 保險金額
4. 保險料와 그 支給方法
5. 保險期間을 定한 때에는 그 始期와 終期
6. 無效와 失權의 事由
7. 保險契約者의 住所와 姓名 또는 商號

있다.<改正 1991.12.31>

第654條 (保險者의 破産宣告와 契約解止) ①保險者가 破産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解止하지 아니한 保險契約은 破産宣告 後 3月을 經過한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改正 1991.12.31>

第655條 (契約解止와 保險金額請求權) 保險事故가 發生한 後에도 保險者가 第650條, 第651條, 第652條와 第653條의 規定에 依하여 契約을 解止한 때에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 없고 이미 支給한 保險金額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告知義務에 違反한 事實 또는 危險의 顯著한 變更이나 增加된 事實이 保險事故의 發生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證明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62.12.12, 1991.12.31>

第656條 (保險料의 支給과 保險者의 責任開始) 保險者의 責任은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으면 最初의 保險料의 支給을 받은 때로부터 開始한다.

第657條 (保險事故發生의 通知義務) ①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는 保險事故의 發生을 안 때에는 遲滯없이 保險者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가 第1項의 通知義務를 懈怠함으로 인하여 損害가 增加된 때에는 保險者는 그 增加된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없다.<新設 1991.12.31>

第658條 (保險金額의 支給) 保險者는 保險金額의 支給에 관하여 約定期間이 있는 경우에는 그 期間내에 約定期間이 없는 경우에는 第657條第1項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支給할 保險金額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日내에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에게 保險金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1.12.31]

第659條 (保險者의 免責事由) ①保險事故가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생긴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 없다.

②削除 <1991.12.31>

第660條 (戰爭危險等으로 因한 免責) 保險事故가 戰爭 其他의 變亂으로 因하여 생긴 때에는 當事者間

契約成立후 2月이 경과하면 그 契約은 解除된 것으로 본다.

②繼續保險料가 약정한 時期에 支給되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者는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保險契約者에게 催告하고 그 期間內에 支給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③특정한 他人을 위한 保險의 경우에 保險契約者가 保險料의 支給을 지체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他人에게도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保險料의 支給을 催告한 후가 아니면 그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하지 못한다.

[全文改正 1991.12.31]

第650條의2 (保險契約의 復活) 第650條第2項에 따라 保險契約이 解止되고 解止還給金이 支給되지 아니한 경우에 保險契約者는 일정한 期間내에 延滯保險料에 約定利子를 붙여 保險者에게 支給하고 그 契約의 復活을 請求할 수 있다. 第638條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1.12.31]

第651條 (告知義務違反으로 因한 契約解止) 保險契約當時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重要한 事項을 告知하지 아니하거나 不實의 告知를 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1月內에, 契約을 締結한 날로부터 3年內에 限하여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者가 契約當時에 그 事實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31>

第651條의2 (書面에 의한 質問의 效力) 保險者가 書面으로 質問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推定한다.

[本條新設 1991.12.31]

第652條 (危險變更增加의 通知와 契約解止) ①保險期間中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事故發生의 危險이 顯著하게 變更 또는 增加된 事實을 안 때에는 遲滯없이 保險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이를 懈怠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1月內에 限하여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保險者가 第1項의 危險變更增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月내에 保險料의 增額을 請求하거나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新設 1991.12.31>

第653條 (保險契約者等의 故意나 重過失로 因한 危險增加와 契約解止) 保險期間中에 保險契約者,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事故發生의 危險이 顯著하게 變更 또는 增加된 때에는 保險者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月내에 保險料의 增額을 請求하거나 契約을 解止할 수

第643條 (遡及保險) 保險契約은 그 契約前의 어느 時期를 保險期間의 始期로 할 수 있다.

第644條 (保險事故의 客觀的 確定의 效果) 保險契約當時에 保險事故가 이미 發生하였거나 또는 發生할 수 없는 것 인때에는 그 契約은 無效로 한다. 그러나 當事者 雙方과 被保險者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45條 削除 <1991.12.31>

第646條 (代理人이 안것의 效果) 代理人에 依하여 保險契約을 締結한 境遇에 代理人이 안 事由는 그 本人이 안 것과 同一한 것으로 한다.

第647條 (特別危險의 消滅로 因한 保險料의 減額請求) 保險契約의 當事者가 特別한 危險을 豫期하여 保險料의 額을 定한 境遇에 保險期間中 그 豫期한 危險이 消滅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그 後의 保險料의 減額을 請求할 수 있다.

第648條 (保險契約의 無效로 因한 保險料返還請求) 保險契約의 全部 또는 一部가 無效인 境遇에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가 善意이며 重大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保險者에 對하여 保險料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保險契約者와 保險受益者가 善意이며 重大한 過失이 없는 때에도 같다.

第649條 (事故發生前의 任意解止) ①保險事故가 發生하기 前에는 保險契約者는 언제든지 契約의 全部 또는 一部를 解止할 수 있다. 그러나 第639條의 保險契約의 경우에는 保險契約者는 그 他人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거나 保險證券을 所持하지 아니하면 그 契約을 解止하지 못한다.<改正 1991.12.31>

②保險事故의 발생으로 保險者가 保險金額을 支給한 때에도 保險金額이 減額되지 아니하는 保險의 경우에는 保險契約者는 그 事故發生후에도 保險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新設 1991.12.31>

③第1項의 境遇에는 保險契約者는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으면 未經過保險料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1.12.31>

第650條 (保險料의 支給과 지체의 效果) ①保險契約者는 契約締結후 지체없이 保險料의 전부 또는 第1回 保險料를 支給하여야 하며, 保險契約者가 이를 支給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本條新設 1991.12.31]

第638條의3 (保險約款의 교부·명시義務) ①保險者는 保險契約을 체결할 때에 保險契約者에게 保險約款을 교부하고 그 約款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保險者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保險契約이 成立한 날부터 1月내에 그 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1.12.31]

第639條 (他人을 爲한 保險) ①保險契約者는 委任을 받거나 委任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他人을 爲하여 保險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그러나 損害保險契約의 경우에 그 他人의 委任이 없는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이를 保險者에게 告知하여야 하고, 그 告知가 없는 때에는 他人이 그 保險契約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保險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改正 1991.12.31>

②第1項의 경우에는 그 他人은 당연히 그 契約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損害保險契約의 경우에 保險契約者가 그 他人에게 保險事故의 발생으로 생긴 損害의 賠償을 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그 他人의 權利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保險者에게 保險金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新設 1991.12.31>

③第1項의 境遇에는 保險契約者는 保險者에 對하여 保險料를 支給할 義務가 있다. 그러나 保險契約者가 破産宣告를 받거나 保險料의 支給을 遲滯한 때에는 그 他人이 그 權利를 抛棄하지 아니하는 限 그 他人도 保險料를 支給할 義務가 있다.<改正 1991.12.31>

第640條 (保險證券의 交付) ①保險者는 保險契約이 成立한 때에는 지체없이 保險證券을 作成하여 保險契約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그러나 保險契約者가 保險料의 전부 또는 최초의 保險料를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31>

②기존의 保險契約을 연장하거나 變更한 경우에는 保險者는 그 保險證券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保險證券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新設 1991.12.31>

第641條 (證券에 關한 異議約款의 效力) 保險契約의 當事者는 保險證券의 交付가 있는 날로부터 一定한 期間內에 限하여 그 證券內容의 正否에 關한 異議를 할 수 있음을 約定할 수 있다. 이 期間은 1月을 내리지 못한다.

第642條 (證券의 再交付請求) 保險證券을 滅失 또는 顯著하게 毁損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保險者에 對하여 證券의 再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그 證券作成의 費用은 保險契約者의 負擔으로 한다.

23. 第47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社債를 募集하거나 舊社債를 償還하지 아니한 때

24. 第478條第1項 또는 第618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債券을 發行한 때

25. 第536條 또는 第613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債務의 辨濟를 한 때

26. 第61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法院의 命令에 違反한 때

27. 第555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持分에 對한 指示式 또는 無記名式의 證券을 發行한 때

②發起人 또는 理事가 株式의 引受로 因한 權利를 讓渡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改正 1984.4.10>

第**636**條 (登記前의 會社名義의 營業等) ①會社의 成立前에 會社의 名義로 營業을 한 者는 會社設立의 登錄稅의 倍額에 相當한 過怠料에 處한다.

②前項의 規定은 第616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準用한다.

第**637**條 (法人에 對한 罰則의 適用) 第622條, 第623條, 第625條, 第627條, 第628條 또는 第630條第1項에 揭記한 者가 法人인 때에는 本章의 罰則은 그 行爲를 한 理事, 監事 其他 業務를 執行한 社員 또는 支配人에 適用한다.

第**4**編 保險

第**1**章 通則

第**638**條 (意義) 保險契約은 當事者 一方이 約定한 保險料를 支給하고 相對方이 財産 또는 生命이나 身體에 關하여 不確定한 事故가 생길 境遇에 一定한 保險金額 其他의 給與를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效力이 생긴다.

第**638**條의**2** (保險契約의 成立) ①保險者가 保險契約者로부터 保險契約의 請約과 함께 保險料 相當額의 전부 또는 일부의 支給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日내에 그 相對方에 대하여 諾否의 통지를 發送하여야 한다. 그러나 人保險契約의 被保險者가 身體檢査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期間은 身體檢査를 받은 날부터 起算한다.

②保險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諾否의 통지를 懈怠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保險者가 保險契約者로부터 保險契約의 請約과 함께 保險料 相當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請約을 승낙하기 전에 保險契約에서 정한 保險事故가 생긴 때에는 그 請約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保險者는 保險契約上의 責任을 진다. 그러나 人保險契約의 被保險者가 身體檢査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檢査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法院이 選任한 淸算人에 對한 事務의 引繼를 懈怠하거나 이를 拒否한 때

11. 淸算의 終結을 遲延할 目的으로 第247條第3項, 第535條第1項 또는 第613條第1項의 期間을 不當하게 長期間으로 定한 때

12. 第254條第4項, 第542條第1項 또는 第613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破産宣告의 請求를 懈怠한 때

13. 第589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出資의 引受人을 公募한 때

14. 第232條, 第247條第3項, 第439條第2項, 第527條의5, 第530條第2項, 第530條의9第4項, 第530條의11第2項, 第597條, 第603條 또는 第608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會社의 合併·分割·分割合併 또는 組織變更, 會社財産의 處分 또는 資本의 減少를 한 때

15. 第260條, 第542條第1項 또는 第613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會社財産을 分配한 때

16. 第302條第2項, 第347條, 第420條, 第420條의2, 第474條第2項 또는 第51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株式請約書·新株引受權證書 또는 社債請約書를 作成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記載할 事項을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不實한 記載를 한 때

17. 第342條 또는 第560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株式 또는 持分의 失效節次, 株式 또는 持分의 質權의 處分을 懈怠한 때

18. 第343條第1項 또는 第560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株式 또는 出資를 消却한 때

19. 第355條第1項, 第2項 또는 第618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株券을 發行한 때

19의2. 第358條의2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株主名簿에 記載를 하지 아니한 때

19의3. 第363條의2第1項 또는 第54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主가 提案한 사항을 株主總會의 目的事項으로 하지 아니한 때

20. 第365條第1項·第2項, 第578條의 規定 또는 第467條第3項, 第582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法院의 命令에 違反하여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하거나 定款에 定한곳 以外의 곳에서 또는 第363條, 第364條, 第571條第2項·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總會를 召集한 때

20의2. 第374條第2項, 第530條第2項 또는 第530條의11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買受請求權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公告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한 통지 또는 公告를 한 때

21. 第396條第1項, 第448條第1項, 第510條第2項, 第522條의2第1項, 第527條의6第1項, 第530條의7, 第534條第3項, 第542條第2項, 第566條第1項, 第579條의3, 第603條 또는 第61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帳簿 또는 書類를 備置하지 아니한 때

21의2. 第412條의4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의 調査를 거부한 때

22. 第458條 乃至 第460條 또는 第58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準備金을 積立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使用한 때

22의2. 第464條의2第1項의 期間내에 配當金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

다.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하기 不能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第634條 (納入責任免脫의 罪) 納入의 責任을 免하기 爲하여 他人 또는 假設人의 名義로 株式 또는 出資를 引受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第634條의2 (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한 利益供與의 罪) ①株式會社의 理事·監査委員會 委員·監事 또는 第386條第2項, 第407條第1項 또는 第415條의 職務代行者·支配人 기타 使用人이 株主의 權利의 行使와 관련하여 會社의 計算으로 財産上의 利益을 供與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1999.12.31>

②第1項의 利益을 收受하거나, 第3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한 者도 第1項과 같다.

[本條新設 1984.4.10]

第635條 (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會社의 發起人, 設立委員, 業務執行社員, 理事, 監事, 監査委員會 委員, 外國會社의 代表者, 檢査人, 第298條第3項·第299條의2·第310條第3項 또는 第313條第2項의 公證人, 第299條의2, 第310條第3項 또는第422條第1項의 鑑定人, 支配人, 淸算人, 名義改書代理人,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와 그 事務承繼者 또는 第386條第2項, 第407條第1項, 第415條, 第542條第2項 또는 第567條의 職務代行者가 다음의 事項에 該當한 行爲를 한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다만, 그 行爲에 對하여 刑을 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8.12.28, 1999.12.31>

1. 本編에 定한 登記를 懈怠한 때
2. 本編에 定한 公告 또는 通知를 懈怠하거나 不正한 公告 또는 通知를 한 때
3. 本編에 定한 檢査 또는 調査를 妨害한 때
4. 本編의 規定에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拒否한 때
5. 官廳, 總會·社債權者集會 또는 發起人에게 不實한 報告를 하거나 또는 事實을 隱蔽한 때
6. 株券·債券 또는 新株引受權證券에 記載할 事項을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한 記載를 한 때
7. 正當한 事由없이 株券의 名義改書를 하지 아니한 때
8. 法律 또는 定款에 定한 理事 또는 監事의 員數를 闕한 境遇에 그 選任節次를 懈怠한 때
9. 定款·株主名簿 또는 그 複本, 社員名簿, 社債原簿 또는 그 複本, 議事錄·監査錄·財産目錄·貸借對照表·營業報告書·事務報告書·損益計算書·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決算報告書·會計帳簿, 第447條·第534條·第579條第1項 또는 第613條第1項의 附屬明細書 또는 監査報告書에 記載할 事項을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不實한 記載를 한 때

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②株式 또는 社債를 賣出하는 者가 그 賣出에 關한 文書로서 重要한 事項에 關하여 不實한 記載가 있는 것을 行使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改正 1984.4.10>

第628條 (納入假裝罪等) ①第622條第1項에 揭記한 者가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履行을 假裝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②第1項의 行爲에 應하거나 이를 仲介한 者도 第1項과 같다.<改正 1984.4.10>

第629條 (超過發行의 罪) 會社의 發起人, 理事 또는 第386條第2項 또는 第407條第1項의 職務代行者가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를 超過하여 株式을 發行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第630條 (發起人, 理事 其他의 任員의 瀆職罪) ①第622條와 第623條에 規定된 者, 檢査人, 第298條第3項·第299條의2·第310條第3項 또는 第313條第2項의 公證人이나 第299條의2, 第310條第3項 또는 第422條第1項의 鑑定人이 그 職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財産上의 利益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1998.12.28>

②第1項의 利益을 約束, 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 者도 第1項과 같다.<改正 1984.4.10>

第631條 (權利行使妨害等에 關한 贈收賂罪) ①다음의 事項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財産上의 利益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8.12.28, 1999.12.31>

1. 創立總會, 社員總會, 株主總會 또는 社債權者集會에서의 發言 또는 議決權의 行使

2. 第3編에 定하는 訴의 提起,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 또는 100分의 3以上에 該當하는 株主, 社債總額의 100分의 10以上에 該當하는 社債權者 또는 資本의 100分의 3이상에 該當하는 出資座數를 가진 社員의 權利의 行使

3. 第402條 또는 第424條에 定하는 權利의 行使

②第1項의 利益을 約束, 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 者도 第1項과 같다.<改正 1984.4.10>

第632條 (懲役과 罰金의 併科) 第622條 乃至 前條의 懲役과 罰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第633條 (沒收, 追徵) 第630條第1項 또는 第631條第1項의 境遇에는 犯人이 收受한 利益은 이를 沒收한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하여 社債權者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7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第**624**條 (特別背任罪의 未遂)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625**條 (會社財産을 危殆롭게 하는 罪) 第622條第1項에 規定된 者, 檢査人, 第298條第3項·第299條의2·第310條第3項 또는 第313條第2項의 公證人(法務法人과 公證認可 合同法律事務所의 당해 業務執行辯護士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이나 第299條의2, 第310條第3項 또는 第422條第1項의 鑑定人이 다음의 行爲를 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1998.12.28>

1. 株式 또는 出資의 引受나 納入, 現物出資의 履行, 第290條, 第416條第4號 또는 第544條에 規定된 사항에 關하여 法院·總會 또는 發起人에게 不實한 報告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
2. 누구의 名義로 하거나를 不問하고 會社의 計算으로 不正하게 그 株式 또는 持分을 取得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이를 받은 때
3. 法令 또는 定款의 規定에 違反하여 利益이나 利子의 配當을 한 때
4. 會社의 營業範圍外에서 投機行爲를 하기 爲하여 會社財産을 처분한 때

第**625**條의**2** (株式의 取得制限등에 違反한 罪) 第635條第1項에 게기한 者가 第342條의2第1項 및 同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626**條 (不實報告罪) 會社의 理事, 監査委員會 委員, 監事 또는 第386條第2項, 第407條第1項, 第415條 또는 第567條의 職務代理者가 第604條 또는 第607條의 組織變更의 境遇에 第604條第2項 또는 第607條第2項의 純財産額에 關하여·法院 또는 總會에 不實한 報告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1999.12.31>

第**627**條 (不實文書行使罪) ①第622條第1項에 揭記한 者, 外國會社의 代表者, 株式 또는 社債의 募集의 委託을 받은 者가 株式 또는 社債를 募集함에 있어서 重要한 事項에 關하여 不實한 記載가 있는 株式請約書, 社債請約書, 事業計劃書, 株式 또는 社債의 募集에 關한 廣告 其他의 文書를 行使한 때에는 5

第619條 (營業所閉鎖命令) ①外國會社가 大韓民國에 營業所를 設置한 境遇에 다음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그 營業所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改正 1962.12.12>

1. 營業所의 設置目的이 不法한 것인 때

2. 營業所의 設置登記를 한 後 正當한 事由없이 1年內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以上 營業을 休止한 때 또는 正當한 事由없이 支給을 停止한 때

3. 會社의 代表者 其他 業務를 執行하는 者가 法令 또는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違反한 行爲를 한 때

②第176條第2項 乃至 第4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620條 (韓國에 있는 財産의 淸算) ①前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營業所의 閉鎖를 命한 境遇에는 法院은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大韓民國에 있는 그 會社財産의 全部에 對한 淸算의 開始를 命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法院은 淸算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第535條 乃至 第537條와 第542條의 規定은 그 性質이 許하지 아니하는 境遇外에는 前項의 淸算에 準用한다.

③前2項의 規定은 外國會社가 스스로 營業所를 閉鎖한 境遇에 準用한다.

第621條 (外國會社의 地位) 外國會社는 다른 法律의 適用에 있어서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外에는 大韓民國에서 成立된 同種 또는 가장 類似한 會社로 본다.

第7章 罰則

第622條 (發起人, 理事 其他의 任員等의 特別背任罪) ①會社의 發起人, 業務執行社員, 理事, 監査委員會 委員, 監事 또는 第386條第2項, 第407條第1項, 第415條 또는 第567條의 職務代行者, 支配人 其他 會社營業에 關한 어느 種類 또는 特定한 事項의 委任을 받은 使用人이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會社에 損害를 加한 때에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1999.12.31>

②會社의 淸算人 또는 第542條第2項의 職務代行者, 第175條의 設立委員이 第1項의 行爲를 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改正 1984.4.10>

第623條 (社債權者集會의 代表者等의 特別背任罪) 社債權者集會의 代表者 또는 그 決議를 執行하는

第531條 乃至 第537條, 第540條와 第541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에 準用한다.<改正 1962.12.12>

②第209條, 第210條, 第366條第2項·第3項, 第367條, 第373條第2項, 第376條, 第377條, 第382條第2項, 第386條, 第388條, 第399條 乃至 第402條, 第407條, 第408條, 第411條 乃至 第413條, 第414條第3項, 第450條, 第466條第2項, 第539條, 第562條, 第563條, 第564條第3項, 第565條, 第566條, 第571條, 第572條第1項과 第581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의 淸算人에 準用한다.<改正 1962.12.12, 1984.4.10>

第6章 外國會社

第614條 (代表者, 營業所의 設定과 登記) ①外國會社가 大韓民國에서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韓民國에서의 代表者를 定하고 營業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外國會社는 그 營業所의 設置에 關하여 大韓民國에서 設立되는 同種의 會社 또는 가장 類似한 會社의 支店과 同一한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登記에서는 會社設立의 準據法과 大韓民國에서의 代表者의 姓名과 그 住所를 登記하여야 한다.

④第209條와 第210條의 規定은 外國會社의 代表者에게 準用한다.<改正 1962.12.12>

第615條 (登記期間의 起算點) 前條第2項과 第3項의 規定에 依한 登記事項이 外國에서 생긴때에는 登記期間은 그 通知가 到達한 날로부터 起算한다.

第616條 (登記前의 繼續去來의 禁止) ①外國會社는 그 營業所의 所在地에서 第614條의 規定에 依한 登記를 하기 前에는 繼續하여 去來를 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去來를 한 者는 그 去來에 對하여 會社와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第617條 (適用法規) 外國에서 設立된 會社라도 大韓民國에 그 本店을 設置하거나 大韓民國에서 營業할 것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大韓民國에서 設立된 會社와 同一한 規定에 依하여야 한다.

第618條 (準用規定) ①第335條 乃至 第338條, 第340條第1項, 第355條 乃至 第357條, 第478條第1項, 第479條와 第480條의 規定은 大韓民國에서의 外國會社의 株券 또는 債券의 發行과 그 株式의 移轉이나 入質 또는 社債의 移轉에 準用한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처음 大韓民國에 設置한 營業所를 本店으로 본다.

第607條 (有限會社의 株式會社에의 組織變更) ①有限會社는 總社員의 一致에 衣한 總會의 決議로 그 組織을 變更하여야 이를 株式會社로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組織變更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發行價額의 總額은 會社에 現存하는 純財産額을 超過하지 못한다.

③第1項의 組織變更은 法院의 認可를 얻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없다.

④第1項의 組織變更의 境遇에 會社에 現存하는 純財産額이 組織變更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發行價額의 總額에 不足하는 때에는 第1項의 決議當時의 理事, 監事와 社員은 會社에 對하여 連帶하여 그 不足額을 支給할 責任이 있다. 이 境遇에 第550條第2項과 第551條第2項,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62.12.12>

⑤第340條第3項, 第601條第1項, 第604條第3項과 前條의 規定은 第1項의 組織變更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608條 (準用規定) 第232條의 規定은 第604條와 第607條의 組織變更의 境遇에 準用한다.<改正 1984.4.10>

第6節 解散과 淸算

第609條 (解散事由) ①有限會社는 다음의 事由로 因하여 解散한다. <개정 2001.7.24>

1. 제227조제1호·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社員總會의 決議

②前項第2號의 決議는 第585條의 規定에 依하여야 한다.

第610條 (會社의 繼續) ①第227條第1號 또는 前條第1項第2號의 事由로 因하여 會社가 解散한 境遇에는 第585條의 規定에 依한 社員總會의 決議로써 會社를 繼續할 수 있다.

②삭제<2001.7.24>

第611條 (準用決定) 第229條第3項의 規定은 前條의 會社繼續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612條 (殘餘財産의 分配) 殘餘財産은 定款에 다른 定함이 있는 境遇外에는 各社員의 出資座數에 따라 社員에게 分配하여야 한다.

第613條 (準用規定) ①第228條, 第245條, 第252條 乃至 第255條, 第259條, 第260條, 第264條, 第520條,

因하여 設立되는 會社가 有限會社인 때에는 第339條의 規定은 從前의 株式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에 準用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質權의 目的인 持分에 關하여 出資座數와 質權者의 姓名 및 住所를 社員名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그 質權으로써 會社 其他의 第三者에 對抗하지 못한다.

第**602**條 (合併의 登記) 有限會社가 合併을 한 때에는 第603條에서 準用하는 第526條 또는 第527條의 規定에 依한 社員總會가 終結한 날로부터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合併後 存續하는 有限會社에 있어서는 變更登記, 合併으로 因하여 消滅되는 有限會社에 있어서는 解散登記, 合併으로 因하여 設立되는 有限會社에 있어서는 第549條第2項에 定한 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603**條 (準用規定) 第232條, 第234條, 第235條, 第237條 乃至 第240條, 第443條, 第522條第1項·第2項, 第522條의2, 第523條, 第524條, 第526條第1項·第2項, 第527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529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의 合併의 境遇에 準用한다.<改正 1962.12.12, 1984.4.10, 1998.12.28>

第**604**條 (株式會社의 有限會社에의 組織變更) ①株式會社는 總株主의 一致에 依한 總會의 決議로 그 組織을 變更하여 이를 有限會社로 할 수 있다. 그러나 社債의 償還을 完了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前項의 組織變更의 境遇에는 會社에 現存하는 純財産額보다 많은 金額을 資本의 總額으로 하지 못한다.

③第1項의 決議에 있어서는 定款 其他 組織變更에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야 한다.

④第601條의 規定은 第1項의 組織變更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605**條 (理事, 株主의 純財産額塡補責任) ①前條의 組織變更의 境遇에 會社에 現存하는 純財産額이 資本의 總額에 不足하는 때에는 前條第1項의 決議當時의 理事와 株主는 會社에 對하여 連帶하여 그 不足額을 支給할 責任이 있다.

②第550條第2項과 第551條第2項, 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改正 1962.12.12>

第**606**條 (組織變更의 登記) 株式會社가 第604條의 規定에 依하여 그 組織을 變更한 때에는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株式會社에 있어서는 解散登記, 有限會社에 있어서는 第549條第2項에 定하는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資本增加後에 아직 出資全額의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目的인 財産의 給與가 未畢된 出資가 있는 때에는 理事와 監事는 連帶하여 그 納入 또는 給與未畢財産의 價額을 支給할 責任이 있다.<改正 1962.12.12>

③第552條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改正 1962.12.12>

第595條 (增資無效의 訴) ①資本增加의 無效는 社員, 理事 또는 監事에 限하여 第591條의 規定에 依한 本店所在地에서의 登記를 한 날로부터 6月內에 訴만으로 이를 主張할 수 있다.<改正 1962.12.12>

②第430條 乃至 第432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596條 (準用規定) 第334條, 第548條와 第576條第2項의 規定은 資本增加의 境遇에 準用한다.<改正 1962.12.12>

第597條 (同前) 第439條第1項, 第2項, 第443條, 第445條와 第446條의 規定은 資本減少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5節 合併과 組織變更

第598條 (合併의 方法) 有限會社가 다른 會社와 合併을 함에는 第585條의 規定에 依한 社員總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第599條 (設立委員의 選任) 第175條의 規定에 依한 設立委員의 選任은 第585條의 規定에 依한 社員總會의 決議에 依하여야 한다.

第600條 (有限會社와 株式會社의 合併) ①有限會社가 株式會社와 合併하는 境遇에 合併後 存續하는 會社 또는 合併으로 因하여 設立되는 會社가 株式會社인 때에는 法院의 認可를 얻지 아니하면 合併의 效力이 없다.

②合併을 하는 會社의 一方이 社債의 償還을 完了하지 아니한 株式會社인 때에는 合併後 存續하는 會社 또는 合併으로 因하여 設立되는 會社는 有限會社로 하지 못한다.

第601條 (物上代位) ①有限會社가 株式會社와 合併하는 境遇에 合併後 存續하는 會社 또는 合併으로

1. 現物出資를 하는 者의 姓名과 그 目的인 財産의 種類, 數量, 價格과 이에 對하여 付與할 出資座數
2. 資本의 增加後에 讓受할 것을 約定한 財産의 種類, 數量, 價格과 그 讓渡人의 姓名
3. 增加할 資本에 對한 出資의 引受權을 付與할 者의 姓名과 그 權利의 內容

第587條 (增資의 境遇의 出資引受權의 付與) 有限會社가 特定한 者에 對하여 將來 그 資本을 增加할 境遇에 있어서 出資의 引受權을 付與할 것을 約束함에는 第585條에 定하는 決議에 依하여야 한다.

第588條 (社員의 出資引受權) 社員은 增加할 資本에 對하여 그 持分에 따라 出資를 引受할 權利가 있다. 그러나 前2條의 決議에서 出資의 引受者를 定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89條 (出資引受의 方法) ①資本增加의 境遇에 出資의 引受를 하고자 하는 者는 引受를 證明하는 書面에 그 引受할 出資의 座數와 住所를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有限會社는 廣告 其他의 方法에 依하여 引受人을 公募하지 못한다.

第590條 (出資引受人의 地位) 資本增加의 境遇에 出資의 引受를 한 者는 出資의 納入의 期日 또는 現物出資의 目的인 財産의 給與의 期日로부터 利益配當에 關하여 社員과 同一한 權利를 가진다.

第591條 (資本增加의 登記) 有限會社는 資本增加로 因한 出資全額의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履行이 完了된 날로부터 2週間내에 本店의 所在地에서 資本增加로 因한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592條 (增資의 效力發生) 資本의 增加는 本店所在地에서 前條의 登記를 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第593條 (現物出資等에 關한 社員의 責任) ①第586條第1號와 第2號의 財産의 資本增加當時의 實價가 資本增加의 決議에 依하여 定한 價格에 顯著하게 不足한 때에는 그 決議에 同意한 社員은 會社에 對하여 그 不足額을 連帶하여 支給할 責任이 있다.
②第550條第2項과 第551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改正 1962.12.12>

第594條 (未引受出資等에 關한 理事等의 責任) ①資本增加後에 아직 引受되지 아니한 出資가 있는 때에는 理事와 監事가 共同으로 이를 引受한 것으로 본다.<改正 1962.12.12>

第581條 (社員의 會計帳簿閱覽權) ①資本의 100分의 3이상에 該當하는 出資座數를 가진 社員은 會計의 帳簿와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②會社는 定款으로 各社員이 第1項의 請求를 할 수 있다는 뜻을 定할 수 있다. 이 경우 第57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附屬明細書는 이를 作成하지 아니한다.<改正 1984.4.10>

第582條 (業務, 財産狀態의 檢査) ①會社의 業務執行에 關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重大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資本總額의 100分의 3이상에 該當하는 出資座數를 가진 社員은 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하게 하기 爲하여 法院에 檢査人의 選任을 請求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②檢査人은 그 調査의 結果를 書面으로 法院에 報告하여야 한다.

③法院은 前項의 報告書에 依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한 境遇에는 監事가 있는 때에는 監事에게, 監事가 없는 때에는 理事에게 社員總會의 召集을 命할 수 있다. 第310條第2項의 規定은 이 境遇에 準用한다.<改正 1962.12.12>

第583條 (準用規定) ①第449條第1項·第2項, 第450條, 第452條, 第453條, 第453條의2, 第457條의2, 第458條 乃至 第460條, 第462條, 第462條의3 및 第466條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의 計算에 準用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1999.12.31>

②第468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와 被用者間에 雇傭關係로 因하여 생긴 債權에 準用한다.<개정 1999.12.31>

第4節 定款의 變更

第584條 (定款變更의 方法) 定款을 變更함에는 社員總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第585條 (定款變更의 特別決議) ①前條의 決議는 總社員의 半數以上이며 總社員의 議決權의 4分의 3以上을 가지는 者의 同意로 한다.

②前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는 社員은 이를 總社員의 數에, 그 行使할 수 없는 議決權은 이를 議決權의 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586條 (資本增加의 決議) 다음의 事項은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더라도 資本增加의 決議에서 이를 定할 수 있다.

第577條 (書面에 依한 決議) ①總會의 決議를 하여야 할 境遇에 總社員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書面에 依한 決議를 할 수 있다.

②決議의 目的事項에 對하여 總社員이 書面으로 同意를 한 때에는 書面에 依한 決議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書面에 依한 決議는 總會의 決議와 同一한 效力이 있다.

④總會에 關한 規定은 書面에 依한 決議에 準用한다.

第578條 (準用規定) 第365條, 第367條, 第368條第3項·第4項, 第369條第2項, 第371條第2項, 第372條, 第373條와 第376條 乃至 第381條의 規定은 社員總會에 準用한다.

第579條 (財務諸表의 作成) ①理事는 每決算期에 다음의 書類와 그 附屬明細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1. 貸借對照表
2. 損益計算書
3.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

②監事가 있는 때에는 理事는 定期總會會日로부터 4週間전에 第1項의 書類를 監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監事는 第2項의 書類를 받은 날로부터 3週間내에 監査報告書를 理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84.4.10]

第579條의2 (營業報告書의 作成) ①理事는 每決算期에 營業報告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第57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營業報告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579條의3 (財務諸表등의 備置·公示) ①理事는 定期總會會日의 1週間전부터 5年間 第579條 및 第579條의2의 書類와 監査報告書를 本店에 備置하여야 한다.

②第448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書類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580條 (利益配當의 基準) 利益의 配當은 定款에 다른 定함이 있는 境遇外에는 各社員의 出資座數에 따라 하여야 한다.

第570條 (準用規定) 第382條, 第385條第1項, 第386條, 第388條, 第400條, 第407條, 第411條, 第413條, 第414條와 第565條의 規定은 監事에 準用한다.

第571條 (社員總會의 召集) ①社員總會는 本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外에는 理事가 이를 召集한다. 그러나 臨時總會는 監事도 이를 召集할 수 있다.<改正 1962.12.12>

②社員總會를 召集함에는 會日을 定하고 1週間前에 各社員에 對하여 書面으로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期間은 定款으로 短縮할 수 있다.

③第363條第2項과 第364條의 規定은 社員總會의 召集에 準用한다.

第572條 (少數社員에 依한 總會召集請求) ①資本의 總額의 100分의 3이상에 該當하는 出資座數를 가진 社員은 會議의 目的事項과 召集의 理由를 記載한 書面을 理事에게 提出하여 總會의 召集을 請求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②前項의 規定은 定款으로 다른 定함을 할 수 있다.

③第366條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573條 (召集節次의 省略) 總社員의 同意가 있을 때에는 召集節次없이 總會를 열 수 있다.

第574條 (總會의 定足數, 決議方法) 社員總會의 決議는 定款 또는 本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外에는 總社員의 議決權의 過半數를 가지는 社員이 出席하고 그 議決權의 過半數로써 하여야 한다.

第575條 (社員의 議決權) 各社員은 出資1座마다 1個의 議決權을 가진다. 그러나 定款으로 議決權의 數에 關하여 다른 定함을 할 수 있다.

第576條 (營業讓渡等과 事後設立) ①有限會社가 第374條第1號 乃至 第3號에 揭記한 行爲를 함에는 第585條의 規定에 依한 總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은 有限會社가 그 成立後 2年內에 成立前으로부터 存在하는 財産으로서 營業을 爲하여 繼續하여 使用할 것을 資本의 20分의 1以上에 相當한 對價로 取得하는 契約을 締結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依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②社員總會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支配人의 選任 또는 解任을 할 수 있다.<改正 1984.4.10>

③理事는 監事가 있는 때에는 그 承認이, 監事가 없는 때에는 社員總會의 承認이 있는 때에 限하여 自己 또는 第三者의 計算으로 會社와 去來를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民法 第124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新設 1962.12.12>

第**564**條의**2** (留止請求權) 理事가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會社에 회복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監事 또는 資本의 總額의 100分의 3이상에 해당하는 出資座數를 가진 社員은 會社를 위하여 理事에 대하여 그 행위를 留止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31]

第**565**條 (社員의 代表訴訟) ①資本의 總額의 100分의 3이상에 該當하는 出資座數를 가진 社員은 會社에 對하여 理事의 責任을 追窮할 訴의 提起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403條第2項 내지 第7項과 第404條 乃至 第406條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改正 1998.12.28, 1999.12.31>

第**566**條 (書類의 備置, 閱覽) ①理事는 定款과 社員總會의 議事錄을 本店과 支店에, 社員名簿를 本店에 備置하여야 한다.

②社員名簿에는 社員의 姓名, 住所와 그 出資座數를 記載하여야 한다.

③社員과 會社債權者는 營業時間내에 언제든지 第1項에 揭記한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

第**567**條 (準用規定) 第209條, 第210條, 第382條, 第385條, 第386條, 第388條, 第395條, 第397條, 第399條 내지 第401條, 第407條와 第408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의 理事에 準用한다. 이 경우 第397條의 "理事會"는 이를 "社員總會"로 한다.<改正 1962.12.12, 1998.12.28, 1999.12.31>

第**568**條 (監事) ①有限會社는 定款에 依하여 1人 또는 數人의 監事를 둘 수 있다.

②第547條의 規定은 定款에서 監事를 두기로 定한 境遇에 準用한다.

第**569**條 (監事의 權限) 監事는 언제든지 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할 수 있고 理事에 對하여 營業에 關한 報告를 請求할 수 있다.

③社員相互間의 持分의 讓渡에 對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定款으로 다른 定함을 할 수 있다.<改正 1962.12.12>

第557條 (持分移轉의 對抗要件) 持分의 移轉은 取得者의 姓名, 住所와 그 目的이 되는 出資座數를 社員名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會社와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558條 (持分의 共有) 第333條의 規定은 持分이 數人의 共有에 屬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第559條 (持分의 入質) ①持分은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②第556條와 第557條의 規定은 持分의 入質에 準用한다.

第560條 (準用規定) ①第339條, 第340條第1項·第2項, 第341條, 第341條의3, 第342條와 第343條第1項의 規定은 社員의 持分에 準用한다.<改正 1984.4.10, 1999.12.31>

②第353條의 規定은 社員에 對한 通知 또는 催告에 準用한다.

第3節 會社의 管理

第561條 (理事) 有限會社에는 1人 또는 數人의 理事를 두어야 한다.

第562條 (會社代表) ①理事는 會社를 代表한다.

②理事가 數人인 境遇에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社員總會에서 會社를 代表할 理事를 選定하여야 한다.

③定款 또는 社員總會는 數人의 理事가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것을 定할 수 있다.

④第208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563條 (理事, 會社間의 訴에 關한 代表) 會社가 理事에 對하여 또는 理事가 會社에 對하여 訴를 提起하는 境遇에는 社員總會는 그 訴에 關하여 會社를 代表할 者를 選定하여야 한다.

第564條 (業務執行의 決定, 理事와 會社間의 去來) ①理事가 數人인 境遇에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會社의 業務執行, 支配人의 選任 또는 解任과 支店의 設置·移轉 또는 廢止는 理事過半數의 決議에

第550條 (現物出資等에 關한 會社成立時의 社員의 責任) ①第544條第1號와 第2號의 財産의 會社成立當時의 實價가 定款에 定한 價格에 顯著하게 不足한 때에는 會社成立當時의 社員은 會社에 對하여 그 不足額을 連帶하여 支給할 責任이 있다.

②前項의 社員의 責任은 免除하지 못한다.<新設 1962.12.12>

第551條 (出資未畢額에 對한 會社成立時의 社員等의 責任) ①會社成立後에 出資金額의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履行이 完了되지 아니 하였음이 發見된 때에는 會社成立當時의 社員, 理事와 監事는 會社에 對하여 그 納入되지 아니한 金額 또는 履行되지 아니한 現物의 價額을 連帶하여 支給할 責任이 있다.<改正 1962.12.12>

②前項의 社員의 責任은 免除하지 못한다.<新設 1962.12.12>

③第1項의 理事와 監事의 責任은 總社員의 同意가 없으면 免除하지 못한다.<新設 1962.12.12>

第552條 (設立無效, 取消의 訴) ①會社의 設立의 無效는 그 社員, 理事와 監事에 限하여, 設立의 取消는 그 取消權있는 者에 限하여 會社成立의 날로부터 2年內에 訴만으로 이를 主張할 수 있다.

②第184條第2項과 第185條 乃至 第193條의 規定은 前項의 訴에 準用한다.

[全文改正 1962.12.12]

第2節 社員의 權利義務

第553條 (社員의 責任) 社員의 責任은 本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外에는 그 出資金額을 限度로 한다.

第554條 (社員의 持分) 各社員은 그 出資座數에 따라 持分을 가진다.

第555條 (持分에 關한 證券) 有限會社는 社員의 持分에 關하여 指示式 또는 無記名式의 證券을 發行하지 못한다.

第556條 (持分의 讓渡) ①社員은 第585條의 規定에 依한 社員總會의 決議가 있는 때에 限하여 그 持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 他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그러나 定款으로 讓渡의 制限을 加重할 수 있다.

②讓渡로 因하여 社員의 總數가 第545條의 規定에 依한 制限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遺贈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讓渡는 效力이 없다.

遇에 法院의 認可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前項의 規定은 相續 또는 遺贈으로 因하여 社員의 數에 變更이 생기는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546條 (資本總額, 出資 1座의 金額의 制限) ①會社의 資本總額은 1千萬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②出資1座의 金額은 5千원이상으로 均一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第547條 (初代理事의 選任) ①定款으로 理事를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會社成立前에 社員總會를 열어 이를 選任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社員總會는 各社員이 召集할 수 있다.

第548條 (出資의 納入) ①理事는 社員으로 하여금 出資金額의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目的인 財産全部의 給與를 시켜야 한다.

②第295條第2項의 規定은 社員이 現物出資를 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第549條 (設立의 登記) ①有限會社의 設立登記는 第548條의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履行이 있은 날로부터 2週間內에 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登記에서 다음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1. 第179條第1號·第2號 및 第5號에 規定된 사항과 支店을 둔 때에는 그 所在地
2. 第543條第2項第2號와 第3號에 揭記한 事項
3. 理事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다만, 會社를 代表할 理事를 정한 때에는 그외의 理事의 住所를 제외한다.
4. 會社를 代表할 理事를 정한 때에는 그 姓名
5. 數人의 理事가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6. 存立期間 其他의 解散事由를 定한 때에는 그 期間과 事由
7. 監事가 있는 때에는 그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

③有限會社의 支店設置 및 移轉시 支店所在地 또는 新支店所在地에서 하는 登記에 있어서는 第2項第1號 및 第3號 내지 第6號에 規定된 사항을 登記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④第181條 乃至 第183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의 登記에 準用한다.<改正 1962.12.12>

②前項의 保存에 關하여는 淸算人 其他의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이 保存人과 保存方法을 定한다.

第542條 (準用規定) ①第245條, 第252條 乃至 第255條, 第259條, 第260條와 第264條의 規定은 株式會社에 準用한다.

②第362條, 第363條의2, 第366條, 第367條, 第373條, 第376條, 第377條, 第382條第2項, 第386條, 第388條 乃至 第394條, 第396條, 第398條 乃至 第408條, 第411條 乃至 第413條, 第414條第3項, 第449條第3項, 第450條와 第466條의 規定은 淸算人에 準用한다.<改正 1962.12.12, 1984.4.10, 1998.12.28>

第5章 有限會社

第1節 設立

第543條 (定款의 作成, 絶對的 記載事項) ①有限會社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定款을 作成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②定款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각 사원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2001.7.24>

1. 第179條第1號 내지 第3號에 정한 事項
2. 資本의 總額
3. 出資一座의 金額
4. 各社員의 出資座數
5. 本店의 所在地

③第292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에 準用한다.

第544條 (變態設立事項) 다음의 事項은 定款에 記載함으로써 그 效力이 있다.

1. 現物出資를 하는 者의 姓名과 그 目的인 財産의 種類, 數量, 價格과 이에 對하여 付與하는 出資座數
2. 會社의 成立後에 讓受할 것을 約定한 財産의 種類, 數量, 價格과 그 讓渡人의 姓名
3. 會社가 負擔한 設立費用

第545條 (社員總數의 制限) ①社員의 總數는 50人을 超過하지 못한다. 그러나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

②淸算人은 알고 있는 債權者에 對하여는 各別로 그 債權의 申告를 催告하여야 하며 그 債權者가 申告하지 아니한 境遇에도 이를 淸算에서 除外하지 못한다.

第536條 (債權申告期間內의 辨濟) ①淸算人은 前條 第1項의 申告期間內에는 債權者에 對하여 辨濟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會社는 그 辨濟의 遲延으로 因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②淸算人은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少額의 債權, 擔保있는 債權 其他 辨濟로 因하여 다른 債權者를 害할 念慮가 없는 債權에 對하여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辨濟할 수 있다.

第537條 (除外된 債權者에 對한 辨濟) ①淸算에서 除外된 債權者는 分配되지 아니한 殘餘財産에 對하여서만 辨濟를 請求할 수 있다.

②一部의 株主에 對하여 財産의 分配를 한 境遇에는 그와 同一한 比率로 다른 株主에게 分配할 財産은 前項의 殘餘財産에서 控除한다.

第538條 (殘餘財産의 分配) 殘餘財産은 各株主가 가진 株式의 數에 따라 株主에게 分配하여야 한다. 그러나 第344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39條 (淸算人의 解任) ①淸算人은 法院이 選任한 境遇外에는 언제든지 株主總會의 決議로 이를 解任할 수 있다.

②淸算人이 그 業務를 執行함에 顯著하게 不適任하거나 重大한 任務에 違反한 行爲가 있는 때에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以上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法院에 그 淸算人의 解任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③第186條의 規定은 第2項의 請求에 關한 訴에 準用한다.<改正 1998.12.28>

第540條 (淸算의 終結) ①淸算事務가 終結한 때에는 淸算人은 遲滯없이 決算報告書를 作成하고 이를 株主總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前項의 承認이 있는 때에는 會社는 淸算人에 對하여 그 責任을 解除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淸算人의 不正行爲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41條 (書類의 保存) ①會社의 帳簿 其他 營業과 淸算에 關한 重要한 書類는 本店所在地에서 淸算終結의 登記를 한 後 10年間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 다만, 傳票 또는 이와 유사한 書類는 5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12節 淸算

第531條 (淸算人의 決定) ①會社가 解散한 때에는 合併·分割·分割合併 또는 破産의 境遇外에는 理事가 淸算人이 된다. 다만, 定款에 다른 定함이 있거나 株主總會에서 他人을 選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8.12.28>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淸算人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淸算人을 選任한다.

第532條 (淸算人의 申告) 淸算人은 就任한 날로부터 2週間內에 다음의 事項을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1. 解散의 事由와 그 年月日
2. 淸算人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第533條 (會社財産調査報告義務) ①淸算人은 就任한 後 遲滯없이 會社의 財産狀態를 調査하여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 作成하고 이를 株主總會에 提出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淸算人은 前項의 承認을 얻은 後 遲滯없이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 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534條 (貸借對照表·事務報告書·附屬明細書의 제출·監査·公示·承認) ①淸算人은 定期總會會日로부터 4週間전에 貸借對照表 및 그 附屬明細書와 事務報告書를 作成하여 監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監事는 定期總會會日로부터 1週間전에 第1項의 書類에 관한 監査報告書를 淸算人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淸算人은 定期總會會日의 1週間전부터 第1項의 書類와 第2項의 監査報告書를 本店에 備置하여야 한다.

④第448條第2項의 規定은 第3項의 書類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⑤淸算人은 貸借對照表 및 事務報告書를 定期總會에 제출하여 그 承認을 要求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84.4.10]

第535條 (會社債權者에의 催告) ①淸算人은 就任한 날로부터 2月內에 會社債權者에 對하여 一定한 期間內에 그 債權을 申告할 것과 그 期間內에 申告하지 아니하면 淸算에서 除外될 뜻을 2回以上 公告로써 催告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 한다.

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8.12.28]

第**530**條의**9** (分割 및 分割合併後의 會社의 責任) ①分割 또는 分割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會社 또는 存續하는 會社는 分割 또는 分割合併前의 會社債務에 관하여 連帶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分割되는 會社가 第530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議로 分割에 의하여 會社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設立되는 會社가 分割되는 會社의 債務중에서 出資한 財産에 관한 債務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分割되는 會社가 分割後에 存續하는 때에는 分割로 인하여 設立되는 會社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債務만을 부담한다.

③分割合併의 경우에 分割되는 會社는 第530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議로 分割合併에 따른 出資를 받는 存立중의 會社가 分割되는 會社의 債務중에서 出資한 財産에 관한 債務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2項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第439條第3項 및 第527條의5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8.12.28]

第**530**條의**10** (分割 또는 分割合併의 效果) 分割 또는 分割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會社 또는 存續하는 會社는 分割하는 會社의 權利와 義務를 分割計劃書 또는 分割合併契約書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承繼한다.

[本條新設 1998.12.28]

第**530**條의**11** (準用規定) ①第234條, 第237條 내지 第240條, 第329條의2, 第440條 내지 第444條, 第526條 第527條, 第528條 및 第529條의 規定은 分割 또는 分割合併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第527條의 設立委員은 代表理事로 한다.

②第374條第2項, 第439條第3項, 第522條의3, 第527條의2, 第527條의3 및 第527條의5의 規定은 分割合併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9.12.31>

[本條新設 1998.12.28]

第**530**條의**12** (物的 分割) 이 節의 規定은 分割되는 會社가 分割 또는 分割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會社의 株式의 總數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8.12.28]

②分割되는 會社의 일부가 다른 會社 또는 다른 會社의 일부와 分割合併을 하여 會社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分割合併契約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第530條의5第1項第1號·第2號·第6號 내지 第10號에 規定된 사항
2. 設立되는 會社가 分割合併을 함에 있어서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 종류 및 종류별 株式의 數
3. 각 會社의 株主에 대한 株式의 配定에 관한 사항과 配定에 따른 株式의 併合 또는 分割을 하는 경우에는 그 規定
4. 각 會社가 設立되는 會社에 移轉할 財産과 그 價額
5. 각 會社의 株主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規定
6. 각 會社에서 第530條의3第2項의 決議를 할 株主總會의 期日
7. 分割合併을 할 날

③第530條의5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각 會社의 分割合併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8.12.28]

目 **第530條의7 (分割貸借對照表 등의 公示)** ①分割되는 會社의 理事는 第53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會日의 2週전부터 分割의 登記를 한 날 또는 分割合併을 한 날이후 6月間 다음 各號의 書類를 本店에 비치하여야 한다.

1. 分割計劃書 또는 分割合併契約書
2. 分割되는 부분의 貸借對照表
3. 分割合併의 경우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의 貸借對照表
4. 分割되는 會社의 株主에게 발행할 株式의 配定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書面

②第530條의6第1項의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의 理事는 分割合併을 승인하는 株主總會의 會日의 2週전부터 分割合併의 登記를 한 후 6月間 다음 各號의 書類를 本店에 비치하여야 한다.

1. 分割合併契約書
2. 分割되는 會社의 分割되는 부분의 貸借對照表
3. 分割되는 會社의 株主에게 발행할 株式의 配定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書面

③第522條의2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書類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8.12.28]

目 **第530條의8 (分割 및 分割合併에 관한 計算)** 分割 또는 分割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會社 또는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가 營業權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取得價額을 貸借對照表의 資産의 部에 計上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設立登記 또는 分割合併의 登記를 한 후 5年내의 每 決算期에 均等額이상을 償却하

6. 設立되는 會社의 資本과 準備金에 관한 사항

7. 設立되는 會社에 移轉될 財産과 그 價額

8. 第530條의9第2項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設立되는 會社의 理事와 監事를 정한 경우에는 그 姓名과 住民登錄番號

10. 設立되는 會社의 定款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②分割後 會社가 存續하는 경우에는 存續하는 會社에 관하여 分割計劃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소할 資本과 準備金의 額

2. 資本減少의 방법

3. 分割로 인하여 移轉할 財産과 그 價額

4. 分割後의 發行株式의 總數

5.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株式의 總數, 종류 및 종류별 株式의 數

6. 定款變更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本條新設 1998.12.28]

第**530**條의**6** (分割合併契約書의 기재사항) ①分割되는 會社의 일부가 다른 會社와 合併하여 그 다른 會社(이하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라 한다)가 存續하는 경우에는 分割合併契約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가 分割合併으로 인하여 발행할 株式의 總數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株式의 總數, 종류 및 종류별 株式의 數

2.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가 分割合併을 함에 있어서 發行하는 新株의 總數, 종류 및 종류별 株式의 數

3. 分割되는 會社의 株主에 대한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의 株式의 配定에 관한 事項 및 配定에 따른 株式의 併合 또는 分割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分割되는 會社의 株主에 대하여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가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規定

5.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의 증가할 資本의 總額과 準備金에 관한 사항

6. 分割되는 會社가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에 移轉할 財産과 그 價額

7. 第530條의9第3項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각 會社에서 第530條의3第2項의 決議를 할 株主總會의 期日

9. 分割合併을 할 날

10.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의 理事와 監事를 정한 때에는 그 姓名과 住民登錄番號

11.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의 定款變更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다.

③會社는 分割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會社를 設立함과 동시에 分割合併할 수있다.

④解散후의 會社는 存立중의 會社를 存續하는 會社로 하거나 새로 會社를 設立하는 경우에 한하여 分割 또는 分割合併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8.12.28]

第530條의3 (分割計劃書·分割合併契約書의 승인) ①會社가 分割 또는 分割合併을 하는 때에는 分割計劃書 또는 分割合併契約書를 작성하여 株主總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承認決議는 第434條의 規定에 의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決議에 관하여는 第370條第1項의 株主도 議決權이 있다.

④分割計劃 또는 分割合併契約의 要領은 第363條에 정한 통지와 公告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會社가 數種의 株式을 發行한 경우에 分割 또는 分割合併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株主에게 損害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第435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종류의 株主의 總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⑥會社의 分割 또는 分割合併으로 인하여 分割 또는 分割合併에 관련되는 각 會社의 株主의 부담이 加重되는 경우에는 第2項 및 第5項의 決議외에 그 株主 全員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本條新設 1998.12.28]

第530條의4 (分割에 의한 會社의 設立) ①이 章 第1節의 會社設立에 관한 規定은 第53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會社의 設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分割에 의하여 設立되는 會社는 分割되는 會社의 出資만으로도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 分割되는 會社의 株主에게 그 株主가 가지는 그 會社의 株式의 比率에 따라서 設立되는 會社의 株式이 발행되는 때에는 第299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1998.12.28]

第530條의5 (分割計劃書의 기재사항) ①分割에 의하여 會社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分割計劃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設立되는 會社의 商號, 目的, 本店의 所在地 및 公告의 방법
2. 設立되는 會社가 발행할 株式의 總數 및 1株의 금액
3. 設立되는 會社가 分割 당시에 발행하는 株式의 總數, 종류 및 종류별 株式의 數
4. 分割되는 會社의 株主에 대한 設立되는 會社의 株式의 配定에 관한 사항 및 配定에 따른 株式의 合併 또는 分割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分割되는 會社의 株主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規定

第527條의6 (合併에 관한 書類의 事後公示) ①理事는 第527條의5에 規定한 節次의 경과, 合併을 한 날, 合併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會社로부터 承繼한 財産의 價額과 債務額 기타 合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合併을 한 날로부터 6月간 本店에비치하여야 한다.

②第522條의2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書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8.12.28]

第528條 (合併의 登記) ①會社가 合併을 한 때에는 第526條의 株主總會가 終結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公告일, 第527條의 創立總會가 終結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公告일부터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內,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內에 合併後 存續하는 會社에 있어서는 變更의 登記, 合併으로 因하여 消滅하는 會社에 있어서는 解散의 登記, 合併으로 因하여 設立된 會社에 있어서는 第317條에 定하는 登記를 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②合併後 存續하는 會社 또는 合併으로 因하여 設立된 會社가 合併으로 因하여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를 承繼한 때에는 第1項의 登記와 同時에 社債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第529條 (合併無效의 訴) ①合併無效는 各會社의 株主·理事·監事·淸算人·破産管財人 또는 合併을 承認하지 아니한 債權者에 限하여 訴만으로 이를 主張할 수 있다.<改正 1984.4.10>

②第1項의 訴는 第528條의 登記가 있은 날로부터 6月內에 提起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第530條 (準用規定) ①削除 <1998.12.28>

②第234條, 第235條, 第237條 내지 第240條, 第329條의2, 第374條第2項,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第439條第3項의 規定은 株式會社의 合併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5.12.29, 1998.12.28, 2001.7.24>

③第440條 乃至 第444條의 規定은 會社의 合併으로 因한 株式併合 또는 株式分割의 境遇에 準用한다.<改正 1998.12.28>

④第339條와 第340條第3項의 規定은 株式을 併合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合併으로 因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株式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에 準用한다.

第11節 會社의 分割

第530條의2 (會社의 分割·分割合併) ①會社는 分割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會社를 設立할 수 있다.

②會社는 分割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存立중의 會社와 合併(이하 "分割合併"이라 한다)할 수 있

[本條新設 1998.12.28]

第527條의3 (小規模合併) ①合併後 存續하는 會社가 合併으로 인하여 發行하는 新株의 總數가 그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存續하는 會社의 株主總會의 승인은 이를 理事會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合併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株主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存續하는 會社의 최종 貸借對照表上으로 현존하는 純資産額의 100分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경우에 存續하는 會社의 合併契約書에는 株主總會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合併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경우에 存續하는 會社는 合併契約書를 작성한 날부터 2週내에 消滅하는 會社의 商號 및 本店의 所在地, 合併을 할 날, 株主總會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合併을 한다는 뜻을 公告하거나 株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合併후 存續하는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20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所有한 株主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週내에 會社에 대하여 書面으로 第1項의 合併에 反對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合併을 할 수 없다.

⑤第1項 本文의 경우에는 第522條의3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1998.12.28]

第527條의4 (理事·監事의 任期) ①合併을 하는 會社의 一方이 合併후 存續하는 경우에 存續하는 會社의 理事 및 監事로서 合併전에 就任한 者는 合併契約書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合併後 최초로 도래하는 決算期의 定期總會가 종료하는 때에 退任한다.

②삭제 <2001.7.24>

[本條新設 1998.12.28]

第527條의5 (債權者保護節次) ①會社는 第522條의 株主總會의 承認決議가 있은 날로부터 2週내에 債權者에 대하여 合併에 異議가 있으면 1月以上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公告하고 알고 있는 債權者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催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527條의2 및 第527條의3의 경우에는 理事會의 承認決議를 株主總會의 承認決議로 본다.

③第232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8.12.28]

및 주민등록번호

第525條 (合名會社, 合資會社의 合併契約書) ①合併後 存續하는 會社 또는 合併으로 因하여 設立되는 會社가 株式會社인 境遇에 合併할 會社의 一方 또는 雙方이 合名會社 또는 合資會社인 때에는 總社員의 同意를 얻어 合併契約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前2條의 規定은 前項의 合併契約書에 準用한다.

第526條 (吸收合併의 報告總會) ①合併을 하는 會社의 一方이 合併後 存續하는 境遇에는 그 理事는 第527條의5의 節次의 終了後, 合併으로 因한 株式의 合併이 있을 때에는 그 效力이 생긴 後, 合併에 適當하지 아니한 株式이 있을 때에는 合併後, 存續하는 會社에 있어서는 第443條의 處分을 한 후, 小規模合併의 경우에는 第527條의3第3項 및 第4項의 節次를 종료한 후 遲滯없이 株主總會를 召集하고 合併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②合併當時에 發行하는 新株의 引受人은 第1項의 株主總會에서 株主와 同一한 權利가 있다.<改正 1998.12.28>

③第1項의 경우에 理事會는 公告로써 株主總會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第527條 (新設合併의 創立總會) ①合併으로 因하여 會社를 設立하는 境遇에는 設立委員은 第527條의5의 節次의 終了後, 合併으로 因한 株式의 併合이 있을 때에는 그 效力이 생긴 後, 併合에 適當하지 아니한 株式이 있을 때에는 第443條의 處分을 한 後 遲滯없이 創立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②創立總會에서는 定款變更의 決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合併契約의 趣旨에 違反하는 決議는 하지 못한다.

③第308條第2項, 第309條, 第311條, 第312條와 第316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創立總會에 準用한다.

④第1項의 경우에 理事會는 公告로써 株主總會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新設 1998.12.28>

第527條의2 (簡易合併) ①合併할 會社의 一方이 合併후 存續하는 경우에 合併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總株主의 同意가 있거나 그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90以上을 合併後 存續하는 會社가 所有하고 있는 때에는 合併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株主總會의 승인은 이를 理事會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合併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會社는 合併契約書를 작성한 날부터 2週내에 株主總會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合併을 한다는 뜻을 公告하거나 株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總株主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의사를 통지한 株主는 그 期間이 경과한 날부터 20日이내에 株式의 종류와 數를 기재한 書面으로 會社에 대하여 자기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의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新設 1998.12.28>

[本條新設 1995.12.29]

第**523**條 (吸收合併의 合併契約書) 合併할 會社의 一方이 合併後 存續하는 境遇에는 合併契約書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2001.7.24>

1. 存續하는 會社가 合併으로 因하여 그 發行할 株式의 總數를 增加하는 때에는 그 增加할 株式의 總數, 種類와 數
2. 存續하는 會社의 增加할 資本과 準備金의 總額
3. 存續하는 會社가 合併當時에 發行하는 新株의 總數, 種類와 數 및 合併으로 因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株主에 對한 新株의 配定에 關한 事項
4. 存續하는 會社가 合併으로 因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株主에게 支給할 金額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5. 各會社에서 合併의 承認決議를 할 社員 또는 株主의 總會의 期日
6. 合併을 할 날
7. 存續하는 會社가 合併으로 인하여 定款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規定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監査委員會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第**524**條 (新設合併의 合併契約書) 合併으로 因하여 會社를 設立하는 境遇에는 合併契約書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1. 設立되는 會社에 對하여 第289條第1項第1號 乃至 第4號에 揭記한 事項과 數種의 株式을 發行할 때에는 그 種類, 數와 本店所在地
2. 設立되는 會社가 合併當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와 種類, 數 및 各會社의 株主에 對한 株式의 配定에 關한 事項
3. 設立되는 會社의 資本과 準備金의 總額
4. 各會社의 株主에게 支給할 金額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5. 前條第5號와 第6號에 揭記한 事項
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監査委員會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경우에는 그 會社는 그 3年이 경과한 때에 淸算이 終結된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1984.4.10]

第521條 (解散의 通知, 公告) ①會社가 解散한 때에는 破産의 境遇外에는 理事는 遲滯없이 株主에 對하여 그 通知를 하고 無記名式의 株券을 發行한 境遇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521條의2 (準用規定) 第228條와 第229條第3項의 規定은 株式會社의 解散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8.12.28]

第10節 合併

第522條 (合併契約書와 그 承認決議) ①會社가 合併을 함에는 合併契約書를 作成하여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1998·12·28>

②合併契約의 要領은 第363條에 定한 通知와 公告에 記載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承認決議는 第434條의 規定에 依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第522條의2 (合併契約書 등의 公示) ①理事는 第522條第1項의 株主總會 會日의 2週전부터 合併을 한 날 이후 6月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各號의 書類를 本店에 비치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1. 合併契約書

2. 合併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株主에게 발행하는 株式의 配定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書面

3.각 會社의 최종의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

②株主 및 會社債權者는 營業時間내에는 언제든지 第1項 各號의 書類의 閱覽을 청구하거나, 會社가 정한 費用을 支給하고 그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本條新設 1984.4.10]

第522條의3 (合併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 ①第5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議事項에 관하여 理事會의 決議가 있는 때에 그 決議에 反對하는 株主는 株主總會전에 會社에 대하여 書面으로 그 決議에 反對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總會의 決議日부터 20日이내에 株式의 종류와 數를 기재한 書面으로 會社에 대하여 자기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의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527條의2第2項의 公告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週내에 會社에 대하여 書面으로 合併에 反對하

第9節 解散

第517條 (解散事由) 株式會社는 다음의 事由로 因하여 解散한다.<改正 1998.12.28>

1. 第227條第1號, 第4號 乃至 第6號에 정한 事由

1의2. 第53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會社의 分割 또는 分割合併

2. 株主總會의 決議

第518條 (解散의 決議) 解散의 決議는 第434條의 規定에 依하여야 한다.

第519條 (會社의 繼續) 會社가 存立期間의 滿了 其他 定款에 定한 事由의 發生 또는 株主總會의 決議에 依하여 解散한 境遇에는 第434條의 規定에 依한 決議로 會社를 繼續할 수 있다.

第520條 (解散判決) ①다음의 境遇에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0以上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會社의 解散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1. 會社의 業務가 顯著한 停頓狀態를 繼續하여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긴 때 또는 생길 念慮가 있는 때

2. 會社財産의 管理 또는 處分의 顯著한 失當으로 因하여 會社의 存立을 危殆롭게 한 때

②第186條와 第191條의 規定은 前項의 請求에 準用한다.

第520條의2 (休眠會社의 解散) ①法院行政處長이 最後의 登記후 5年을 경과한 會社는 本店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法院에 아직 營業을 廢止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申告를 할 것을 官報로써 公告한 경우에, 그 公告한 날에 이미 最後의 登記後 5年을 경과한 會社로서 公告한 날로부터 2月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會社는 그 申告期間이 滿了된 때에 解散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期間내에 登記를 한 會社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公告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해당 會社에 대하여 그 公告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發送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한 것으로 본 會社는 그후 3年이내에는 第434條의 決議에 의하여 會社를 계속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한 것으로 본 會社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社를 계속하지 아니한

第516條의6 (新株引受權의 讓渡) ①新株引受權證券이 발행된 경우에 新株引受權의 讓渡는 新株引受權證券의 交付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第336條第2項, 第360條 및 手票法 第21條의 規定은 新株引受權證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516條의7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登記) ①會社가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新株引受權附社債라는 뜻
2. 新株引受權의 行使로 인하여 발행할 株式의 發行價額의 總額
3. 各 新株引受權附社債의 金額
4. 各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納入金額
5. 第516條의2第2項第1號 내지 第3號에 정한 事項

②第514條의2第1項·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登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516條의8 (新株引受權의 行使) ①新株引受權을 行使하려는 者는 請求書 2通을 會社에 제출하고, 新株의 發行價額의 全額을 納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書를 제출하는 경우에 新株引受權證券이 발행된 때에는 新株引受權證券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券을 提示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納入은 債券 또는 新株引受權證券에 記載한 銀行 기타 金融機關의 納入場所에서 하여야 한다.

④第302條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請求書에, 第306條 및 第318條의 規定은 第3項의 納入을 맡은 銀行 기타 金融機關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516條의9 (株主가 되는 時期) 第516條의8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新株引受權을 行使한 者는 同項의 納入을 한 때에 株主가 된다. 이 경우 第350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95.12.29>

[本條新設 1984.4.10]

第516條의10 (準用規定) 第351條의 規定은 新株引受權의 行使가 있는 경우에, 第513條의2 및 第516條第1項의 規定은 新株引受權附社債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5.12.29>

[本條新設 1984.4.10]

⑤第513條第4項의 規定은 第4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516條의3 (新株引受權附社債의 引受權을 가진 株主에 대한 催告) ①株主가 新株引受權附社債의 引受權을 가진 경우에는 各 株主에 대하여 引受權을 가지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額, 發行價額, 新株引受權의 내용, 新株引受權을 行使할 수 있는 期間과 一定한 期日까지 新株引受權附社債의 請約을 하지 아니하면 그 權利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516條의2第2項第4號 또는 第5號에 規定한 事項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419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516條의4 (社債請約書·債券·社債原簿의 記載事項) 新株引受權附社債에 있어서는 社債請約書·債券 및 社債原簿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그러나, 第516條의5第1項의 新株引受權證券을 발행할 때에는 債券에는 이를 記載하지 아니한다.<改正 1995.12.29>

1. 新株引受權附社債라는 뜻
2. 第516條의2第2項第2號 내지 第5號에 정한 事項
3. 第516條의8의 規定에 의하여 納入을 맡을 銀行 기타 金融機關과 納入場所
4.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理事會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規定

[本條新設 1984.4.10]

第516條의5 (新株引受權證券의 발행) ①第516條의2第2項第4號에 規定한 事項을 정한 경우에는 會社는 債券과 함께 新株引受權證券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新株引受權證券에는 다음의 事項과 番號를 記載하고 理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1. 新株引受權證券이라는 뜻의 표시
2. 會社의 商號
3. 第516條의2第2項第2號·第3號 및 第5號에 정한 事項
4. 第516條의4第3號에 정한 事項
5.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理事會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는 그 規定

[本條新設 1984.4.10]